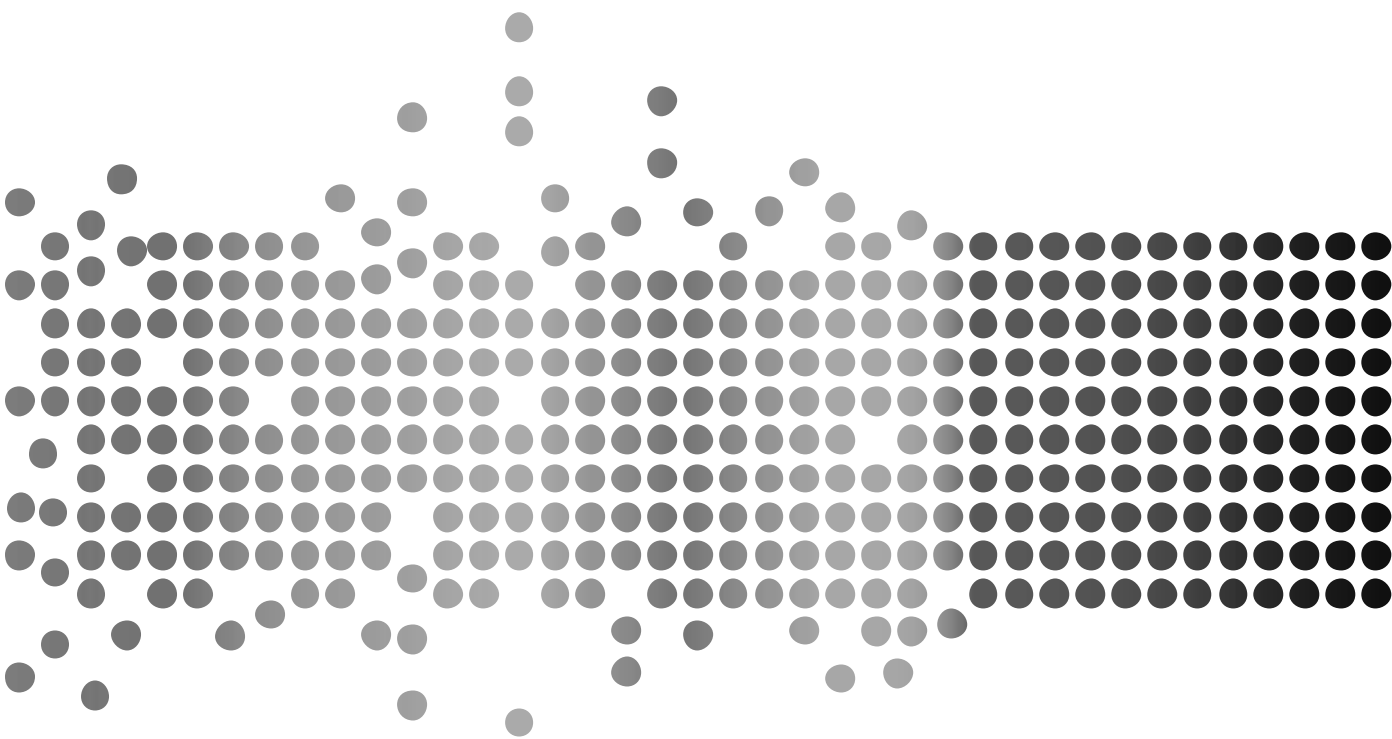


# 2009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 김미곤 · 강신욱 · 김계연 · 오지현 · 김민희 · 신재동 · 손기철 · 김은주  
이봉주 · 김태성 · 구인회 · 강상경 · 안서연 · 조미라 ·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32-1

---

##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손창균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예원기획  
가격 14,000원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16-6 93330

## 이용자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은 국가승인 통계(제33109호)로서 매년 4월~7월 사이에 조사되어 당해 연도 12월말에 보고서가 발간되며, 익년 9월말 학술대회와 더불어 조사자료 공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에서 웨이브별 원시자료 및 관련 보고서 등을 회원가입 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한국복지패널 4차 웨이브 조사의 각 문항별 기술통계를 분석하여 수록한 것이며, 1~3차 웨이브까지의 연도별 자료의 비교는 각 연도별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통계수치는 표준화 횡단면 표준가중치를 적용한 수치이며,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이므로 항목별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원시자료는 최종적으로 수정된 자료이므로 이로부터 산출되는 기술통계와 각 연도 기초분석보고서상의 통계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연도별 조사항목 중 문항의 정의나 세부 항목의 변경으로 연도별로 차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문항의 통계분석 시 변경내용을 각주로 처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수치 및 원시자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패널연구팀 (02) 380-8149, 8352, 827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오늘날 대부분의 정책 수립과 평가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정확한 통계자료의 생산이 다양한 사회·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민의 가계경제 및 근로, 복지 등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기초자료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는 안정화된 데 비해, 빈곤과 사회양극화의 심화, 비정규직 확대와 청년실업의 증가, 가계의 소비 위축과 부채 증가 등 사회지표들은 개별가구들의 불안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별가구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지속적으로 반영한 대표성을 띤 패널자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또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금급여와 사회서비스 확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 가구경제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복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이러한 제도들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도 미비한 상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6년 『한국복지패널』의 출범 이후 4차 웨이브인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보고서의 발간은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가구의 복지 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본원의 『차상위·빈곤패널』, 『자활패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을 통합한 결과의 산물이다. 2006년 1차 웨이브에서 『한국복지패널』은 7,072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였으며, 2차 웨이브인 2007년에는 92.1%, 3차 웨이브인 2008년에는 86.7%, 4차 웨이브인 2009년도에는 83.9%의 원 표본유지율을 기록하였다.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전국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조사표는 가구특성, 가구 경제상황, 가구원의 경제활동,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수급현황과 수급욕구, 여가 및 일상생활, 사회적 자본과 가치관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복지패널』은 한국의 대표적인 패널로서 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가정학·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의심치 않는 바이다.

『한국복지패널』은 본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원에서는 손창균 부연구위원과 김미곤 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강신욱 연구위원, 김계연 선임연구원, 오지현·김민희·신재동·손기철·김은주 연구원이 조사연구에 참여하였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는 이봉주 교수의 책임 하에 김태성·강상경·구인회 교수 그리고 안서연·조미라·이원진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패널조사를 성실히 수행해 준 조사원과 매년 조사에 참여해준 패널가구 및 자료정리를 해준 정희라 선생과 본 보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도세록 연구위원과 오영호 연구위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동반성장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복지패널』이 국가 통계와 정책 수립에 귀중한 자료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본 자료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발전된 연구들이 수행되기를 바라며, 많은 연구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도 더불어 기대한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	1
요 약 .....	3
<b>제1장 서 론</b> .....	9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9
제2절 조사개요 .....	13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	15
<b>제2장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b> .....	21
제1절 표본 규모 .....	21
제2절 4차 웨이브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	24
제3절 KOWEPS의 자체 품질진단 결과 .....	37
<b>제3장 조사 내용</b> .....	45
제1절 조사표의 구성 .....	45
제2절 조사문항 .....	47
<b>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b> .....	69
제1절 현지조사방법 .....	69
제2절 조사자료 처리 .....	71
<b>제5장 가구 및 가구원 특성</b> .....	75
제1절 조사대상 가구 특성 .....	75
제2절 조사대상 가구원 특성 .....	77

제3절 조사대상 신규가구원의 교육수준 .....	84
<b>제6장 경제활동</b> .....	<b>95</b>
제1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	95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	98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	109
제4절 가구구성원의 직업기술과 직종 .....	119
<b>제7장 가구경제</b> .....	<b>125</b>
제1절 소득 .....	125
제2절 지출 .....	141
제3절 재산 및 부채 .....	148
<b>제8장 주거</b> .....	<b>161</b>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	161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	170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	172
<b>제9장 건강 및 의료</b> .....	<b>185</b>
제1절 건강상태 .....	185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	189
<b>제10장 가족</b> .....	<b>197</b>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	197
제2절 가족문제 .....	201



<b>제11장 생활실태·만족 및 자원활동</b> .....	227
제1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	227
제2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	232
제3절 가구의 생활여건, 식생활, 주관적 최저생계비 .....	233
<b>제1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b> .....	245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	245
제2절 건강보험 가입 실태 .....	257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261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264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	267
<b>제13장 공공부조</b> .....	275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	275
제2절 수급 및 탈피 .....	278
제3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	282
제4절 근로장려세제 인식 및 실태 .....	283
<b>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b> .....	287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287
제2절 바우처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실태 .....	303
제3절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	309
제4절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313
제5절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329
제6절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343

<b>제15장 아동 부가조사</b> .....	363
제1절 응답자 특성 .....	363
제2절 학교생활 .....	365
제3절 정서와 행동 .....	369
제4절 부모와의 관계 .....	378
제5절 친구관계 .....	380
제6절 생활 및 서비스 이용 .....	385
제7절 진로 .....	396
<b>참고문헌</b> .....	399
<b>부 록</b> .....	403

## 표 목차

〈표 1-1- 1〉 2009년 KOPWES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대상	14
〈표 1-1- 2〉 KOWEPS 표본추출 개요	16
〈표 1-1- 3〉 KOWEPS의 각 웨이브별 원표본 유지율 비교	16
〈표 2-1- 1〉 KOWEPS 표본의 개요	21
〈표 2-1- 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23
〈표 2-1- 3〉 KOWEPS 1차 웨이브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분포현황	23
〈표 2-2- 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25
〈표 2-2- 2〉 4차 웨이브 자연소실 가구특성	26
〈표 2-2- 3〉 4차 웨이브 조사 미완 가구 특성	26
〈표 2-2- 4〉 1차 웨이브 대비 4차 웨이브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27
〈표 2-2- 5〉 4차 웨이브의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 표본의 지역별 탈락률 비교	28
〈표 2-2- 6〉 4차 웨이브의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구분에 따른 지역별 분포	29
〈표 2-2- 7〉 지역별 아동가구원의 소득구분에 따른 분포	30
〈표 2-2- 8〉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33
〈표 2-2- 9〉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33
〈표 2-2-10〉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34
〈표 2-2-11〉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35
〈표 2-2-12〉 지역별 가구 가중치 합에 대한 기술통계	35
〈표 2-2-13〉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36
〈표 2-3- 1〉 평가 요소별 평균 점수	40
〈표 2-3- 2〉 세부 주요문항별 평가 점수	40
〈표 3-1- 1〉 4차 웨이브 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47
〈표 3-2- 1〉 4차 웨이브 패널조사 영역	48
〈표 3-2- 2〉 조사 주제별 구성	49
〈표 3-2- 3〉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51
〈표 3-2- 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	52

〈표 3-2- 5〉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 주요항목	60
〈표 5-1- 1〉	가구형태	75
〈표 5-1-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76
〈표 5-1- 3〉	가구규모	77
〈표 5-2- 1〉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8
〈표 5-2- 2〉	가구주제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81
〈표 5-3- 1〉	가구의 최종 학력	84
〈표 5-3- 2〉	가구의 고등학교 유형	85
〈표 5-3- 3〉	가구의 고등학교 소재지	86
〈표 5-3- 4〉	가구의 대학 전공계열	87
〈표 5-3- 5〉	가구의 대학교 소재지	88
〈표 5-3- 6〉	가구원의 최종 학력	89
〈표 5-3- 7〉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89
〈표 5-3- 8〉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90
〈표 5-3- 9〉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91
〈표 5-3-10〉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92
〈표 6-1- 1〉	가구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95
〈표 6-1- 2〉	가구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96
〈표 6-1- 3〉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97
〈표 6-1- 4〉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97
〈표 6-2- 1〉	임금 근로자 가구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98
〈표 6-2- 2〉	임금 근로자 가구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99
〈표 6-2- 3〉	임금 근로자 가구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99
〈표 6-2- 4〉	취업 가구의 업종 및 직종	100
〈표 6-2- 5〉	취업 가구의 사업장 규모	101
〈표 6-2- 6〉	취업 가구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102
〈표 6-2- 7〉	가구의 사직 혹은 폐업의 구체적 이유	102

〈표 6-2- 8〉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103
〈표 6-2- 9〉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104
〈표 6-2-10〉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104
〈표 6-2-11〉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105
〈표 6-2-12〉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106
〈표 6-2-13〉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107
〈표 6-2-14〉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107
〈표 6-2-15〉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의 구체적 이유	·108
〈표 6-2-1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109
〈표 6-3- 1〉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109
〈표 6-3- 2〉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110
〈표 6-3- 3〉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	·110
〈표 6-3- 4〉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111
〈표 6-3- 5〉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112
〈표 6-3- 6〉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112
〈표 6-3- 7〉	가구주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113
〈표 6-3- 8〉	가구주의 지난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13
〈표 6-3- 9〉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114
〈표 6-3-10〉	가구원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115
〈표 6-3-11〉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	·115
〈표 6-3-12〉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116
〈표 6-3-13〉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	·117
〈표 6-3-14〉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117
〈표 6-3-15〉	가구원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118
〈표 6-3-16〉	가구원의 지난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118
〈표 6-4- 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119
〈표 6-4- 2〉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120

〈표 6-4- 3〉	가구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	121
〈표 6-4- 4〉	가구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	122
〈표 7-1- 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	126
〈표 7-1- 2〉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	126
〈표 7-1- 3〉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유무 .....	127
〈표 7-1- 4〉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	128
〈표 7-1- 5〉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 .....	129
〈표 7-1- 6〉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	131
〈표 7-1- 7〉	세부 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	132
〈표 7-1- 8〉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	134
〈표 7-1- 9〉	세부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	136
〈표 7-1-10〉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분포 .....	139
〈표 7-2- 1〉	월간 총가계지출 .....	141
〈표 7-2- 2〉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	142
〈표 7-2- 3〉	지출항목별 월간 생활비 .....	144
〈표 7-2- 4〉	소득수준별 지출항목별 월간 지출구성 .....	147
〈표 7-3- 1〉	총재산액 .....	148
〈표 7-3- 2〉	순재산액 .....	149
〈표 7-3- 3〉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	149
〈표 7-3- 4〉	소유형태별 소유부동산액 .....	150
〈표 7-3- 5〉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	150
〈표 7-3- 6〉	점유형태별 점유부동산액 .....	151
〈표 7-3- 7〉	총 금융자산 .....	151
〈표 7-3- 8〉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 .....	152
〈표 7-3- 9〉	총 농기계 자산액 .....	152
〈표 7-3-10〉	보유형태별 농기계 자산액 .....	153
〈표 7-3-11〉	총 농축산물 자산액 .....	153

〈표 7-3-12〉 사유형태별 농축산물 자산액 .....	154
〈표 7-3-13〉 자동차 자산액 .....	155
〈표 7-3-14〉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자산액 .....	155
〈표 7-3-15〉 소유형태별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자산액 .....	155
〈표 7-3-16〉 총 부채액 .....	156
〈표 7-3-17〉 부채형태별 부채액 .....	157
〈표 7-3-18〉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액 .....	157
〈표 8-1- 1〉 2008년 1년간 이사경험 여부 .....	161
〈표 8-1- 2〉 주택의 유형 .....	162
〈표 8-1- 3〉 주거 위치 .....	162
〈표 8-1- 4〉 주거 점유형태 .....	163
〈표 8-1- 5〉 방의 수 .....	163
〈표 8-1- 6〉 주택의 연건평 .....	164
〈표 8-1- 7〉 상·하수도 사용형태 .....	164
〈표 8-1- 8〉 부엌의 사용형태 .....	165
〈표 8-1- 9〉 화장실의 사용형태 .....	165
〈표 8-1-1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 .....	166
〈표 8-1-11〉 난방시설의 사용형태 .....	166
〈표 8-1-12〉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 시가총액 .....	167
〈표 8-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분포 .....	167
〈표 8-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	168
〈표 8-1-15〉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분포 .....	168
〈표 8-1-16〉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	169
〈표 8-1-17〉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분포 .....	169
〈표 8-1-18〉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액 .....	170
〈표 8-1-1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	170
〈표 8-2- 1〉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	171

〈표 8-2- 2〉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	171
〈표 8-2- 3〉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	171
〈표 8-2- 4〉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	172
〈표 8-3- 1〉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	172
〈표 8-3- 2〉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	173
〈표 8-3- 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2순위 .....	173
〈표 8-3- 4〉 총 원금 상환액의 기술통계량 .....	174
〈표 8-3- 5〉 갚고 남은 융자액이나 부채액의 기술통계량 .....	174
〈표 8-3- 6〉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 기술통계량 .....	174
〈표 8-3- 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 .....	175
〈표 8-3- 8〉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 .....	175
〈표 8-3- 9〉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	176
〈표 8-3-10〉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 .....	176
〈표 8-3-11〉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	177
〈표 8-3-12〉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	177
〈표 8-3-13〉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	178
〈표 8-3-1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	178
〈표 8-3-15〉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	179
〈표 8-3-16〉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	179
〈표 8-3-17〉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	179
〈표 8-3-18〉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	180
〈표 8-3-19〉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	180
〈표 8-3-20〉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	181
〈표 8-3-21〉 (돈이 없어서)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	181
〈표 9-1- 1〉 가구주의 건강상태 .....	185
〈표 9-1- 2〉 가구원의 건강상태 .....	186
〈표 9-1- 3〉 주요병명 .....	187



〈표 9-1-4〉 가구주의 만성질환 .....	188
〈표 9-1-5〉 가구원의 만성질환 .....	188
〈표 9-2-1〉 건강검진횟수 .....	189
〈표 9-2-2〉 외래진료횟수 .....	189
〈표 9-2-3〉 입원횟수 .....	190
〈표 9-2-4〉 입원일수 .....	190
〈표 9-2-5〉 병원에 입원한 이유 .....	191
〈표 9-2-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191
〈표 9-2-7〉 민간의료보험 가입률(가구 기준) .....	192
〈표 9-2-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구 기준) .....	192
〈표 9-2-9〉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가구 기준) .....	193
〈표 9-2-10〉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	193
〈표 10-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	197
〈표 10-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	198
〈표 10-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	198
〈표 10-1-4〉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	199
〈표 10-1-5〉 성역할에 대한 인식(저소득가구) .....	200
〈표 10-1-6〉 성역할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	200
〈표 10-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	201
〈표 10-2-2〉 가족갈등 대처방법 .....	202
〈표 10-2-3〉 가족갈등 대체방법(전체) .....	203
〈표 10-2-4〉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	203
〈표 10-2-5〉 흡연경험 시기 .....	204
〈표 10-2-6〉 총 흡연기간 .....	205
〈표 10-2-7〉 흡연경험자의 현재 흡연 여부 .....	205
〈표 10-2-8〉 하루 평균 흡연량 .....	206
〈표 10-2-9〉 하루이상 금연시도 여부 .....	206

〈표 10-2-10〉	향후 금연 계획 .....	207
〈표 10-2-11〉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 .....	208
〈표 10-2-12〉	담배연기 노출시간 .....	208
〈표 10-2-13〉	음주회수 .....	209
〈표 10-2-14〉	음주량 .....	210
〈표 10-2-15〉	과음회수 .....	210
〈표 10-2-16〉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	211
〈표 10-2-17〉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	212
〈표 10-2-18〉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	212
〈표 10-2-19〉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	213
〈표 10-2-20〉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	213
〈표 10-2-21〉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	214
〈표 10-2-22〉	주변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	214
〈표 10-2-23〉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	215
〈표 10-2-24〉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한 적이 있는지 여부 .....	215
〈표 10-2-25〉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	216
〈표 10-2-26〉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여부 .....	216
〈표 10-2-27〉	출산경험 .....	217
〈표 10-2-28〉	우울에 대한 인식 .....	217
〈표 10-2-29〉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	218
〈표 10-2-30〉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218
〈표 10-2-31〉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	219
〈표 10-2-32〉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	219
〈표 10-2-33〉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	220

〈표 10-2-34〉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220
〈표 10-2-3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221
〈표 10-2-36〉 가족생활만족도	222
〈표 10-2-37〉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222
〈표 10-2-38〉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223
〈표 10-2-39〉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	224
〈표 11-1- 1〉 인터넷 사용여부	227
〈표 11-1- 2〉 노동환경 유해여부	228
〈표 11-1- 3〉 건강에 대한 만족도	228
〈표 11-1- 4〉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229
〈표 11-1- 5〉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229
〈표 11-1- 6〉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230
〈표 11-1- 7〉 직업에 대한 만족도	230
〈표 11-1- 8〉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231
〈표 11-1- 9〉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231
〈표 11-1-10〉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232
〈표 11-2- 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232
〈표 11-2- 2〉 연간 기부액수	233
〈표 11-2- 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233
〈표 11-3- 1〉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234
〈표 11-3- 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234
〈표 11-3- 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235
〈표 11-3- 4〉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235
〈표 11-3- 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236
〈표 11-3- 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236
〈표 11-3- 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237
〈표 11-3- 8〉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237

〈표 11-3-9〉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	238
〈표 11-3-1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	238
〈표 11-3-1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239
〈표 11-3-1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239
〈표 11-3-13〉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	240
〈표 11-3-14〉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경험 .....	240
〈표 11-3-15〉	주관적 최저생계비 .....	241
〈표 12-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	246
〈표 12-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	246
〈표 12-1-3〉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	247
〈표 12-1-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	248
〈표 12-1-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	248
〈표 12-1-6〉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	249
〈표 12-1-7〉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	249
〈표 12-1-8〉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 .....	250
〈표 12-1-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	250
〈표 12-1-10〉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	251
〈표 12-1-11〉	공적연금 수급 실태 .....	252
〈표 12-1-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	252
〈표 12-1-1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	253
〈표 12-1-14〉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	254
〈표 12-1-15〉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254
〈표 12-1-16〉	보훈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	255

〈표 12-1-17〉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	255
〈표 12-1-18〉	특수직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	256
〈표 12-1-19〉	특수직역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	256
〈표 12-1-20〉	특수직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	257
〈표 12-2- 1〉	건강보험 가입 실태 .....	257
〈표 12-2- 2〉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	258
〈표 12-2- 3〉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	258
〈표 12-2- 4〉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	259
〈표 12-2- 5〉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	259
〈표 12-2- 6〉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	260
〈표 12-2- 7〉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보장의 만족도 .....	260
〈표 12-2- 8〉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261
〈표 12-3- 1〉	고용보험 가입 실태 .....	262
〈표 12-3- 2〉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 .....	262
〈표 12-3- 3〉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263
〈표 12-3- 4〉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	264
〈표 12-3- 5〉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	264
〈표 12-4- 1〉	산재보험 가입 실태 .....	265
〈표 12-4- 2〉	산재보험 급여 수급경험 .....	265
〈표 12-4- 3〉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	266
〈표 12-4- 4〉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수 .....	266
〈표 12-4- 5〉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	267
〈표 12-5- 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	267
〈표 12-5- 2〉	퇴직연금 가입 실태 .....	268
〈표 12-5- 3〉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	268
〈표 12-5- 4〉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 .....	269
〈표 12-5- 5〉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	269

〈표 12-5-6〉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270
〈표 12-5-7〉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270
〈표 12-5-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 수	270
〈표 12-5-9〉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액	271
〈표 13-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275
〈표 13-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유	276
〈표 13-1-3〉	수급자 선정 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276
〈표 13-1-4〉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1순위	277
〈표 13-1-5〉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2순위	278
〈표 13-2-1〉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278
〈표 13-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유	279
〈표 1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	279
〈표 13-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	280
〈표 13-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 항목	280
〈표 13-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의 주된 사유	281
〈표 13-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281
〈표 13-3-1〉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수급여부	282
〈표 13-3-2〉	의료급여 수급시 문제점	282
〈표 13-4-1〉	근로장려세제 제도 및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283
〈표 13-4-2〉	2009년 근로장려세제 급여 신청 여부	284
〈표 14-1-1〉	생계비 지원 이용경험	287
〈표 14-1-2〉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	288
〈표 14-1-3〉	생계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88
〈표 14-1-4〉	의료비 지원 이용경험	289
〈표 14-1-5〉	의료비 지원 이용만족도	289
〈표 14-1-6〉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90
〈표 14-1-7〉	물품 지원 이용경험	290

〈표 14-1- 8〉	물품 지원 이용만족도	291
〈표 14-1- 9〉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91
〈표 14-1-10〉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경험	292
〈표 14-1-11〉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292
〈표 14-1-12〉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293
〈표 14-1-13〉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경험	293
〈표 14-1-14〉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294
〈표 14-1-15〉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295
〈표 14-1-16〉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295
〈표 14-1-17〉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296
〈표 14-1-18〉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296
〈표 14-1-19〉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297
〈표 14-1-20〉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297
〈표 14-1-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298
〈표 14-1-22〉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298
〈표 14-1-23〉	상담 서비스 이용만족도	299
〈표 14-1-24〉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299
〈표 14-1-25〉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300
〈표 14-1-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300
〈표 14-1-2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301
〈표 14-1-28〉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만족도	302
〈표 14-1-29〉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302
〈표 14-2- 1〉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303
〈표 14-2-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이용경험	304
〈표 14-2- 3〉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경험	304
〈표 14-2- 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만족도	305
〈표 14-2- 5〉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경험	305

〈표 14-2- 6〉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만족도 .....	306
〈표 14-2- 7〉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이용경험 .....	306
〈표 14-2- 8〉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이용만족도 .....	307
〈표 14-2- 9〉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용경험 .....	307
〈표 14-2-10〉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용만족도 .....	308
〈표 14-2-11〉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이용경험 .....	308
〈표 14-2-12〉 기타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	309
〈표 14-3- 1〉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310
〈표 14-3- 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금액 .....	310
〈표 14-3- 3〉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311
〈표 14-3- 4〉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만족도 .....	311
〈표 14-3- 5〉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312
〈표 14-3- 6〉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312
〈표 14-3- 7〉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	313
〈표 14-4- 1〉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이용 경험 .....	314
〈표 14-4- 2〉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지원 이용만족도 .....	314
〈표 14-4- 3〉 경로연금 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	315
〈표 14-4- 4〉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315
〈표 14-4- 5〉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	316
〈표 14-4- 6〉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316
〈표 14-4- 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	317
〈표 14-4- 8〉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	317
〈표 14-4- 9〉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	318
〈표 14-4-10〉 노인물품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318
〈표 14-4-11〉 노인물품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	319
〈표 14-4-12〉 노인물품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319
〈표 14-4-13〉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	320



〈표 14-4-14〉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	320
〈표 14-4-15〉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	321
〈표 14-4-16〉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	321
〈표 14-4-17〉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	322
〈표 14-4-18〉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	322
〈표 14-4-19〉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	323
〈표 14-4-20〉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 .....	323
〈표 14-4-21〉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	324
〈표 14-4-22〉 노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	324
〈표 14-4-23〉 노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	325
〈표 14-4-24〉 노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기관 .....	325
〈표 14-4-25〉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 .....	326
〈표 14-4-26〉 노인 일자리사업 이용경험 .....	326
〈표 14-4-27〉 노인 일자리사업 이용만족도 .....	327
〈표 14-4-28〉 노인 일자리사업 제공기관 .....	327
〈표 14-4-29〉 노인 사회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	328
〈표 14-4-30〉 노인 사회교육서비스 이용만족도 .....	328
〈표 14-4-31〉 노인 사회교육서비스 제공기관 .....	328
〈표 14-5- 1〉 장애수당 이용 경험 .....	329
〈표 14-5- 2〉 장애수당 이용만족도 .....	330
〈표 14-5- 3〉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 경험 .....	330
〈표 14-5- 4〉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만족도 .....	331
〈표 14-5- 5〉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	331
〈표 14-5- 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 경험 .....	332
〈표 14-5- 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만족도 .....	332
〈표 14-5- 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제공기관 .....	333
〈표 14-5- 9〉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	333

〈표 14-5-10〉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	334
〈표 14-5-11〉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	334
〈표 14-5-12〉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	335
〈표 14-5-13〉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	335
〈표 14-5-14〉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 .....	336
〈표 14-5-15〉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	336
〈표 14-5-16〉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	337
〈표 14-5-17〉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	337
〈표 14-5-18〉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기관 .....	337
〈표 14-5-19〉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	338
〈표 14-5-20〉 장애인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	338
〈표 14-5-21〉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이용 경험 .....	339
〈표 14-5-22〉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이용 경험 .....	339
〈표 14-5-23〉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	340
〈표 14-5-24〉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	340
〈표 14-5-25〉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이용 경험 .....	341
〈표 14-5-26〉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이용 만족도 .....	341
〈표 14-5-27〉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 .....	342
〈표 14-5-28〉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이용 경험 .....	342
〈표 14-5-29〉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이용 만족도 .....	343
〈표 14-5-30〉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제공기관 .....	343
〈표 14-6- 1〉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이용경험 .....	344
〈표 14-6- 2〉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	344
〈표 14-6- 3〉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서비스 제공기관 .....	345
〈표 14-6- 4〉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경험 .....	345
〈표 14-6- 5〉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만족도 .....	346
〈표 14-6- 6〉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제공기관 .....	346

〈표 14-6- 7〉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 .....	347
〈표 14-6- 8〉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	347
〈표 14-6- 9〉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제공기관 .....	347
〈표 14-6-10〉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경험 .....	348
〈표 14-6-11〉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	348
〈표 14-6-12〉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	349
〈표 14-6-13〉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	349
〈표 14-6-14〉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만족도 .....	350
〈표 14-6-15〉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	350
〈표 14-6-16〉 학비지원 이용 경험 .....	351
〈표 14-6-17〉 학비지원 이용 만족도 .....	351
〈표 14-6-18〉 학비지원 제공기관 .....	351
〈표 14-6-19〉 예체능 교실 이용 경험 .....	352
〈표 14-6-20〉 예체능 교실 이용 만족도 .....	352
〈표 14-6-21〉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기관 .....	353
〈표 14-6-22〉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 경험 .....	353
〈표 14-6-23〉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 만족도 .....	354
〈표 14-6-24〉 문화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	354
〈표 14-6-25〉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	355
〈표 14-6-26〉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	355
〈표 14-6-27〉 출생당시 체중정도 .....	356
〈표 14-6-28〉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	356
〈표 14-6-2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	357
〈표 14-6-30〉 사교육·보육기관 평균이용 기관 수 .....	357
〈표 14-6-31〉 사교육·보육기관 평균이용 기관 .....	358
〈표 14-6-32〉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	359
〈표 14-6-33〉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	360

〈표 15-1-1〉	학년과 성별 .....	363
〈표 15-1-2〉	키와 몸무게 .....	364
〈표 15-1-3〉	건강상태 .....	365
〈표 15-2-1〉	학업성적 .....	367
〈표 15-2-2〉	학교환경 및 학교유대감 .....	368
〈표 15-2-3〉	전학경험 .....	369
〈표 15-3-1〉	정서 .....	370
〈표 15-3-2〉	음주 및 흡연 .....	371
〈표 15-3-3〉	비행행동 .....	374
〈표 15-3-4〉	성추행 피해경험 .....	375
〈표 15-3-5〉	학교 내 피해경험 .....	377
〈표 15-4-1〉	부모의 교육참여 및 지도감독 .....	378
〈표 15-4-2〉	부모의 학대와 방임 .....	379
〈표 15-5-1〉	친구들과의 접촉 .....	381
〈표 15-5-2〉	친구들의 아동에 대한 태도 .....	382
〈표 15-5-3〉	친구들의 학습태도 .....	382
〈표 15-5-4〉	친구들의 일탈행동 .....	383
〈표 15-5-5〉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	384
〈표 15-5-6〉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는 친구들 .....	384
〈표 15-6-1〉	방과 후 보호자 .....	385
〈표 15-6-2〉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지내는 시간 .....	386
〈표 15-6-3〉	평일 방과 후 하는 일 .....	387
〈표 15-6-4〉	주말시간에 주로 하는 일 .....	388
〈표 15-6-5〉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시간 .....	389
〈표 15-6-6〉	의논 상대 .....	390
〈표 15-6-7〉	굶주림 경험 여부 .....	390
〈표 15-6-8〉	참여활동 및 서비스 이용경험 .....	394

〈표 15-6- 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395  
 〈표 15-6-10〉 아르바이트 종류 .....395  
 〈표 15-6-11〉 아르바이트 기간 및 시간 .....396  
 〈표 15-7- 1〉 희망 직업 .....397  
 〈표 15-7- 2〉 진로성숙도 .....398

**그림목차**

[그림 1-1-1] KOWEPS 관리체계 .....21  
 [그림 2-2-1] 4차 웨이브까지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비교 .....25  
 [그림 2-2-2] KOWEPS의 가중치 부여체계 .....31  
 [그림 2-3-1] 자체품질진단 주요지표별 평가 결과 .....41  
 [그림 3-1-1] 조사의 단계 .....45  
 [그림 3-1-2] 조사표의 구성 .....46  
 [그림 3-2-1]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조사영역의 흐름도 .....50  
 [그림 3-2-2] 가구용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영역 논리도 .....56  
 [그림 3-2-3] 가구용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 57  
 [그림 3-2-4] 가구용조사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59  
 [그림 3-2-5]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 62  
 [그림 3-2-6] 가구원용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63



A large, irregular, grey ink-blot style graphic is centered at the top of the page. The word "Abstract" is written in a black, handwritten-style font across the middle of this graphic.

# Abstract

Social welfare policy should be able to cope flexibly with changes in people's economic situation, consumption, sense of values, poverty and actual conditions of distribution. However, cross-sectional surveys are limited in analyzing the socio-economic dynamics due to age effect and cohort effect.

Mindful of this,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and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embarked on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in 2006 and established 7,072 households originally sampled in the first wave year. The questionnaire for this survey consists of three parts which are for households, members aged 15 and over belonging to households, and special topics (supplements). Household samples also consist of two groups. They are 3,500 households with 60% of the median income and below and 3,500 households over 60% of the median income. The attrition rate of the fourth wave survey carried out in 2009 as compared to first wave in 2006 is 16.08%, which is the lowest in Korea.

This wave surveyed 6,207 previously surveyed and new households, which, in terms of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consists of 12,611 individuals aged 15 and over and 612 children aged between 12 and 15.

This is a descriptive report providing a wide variety of data and information about people's general and economic conditions, employment, social security, welfare needs and understanding of welfare, all of which are

the among the special topics of the fourth wave. Our results are very analogous to those from other cross-sectional surveys, such as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Census.' This attests to the reliability of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 요약

## 제1장 서론

### 1. 조사 배경 및 목적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 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이하 KOWEPS로 칭함)’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여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을 통합을 통한 예산 비효율성, 목적 비효과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대표성·유효성·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KOWEPS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수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둘째, 소득집단별·경제활동상태별·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2. 조사개요

- KOWEPS의 1차웨이브 표본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되며. 4차웨이브 조사완료된 가구는 신규가구를 포함하여 6,207가구이다.
- 실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타계식 직접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8년 1월~12월 간의 1년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 현지조사는 2008년 4월 18일~2008년 7월 5일까지 실시하였고, 추가조사는 7월 10일 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하였다.

## 3. KOWEPS의 장점 및 한계

### □ KOWEPS의 장점

- KOWEPS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4차웨이브 조사완료 된 가구는 신규 생성가구 포함하여 6,207가구로서 표본유지율 87.8%로서 가장 높은 패널이다.
-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로서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KOWEPS의 경우 조사대상 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대표성을 띤다.
- 신뢰성이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로서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 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KOWEPS는 소득 및 지출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거나 높은 특징을 가진다.
- 타 패널조사에 비해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매우 높은 패널로서 2차 웨이브 원가구 유지율 92.1%, 3차 웨이브 원가구 유지율 86.7%, 4차 웨이브 83.9%의 높은 원표본가구 표본유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로서 표본 추출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

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다.

#### □ KOWEPS의 한계점

- 패널조사의 단점중의 하나인 회상오차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즉, 가구의 소득 및 지출과 응답자의 과거 경제활동 이력등을 조사함으로써 회상오차의 문제점이 상존한다.
-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잠정치를 분석한 결과로서 향후 지속적인 예러체킹 등의 과정을 통해 자료의 순도를 높여 확정치를 자료에 반영하고 있다.

## 제2장 4차 웨이브 표본특성

- 4차 웨이브에서는 1차 웨이브 패널가구 중 약 83.9%인 5,935가구를 유지하였고, 4차 웨이브 신규 진입가구를 포함하면, 87.8%인 6,207가구이며, 가구원 조사표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면 1차 웨이브 14,463명 중 82.3%인 11,909명이 응답하였고, 4차 웨이브 진입가구원을 포함하면 12,661명으로 87.5%의 완료율을 보였다.
- 가구기준으로 4차 웨이브에 응답한 가구 중 일반가구는 3,635가구이고, 저소득층 가구는 2,572가구였으며, 가구원 기준으로 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수는 8,416명이고,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4,245명으로 파악되었다.
- 4차년도 조사의 부가조사인 “아동 조사”는 1차 웨이브 응답 아동과 4차 웨이브 신규 진입 아동 중 612명을 조사완료 하였고, 일반가구 아동은 434명, 저소득 가구 아동은 178명이었다.

## 제3장 4차 웨이브 조사내용

### 1. 조사대상 및 조사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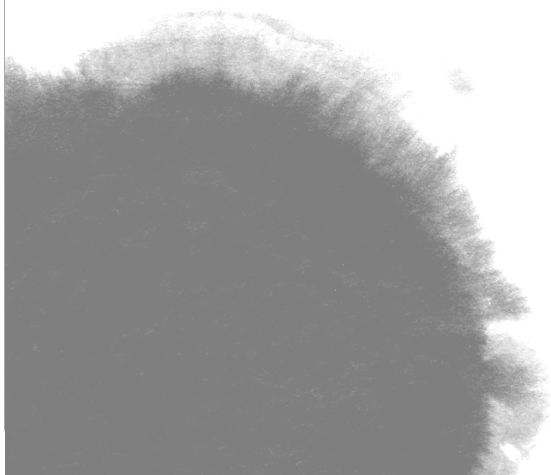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 KOWEPS 4차 웨이브에서는 3차 웨이브에서 조사 완료된 총 6,314가구를 패널조사 표본과 2차 웨이브 조사완료 가구 중 3차 웨이브 탈락 가구 중 일부를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4차 웨이브에서는 3차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크게 가구용조사표와 가구원용조사표, 부가조사표 3종의 조사표로 구성하였고, 4차 웨이브에서도 3차 웨이브와 같이 4차 신규가구용, 4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가 포함되었고, 부가조사표의 경우 1차 웨이브와 같이 아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2. 조사문항

-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주거,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의 응답이 부적절한 가구원 개인만이 응답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회보험,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생활습관·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교육, 개인사(4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부가 조사표(아동: 유형 5)는 학교생활, 생각과 행동, 부모님에 대한 인식도, 건강및 생활, 아르바이트 경험및 활동, 마지막으로 진로에 관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 01

## 서론





##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1. 조사배경

국가적 대표성을 띤 통계의 생산과 분석은 정책형성과 학문적 발전의 단초를 제공하여 왔다. 20세기 전후 영국 복지국가의 형성은 Booth와 Rowntree 등의 노동자의 삶과 빈곤조사를 통한 ‘빈곤의 재발견’에 크게 힘입었다. 이후에도 조사연구는 학술연구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패널조사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삶의 역동성과 욕구의 변화 등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정책의 대응성과 반응성을 높여주는데 크게 기여한다. 사회복지정책을 비롯한 국가정책은 국민의 경제적 상황, 소비문화, 가치관, 빈곤실태 등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여야 하나, 횡단면 조사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즉, 횡단면 자료는 aging effect와 cohort effect의 분리가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데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닌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등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가 존재하며, 이러한 패널데이터의 분석결과는 정책형성 및 평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정책관련 패널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3년부터 저소득 근로능력자 중심의 자활패널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수탁과제 형식으로 200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패널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양

극화 심화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문제, 빈곤역동성 분석에 초점을 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이 2005년부터 구축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사회복지관련 3개 패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었다. 첫째, 유사한 조사대상에 분석목적만을 달리한 유사 패널의 난립으로 ‘예산 비효율성’사업이라는 점이다. 둘째, 각각의 패널들은 예산제약으로 유효 표본수가 적어 대표성 있는 패널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목적 비효과성’ 사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대표성, 유효성,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복지 정책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복지패널 구축에 대한 논의들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간에 진행되었다. 2005년부터 진행된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유사한 주제의 패널을 여러 개 운용함으로써 국가적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가예산절감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인식을 공유하였다. 둘째,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원의 조사 및 연구 인프라와 서울대학교의 학술적 인프라가 결합됨으로써 좀 더 양질의 데이터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세 개의 패널을 통합함으로써 유효표본 수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분리된 조사결과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다차원적 분석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는 2006년도부터 기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서울대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이하 KOWEPS)’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예산 요구 시 자활패널과 복지패널 구축을 위한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하지 않고, 동 예산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부대사업 예산에 반영해 주기로 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는 기존의 복지패널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통합된 KOWEPS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 2. 조사목적

이러한 배경 하에 출발한 KOWEPS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 집단별, 경제활동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조사의 생명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통계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통계가 잘 정비되어 있고, 후진국일수록 통계가 빈약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족되어야 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적정 표본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복지관련 패널이 몇 개 있었지만, 표본수 부족, 원가구 표본 유지율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통계로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KOWEPS에서는 국내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표본 규모가 가장 큰 표본(7,072가구 및 동 가구에 포함된 15세 이상가구원)을 1차 웨이브에 구축하였고<sup>1)</sup>, 2차, 3차 웨이브에서는 원가구 표본 유지율을 높이려고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sup>2)</sup>. 이 결과 2차 웨이브 원가구 표본 유지율 92.1%, 3차 웨이브 가구 표본 유지율 86.7%를 달성하였고, 4차 웨이브에서는 83.9%로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가장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적정표본을 확보하고 표본 유지율이 높다고 해서 훌륭한 패널의 충분조건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의 질이 담보되어야 충분조건이 달성된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조사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철저한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시 발생하는 의문사항은 조사표를 개발한 연구진에게 바로 문의하여 처리하였다.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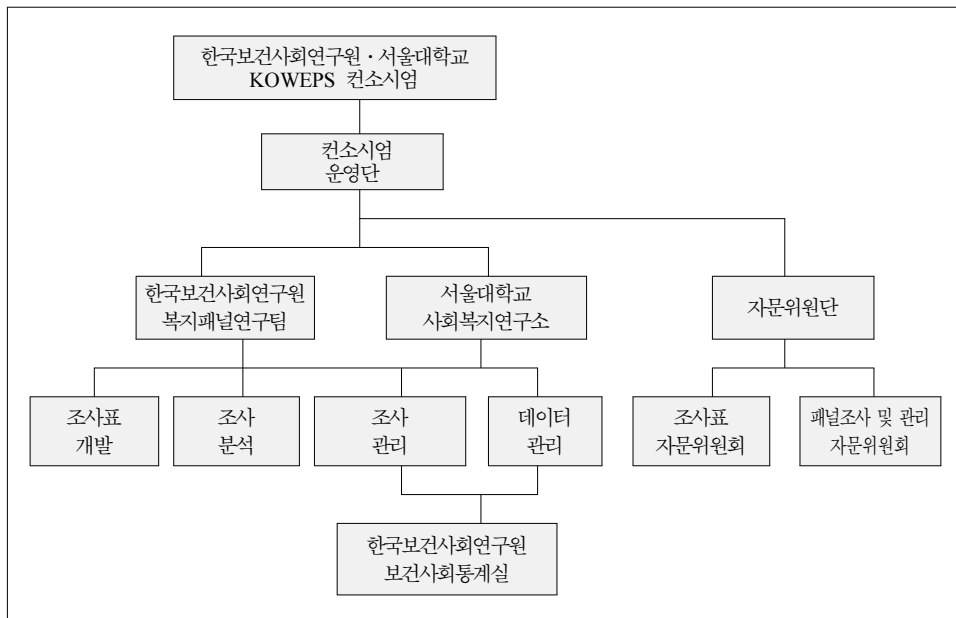
1) 표본 추출시 전국 30,000가구에 대한 1차조사 결과(소득)를 바탕으로 층화 2중추출(stratified double sampling)함으로써 전국 지역별 가구분포와 거의 유사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2장 표본추출 개요를 참조하기 바란다.

2)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표본관리를 위하여 복지정책 전반을 망라한 『2007년 복지정책 길라잡이』를 작성하여 표본가구에 배부하고, 매년 연하장, 설선물, 추석선물, 이사 선물 등을 제공하였다.

사원 운영은 4인 1조(지도원 1인, 조사원 3인)체계로서 조사원이 조사한 결과를 조사지도원이 현장에서 에디팅하여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결과 주요 지표인 소득 및 지출수준은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KOWEPS에서는 자료의 공신력·정확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패널과는 다른 접근을 하였다. 기존 우리나라의 패널이 한 기관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반하여 KOWEPS의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조사 능력과 서울대의 연구능력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림 1-1-1] KOWEPS 관리체계



둘째,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다방면의 학자들이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표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복지는 순수 복지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확대되고 다차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구진은 개별가구의 능력, 다양한 복지지표, 개별가구의 능력과 복지시스템

과의 관계 등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를 한 후 조사표 개발을 하였다. 아울러 설문지 개발시 패널조사 연구에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문항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조사결과는 2009년 9월에 개최된 제 2차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주제의 논문으로 발표되었다.

셋째, 국제비교 가능한 패널을 구축한다. 최근의 흐름은 국가간 제도의 수렴화 현상이 높아지고 있고, 국가간 비교 연구는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국제비교 가능한 패널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연구진은 외국의 복지관련 패널 조사문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후 이들 문항들을 조사표에 반영함으로써 국제비교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세계 유수의 패널과 KOWEPS의 결과를 이용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제2절 조사개요

### 1. 표본추출

KOWEPS는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종단면 조사이다. 횡단면 조사인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종단면 조사인 노동 패널의 경우 농어가 또는 읍면지역이 표본에 포함되지 않지만, KOWEPS의 경우 농어가와 읍면지역을 표본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대표성이 매우 높다. 구체적인 표본 추출은 제3장에서 소개되므로 여기서는 개요만 기술하고자 한다.

표본규모는 7,072가구<sup>3)</sup>이며, 조사대상은 표본가구, 표본가구에 속하는 15세 이상 가구원,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된다. 패널 원 표본 7,072가구를 선정하기 위한 자료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생활실태조사는 2005년 인구센서스 자료 90% 조사구에서 추출하였다. 표본 배분은 복지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표집하였다. 즉,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 이하의 저소득층을 3,500가구 추출하고, 중위소득 60%(OECD 상대빈곤선)이상의 일반가구를 3,500가구 추출하였다<sup>4)</sup>.

3) 목표 표본수는 7,000가구였으나, 1차조사결과 7,072가구가 조사완료 되었다.

## 2. 조사표의 구성

KOWEPS의 조사표의 구성은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된다. 가구조사표의 경우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이 중심이고, 개인조사표의 경우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가조사의 경우 2006년에는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sup>4)</sup>, 2007년에는 복지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에는 아동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1-1〉 2009년 KOPWES 조사표의 구성과 조사대상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li> <li>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li> <li>기준 응답시점: 전년도 12월 3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li> <li>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li> <li>기준 응답시점: 전년도 12월 3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사대상: 아동(12~15세)</li> <li>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li> <li>기준 응답시점: 전년도 12월 31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9년: 아동부가조사</li> </ul>

## 3. 조사원 및 조사방법

KOWEPS의 실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원 54명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동 조사원들은 지도원 1인, 조사원 3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운영하였다. 지도원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 협조 부탁과 함께,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초보장 수급액 등의 행정자료를 취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원은 직접 조사대상인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비율이 50:50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조사결과 저소득 가구비율이 약 45%, 일반가구 비율이 약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아동, 노인, 장애인에 대한 기본 조사항목은 가구조사표에 있다.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매우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조사된 내용은 1차적으로 현장에서 지도원이 에디팅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조사를 지시하고, 완성된 조사표는 연구원으로 보내져 2차 에디팅을 실시하였다.

#### 4. 조사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KOWEPS의 4차 웨이브 조사는 2009년에 실시하였으므로 조사의 기준시점은 2008년이다. 조사항목 중 유량(flow)의 경우 2008년 1월~12월간의 1년이고, 저장(stock)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본조사의 경우 2009년 4월 18일~2009년 7월 5일까지 실시되었고, 이사 가구 등의 추적조사는 2009년 7월 10일~2009년 7월 19일까지 실시되었다.

### 제3절 한국복지패널의 장점 및 한계

KOWEPS는 몇 가지 장점과 함께 일정정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의료패널조사<sup>6)</sup>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의 가구단위 패널 조사의 경우 표본규모는 5,000가구 내외이거나 미만이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표본 규모는 7,072가구이고, 2차웨이브 조사완료된 가구는 6,580가구이고, 3차웨이브 완료 가구수는 6,314가구이고, 4차웨이브 조사완료된 가구는 6,207가구이다(신규 생성가구 포함).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적어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둘째,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라는 점이다. 통계청 가계조사의 경우 농어가가 제외되어 있고, 노동패널의 경우 표본이 도시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읍면동에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패널조사로서 2008년 현재 1차웨이브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한 자료가 없다. 하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조사대상가구에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함으로써 패널조사로는 유일하게 전국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표 1-1-2〉 KOWEPS 표본추출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국민생활실태 조사	한국복지패널조사
조 사 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 구 수	14백만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 표 성	-	전 국	전 국

셋째,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패널이라는 점이다. 기존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패널 구축초기 소득수준이 통계청의 80%내외이나, KOWEPS는 소득 및 지출 수준이 통계청의 가계조사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은 통계청 조사결과보다 약간 높고, 중산층은 거의 유사하고, 고소득층은 통계청보다 약간 높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조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이다.

넷째, 2차·3차 웨이브 원가구 표본유지율이 다른 유수의 패널보다 높다. KOWEPS의 경우 2차웨이브 원가구유지율 92.1%(7,072 원가구 중 6,511가구 완료)이고, 3차웨이브 원가구 표본유지율 또한 86.7%(7,072 원가구 중 6,128가구 완료)로 나타나 국내외 주요 패널의 원가구 표본 유지율보다 높다.

2009년 4차웨이브의 원가구 표본유지율은 83.9%(7,072 원가구 중 5,935가구 완료)로서 이 또한 국내외 유수 패널의 유지율 보다 높다.

〈표 1-1-3〉 KOWEPS의 각 웨이브별 원표본 유지율 비교

(단위: %)

웨이브	KOWEPS	노동패널	대우패널	미국 PSID	영국 BHPS	독일 GSOEP
2차웨이브	92.1	87.6	79.0	89.0	87.7	89.9
3차웨이브	86.7	80.9	66.0	86.3	81.5	86.0
4차웨이브	83.9	77.3	59.0	83.7	79.9	84.9

다섯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이다. 표본 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표본의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괄하고 있다.

여섯째, 학제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이다. KOWEPS는 다양한 영역의 설문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사회복지학, 경제학, 사회학, 가정학, 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에 훌륭한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KOWEPS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시점이 종합소득세가 신고 되는 시점(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내용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연초에 조사를 실시하면, 회상의 문제는 줄일 수 있으나, 자영업자 등의 정확한 소득과약이 어렵다. 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이 정리되기 때문이다.

둘째, 시간의 부족이다. 매년 패널 조사를 실시하고 동 연도에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연구진은 시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에러 체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직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할 문항들이 있음을 밝힌다. 양질의 조사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에러를 바로잡아야 한다. 미국 PSID의 경우 에러 체크(error checking) 기간이 3년이라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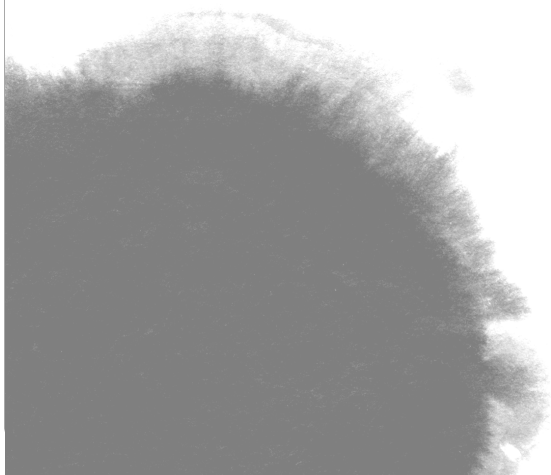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사실 패널조사는 자료 입력 후 데이터 클리닝 과정에서 뿐 아니라, 조사과정과 분석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현지조사 단계에서의 에디팅, 조사 후 에디팅, 입력 후 에러체크, 기초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심층분석 과정에서의 에러체크, 다음 연도 조사 과정에서 에러체크가 세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조사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기초보고서에 제시된 수치들은 이후의 지속적인 에러 체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02

## 표본 특성 및 가중치 조정





## 제2장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 제1절 표본 규모

#### 1. 조사개요

KOWEPS는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또는 working poor) 및 차상위계층의 가구형태, 소득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들의 규모와 상태변화를 동적으로 파악하여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또한 소득집단별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별 등 각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정책형성과 피드백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규모의 조사이다.

〈표 2-1-1〉 KOWEPS 표본의 개요

	인구주택 총조사(90%)	2006 국민생활실태조사	KOWEPS
조사구	23만여개 조사구	517개 조사구	446개 조사구
가구수	14백만여 가구	30,000 가구	7,000가구
추출방법	-	2단계층화집락	층화집락계통
대표성	-	전국	전국

이와 같이 저소득가구의 복지수요 및 욕구를 적절히 조사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구를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를 각각 50%씩 추출하여 패널 표본가구를 구축하였다.

패널 구축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소득 집단에 따라 패널을 구축하기 위

해 표본대상 가구에 대한 소득 자료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로부터 확률비례추출 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최종 조사완료가구인 24,711가구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 층 가구를 구분하여 두 층으로 부터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고, 최종 패널가구로 구축된 표본가구는 7,072가구였다. 표본추출과정에서 저소득가구는 향후 패널 소실과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과대표집하였다.

## 2. 표본규모

### 가. 1단계 표본추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 필요한 표본 가구 약 30,000가구를 조사하기 위해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90% 조사구인 23만여 개 조사구중 517개 조사구를 지역별 조사구 규모에 따라 층화확률비례 추출하였다.

전체 517개 표본조사구 중에서 수해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의 조사구를 제외하고, 487개 조사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대상지역은 각 시도의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포괄하며, 제주도를 포함한다. 이와 같이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된 24,711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7,000가구를 2단계 표본을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7,072가구를 패널로 구축하였다.

### 나. 2단계 표본추출

1단계 표집 자료인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자료를 기초로 패널가구의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기위해 총 7,000가구를 중위소득 60%이하인 저소득 가구 3,500가구와 중위소득 60%이상인 일반 가구 3,500가구를 각각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때 저소득가구와 일반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가구소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대안을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의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하였다.

〈표 2-1-2〉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의 분류기준

(단위: 가구, %)

중위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공공부조 전 경상소득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가구수	백분율
< 40%	2,481	10.00	2,489	10.09	3,477	13.96
< 50%	4,016	16.12	3,880	15.62	4,757	19.04
< 60%	5,227	22.56	5,473	22.25	6,128	24.76

소득 규모별로 구분된 2개의 층에 대해 지역별, 조사구별로 표본가구를 확률비례 계통추출에 의해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패널구축을 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가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추출률을 상향 조정하여 일반 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500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하였다.

KOWEPS의 1차 웨이브에서 구축된 패널 가구를 소득 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2-1-3>과 같다.

〈표 2-1-3〉 KOWEPS 1차 웨이브의 지역별 조사구와 가구분포현황

(단위: 가구)

지 역	조사구수		일반가구		저소득 가구		합 계	
	표본 조사구수	완료 조사구	표본배분가 구수	완료 가구수	표본배분 가구수	완료 가구수	표본배분가 구수	완료 가구수
서 울	93	93	811	886	506	449	1,317	1,335
부 산	33	33	254	277	272	251	526	528
대 구	25	25	187	204	227	218	414	422
인 천	28	28	228	247	193	190	421	437
광 주	15	15	114	123	130	121	244	244
대 전	14	14	118	132	89	76	207	208
울 산	14	14	120	124	82	79	202	203
경 기	76	76	644	706	471	426	1,115	1,130
강 원	14	14	102	118	131	118	233	236
충 북	14	14	108	113	113	107	221	221
충 남	20	20	153	161	168	160	321	321
전 북	20	20	138	140	209	207	347	347
전 남	19	19	104	109	273	268	377	377
경 북	26	26	152	164	339	329	491	494
경 남	30	30	229	240	254	248	483	488
제 주	5	5	38	45	43	36	81	81
합 계	446	446	3,500	3,789	3,500	3,283	7,000	7,072

패널로 구축된 표본가구를 소득기준별로 살펴보면 당초 각 층별로 3,500가구씩을 배분하였으나, 조사거절, 패널 참여 거부 등의 사유로 저소득층에서는 표본설계 당시의 3,500가구를 약간 밑도는 규모인 3,283 가구가 패널로 구축되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100%이상의 완료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약 94%의 완료율을 보여, 저소득층 가구의 조사 거부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가구수를 기준으로 지역별 목표오차는 약 2.7~11.1%로 지역별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면 조사와는 다르게 종단면 조사인 패널조사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패널가구의 탈락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패널자료의 대표성을 유지해 주는 것이다. 여타의 국내 패널조사의 가장 당면한 문제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패널대상 가구의 탈락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1차 웨이브에서 패널가구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당시 거부율과 비협조성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구별 표본가구들을 계통 추출을 적용하여 조사가구를 선정하도록 하였으며, 만일 조사대상 표본가구가 조사를 거절할 경우 순서상 다음 가구를 조사대상가구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 제2절 4차 웨이브 표본특성 및 가중치 조정

### 1. 4차 웨이브 표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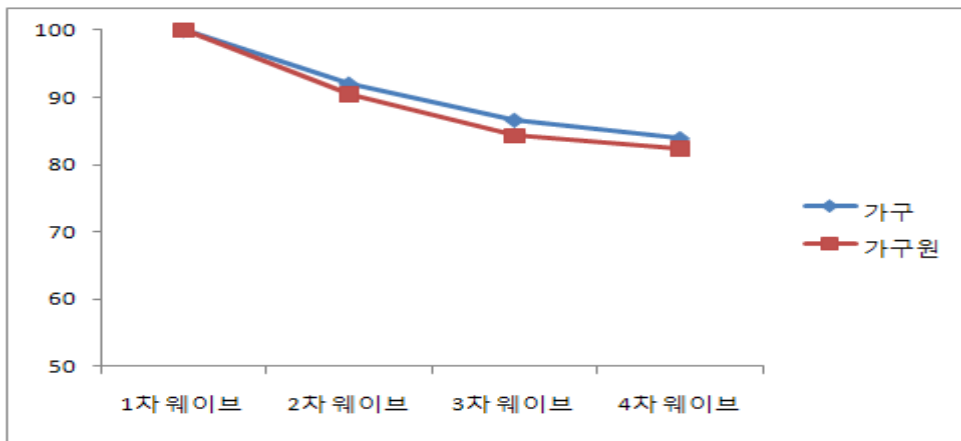
KOWEPS 4차 웨이브에서는 먼저 3차 웨이브(2008년)에 조사되었던 원가구와 원가구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3차 웨이브에서 응답하지 않았던 2차 웨이브의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3차 웨이브 원가구와 4차 웨이브에 새롭게 진입한 원가구원을 제외한 원표본가구원의 유지율을 파악하면 다음의 <표 2-2-1>과 같다. 4차 웨이브에서 1차 웨이브 표본인 원표본 유지율은 가구의 경우 83.92%이며, 가구원은 82.3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가구의 경우 약 2.73%p 떨어졌으며, 가구원은 1.95%p 떨어져 원표본 패널이 3차년도 이후 안정화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2-2-1 참조).

<표 2-2-1>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패널의 유지율

(단위: 가구, 명, %)

조사차수	가 구		가 구원	
	표본수	유지율	표본수	유지율
1차 웨이브	7,072	100.00	14,463	100.00
2차 웨이브	6,511	92.06	13,083	90.46
3차 웨이브	6,128	86.65	12,191	84.29
4차 웨이브	5,935	83.92	11,909	82.34

[그림 2-2-1] 4차 웨이브까지 원표본 가구 및 가구원 유지율 비교



4차 웨이브에서 조사거부가 아닌 사망, 이민 등의 자연적인 패널 소실이 발생한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2>와 같다. 1차 생성 가구 중 2차 웨이브에서 사망으로 탈락한 가구는 10가구, 이민으로 탈락한 가구가 5가구 발생하였고, 4차 웨이브에서 1차 생성가구 중 사망으로 탈락한 가구가 19가구 발생하였고, 이민으로 탈락한 가구는 1가구 발생하였다. 1차 웨이브부터 4차웨이브까지 1차년도 생성가구 중 사망, 합가, 이민 등으로 탈락한 가구는 총 66가구이며, 2차년도 생성가구 중 탈락한 가구는 총 8가구, 3차년도 생성 가구 중 4차 웨이브에서 탈락한 가구는 4가구가 발생하여 4차 웨이브까지 사망, 합가, 이민 등으로 탈락한 가구는 78가구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2〉 4차 웨이브 자연소실 가구특성

(단위: 가구)

구분	가구 생성차수								
	1차(2006)				2차(2007)			3차(2008)	
	2차 웨이브	3차 웨이브	4차 웨이브	계	3차 웨이브	4차 웨이브	계	4차 웨이브	계
사망	10	23	19	52	0	0	0	0	0
합가	0	0	0	0	2	5	7	2	2
이민	5	8	1	14	0	0	0	1	1
대상제외*	0	0	0	0	0	1	1	1	1
합계	15	31	20	66	2	6	8	4	4

주: \* 원가구원 분가로 신규가구원만 남음

다음으로 자연소실 가구 이외에 조사미완 가구의 특성을 파악해보면 다음의 <표 2-2-3>과 같다. 전체적으로 3차 웨이브 조사완료 가구 중 총 218가구가 4차 웨이브에서 응답거부로 탈락되었고, 단독가구 중에서 가구주가 요양 또는 병원시설에 입소하여 응답이 불가능한 가구가 17가구 발생하였다. 또한 장시출타가 5가구, 주소불명으로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10가구 발생하였고, 기타사유로 탈락한 가구가 6가구 발생하였다.

〈표 2-2-3〉 4차 웨이브 조사 미완 가구 특성

(단위: 가구)

조사거절 및 조사 불능 사유	가구 생성 차수			
	1차 생성	2차 생성	3차 생성	합계
응답거부	172	1	7	180
요양원 및 병원시설 입소	17	0	0	17
장기출타	5	0	0	5
주소불명	9	0	1	10
기타사유	6	0	0	6
합 계	209	1	8	218

4차 웨이브에 새롭게 진입한 표본가구는 원 표본가구에서 분가하여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경우로서 105가구이며, 가구원은 285명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3차 웨이



브에서 탈락했던 19가구를 추적 조사하여 추가로 원가구 및 원가구원에 대한 패널 관리를 함으로서 유지율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결과적으로 원 표본 가구와 원표본 가구원을 합한 4차 웨이브 표본가구 및 가구원수는 다음의 <표 2-2-4>와 같다. 즉, 1차 웨이브 대비 4차 웨이브 조사완료 가구 및 가구원 비율을 살펴보면 가구는 87.77%의 완료 비율을 나타내며, 가구원은 87.54%로서 1차 웨이브 대비 87%이상의 완료율을 보였다.

<표 2-2-4> 1차 웨이브 대비 4차 웨이브 조사완료 패널가구 및 가구원 수

(단위: 가구, 명, %)

구 분	가 구		가 구 원	
	표본 수	비 율	표본 수	비 율
원표본	6,102	86.29	11,976	82.80
신 규	105	1.48	285	4.47
계	6,207	87.77	12,661	87.54

한편 4차 웨이브에서 16개 지역별 조사완료 가구 수와 가구원수의 분포를 파악해 보면 서울지역은 1,044가구를 조사 완료하였고, 다음으로 경기지역은 974가구를 완료하였다. 1차 웨이브 대비 4차 웨이브의 패널가구 탈락률(attrition rate)을 살펴보면, <표 2-2-5>로부터 전체적으로 가구의 경우 12.23%의 탈락률을 보이며, 가구원의 경우 12.46%로 가구에 비해 가구원의 탈락률이 약간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이 가장 높아 21.80%의 탈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천지역이 16.25%로 나타났다. 특별히 광주지역의 탈락률은 -2.87%로 나타나 실제 원 표본 가구 중 분가 등의 이유로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이주로 인해 탈락률이 음(-)수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광역단위 지역으로 구분하여 패널 가구의 탈락률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대도시지역에 속하는 광역시 지역의 탈락률이 도지역의 탈락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5〉 4차 웨이브의 가구 및 가구원 조사대상 표본의 지역별 탈락률 비교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 구			가구원		
	1차 웨이브	4차 웨이브	탈락률	1차 웨이브	4차 웨이브	탈락률
전 국	7,072	6,207	12.23	14,463	12,661	12.46
서울	1,335	1,044	21.80	2,847	2,233	21.57
부산	528	461	12.69	1,090	931	14.59
대구	422	362	14.22	873	765	12.37
인천	437	366	16.25	914	759	16.96
광주	244	251	-2.87	519	527	-1.54
대전	208	189	9.13	435	393	9.66
울산	203	174	14.29	424	376	11.32
경기	1,130	974	13.81	2,324	2,032	12.56
강원	236	213	9.75	465	416	10.54
충북	221	204	7.69	457	404	11.60
충남	321	303	5.61	662	642	3.02
전북	347	319	8.07	655	592	9.62
전남	377	360	4.51	709	667	5.92
경북	494	454	8.10	942	870	7.64
경남	488	456	6.56	975	891	8.62
제주	81	77	4.94	172	163	5.23

<표 2-2-6>은 지역별로 표본가구와 표본가구원에 대해 1차 웨이브와 같이 일반 가구와 저소득가구로 구분하여 이들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1차 웨이브의 경우 일반과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54:46으로 나타나 반면, 4차 웨이브에서는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은 59:41의 비율로 나타나, 3차 웨이브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가구원의 경우에는 1차 웨이브의 경우 60:40에서 4차 웨이브에는 66:34의 비율로 나타나, 가구의 경우와 같이 3차 웨이브와 유사하게 일반가구원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가구와 일반가구의 기준은 조사 년도마다 가구의 소득 기준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저소득과 일반가구의 탈락률 내지는 유지율을 웨이브별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1차 웨이브에서 저소득, 일반 가구가 4차 웨이브에서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2-6〉 4차 웨이브의 가구 및 가구원의 소득구분에 따른 지역별 분포

(단위: 가구, 명, %)

지역	가구기준				가구원기준			
	1차년웨이브		4차 웨이브		1차 웨이브		4차 웨이브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일반	저소득
전국 (비율)	3,789 (53.58)	3,283 (46.42)	3,635 (58.56)	2,572 (41.43)	8,640 (59.73)	5,823 (40.26)	8,416 (66.47)	4,245 (33.52)
서울	886	449	736	308	2,024	823	1,712	521
부산	277	251	255	206	651	439	583	348
대구	204	218	192	170	478	395	464	301
인천	247	190	242	124	558	356	556	203
광주	123	121	152	99	305	214	362	165
대전	132	76	137	52	298	137	308	85
울산	124	79	122	52	290	134	299	77
경기	706	426	658	316	1,556	768	1,491	541
강원	118	118	116	97	262	203	262	154
충북	113	107	122	82	259	198	269	135
충남	161	160	166	137	375	287	411	231
전북	140	207	127	192	309	346	287	305
전남	109	268	134	226	255	454	309	358
경북	164	329	197	257	363	579	441	429
경남	240	248	229	227	557	418	546	345
제주	45	36	50	27	100	72	116	47

마지막으로 KOWEPS의 4차 웨이브 부가조사는 “아동조사”로서 3차 웨이브 패널 표본가구 내 아동과 1차 웨이브에서 아동조사 대상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만 12~15세 이하의 중학교 재학생으로 조사 결과는 다음의 <표 2-2-7>과 같다. 총 612명의 아동이 조사되었고, 이중 일반가구 아동이 434명, 저소득 가구 아동이 178명이 조사되어 1차 웨이브 대비 일반가구 아동은 약 86%의 응답률을 보였고, 저소득가구 아동은 약 70%의 응답률을 보여 전체적으로는 80.6%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2-2-7〉 지역별 아동가구원의 소득구분에 따른 분포

(단위: 가구,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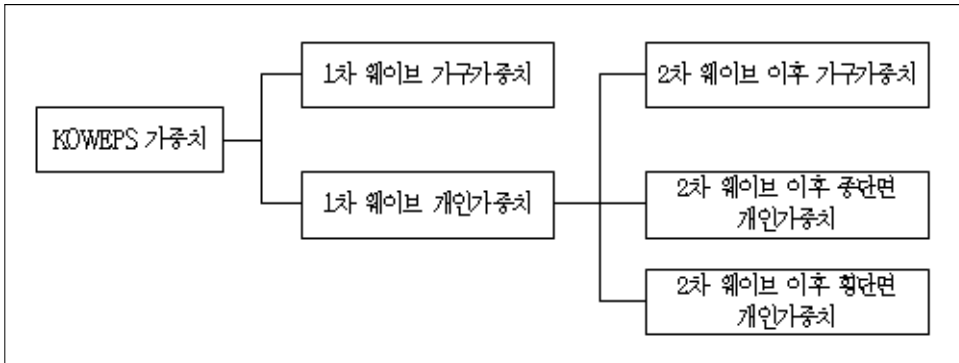
지 역	1차 웨이브			4차 웨이브		
	계	일반	저소득	계	일반	저소득
전 국	759	505	254	612	434	178
서울	127	92	35	105	73	32
부산	53	33	20	47	31	16
대구	37	25	12	34	23	11
인천	58	39	19	41	34	7
광주	32	19	13	28	15	13
대전	21	16	5	20	15	5
울산	26	22	4	21	18	3
경기	151	105	46	108	88	20
강원	23	16	7	14	9	5
충북	37	22	15	32	25	7
충남	33	23	10	35	26	9
전북	25	14	11	21	6	15
전남	49	21	28	36	21	15
경북	45	25	20	36	22	14
경남	37	28	9	29	23	6
제주	5	5	0	5	5	0

## 2. 가중치 조정 과정

KOWEPS의 4차 웨이브 가중치 산정은 우선 3차 웨이브에 부여된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기준으로 가구가중치와 개인가중치를 산정하였다. KOWEPS 가중치 부여 체계는 다음의 [그림 2-3-2]와 같다. 가구 가중치의 경우 조사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원의 변동으로 인하여 가구의 개념이 1차 웨이브 정의와 상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웨이브 이후의 가중치는 모두 개인가중치를 중심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정하도록 한다. 또한 가구는 개인과 달리 종단면과 횡단면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즉,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구의 생성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가구 가중치의 종단면과 횡단면 가중치의 구분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가중치는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중치를 부여하며, 개인가중치만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 2-2-2] KOWEPS의 가중치 부여체계



이러한 가중치 부여체계를 따르게 되면, 먼저 가구의 변동사항은 무의미하게 되며, 단지 원가구원이 분가하여 신규가구를 생성하거나, 1차 웨이브에 원표본가구가 아니었으나, 2차 웨이브 이후 합가하여 원 표본가구에 진입한 가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1차 웨이브에 원 표본 가구였으나, 이민 등의 사유로 2차 웨이브 이후 패널에서 탈락한 경우에 대해서도 가중치 조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가구 가중치의 조정은 표본가구의 가구원 변동에 따라 적절한 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 가. 개인가중치 산출 과정

2차 웨이브 이후의 패널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정 절차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의 개인가중치를 기초로 산정하였다. 특히 2차 웨이브 이후 발생하는 패널가구의 가구원 변동사항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변동 상황에 따라 2차 웨이브 개인 가중치 산정 절차와 유사한 방법으로 개인가중치를 조정하였다.

4차 웨이브 조사의 경우 3차 웨이브에서와 마찬가지로 3차 웨이브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4차 웨이브에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19가구를 패널에 재 진입시켰기 때문에 이들 가구 및 개인에 대한 가중치는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 점이다.

먼저 개인가중치 산정 과정은 2차 웨이브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여 1차 웨이브 원 패널표본 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4차 웨이브에 원 패널가구에 진

입한 신규 가구원은 4차 웨이브에도 동일하게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즉, 1차 웨이브 패널가구원으로서 군 입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 받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 패널가구에 진입한 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또한 4차 웨이브에 원 패널 가구로부터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 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가구의 신규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 받는다.

앞에서 언급한 3차 웨이브에서 탈락했던 가구원이 4차 웨이브에 재진입인 경우에는 4차 웨이브의 지역별 평균 가중치를 부여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해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1단계로 응답확률을 로지스틱회귀를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2차년도 가중치를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통계청의 “2008년 추계인구수”를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3차 웨이브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1단계에서 4차 웨이브 응답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4차년도 종단면 가중치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가중치를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08년 추계인구수에 따라 사후조정 하였다.

<표 2-2-8>로부터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가중치 표준오차가 가장 적고, 제주지역의 표준오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별로 개인의 대표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며, 지역별로 가중치의 사분위 범위 (Inter-quartile Range:IQR=제3사분위수 - 제1사분위수)를 비교해보면 전남지역이 1489.43으로 가장 적으며, 가장 큰 지역은 경남지역으로 4504.4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지역별 대표성을 평가해보면, 서울지역은 1인당 평균 3,528명을 대표하며, 경기지역은 1인당 평균 4,183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9>에서는 개인 횡단면 가중치의 지역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개인 종단면 가중치와 마찬가지로 개인당 평균 2,990.27명의 대표성을 가지며, 평균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 지역으로 개인 1인 평균 4,182.93명을 대표하며, 가장 작은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개인횡단면 가중치의 사분위 범위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으로 4481.84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1446.67인 전남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2-2-8〉 지역별 개인 종단면 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서울	2,843	3,528.57	35.68	3,280.37	2,112.34	4,629.49
부산	1,170	2,989.44	62.72	2,473.27	1,487.79	3,896.52
대구	952	2,580.91	55.62	2,249.06	1,207.22	3,641.40
인천	1,029	2,555.15	60.37	2,252.51	1,276.63	3,454.95
광주	689	2,100.28	50.09	1,794.55	1,114.41	2,970.22
대전	533	2,807.62	71.99	2,619.32	1,625.46	3,639.02
울산	488	2,222.98	61.73	1,903.14	1,216.45	3,052.52
경기	2,689	4,182.93	44.09	3,929.32	2,515.43	5,383.79
강원	535	2,731.44	95.32	1,838.08	1,132.82	3,666.29
충북	542	2,734.55	81.64	2,457.17	1,177.38	3,738.98
충남	816	2,382.07	74.07	1,524.08	800.97	3,493.20
전북	725	2,408.96	77.63	1,753.08	762.01	3,506.84
전남	846	2,108.64	43.69	1,723.14	1,212.53	2,701.96
경북	1,072	2,444.43	86.66	1,058.97	557.89	3,476.18
경남	1,120	2,795.85	80.03	1,185.85	477.18	4,981.64
제주	206	2,647.90	117.19	2,127.45	1,293.11	3,606.30

〈표 2-2-9〉 지역별 개인 횡단면 가중치 분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서울	2,843	3,528.57	34.53	3,262.00	2,152.67	4,595.06
부산	1,170	2,989.44	62.03	2,473.97	1,497.32	3,872.46
대구	952	2,580.91	54.55	2,252.27	1,215.47	3,644.44
인천	1,029	2,555.15	60.02	2,256.17	1,294.41	3,438.71
광주	689	2,100.28	48.28	1,803.18	1,136.61	2,916.62
대전	533	2,807.62	69.02	2,600.32	1,673.75	3,608.84
울산	488	2,222.98	60.74	1,906.96	1,220.18	3,027.78
경기	2,689	4,182.93	42.83	3,929.24	2,544.05	5,337.95
강원	535	2,731.44	94.56	1,819.63	1,135.79	3,631.72
충북	542	2,734.55	79.32	2,451.90	1,247.64	3,767.03
충남	816	2,382.07	72.27	1,531.83	821.15	3,496.79
전북	725	2,408.95	77.15	1,789.60	779.10	3,481.17
전남	846	2,108.64	42.41	1,702.89	1,219.35	2,666.02
경북	1,072	2,444.43	84.96	1,096.64	563.43	3,483.96
경남	1,120	2,795.85	79.50	1,262.51	475.45	4,957.29
제주	206	2,647.91	115.80	2,121.08	1,344.58	3,545.85

<표 2-2-9>로부터 지역별 개인횡단면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2-7>과 비교하여 횡단면 가중치의 표준오차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개인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 상대표준오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지역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장 작은 지역은 서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0>으로부터 개인 가중치의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2,196.6 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종단면 가중치의 표준오차가 횡단면 가중치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10> 개인 종단면 및 횡단면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명)

변수	표본 수	합계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사분위수	제3사분위수
개인종단면 가중치	16,255	48,606,789	2,990.27	16.27	2,571.7	1,285.59	4,166.76
개인횡단면 가중치	16,255	48,606,789	2,990.27	15.94	2,573.5	1,313.88	4,139.24

## 나. 가구가중치 산출과정

4차 웨이브 가구가중치의 산출과정은 먼저 가구의 패널진입차수에 따라 원표본가구의 경우 4차 웨이브 개인 종단면 가중치의 가구 내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4차 웨이브에서 새롭게 진입한 신규가구의 경우 신규 가구 내에 원표본 가구원들의 가중치 평균을 적용하였고, 원표본 가구원들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이들의 평균으로 가구가중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계산된 가구가중치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 수”에 따라 지역별로 사후 조정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지역별 가구 가중치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지역별 가중치 합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지역별 추계 가구 수에 대한 사후층화조정가중치를 구하였고, 이에 대한 지역별 상대표준오차는 제주지역을 제외하고 매우 안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11〉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가구)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전국	6,207	2,686.19	24.27	2,179.94	1,152.92	3,729.55
서울	1,044	3,331.24	56.95	3,057.08	1,968.91	4,275.30
부산	461	2,618.32	88.25	2,105.04	1,304.76	3,311.48
대구	362	2,275.92	82.45	1,864.05	1,131.26	3,183.42
인천	366	2,406.47	92.41	2,165.27	1,123.54	3,260.12
광주	251	1,908.27	72.49	1,671.57	1,053.88	2,512.75
대전	189	2,695.42	133.54	2,401.76	1,615.96	3,429.46
울산	174	2,045.36	97.12	1,748.47	1,005.73	2,651.84
경기	974	3,760.88	68.21	3,473.40	2,072.66	4,892.57
강원	213	2,512.74	135.39	1,703.36	1,129.60	3,139.94
충북	204	2,553.42	136.81	2,108.95	1,092.43	3,373.36
충남	303	2,283.88	115.14	1,343.37	808.39	3,407.61
전북	319	1,961.10	99.21	1,317.30	524.42	2,715.45
전남	360	1,838.39	52.31	1,547.44	1,184.54	2,155.53
경북	454	2,116.27	106.28	896.84	607.76	3,304.43
경남	456	2,397.98	121.88	837.91	473.19	4,214.87
제주	77	2,421.42	180.99	1,825.57	1,258.11	3,107.12

〈표 2-2-12〉 지역별 가구 가중치 합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가구, %)

지역	표본 수	가중치 합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전국	6,207	16,673,167	150,625	0.9034
서울	1,044	3,477,816	59,456	1.7096
부산	461	1,207,045	40,684	3.3705
대구	362	823,882	29,848	3.6228
인천	366	880,767	33,823	3.8402
광주	251	478,976	18,194	3.7986
대전	189	509,434	25,240	4.9545
울산	174	355,892	16,899	4.7484
경기	974	3,663,101	66,435	1.8136
강원	213	535,214	28,838	5.388
충북	204	520,898	27,908	5.3578
충남	303	692,015	34,889	5.0416
전북	319	625,592	31,650	5.0591
전남	360	661,822	18,832	2.8455
경북	454	960,786	48,253	5.0223
경남	456	1,093,479	55,577	5.0826
제주	77	186,449	13,936	7.4746

## 다. 아동 가중치 산출과정

1차 웨이브 “아동”, 2차 웨이브 “복지인식”조사에 이어 3차 웨이브에서는 “장애인” 관련 조사를 수행하였다. 2009년 4차 웨이브에서는 이와 같이 순환되는 부가조사의 순서에 따라 1차 웨이브에서 조사했던 아동가구원과 4차웨이브에서 새롭게 파악된 아동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원 표본가구의 표본 아동은 4차 종단면 개인 가중치를 부여하며, 만일 4차 웨이브에 새롭게 조사된 아동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평균 가구중치를 부여하였다. 한편 아동가구원의 진입차수가 2, 3차 웨이브인 경우에는 4차 웨이브까지 지속적으로 생존한 가구원임으로 4차 개인 종단면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지역별로 아동가구원의 가중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2-13>과 같다.

<표 2-2-13> 지역별 가구 가중치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명)

지역	표본 수	평균값	표준오차	중위수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전 국	612	5,598.69	671.12	3,413.07	2,202.03	4,904.71
서울	105	8,238.26	3,101.39	3,688.41	2,762.68	5,204.25
부산	47	4,390.29	592.10	3,322.64	2,161.25	4,664.90
대구	34	4,578.85	905.49	3,429.53	2,354.98	4,005.23
인천	41	3,088.13	229.29	2,961.79	2,313.87	4,363.91
광주	28	3,515.31	597.11	2,873.57	1,530.75	3,872.58
대전	20	3,515.17	286.56	3,489.27	2,563.16	3,998.40
울산	21	3,328.26	365.72	3,325.19	1,631.57	4,615.39
경기	108	6,203.51	656.62	4,340.04	3,264.50	6,495.94
강원	14	3,178.06	609.14	2,223.94	1,390.28	4,209.75
충북	32	6,944.22	2,997.74	2,693.89	2,260.06	3,962.33
충남	35	4,130.05	988.33	2,402.24	1,143.11	5,896.40
전북	21	8,101.17	3,642.46	3,733.28	2,607.77	4,929.65
전남	36	8,075.96	5,379.80	1,958.12	1,526.69	2,959.96
경북	36	3,353.20	538.18	1,347.68	1,052.74	4,959.10
경남	29	4,865.81	1193.03	3,863.71	798.43	5,958.41
제주	5	6,038.95	1207.14	4,954.78	4,879.77	8,026.31

지역별로 아동가구원의 평균 가중치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아동 1인이 평균 8,238명을 대표하고 있으며, 가장 작은 가중치를 갖는 지역은 인천으로 아동 1

인 평균 3,088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중치의 변동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지역이며, 가장 적은 변동을 보이는 지역은 인천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분위 범위(IQR)가 가장 큰 지역은 경남이며, 가장 작은 지역은 전남 지역으로 나타났다.

### 제3절 KOWEPS의 자체 품질진단 결과

#### 1. 자체품질진단의 개요

자체품질진단은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넓은 의미로서 통계생산자가 소관통계의 품질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개선점을 수립하여 향후 통계품질을 향상시키고자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하여 회원국들의 통계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DESAP(Development for Self Assessment Programme)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DESAP의 품질 차원은 크게 7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별로 하위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DESAP의 개발목적은 조사관리자들이 자신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품질개선 수단을 강구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서, 유럽의 통계시스템(ESS)의 품질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주제 분야와 특정한 조사방법과 무관하게 원시자료로부터 수집된 개별 통계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평가 도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의 경우 통계청에서는 2007년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주기에 따라 정기품질진단과 더불어 통계작성 담당자가 스스로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통계법(통계법 11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OWEPS는 매년 생산되는 조사통계로서 통계법에 따라 2008년 정기품질진단을 받았으며, 2009년에는 자체품질진단을 실시하였으며, 각 평가지표는 5점 척도로 평가되며, 그 결과가 통계청의 통계정책시스템(<http://codi.stat.go.kr/>)에 공시되었다.

본 절에서는 자체품질진단의 각 요소를 간단히 기술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결과표를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 2. 자체품질진단 주요 평가요소

### 가. 관련성

관련성(relevance)은 통계가 현재와 잠재적 사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요구되는 모든 통계가 생산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사용된 개념(정의, 분류 등)의 범위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지를 나타낸다.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통계 이용자의 요구, 중요이용자의 서열화, 이용자 특성 등을 분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KOWEPS의 경우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와 학술대회에서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이용자 들을 그룹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그룹별로 자료 이용 요청 및 다운로드 회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중요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나. 정확성

정확성(accuracy)은 통계활동이 측정하고자 하는 양과 특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가를 의미한다. 정확성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무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확도 측정은 대개 오차 또는 오차 유의도 측면에서 측정되고 기술되며, 오차의 주요 원천들, 예컨대 표본추출, 무응답, 자료처리 등을 통하여 나타난다.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정값들의 오차를 산출하고, 각 종 오차의 원천을 기술해야 한다. 표본오차, 무응답 오차, 포괄성 오차 등 다양한 오차를 평가하고, 이를 이용자를 위해 제시하는 지를 평가한다.

KOWEPS에서는 기초분석 보고서상에 각종 추계 값에 대한 표준오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오차의 근원을 평가하여 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조사항목들의 과대, 또는 과소 포함여부를 평가하고, 통계단위의 오분류율과 원시 자료에 대한 에디팅작업, 단위무응답과 항목무응답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다. 시의성/정시성

통계 또는 정보의 시의성(timeliness)은 정보의 이용성과 그 정보가 나타내는 사건 또는 현상간의 시간간격을 나타낸다. 시의성은 상대적으로 쉽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계산된다. 통상적인 측정 방법은 평균산출 시간이다. 최대산출시간은 가장 나쁜 경우로서 나타난다.

정시성(punctuality)은 자료의 공표날짜와 자료를 공표해야할 목표날짜 간, 예를 들어 자료를 공표한다고 발표한 공식적인 날짜 또는 규정에 적시되었거나 사전에 이용자와 협의한 날짜 간의 시차를 나타낸다.

KOWEPS는 조사연도와 조사기준 연도 간에 4개월의 시차가 있으며, 따라서 회상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자료 공표 시점은 매년 9월에 실시되는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이후를 목표 시점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동일한 시기에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 라. 비교성

비교성(comparability)의 목표는 지리적 영역, 비지리적 영역, 또는 시점들 간에 통계를 비교하여 적용된 통계적 개념과 정의의 상이성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비교성을 분류하면 크게 지리적 비교성, 시간에 대한 비교성, 영역 간 비교성 등 3가지로 구분된다.

KOWEPS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조사항목별로 유사한 개념과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과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가계조사” 결과를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패널조사의 성격상 매년 조사항목에 대해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나, 복지관련 정책상의 복지 수요 대상자나 금액, 기간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 마. 일관성

통계의 일관성(coherence)은 다양한 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신뢰성 있

게 결합될 수 있는 타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일관성을 증명하는 것보다는 비일관성을 증명하는 방법이 더 쉽다. 통계가 서로 다른 자료 원으로부터 산출될 경우, 상이한 접근, 분류, 방법론적 표준에 근거한 통계와는 완전히 일관성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KOWEPS에서는 매년 산출되는 각종 사회지표를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시계열성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통계청의 “가계조사”와 매년 비교를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 3. 자체품질진단 결과

KOWEPS는 200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진단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중 4.7점이며, 정확성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항목에서는 모두 5점으로 평가되었다.

〈표 2-3-1〉 평가 요소별 평균 점수

통계명칭	정확성	의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관련성	평균
한국복지패널조사	4.5	5	5	5	5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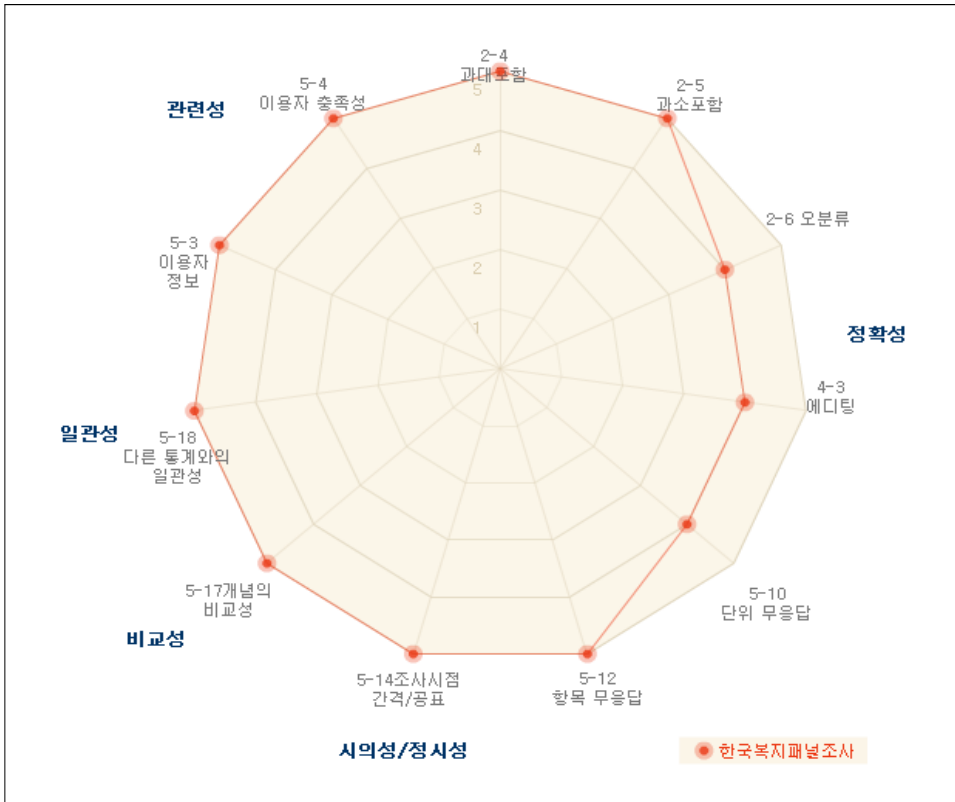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시스템, <http://codi.stat.go.kr/>

〈표 2-3-2〉 세부 주요문항별 평가 점수

품질차원	문항번호	문항 내용	점수
정확성	2-4	조사대상목록의 과대 포함 여부	5
	2-5	조사대상목록의 과소 포함 여부	5
	2-6	통계단위의 분류오류 존재 여부	4
	4-3	원자료 에디팅(내검)필요성 평가	4
	5-10	조사에서 단위 무응답률	4
	5-12	항목별 무응답 정도(비율)	5
의의성/정시성	5-14	작성기준시점과 최종 결과의 공표일(최초 발간일)간의 시차	5
비교성	5-17	통계 설계측면에서 소관통계와 다른 통계 간 비교성	5
일관성	5-18	다른 통계와의 일관성 평가	5
관련성	5-3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유 평가	5
	5-4	전반적인 이용자 요구사항 충족 정도	5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시스템, <http://codi.stat.go.kr/>

[그림 2-3-1] 자체품질진단 주요지표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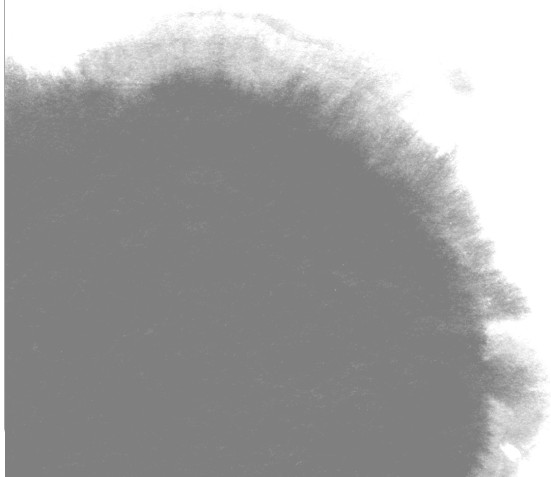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통계정책시스템, <http://codi.stat.go.kr/>





# 03

## 조사내용





## 제3장 조사 내용

본 장에서는 KOWEPS 4차 웨이브 조사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표의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제1절에서는 조사표의 구성, 제2절에서는 조사 문항에 관하여 서술할 것이다.

### 제1 절 조사표의 구성

#### 1. 조사단계

KOWEPS 4차 웨이브는 “KOWEPS 3차 웨이브”에서 조사 완료된 가구 중 총 6,314가구를 패널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현지조사는 2009년 4월 18일부터 2009년 7월 5일까지 진행되었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4차 웨이브는 1~3차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역동성 파악과 사회복지 정책 효과성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건강 및 의료, 경제활동,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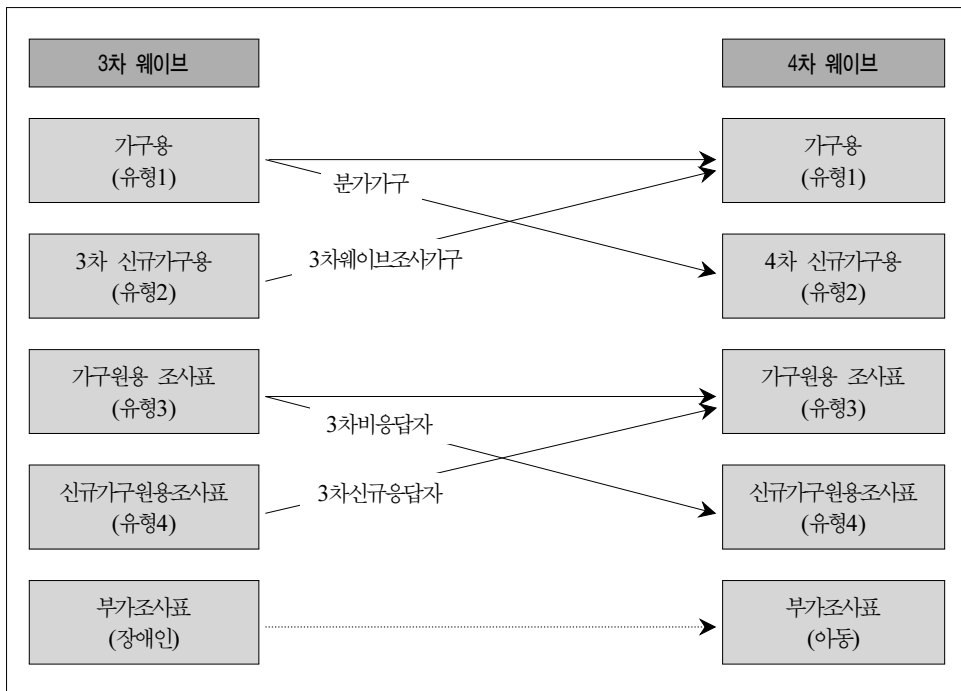
[그림 3-1-1] 조사의 단계

조사구분	목적	대상 및 내용
4차 웨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의 역동성 파악</li><li>정책 효과성 평가</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조사 대상 중 6,314가구</li><li>건강 및 의료, 주거,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등</li></ul>

## 2. 조사표의 구성

조사표의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4차 웨이브는 1~3차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크게 가구용과 가구원용, 부가조사표 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3차 웨이브와 마찬가지로 가구용의 경우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중심)로부터 분리된 가구를 조사하기 위한 4차 신규가구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가구원용의 경우 3차 웨이브에서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을 조사하기 위한 4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가 포함되었다. 부가조사표는 각 년도마다 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혹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번 씩 반복으로 조사된다. 4차 웨이브에는 부가조사표로 1차 웨이브에 부가조사되었던 아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해당 가구의 만 12~14세로 조사 현재 시점(2009년)으로 중학교 1,2,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이다. 조사 기준 기간 및 시점은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와 달리, 각각 조사일로부터 지난 1년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그림 3-1-2] 조사표의 구성



4차 웨이브 조사표 각각의 조사대상, 조사방법, 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가구용 조사표는 표본대상 가구 전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조사 기준 기간은 2008년 1년, 기준 시점은 2008년 12월 31일로 하였다. 가구원용 조사표는 경제활동인구인 만 15세 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만 15세 이상 여부의 판단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단, 신규진입자와 2008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원은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가구원용 조사표의 조사방법 및 조사 기준 기간과 시점은 가구용 조사표와 동일하다. 4차 웨이브 부가조사로 실시한 아동 설문조사의 대상은 1차 웨이브에서 부가조사가 완료된 아동과 조사 시점 현재 중학교 1,2,3학년 가구원으로 기준 기간은 지난 1년, 응답시점은 조사일 현재이다.

〈표 3-1-1〉 4차 웨이브 조사표의 조사 대상·조사방법·응답대상 기간 및 시점

가구용 설문지(유형1·2)	가구원용 설문지(유형3·4)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li> <li>• 조사대상 기간: 2008.1.1~12.31</li> <li>• 기준 응답시점: 2008.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 (중고생 제외, 신규진입자 포함)</li> <li>2) 2008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li> </ol> </li> <li>• 조사대상 기간: 2008.1.1~12.31</li> <li>• 기준 응답시점: 2008.12.3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대상: 1차 웨이브 부가조사 완료된 아동과 조사시점 현재 중학교 1,2,3학년 가구원</li> <li>• 조사대상 기간: 지난 1년간</li> <li>• 기준 응답시점: 조사일 현재</li> </ul>

## 제2절 조사문항

가구용(유형1·유형2), 가구원용(유형3·유형4), 부가조사용(아동) 각 조사표의 조사 영역은 다음 표와 같다.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는 가장 많은 영역을 담고 있는 조사표로 가구일반사항, 가계수지, 경제활동상태, 사회복지제도와 관련한 1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가구의 대표응답자가 응답하기에 부적절한 것을 가구원 개인이 응답할 수 있도록 한 영역-주로 의식 관련

영역으로, 7개 영역(단, ‘교육’과 ‘개인사’의 경우 4차 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 조사표(아동)는 아동 가구원의 의식을 중심으로 한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1〉 4차 웨이브 패널조사 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가구용 (유형1·유형2)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가구원용 (유형3·유형4)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유형4에만 포함됨) G. 개인사(유형4에만 포함됨)
아동용 부가조사	A. 나의 학교생활 B. 나의 생각과 행동 C. 우리 부모님 D. 나의 친구	E. 나의 건강 및 생활 F.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G. 나의 진로

이상 3개 조사표의 영역들을 주제별로 분류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개인사 관련 문항은 문항 성격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에 나뉘어져 있다. 가구여건 관련 문항은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영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실태는 문항의 적절한 응답대상자에 따라 가구용과 가구원용 조사표로 구분되어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에 배치되었다. 경제상황은 가구단위의 가계수지 및 재산 관련한 문항이므로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근로 관련한 문항은 개개인의 일자리 특성 및 경험을 다루고 있으므로 주요 문항들은 가구원용 조사표에 배치되었으며, 객관적인 근로능력정도 및 경제활동상태 관련한 문항들은 가구용 조사표에 삽입되었다. 기타 개인의 의식과 관련한 문항은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아동)에 배치되었다.

〈표 3-2-2〉 조사 주제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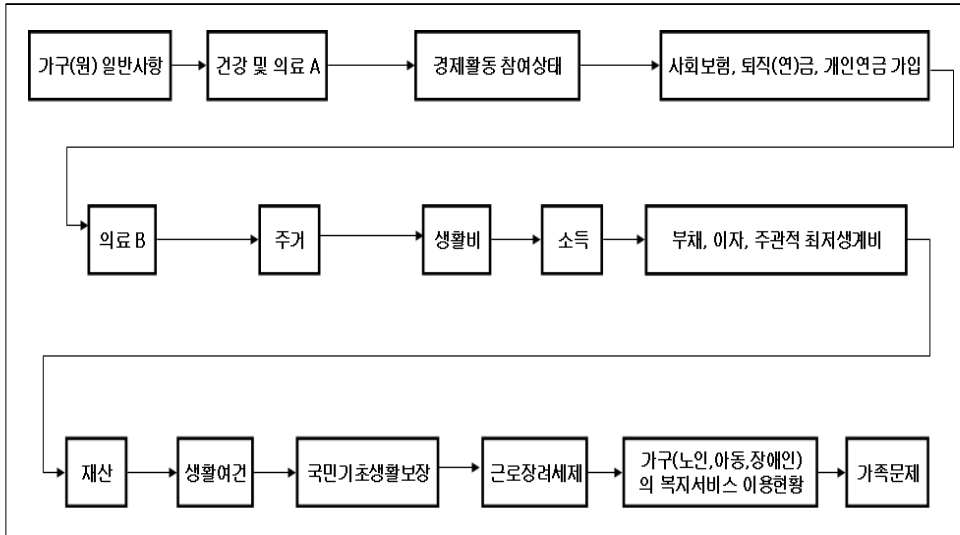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일반사항	가구용 조사표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조사표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조사표 XV. 아동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조사표 II. 건강 및 의료 A, V. 의료 B
	3) 주거	가구용 조사표 VI. 주거
	4) 기타	가구용 조사표 XI. 생활여건
3. 사회복지 가입 및 수급	1) 사회보험	가구용 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조사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 XV. 아동, XVI. 장애인, XVII. 가족
4.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조사표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조사표 VII. 생활비, X. 재산
	3) 자산 및 부채	가구용 조사표 IX. 부채 및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5. 근로	1) 직업이력	가구원용 조사표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조사표 B. 근로
6. 기타	1) 생활실태, 정신건강 등	가구원용 조사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2) 아동	아동 부가 조사표

이상 주제별 각 조사표의 조사영역의 구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각 조사표의 각 조사영역별 세부항목 구조 및 문항의 논리 구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먼저,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의 조사영역의 흐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사항에 대한 파악 후 가구원의 건강상태 및 의료기관 이용에 대해 파악한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참여 상태와 사회보험, 퇴직(연금)금, 개인연금 가입 관련 영역(가)을 조사하고, 가구 전체의 의료서비스(건강보험, 의료급여), 주거, 가계수지 및 재산, 생활여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신청 및 수급, 근로장려세제 관련

의식, 사회복지서비스 이용현황, 가족 문제 관련 영역을 순서대로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2-1]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조사영역의 흐름도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은 구성은 다음 <표 3-2-4>와 같다.

가구일반사항 영역은 가구원수,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 일반사항으로 세부 영역이 나누어진다. 가구원수는 2008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로 주거를 달리하였더라도 생계를 함께 했다면 가구원에 포함된다<sup>7)</sup>. 가구 및 가구원은 원·신규로 구분하여 유형1·유형2로 조사된다. 4차 웨이브의 경우 원·신규 조사대상의 개념이 3차 웨이브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사표 세부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에 대해 <표 3-2-3>에 정리하도록 한다.

7) 15세 미만 가구원의 경우 경제활동참여상태와 사회보험의 공적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퇴직(연)금 가입 문항에 대해 비해당으로 응답한다.  
 8) 예컨대, 기러기 아빠, 학업으로 인해 주거를 달리는 학생은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1인 단독으로 구성된 가구로 조사하지 않고, 본가에 포함시켜 조사한다.



〈표 3-2-3〉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구분	내용	
가 구	원가구 (유형1)	- 3차 웨이브에 조사 완료된 패널 가구 (3차 웨이브의 원가구 및 신규가구) - 1차 웨이브에 완료가구이면서 2,3차 웨이브 미완가구 중 일부
	4차 신규가구 (유형2)	(분리가구)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가구(유형1: 1,2,3차 웨이브 조사완료가구)로부터 분리된 가구 ※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원은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이 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이므로, 4차 신규가구(유형2)로 조사하지 않고, 원 가구(유형1)의 가구원으로 조사된다.
가 구 원	원가구원 (유형3)	- 3차 웨이브에서 가구원조사표 응답 가구원 만15세 이상(1993년 출생자 및 그 전 출생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하여 4차 신규가구용(유형2) 조사표로 조사하더라도, 2008년(3차웨이브)에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이면 가구원용(유형3) 조사표로 조사된다.
	4차 신규가구원 (유형4)	- 3차 웨이브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 1) 2008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2) 2008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4차 웨이브에 출생,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가구에 새로 진입한 만 15세 이상 가구원 ※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진입한 가구원은 2008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한 가구원이 아니므로,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4차 신규가구원용 조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구원 일반사항은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유무, 동거여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일반사항은 가구형태와 기초보장수급형태, 의료급여 수급형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가구 일반사항은 200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표 3-2-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 가구일반사항	1) 가구원수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수
	2) 가구원 일반사항 - 가구원번호, 이름,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연령, 교육 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전체 가구원 대상
	3) 가구일반사항 - 가구형태: 단독가구,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기타 - 기초보장수급형태: 일반수급, 조건부수급, 가구원중 일부 수급, 특례가구, 비해당 - 의료급여수급형태: 의료급여1종(가구단위), 의료급여2종(가구단위), 가구원중 일부수급(개인단위)	2008. 12. 31 기준
II. 건강 및 의료 A	1) 건강상태	전체 가구원 대상
	2)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병명 - 외래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만성질환, 주요병명,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전체 가구원 대상, 2008년 1년간
III. 경제활동상태	1) 근로능력정도 -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2008. 12. 31 기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
	2) 경제활동참여상태 - 2008년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3) 취업자 일자리 특성 -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의 유무, 근로지속 가능성, 업종, 직종, 사업장 규모	
	4) 비취업자 - 비경제활동 사유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1) 공적연금 가입 - 가입형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가입종별, 국민연금 납부여부, 미납유형, 납부예외 사유, 기간, 미납이유, 미납기간, 미가입 이유	전체 가구원 대상 (해당 제도 적용제외 대상은 비해당으로 기입)
	2)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3) 퇴직(연금) 가입 - 퇴직연금 적용여부, 퇴직금 적용여부	
	4) 개인연금 가입 - 개인연금 가입여부	
V. 의료 B	1) 건강보험 -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직장/지역 가입여부, 건강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건강보험 이용 시 문제점, 건강보험 만족도	2008. 12. 31 기준 /2008년 1년간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 의료급여 이용시 문제점	2008. 12. 31 기준
	3) 의료서비스 - 의료서비스 만족도	

〈표 3-2-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VI. 주거	1) 이사경험 - 이사경험 여부	2008.12.31 기준/2008년 1년간
	2)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형태 - 주택유형, 주거 위치, 점유형태	
	3) 주택 가격(보증금) -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비용 마련 방법, 2008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 주거관련 남은 부채액, 연체 횟수	
	4)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거주지역 생활환경 - 주택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여부 등 - 방 개수, 면적·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2008.12.31 기준
	5)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기타 주거복지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VII. 생활비	1) 비목별 생활비 - 월평균 식료품비, 월평균 주거비, 월평균 광열수도비, 월평균 가구가사용품비, 월평균 피복신발비, 월평균 보건의료비, 월평균 교육비, 월평균 교양오락비, 월평균 교통통신비, 월평균 기타소비지출, 비동거가구원 송금	2008년 1년간 월 평균액
	2)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에게 제공한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연간 총금액	
	3)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 월평균 세금, 월평균 사회보장분담금	
	4)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 장기요양과 바우처 이용에 따른 월평균 비용	
	5) 총생활비 - 월평균 생활비	2008년 1년간 총액
VIII. 소득	1)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 만 15세 이상 가구원의 2008년 1년간 경제활동,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일당·연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기타근로소득(주 1시간 미만의 근로소득)	2008년 1년간 총액
	2) 원천별 소득(근로소득 제외) -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사적이전소득(비가구원의 보조금, 기타 민간보조금), 9개월 미만 동거가구원의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개월수 및 총액	

〈표 3-2-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1) 부채 -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깃돈, 기타) 및 금액	2008.12.31 기준
	2) 이자 -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 연간 총액(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기타이자(주거이자 제외))	2008년 1년간 총액
	3) 주관적 최저생계비 - 한 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2008년 1년간 월평균액
X. 재산	1) 부동산 - 소유부동산 형태(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총액, 점유부동산 형태별 금액(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2008.12.31 기준
	2) 동산 -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3) 금융자산 - 소유 금융자산 형태 및 금액(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 전 부은 깃돈, 기타)	
	4) 기타 재산 -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기타 재산(회원권, 선박 등) 총액	
XI. 생활여건	1) 박탈지표 - 집세 미납·공과금 미납·세금 미납·공교육비 미납·난방 못함·의료서비스 이용 못함·신용불량 경험 여부·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급여자격 정지 여부	2008년 1년간
	2) 식품보장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료품 미구입·균형잡힌 식사 못한 경험 정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식 및 결식 경험여부·경험횟수 등	2008년 1년간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1) 급여 신청 및 탈락 -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탈락사유, 신청탈락 후 생계해결방법	2008년 1년간
	2) 2008년 1년간 수급이력 - 2008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급여수준 평가,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2008년 1년간
	3) 수급 탈피 -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2008년 1년간
XII-1. 근로장려세제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정도,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급여신청의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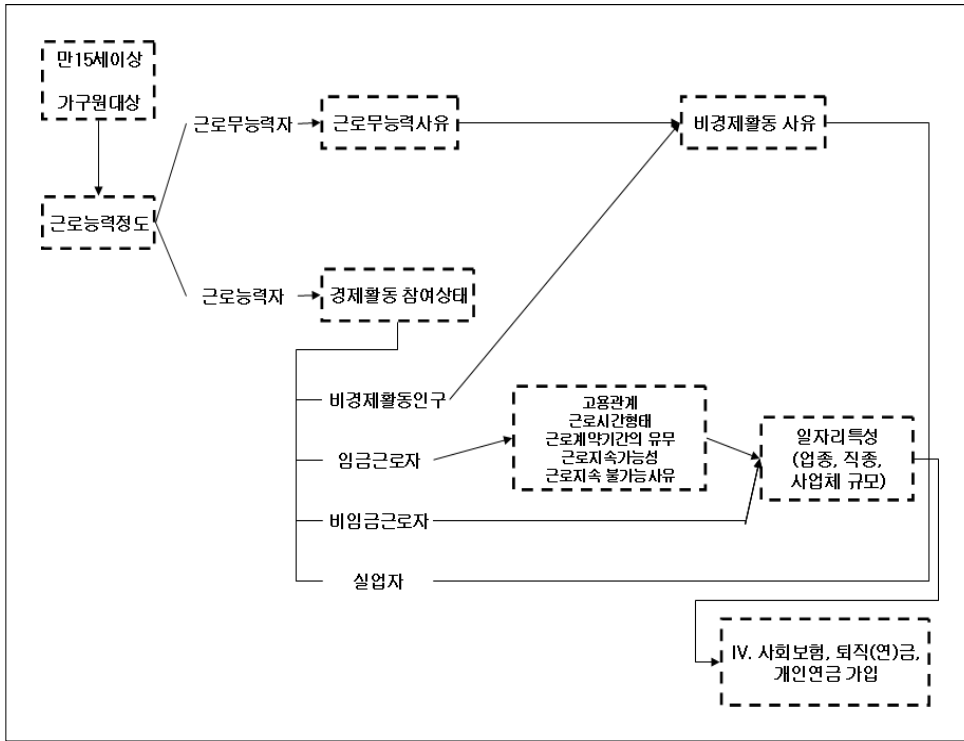
〈표 3-2-4〉 가구용(유형1·유형2) 조사표 주요항목(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가구복지서비스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 바우처서비스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여부, 월단위 본인부담액	2008년 1년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아동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아동대상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008년 1년간
	2) 아동 건강 - 추가아동여부, 출생 시 체중,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3)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 이용여부, 이용하지 않는 이유, 이용기관, 월평균 사교육비, 월평균 보육비, 사교육비와 보육비 부담정도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1)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 - 장애인 대상 복지서비스 경험여부, 제공기관, 이용만족도	2008년 1년간
XVII. 가족	1) 가족의 갈등 -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 가족갈등 대처 방법	2008년 1년간
기타	1) 경제위기의 실업에 미친 영향 -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 폐업 등의 경험여부, 시기, 실직이후 상태	2008년 1월 ~2009년 4월 15일

한편, 건강 및 의료 영역은 가구원의 건강상태와 의료기관 이용 및 주요병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 의료기관 외래 진료 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주요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횟수, 주요병명,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를 묻는 문항이 포함된다.

경제활동상태 영역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한 영역으로 세부적으로 근로능력정도, 경제활동 참여상태, 취업자 일자리 특성, 비취업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상태 영역의 문항 논리도는 다음 [그림 3-2-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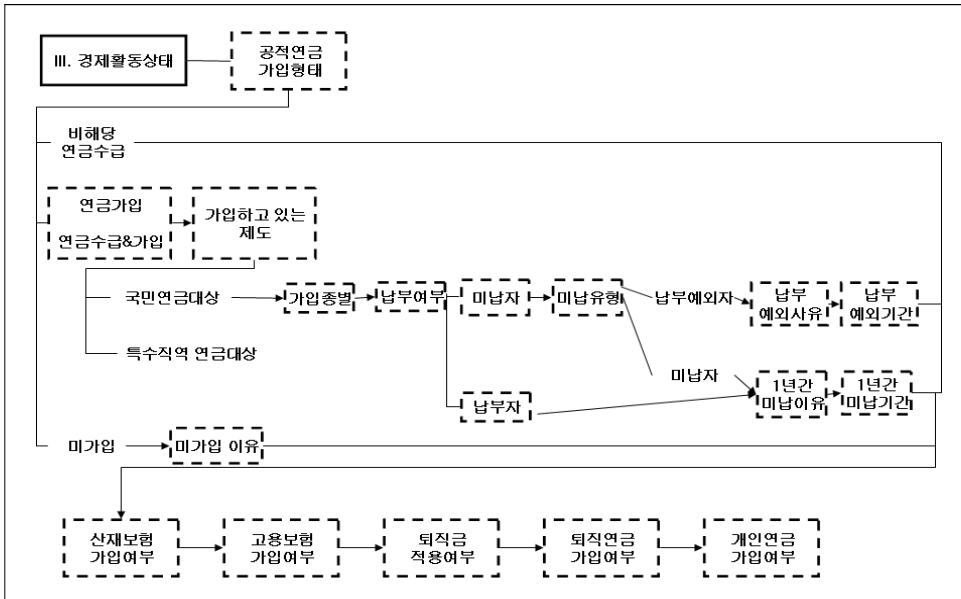
[그림 3-2-2] 가구용조사표 III. 경제활동상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은 전체 가구원을 대상<sup>9)</sup>으로 하는데, 세부적으로 공적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 개인연금 가입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적연금제도 가입은 가입대상 분류 관련 문항,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유·미납기간·미납사유·미가입사유 문항으로 구성된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제, 개인연금은 각 제도의 가입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의 문항 논리도는 다음 [그림 3-2-3]과 같다.

9) 만15세 미만 가구원은 공적연금 가입형태, 산재보험·고용보험·퇴직금·퇴직연금 가입여부 질문에 비해 당으로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2-3] 가구용조사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의료B 영역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의료서비스 영역으로 세분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문은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 직장·지역 가입여부, 보험료 미납 경험 여부, 미납사유, 미납기간, 문제점,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급여 부문은 의료급여 수급 여부 및 수급 종류(1종, 2종 여부), 이용 시 문제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 부문은 이용 만족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으로, 주거 영역은 이사경험 여부,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점유형태,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시설 및 생활환경,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로 세분될 수 있다. 주택 유형 및 주거 위치, 주거 점유형태 부문은 주택 유형, 주거 위치, 주거점유형태 문항으로, 주택 가격(보증금) 부문은 주택 가격(보증금), 주택비용 마련 방법, 2008년 1년간 총 원금 상환액, 주거관련 남은 부채, 대출상환액 연체 횟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택 구조·성능·환경, 주거 시설 부문은 주택 재질, 방음, 난방, 오염,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 여부, 방갯수, 면적, 상하수도·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 종류 및 사용형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부문은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전세자금융자 지원,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생활비 영역은 식료품비 등 비목별 생활비, 부양의무자 대상 사적이전지출, 세금 및 사회보장분담금,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총생활비 영역으로 세분된다.

다음으로 소득 영역은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원천별 소득 영역으로 세분된다. 종사상 지위별 가구원 근로소득 부문은 만 15세 이상 가구원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경제활동상태 및 일한 개월수 파악 문항, 이를 통해 상용근로자 연간 총급여액, 임시·일용근로자 월평균 일한 일수·일당·연간 총급여액, 고용주 및 자영자 연간 총매출액·연간 총비용·연간 순소득, 농림축산업 경영주 경지규모·자가 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어업경영주 수산물 자가소비액·판매수입·연간총비용·연간순소득, 기타 근로소득(주 1시간 미만 근로소득)을 파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원천별 소득은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파악하는 부문으로 재산소득, 사회보험 급여액, 민간보험 급여액, 기타정부보조금 총액, 기타 비경상소득 총액, 사적이전소득(비가구원의 보조금, 기타 민간보조금), 9개월 미만 동거가구원의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개월수 및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영역은 부채형태(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 외상 및 미리 탄 깻돈, 기타) 및 금액,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기타이자(주거이자 제외))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한 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묻는 주관적 최저생계비 관련 문항도 포함되어 있다.

재산 영역은 부동산, 동산, 금융자산, 기타 재산 영역으로 세분된다. 부동산 부문은 주택, 주택 외 건물, 토지 등 소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 전세보증금 준 것, 기타 권리금 등 점유부동산 형태와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산 부문은 보유 농기계 종류 및 가격, 사육 농축산물 종류 및 가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자산 부문은 소유 금융자산 형태(예금, 적금, 주식·채권, 타기 전 부은 깻돈, 기타)와 금액, 기타 재산은 자동차 대수 및 총 가격, 회원권, 선박 등 재산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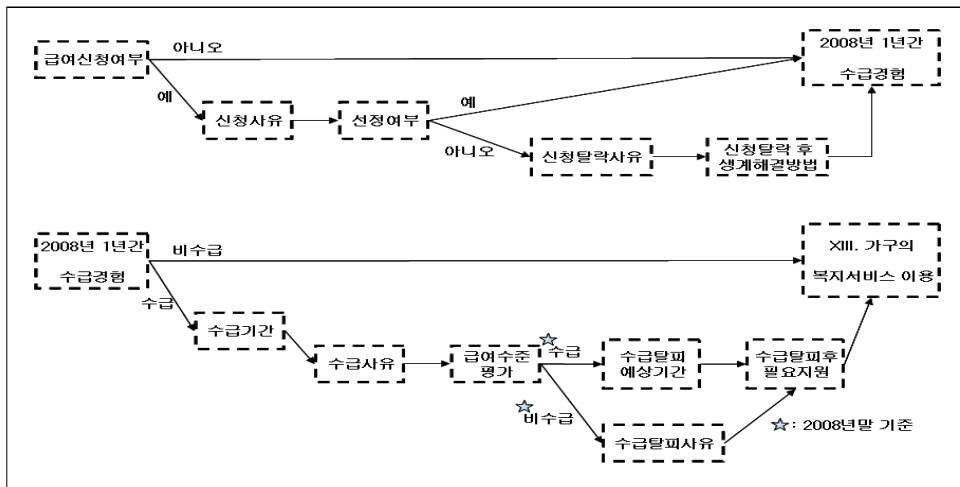
생활여건 영역은 박탈지표, 식품 보장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박탈지표는 경제적인 이유로 집세 미납 여부, 공과금 미납 여부, 공교육비 미납 여부, 난



방 못한 경험 여부, 의료서비스 이용 못한 경험 여부, 신용불량 경험 여부,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보험 급여자격 정지 여부를 묻는 문항들이다. 식품 보장 문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식료품 미구입·균형잡힌 식사 못한 경험 정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식 및 결식 경험여부·경험횟수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영역은 급여 신청 및 탈락, 2008년 1년간 수급이력, 수급 탈피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청 및 탈락부문은 기초보장급여 신청 경험여부, 신청사유, 선정여부, 신청탈락사유, 신청탈락 후 생계해결방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1년간 수급이력 부문은 2008년 1년간 수급경험, 수급이력, 수급이유, 급여 수준 평가, 수급 탈피 예상 기간, 수급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급 탈피 부문은 탈피 사유, 탈피 후 필요지원 비목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그림 3-2-4]와 같다.

[그림 3-2-4] 가구용조사표 제Ⅲ. 국민기초생활보장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근로장려세제 영역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부문으로 이루어져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은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지 정도, 수급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주관적 판단, 급여신청의사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두 번째,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는 사회보험·퇴직금·개인연금 수급, 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인식,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생활습관과 가족관계 및 정

신건강, 개인사(신규가구원용에만 해당)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의 각 영역별 세부 문항 구성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5〉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 주요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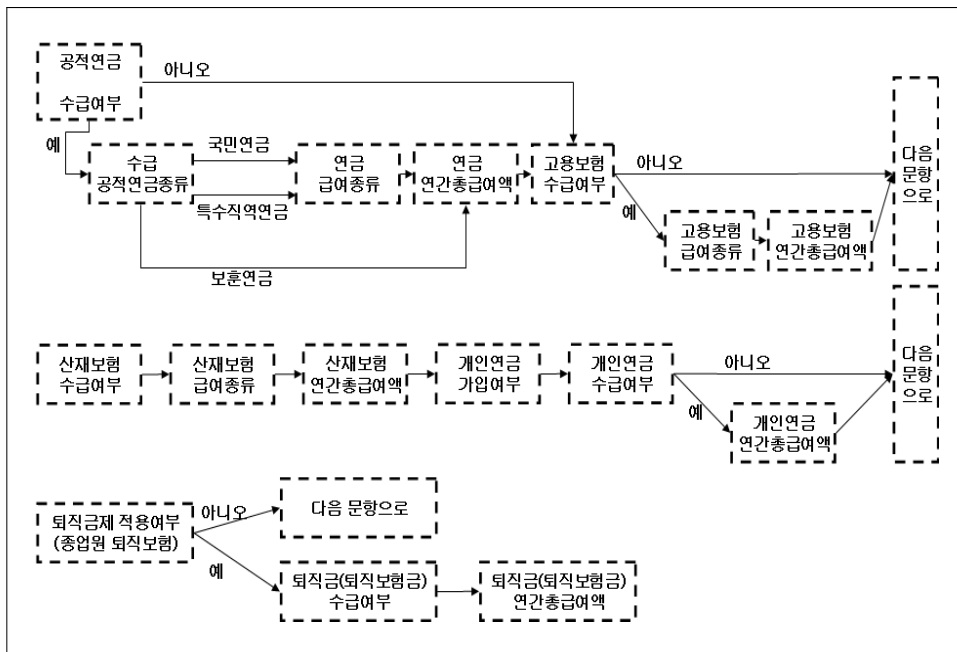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입	1) 공적연금 -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2008년 1년간
	2) 고용보험 - 고용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3) 산재보험 - 산재보험 수급여부, 급여종류, 산재보험 일시금 총액, 산재보험 수급 개월수 및 총현금급여액	
	4) 개인연금 - 개인연금 수급여부, 개인연금 일시금 총액, 개인연금 수급 개월수 및 총 급여액	
	5) 퇴직금 및 퇴직보험 - 재직 중인 직장의 퇴직금제 또는 퇴직보험금 수급여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 일시금 총액, 보험금 수급 개월 수 및 총급여액	
B. 근로	1) 근로유형 - 근로유형	2008.12.31 기준
	2) 취업자 - 실직경험여부, 실직사유, 현직장 근속년수, 근로개월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노조가입여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고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주관적 평가	2008.12.31 기준/2008년 1년간
	3) 미취업자 - 4주간 구직활동 여부, 2008년 1년간 구직활동여부, 구직시 알맞은 일자리 유무, 총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희망업종, 구직활동하지 않은 이유,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고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주관적 평가	
	4) 직업기술 - 새로이 습득한 직업기술 종류 및 해당 직종	
1) 생활실태 -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박탈 경험여부, 주관적 경제적 생활상태 (2007.12.31기준/2008.12.31기준/2013년(5년후))	2008년 1년간	
2) 생활만족 - 건강상태·가족의 수입·주거 환경·가족관계·직업·사회적 친분관계·여가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3) 복지의식 - 세금부담과 복지수준에 대한 의식		2008년 1년간

〈표 3-2-5〉 가구원용(유형3·유형4) 조사표 주요항목(계속)

영역	세부 영역 및 세부 항목	비고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1)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활동 -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이웃에 대한 도움 제공 의사,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	2008년 1년간
	2) 부모님과 접촉정도 -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 전화통화 횟수	
	3) 성역할에 대한 인식 - 여성전일제와 가족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활동 역할 간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1) 생활습관 및 출산경험 여부 -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출산 경험여부	2008년 1년간
	2) 정신건강 - 우울감, 자아존중감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 또는 조사시점 기준
	3) 가족관계 - 부부폭력 경험, 부부폭력 가해 경험, 가족생활·부부관계·자녀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2008년 1년간
F. 교육	1) 최종학력 - 최종학력	-
	2) 출신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 일반계(일반) 등 12가지 유형, 고등학교 소재지(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3) 출신 대학전공계열 및 소재지 - 인문계열 등 12가지 유형, 대학교 소재지(특별·광역시, 도 단위까지 기재)	
G. 개인사	1) 이동기 - 이동기 성장 지역, 이동기 경제생활상태, 이동기 조실부모·부모의 이혼·학업중단·친척집에서 성장 경험여부 및 경험 연령	-
	2) 부모님 -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 도움 정도	
	3) 직업이력 - 만15세 이후 첫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4) 직업기술 -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 기술 직종	
	5) 다문화가정 여부 -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및 퇴직보험 영역으로 세분화된다. 공적연금 부문은 공적연금 수급여부, 수급 공적연금 종류, 국민연금 급여종류, 국민연금 일시금 총액, 국민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급여 종류,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총액, 특수직역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보훈연금 및 기타 연금의 일시금 총액, 기타 연금 수급 개월수 및 수급연금 총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개인연금 부문은 각각 수급여부, 급여종류, 일시금 총액, 급여 수급 개월 수 및 연간 총현금급여액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 3-2-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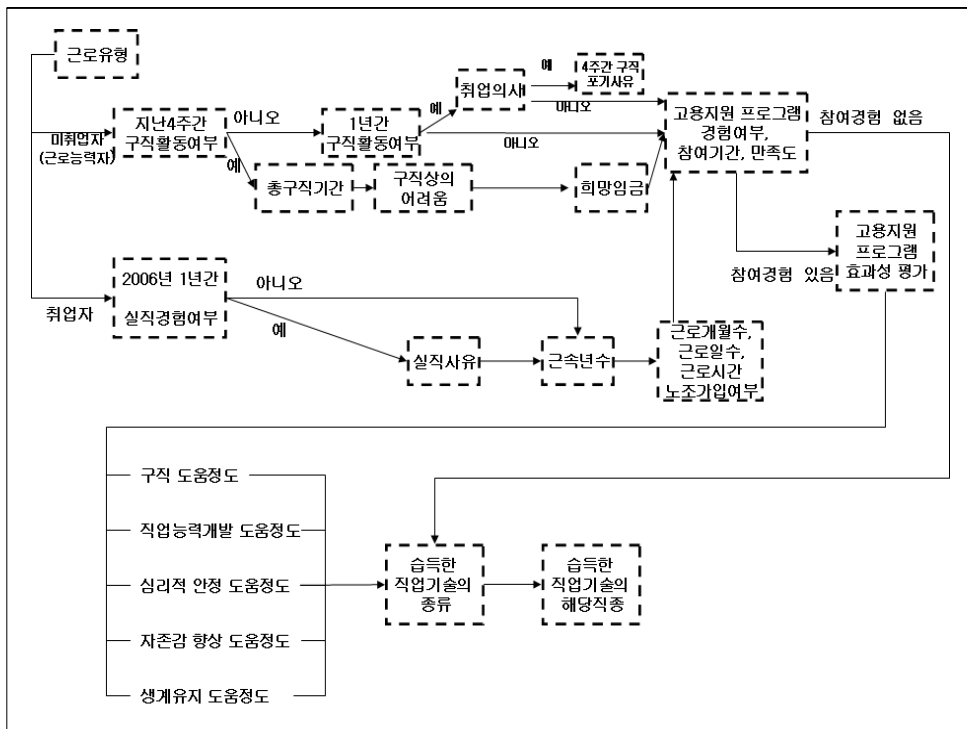
[그림 3-2-5] 가구원용 조사표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근로 영역은 근로유형, 취업자, 미취업자, 직업기술 영역으로 세분된다. 먼저, 2008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유형을 묻는 문항을 통해 취업자 응답 부문과 미취업자 응답부문으로 구분된다. 취업자 응답 부문은 실직경험여부, 실직사유, 현직

장 근속년수, 근로개월수,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주당 평균 근로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 평균 근로시간, 노조가입여부,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고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주관적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취업자 응답 부문은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4주간 구직활동 여부, 2008년 1년간 구직활동여부, 구직시 알맞은 일자리 유무, 총구직기간, 구직상의 어려움, 희망임금,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여부·참여기간·만족도, 고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주관적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 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는 구직 도움 정도, 직업능력개발 도움정도, 심리적 안정 도움 정도, 자존감 향상 도움 정도, 생계 유지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8년 1년 동안에 습득한 새로운 직업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문항과 습득한 직업기술의 해당 직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논리 흐름은 다음 [그림 3-2-6]과 같다.

[그림 3-2-6] 가구원용조사표 B. 근로 영역 논리도



다음으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영역은 생활실태, 생활만족, 복지의식 부문으로 구성된다. 생활실태부문은 인터넷 사용여부, 근로박탈 경험여부, 2007년 12월 31일 기준·2008년 12월 31일 기준·2013년(5년 후) 각각의 주관적 경제적 생활상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활만족 부문은 건강상태, 가족의 수입, 주거 환경,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 친분관계, 여가생활, 7개 부문별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영역은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활동, 부모님과 의 접촉 정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웃에 대한 신뢰 및 지역사회 활동 부문은 이웃에 대한 신뢰정도, 이웃에 대한 도움 제공 의사,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의사, 기부 혹은 자원봉사 활동 여부, 연간 기부액, 자원봉사활동 연간 횟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부모님과 의 접촉정도 부문은 비동거 부모님 유무, 비동거 부모님과 의 왕래 횟수, 비동거 부모님과 의 전화통화 횟수를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성역할에 대한 인식 부문은 여성전일제와 가족일상생활 양립, 미취학 아동 어머니의 노동과 가족관계, 전업주부 역할과 소득활동 역할 간 중요성,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남녀 소득기여,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책임, 가족돌봄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응답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영역은 생활습관 및 출산경험 여부, 정신건강, 가족관계 부문으로 세분화 된다.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영역은 흡연, 음주, 음주로 인한 문제, 출산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신건강 영역은 우울감, 자아존중감을 테스트하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관계 영역은 부부폭력 경험, 부부폭력 가해 경험, 가족생활·부부관계·자녀와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영역과 개인사 영역은 반복 질문이 필요치 않은 일회성 질문이므로, 신규가구원(유형4)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교육 영역은 최종 학력, 출신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 출신 대학전공계열 및 소재지 부문으로 세분화된다. 최종학력 부문은 최종학력을 묻는 하나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신 고등학교 유형 및 소재지는 12가지 유형의 고등학교 유형을 묻는 질문과 시군구 단위의 소재지를 묻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출신 대학전공 계열

및 소재지는 출신 대학의 12개 유형 중 해당 전공계열을 묻는 질문과 특별·광역시와 도단위의 소재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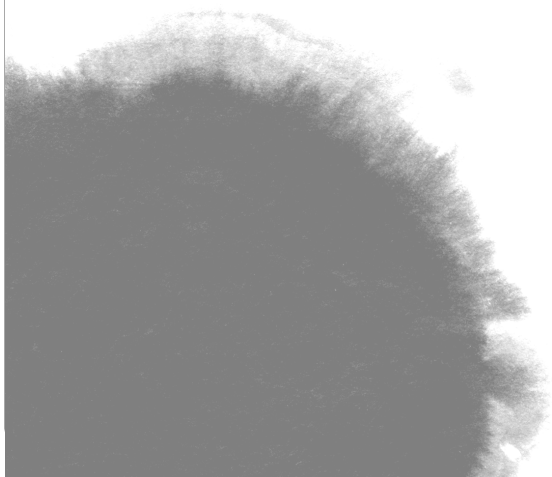
개인사 영역은 아동기, 부모님, 직업이력, 직업기술, 다문화가정 여부 부문으로 세분화 된다. 아동기 부문은 아동기 성장 지역, 아동기 경제생활상태, 아동기 조실부모·부모의 이혼·학업중단·친척집에서 성장 경험여부 및 경험 연령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님 관련 부문은 부모님의 교육수준, 직업,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 경험, 부모로부터의 상속 및 증여의 경제적 도움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직업이력 부문은 만15세 이후 첫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 두 번째·세 번째·네 번째·다섯 번째·여섯 번째 직장 근무기간 및 고용형태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업기술 부문은 보유 직업기술(1~3순위), 보유 직업 기술 직종을 묻는 질문으로, 다문화 가정 여부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왔는지 여부를 묻는 한 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04

##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제4장 조사방법 및 자료처리

### 제1 절 현지조사방법

#### 1. 조사준비

##### 가. 사전 안내문의 발송

KOWEPS 4차 웨이브에서는 현지 실사에 앞서 2008년 3차웨이브에서 구축한 6,314가구에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사전 안내문은 두 번 발송하였다. 연초에 연하장으로 3차 웨이브 조사 협조에 대한 고마움과 4차 웨이브 조사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설날을 맞이하여 설 선물과 함께 조사 안내문을 다시 발송하였다.

패널 조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 번째는 조사대상가구들의 원활한 조사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는 표본가구들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동 주소지에 그대로 살고 있는지 이사를 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는 이사 가구 파악을 위하여 이사하였음을 연구원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사 선물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이사 가구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연구원에 잘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사전 안내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 나. 조사원 모집 및 교육·훈련

2009년도 4차 웨이브에 투입된 조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유한 조사원

POOL 중에서 패널조사 및 대규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사원 중 평가 성적이 우수한 조사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 투입된 조사원은 조사지도원 13명, 조사원 39명으로 총 52명이 투입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3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첫 2일간은 조사표에 대한 집중교육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1일은 요도 확인방법, 조사표 및 조사 답례품 수령 등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진들이 각각 자신의 조사표 개발 파트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교육내용은 ① 조사의 취지와 주요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 ② 조사표 종류별 작성에 따른 지침서 설명, ③ 조사에 따른 기타 주의사항, 즉 조사표 작성에 필요한 연령조건표, 사회복지제도 참고자료, 시세 및 소득 참고자료, 국민생활실태조사 가구명부 활용방법과 조사안내문 및 팸플릿 배포, 가구방문시 인사말 등에 관한 것이었다.

## 2. 현지조사의 운영 및 지도감독

### 가. 조사기간 및 현지조사의 운영

현지조사는 2009년 4월 18일~2009년 7월 5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특히 조사의 초기단계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지도원들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패널가구들에 대한 조사협조를 부탁하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여야 할 공공부조 수급액 등의 자료를 확인하였다. 조사팀은 4인 1조로 운영하여 조사지도원 1인이 3인의 조사원을 통솔하는 체계로 운영하였다. KOWEPS에서 조사지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지도원은 조사원의 조사결과를 현장에서 에디팅하고 미흡한 경우 재조사를 지시하며, 조사표 작성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조사상의 애로사항이나 조사표 작성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연구원에게 바로 연락함으로써 통일적 추가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나.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대상 패널가구를 방문하여 응답대상 가구원을 만나 응답자가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조사표에 기록하는 타계식 직접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심야귀가나 장기출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조사기간 동안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해외거주, 여행 및 출장, 병원입소, 군입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가구원이 가구에 없는 경우에는 유치·전화조사나 대리응답 조사를 제한적으로 병행하였다. 단, 이 경우에도 에디팅 단계에서 전화면접 및 추가 검증을 통해 응답정보를 보충함으로써 설문지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 제2절 조사자료 처리

조사가 완료된 자료는 먼저 현지에서 지도원 및 조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오류수정(에디팅) 과정을 거침으로써 조사표 수정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오류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작성상의 오류(미기입 또는 오기입)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사완료 후 지도원이 최종 점검작업을 통해 오류를 수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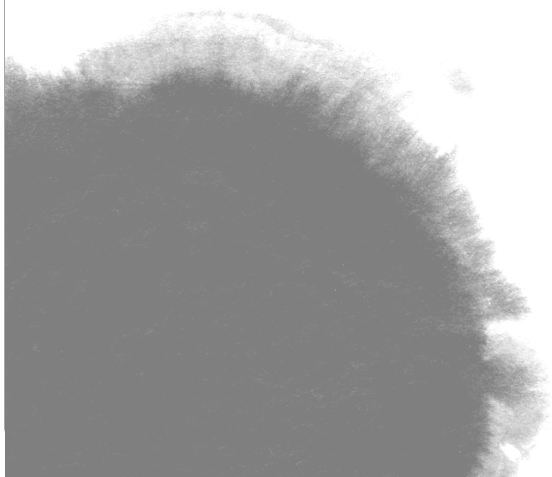
오류수정이 완료된 후 모든 자료에 대한 코딩(Coding) 및 펀칭(Punching) 작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펀칭 작업시 입력 에러를 줄이기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더블 펀칭(Double Punching)을 실시하였다. 코딩/펀칭 작업은 20여명의 코딩요원 및 자료입력요원에 의해 약 30일간 실시되었다.

코딩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 연구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서 에러체크 작업을 실시하였다. 에러체크 작업은 연구원에 의해 약 1개월간 진행되었다. 이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업무분장에 따라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에 들어갔으며 연구진이 주로 활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SAS 등이었다.



# 05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제5장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제1절 조사대상 가구 특성

KOWEPS의 4차 웨이브 조사완료 가구수는 6,207가구(원가구 5,935가구, 2,3차 신규가구 167가구, 3차 신규가구 105가구)들을 가구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타가구(78.07%)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단독가구(19.99%)도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구는 1.11%, 부자가구는 0.47%이며, 소년소녀가장가구는 0.35%로 나타났다.

<표 5-1-1> 가구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가구		19.99	41.14	12.43
모자가구		1.11	2.61	0.58
부자가구		0.47	0.68	0.40
소년소녀가장가구		0.35	1.14	0.07
기타가구		78.07	54.43	86.52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균등화된 중위소득 60% 이상 가구)에서는 기타가구가 86.52%로 저소득가구(균등화된 중위소득 60% 미만 가구)의 54.4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단독가구와 모부자가구의 비중은 저소득가구

(각각 41.14%, 3.29%)가 일반가구(각각 12.43%, 0.98%)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1.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서는 0.07%였다.

다음으로 <표 5-1-2>는 4차 완료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수급가구	92.51	75.06	98.75
수급가구	7.49	24.94	1.25
일반수급가구	5.39	19.20	0.46
조건부수급가구	0.49	1.46	0.15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1.43	3.77	0.59
특례가구	0.18	0.51	0.06
계	100.00	100.00	100.00

전체 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7.49%이며, 이 중 일반수급가구 5.39%, 조건부수급가구 0.49%,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1.43%, 특례가구가 0.18%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1.25%이며,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절반인 0.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 중 수급가구의 비율은 24.94%였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일반수급가구가 19.20%, 조건부수급가구가 1.53%,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가 3.77%, 특례가구가 0.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5-1-3>과 같다. 먼저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2.85명이며, 일반가구 3.12명, 저소득가구 2.08명으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 1명 정도 가구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원수가 4명 이하 가구가 90.57%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구규모는 4인 가구로 전체 가구의 26.79%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2명(22.68%), 3명(20.97%), 1명(20.14%) 순이었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4인 가구의 비중이 32.7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 23.82%, 2인 가구 20.14%의 순인데 비해, 1인 단독가구(12.41%)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중이 41.78%, 2인 가구 29.96%로 1,2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3인 가구 13.33%, 4인 가구 10.22%의 순이었다. 또한, 일반가구는 저소득가구에 비해 5명 이상 가구규모를 가진 가구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가구규모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명	20.14	41.78	12.41
2명	22.68	29.96	20.08
3명	20.97	13.33	23.70
4명	26.79	10.22	32.70
5명	7.41	3.05	8.97
6명	1.75	1.42	1.87
7명 이상	0.27	0.25	0.27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조사대상 가구원 특성

### 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KOWEPS의 패널가구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2-1>과 같다.

우선 전체적으로 남성 가구주(82.85%)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62.76%, 여성가구주가 37.24%, 일반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가 89.23%, 여성가구주가 10.78%로 저소득가구의 여성 가구주 비중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5-2-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성별	남성		82.85	62.76	89.23
	여성		17.15	37.24	10.78
연령	20세 미만		0.05	0.11	0.03
	20~30세 미만		5.42	2.75	6.27
	30~40세 미만		21.99	8.06	26.40
	40~50세 미만		27.70	18.37	30.66
	50~60세 미만		20.16	16.19	21.42
	60~65세 미만		6.04	6.78	5.81
	65세 이상		18.64	47.73	9.42
학력	초등졸 이하		18.37	46.95	9.32
	중학교졸 이하		11.20	15.41	9.86
	고등학교졸 이하		34.37	24.81	37.40
	전문대졸 이하		8.30	3.67	9.77
	대학교졸 이하		23.22	8.20	27.98
	대학원졸 이상		4.53	0.96	5.66
장애	비장애인		90.49	80.99	93.50
	장애인		9.51	19.01	6.50
	중증장애인(1,2급)		1.83	4.93	0.85
	경증장애인(3급이상)		6.65	11.93	4.98
	비등록장애인		1.03	2.15	0.67
만성질환	비해당		53.87	31.47	60.97
	있음		46.13	68.53	39.02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6.41	3.48	7.33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86	1.56	1.95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37.86	63.50	29.74
	무응답		0.01	0.00	0.01
혼인상태	비해당		0.01	0.05	0.00
	유배우		73.55	49.13	81.30
	사별		10.41	28.47	4.68
	이혼		6.72	12.79	4.79
	별거		1.17	2.42	0.77
	미혼		7.92	6.63	8.33
	기타(사망, 무응답 등)		0.22	0.50	0.13
종교	있음		47.73	50.76	46.77
	없음		52.27	49.24	53.23

〈표 5-2-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동거여부	동거(같이살고 있다)		98.12	99.17	97.79
	비동거		1.88	0.83	2.21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1.45	0.36	1.79
	해외근무 중		0.24	0.02	0.31
	학업(해외유학포함)		-	-	-
	입원, 요양		0.08	0.24	0.03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	-	-
	가출		-	-	-
	분가		-	-	-
	사망		0.10	0.21	0.06
	다른곳에 맡겨진 미취학자녀		-	-	-
	기타(군복무중)		0.01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0대 가구주가 21.99%, 40대 가구주가 27.70%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구주도 24.6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30대 가구주가 26.40%, 40대 가구주가 30.66%로 근로활동이 활발한 30, 40대 가장의 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가정이 47.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고졸 이하(34.3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졸(23.22%), 초졸(18.37%), 중졸(11.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37.40%), 대졸(27.98%), 중졸(9.86%), 초졸(9.32%)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 이하가 46.95%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졸(24.81%), 중졸(15.41%), 대졸(8.20%)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저소득가구 가구주가 일반가구 가구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높고 저학력임을 알 수 있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구주가 장애를 가진 가구는 9.51%였으며, 이중 1, 2급 중증

장애를 가진 경우는 1.83%, 3급 이상 경증장애를 가진 경우가 6.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등록장애인의 비율도 1.03%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장애 가구주 비율이 19.01%로 일반가구의 6.50%에 비해 약 2.9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저소득가구의 중증장애인 가구주 비율은 4.93%로 일반가구의 0.85%에 비해 5.8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비등록장애인 가구주의 비율도 2.15%로 일반가구의 0.67%에 비해 3.2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전체 가구의 절반에 못미치는 46.13%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68.53%로 일반가구(39.02%)에 비해 약 1.76배 정도 높아 대조를 보였다. 이들 만성질환 가구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7.86%가 6개월 이상 투병 혹은 투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63.50%를 차지하였다.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가구주의 73.55%가 2008년 현재 유배우 상태에 있었으며, 60대 이상 연령층이 많은 저소득가구에서는 사별의 비율이 28.47%, 이혼의 비율이 12.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20~40대 연령층이 많은 일반가구에서는 100명 중 약 82명(81.30%)이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주 가운데 종교가 있는 사람이 47.73%, 종교가 없는 사람이 52.27%로 거의 반반 정도를 차지했다. 일반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주(52.23%)가 종교가 있는 가구주(46.77%)보다 약간 더 많은데 비해, 저소득가구에서는 종교가 있는 가구주의 비율(50.76%)이 종교가 없는 가구주(49.24%)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가구주 가운데 다른 가구원들과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1.88% 정도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1.45%는 타지방 근무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근무, 입원 혹은 요양, 가출, 사망 등으로 가구주와 같이 살지 않는 가구원도 약간씩 있었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입원 혹은 요양, 가출,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한 비동거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대부분이 타지방 근무로 인한 비동거로 나타났다.

## 2.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음으로 가구를 제외한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것으로 그 결과는 <표 5-2-2>와 같다.

<표 5-2-2> 가구주제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의 배우자		36.88	39.29	36.46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88	5.17	3.65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57.72	53.76	58.42
	기타친인척(형제자매포함)		1.47	1.58	1.45
	비혈연 동거인		0.05	0.20	0.03
성별	남성		33.12	32.55	33.22
	여성		66.88	67.45	66.78
연령	20세 미만		36.78	37.32	36.69
	20~30세 미만		19.68	12.21	21.00
	30~40세 미만		14.45	8.82	15.44
	40~50세 미만		11.69	10.00	11.99
	50~60세 미만		8.30	8.59	8.25
	60~65세 미만		2.19	4.00	1.87
	65세 이상		6.91	19.07	4.77
학력	미취학		9.69	6.42	10.27
	초등졸 이하		22.41	38.79	19.53
	중학교졸 이하		11.58	15.11	10.96
	고등학교졸 이하		26.72	25.77	26.89
	전문대졸 이하		9.94	6.33	10.57
	대학교졸 이하		17.89	7.12	19.79
	대학원졸 이상		1.76	0.46	1.99
장애	비장애인		95.86	89.91	96.91
	장애인		4.14	10.10	3.09
	중증장애인(1,2급)		1.28	3.38	0.91
	경증장애인(3급이상)		2.58	5.84	2.00
	비등록장애인		0.28	0.88	0.18
만성질환	비해당		72.58	59.81	74.83
	있음		27.42	40.19	25.17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5.50	4.38	5.70
	3~6개월 미만 투병, 투약		1.38	1.27	1.40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20.52	34.54	18.05
	무응답		0.01	0.01	0.02

〈표 5-2-2〉 가구주제외 가구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계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혼인상태	비해당		30.80	30.43	30.87
	유배우		38.97	40.77	38.65
	사별		3.04	4.48	2.79
	이혼		0.71	1.50	0.57
	별거		0.18	0.27	0.17
	미혼		26.17	22.17	26.88
	기타(사망 등)		0.11	0.31	0.08
	무응답		0.01	0.06	0.00
종교	있음		49.96	50.80	49.81
	없음		49.97	49.13	50.12
	무응답		0.06	0.06	0.06
동거여부	동거(같이살고 있다)		95.66	96.98	95.43
	비동거		4.34	3.02	4.57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0.57	0.50	0.58
	해외근무 중		0.03	0.00	0.04
	학업(해외유학포함)		2.79	1.51	3.02
	입원, 요양		0.10	0.21	0.08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0.02	0.00	0.02
	가출		0.03	0.21	0.00
	분가		0.38	0.06	0.43
	사망		0.15	0.35	0.12
	다른곳에 맡겨진 미취학자녀		0.02	0.00	0.03
	기타(군복무중)		0.24	0.13	0.26
	무응답		0.01	0.06	0.00
	계		100.00	100.00	100.00

먼저,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가운데 가구주의 배우자가 36.88%, 가구주 및 배우자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3.88%, 가구주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등 직계 비속이 57.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직계존속이 차지하는 비율이 5.17%로 일반가구의 3.65%보다 약간 높았으며, 직계비속이 차지하는 비율은 53.76%로 일반가구의 58.42%보다 낮았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남성은 33.12%, 여성은 66.88%로 전체 가구주의 약 80%가 남성이었던 것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를 포함할 경우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남녀 성비는 33:67으로 일반가구의 33:67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연령에 있어서는 20세 미만인 경우가 36.7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20대(19.68%), 30대(14.45%), 40대(11.6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가구원의 경우도 저소득가구에서 근로활동이 미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23.07%로 일반가구의 6.64%에 비해 약 3.5배 정도나 높았다. 이에 비해 40세 미만 가구원의 비율은 일반가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구원의 학력분포는 고졸 이하(재학포함)가 26.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초졸 이하(재학 포함)가 22.41%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졸 이하 17.89%, 중졸이하 11.58%, 미취학 9.69%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경우 초졸이하의 비율이 3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졸이하가 25.77%로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고졸이하의 비율이 26.89%로 가장 높았으며, 대졸이하 19.79%, 초졸이하 19.53% 순이었다.

가구원 중 장애인의 비중은 4.14%였으며, 이 중 1, 2급의 중증 장애인이 1.28%, 3급 이상의 경증장애인이 2.58%를 차지했다. 저소득가구의 장애인 가구원 비율은 10.10%로 일반가구의 3.09%에 비해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중증장애인 비율 또한 3.38%로 일반가구의 0.91%에 비해 약 4배 정도 높았다.

가구원 중에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27.42%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두 배 정도 높았다(저소득가구 40.19%, 일반가구 25.17%).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비율 역시 저소득가구는 34.54%, 일반가구는 18.05%로 소득집단간에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유배우자 비율은 38.97%였으며, 혼인 비례당자(남자의 경우 17세 이하, 여자의 경우 15세 이하)가 30.80%, 미혼자가 26.17%로 파악되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유배우 비율은 40.77%로 일반가구의 38.65%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한 경우도 저소득가구(4.48%)가 일반가구(2.79%)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가구의 경우 혼인 비례당자의 비율과 미혼가구원의 비율이 저소득가구보다 약간 더 높았다.

종교가 있는 가구원(49.96%)은 종교가 없는 가구원(49.97%)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파악되었다. 저소득가구과 일반가구 종교가 있는 가구원이 각각 50.80%와

49.81%로 종교가 없는 저소득 가구원과 일반각구원의 비율이 각각 49.13%, 50.12%로 일반 가구의 경우 종교가 없는 가구원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전체 가구원 가운데 따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은 4.33%였으며, 이 중 학업으로 인한 비동거 가구원이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비동거 가구원의 비율은 저소득가구(3.02%)에 비해 일반가구(4.57%)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 제3절 조사대상 신규가구원의 교육수준

#### 1. 가구주 교육수준

4차 웨이브에서는 새로운 가구원으로 진입하여 3차 웨이브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신규가구원<sup>10)</sup>(523명)을 대상으로만 교육과 관련된 세부 문항을 분석하였다. 교육에 관한 주요 문항은 최종 학력, 고등학교의 유형과 소재지, 대학교의 전공계열과 소재지 등이다.

〈표 5-3-1〉 가구주의 최종 학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졸 이하		18.00	19.95	17.88
고등학교졸 이하		22.48	64.90	20.00
전문대졸 이하		20.38	15.16	20.68
대학교졸 이하		35.97	0.00	38.07
대학원졸 이상		3.18	0.00	3.37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5.52	94.48

주: 4차년도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10) 3차 웨이브에서 가구원조사표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으로서 1) 2008년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2) 2008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4차년도에 결혼, 합가 등으로 원가구 혹은 신규가구에 새로 진입한 15세 이상 가구원

<표 5-3-1>은 가구주의 최종 학력을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교 졸업 이하가 35.97%,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2.48%이었으며, 전문대 졸업 이하가 20.38%로 그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가구주 중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64.90%이며, 중학교 졸업 이하가 19.95%, 전문대 졸업 이하가 15.16%의 순이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주의 38.07%가 대학교 졸업 이하, 20.68%가 전문대 졸업 이하였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도 3.3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3-2>는 고등학교 이상(중퇴, 재학, 졸업 포함)인 가구주들만을 대상으로 고등학교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3-2> 가구주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63.79	21.87	66.17
일반계(특목:과학고)		-	-	-
일반계(특목:외국어고)		-	-	-
기타(자립형사립고, 국제고)		-	-	-
일반계(특목:예술고)		-	-	-
일반계(특목:체육고)		5.74	0.00	6.06
실업계(농업)		3.24	0.00	3.43
실업계(공업)		14.70	23.83	14.18
실업계(상업)		11.01	26.05	10.15
실업계(수산 및 해양)		-	-	-
실업계(가사 및 실업)		-	-	-
실업계(종합)		-	-	-
특성화고		1.52	28.25	0.00
대안학교		-	-	-
검정고시		-	-	-
기타		-	-	-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5.39	94.61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전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 중 94.61%가 일반가구의 가구주였고 나머지 5.39%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였다.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이상 가구주 중 63.79%가 일반계의 일반(흔히 인문계 고등학교로 불리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가 14.70%, 상업고등학교가 11.01% 순이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특성화고가 28.25%,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가 26.05%, 공업고등학교 23.83% 일반계 일반고등학교가 21.87%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서는 일반계 일반고등학교를 나온 가구주가 66.17%를 차지하였으며, 실업계 중 공업고등학교 14.18%, 상업고등학교 10.15%의 순이었다. 특수목적고 중에는 체육고를 나온 경우가 6.06%로 나타났다.

<표 5-3-3>은 출신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서울에 소재한 고등학교를 나온 가구주의 비율이 33.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7.71%, 충청남도 9.13%, 전라남도 6.77%, 충청북도 5.74%, 경기도 4.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도 저소득가구 35.37%, 일반 34.96%로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나온 가구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3-3〉 가구주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33.08	35.37	34.96
	부산광역시	17.71	19.43	16.71
	대구광역시	2.58	0.00	1.62
	인천광역시	4.50	0.00	4.76
	광주광역시	3.46	0.00	3.66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2.37	0.00	2.51
	경기도	4.98	18.93	4.19
	강원도	2.71	0.00	2.87
	충청북도	5.74	0.00	6.06
	충청남도	9.13	0.00	9.65
	전라북도	2.55	0.00	2.70
	전라남도	6.77	23.83	5.80
	경상북도	1.84	0.00	1.94
	경상남도	1.27	2.44	1.20
	제주도	1.30	0.00	1.37
	검정고시	-	-	-
	북한	-	-	-
	외국	-	-	-
	합 계	100.00 100.00	100.00 5.39	100.00 94.61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의 <표 5-3-4>는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자 중 98.60%가 일반가구 가구주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1.40%로 빈도가 매우 낮았다. 전체적으로, 대학 전공계열 중 공학계열의 비율이 42.0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16.00%, 인문계열 15.55%, 사회계열 중 법학계열이 8.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4> 가구주의 대학 전공계열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15.55	0.00	15.77
사회계열(경상계열)		7.28	100.00	5.96
사회계열(법학계열)		8.05	0.00	8.16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4.75	0.00	4.81
교육계열		3.66	0.00	3.71
공학계열		42.08	0.00	42.68
자연계열		2.64	0.00	2.68
의약계열(의학)		-	-	-
의약계열(약학)		-	-	-
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		-	-	-
예체능계열		16.00	0.00	16.23
기타		-	-	-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40	98.60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표 5-3-5>는 가구주의 출신 대학 소재지를 나타낸 것이다.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학력이 대졸자인 경우가 1케이스밖에 나타나지 않아 소득 계층별로 출신대학의 소재지를 분석하는데 무리가 있으나, 4차웨이브 신규가구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 분석하였다.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 중 35.93%는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닌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18.25%, 경기도 9.69%, 인천 9.6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일반가구의 가구주 학력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집단을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5-3-5〉 가구주의 대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35.93	0.00	36.45
부산광역시		18.25	0.00	18.51
대구광역시		4.59	0.00	4.66
인천광역시		9.64	0.00	9.78
광주광역시		1.50	0.00	1.52
대전광역시		-	-	-
울산광역시		1.21	0.00	1.22
경기도		9.69	0.00	9.82
강원도		5.14	100.00	3.79
충청북도		-	-	-
충청남도		3.66	0.00	3.71
전라북도		3.72	0.00	3.77
전라남도		4.26	0.00	4.32
경상북도		-	-	-
경상남도		0.61	0.00	0.62
제주도		1.79	0.00	1.81
검정고시		-	-	-
북한		-	-	-
외국		-	-	-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40	98.60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2. 가구원 교육수준

가구원의 최종 학력을 분석한 결과를 <표 5-3-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38.3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05%, 전문대 졸업 이하 21.51%, 중학교 졸업 이하 8.38%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층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43.59%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이하는 25.27%, 전문대 졸업 이하는 21.97%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는 대학교 졸업 이하가 40.79%,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26.35%, 전문대 졸업 이하가 21.42%의 순이었다.

〈표 5-3-6〉 가구원의 최종 학력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중학교졸 이하		8.38	8.23	8.41
고등학교졸 이하		29.05	43.59	26.35
전문대졸 이하		21.51	21.97	21.42
대학교졸 이하		38.36	25.27	40.79
대학원졸 이상		1.79	0.00	2.13
무응답		0.91	0.93	0.9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5.66	84.34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제외한 4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으로 <표 5-3-7>은 가구원이 다닌 고등학교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고등학교 이상 가구원 중 84.31%가 일반가구의 가구원이었으며, 나머지 15.69%만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7〉 가구원의 고등학교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계(일반)		70.75	57.56	73.20
일반계(특목:과학고)		0.47	1.21	0.33
일반계(특목:외국어고)		0.10	0.00	0.12
기타(자립형사립고, 국제고)		-	-	-
일반계(특목:예술고)		-	-	-
일반계(특목:체육고)		-	-	-
실업계(농업)		2.04	1.80	2.08
실업계(공업)		7.08	12.25	6.12
실업계(상업)		11.62	22.74	9.55
실업계(수산 및 해양)		0.84	0.45	0.91
실업계(가사 및 실업)		0.82	0.00	0.97
실업계(종합)		2.22	2.59	2.15
특성화고		0.72	0.00	0.85
대안학교		-	-	-
검정고시		1.84	0.39	2.11
기타		-	-	-
무응답		1.50	1.02	1.59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5.69	84.31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제외한 4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일반계의 일반고등학교를 다닌 가구원이 2/3 이상인 70.7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가 11.62%, 공업고등학교가 7.08%를 차지하였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일반고등학교의 비율이 57.56%로 일반가구 가구원의 73.20%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실업계 중 상업고등학교와 공업고등학교의 비율이 각각 22.74%, 12.25%로 일반가구의 9.55%, 6.1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8〉 가구원의 고등학교 소재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21.99	16.87	22.95
	부산광역시	7.03	4.69	7.46
	대구광역시	6.45	10.69	5.66
	인천광역시	4.82	5.72	4.65
	광주광역시	1.48	3.30	1.14
	대전광역시	2.63	5.14	2.16
	울산광역시	1.92	0.00	2.27
	경기도	14.93	14.52	15.00
	강원도	3.48	4.18	3.35
	충청북도	2.27	0.51	2.60
	충청남도	4.36	7.13	3.84
	전라북도	6.13	4.29	6.47
	전라남도	2.84	3.61	2.70
	경상북도	7.43	12.73	6.45
	경상남도	7.15	2.13	8.08
	제주도	1.75	3.47	1.43
	검정고시	0.86	0.00	1.02
	북한	-	-	-
	외국	1.51	0.00	1.79
	무응답	0.99	1.02	0.98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5.69	84.31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제외한 4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표 5-3-8〉은 고등학교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원이 다닌 고등학교의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서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다닌 가구원의 비율이 21.9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도 14.93%, 경상북도 7.43%, 경상남도 7.15%, 부산광역시 7.03%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서울 소재 고등학교를 다닌 가구원의 비율이 22.95%로 저소득가구의 16.87%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일반가구의 가구원에서 검정고시 1.02%, 외국 소재 고등학교를 다닌 경우도 1.7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5-3-9>는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대학(전문대 포함) 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원 중 88.20%가 일반가구에 속해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인 경우는 11.80%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공학계열 29.59%, 인문계열 21.19%, 자연계열 11.76%, 사회계열 중 경상계열이 11.50%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예체능계열 8.18%, 의약계열 중 간호, 치료보건의 5.11%, 교육계열 4.53%로 그 뒤를 이었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공학계열 전공자의 비율(45.40%)이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가구(27.48%)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인문계열이 16.29%, 사회계열 중 경상계열이 8.84%, 예체능계열이 8.67%, 자연계열이 8.64%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원의 경우 공학계열 다음으로는 인문계열이 21.84%로 높았고, 자연계열 12.17%, 사회계열 중 경상계열 11.86%, 예체능계열 8.11%로 그 뒤를 이었다.

<표 5-3-9> 가구원의 대학 전공계열

특성	구분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인문계열		21.19	16.29	21.84
사회계열(경상계열)		11.50	8.84	11.86
사회계열(법학계열)		0.26	0.00	0.30
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3.07	5.00	2.81
교육계열		4.53	4.81	4.49
공학계열		29.59	45.40	27.48
자연계열		11.76	8.64	12.17
의약계열(의학)		1.63	0.00	1.85
의약계열(약학)		0.53	0.00	0.61
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		5.11	0.41	5.74
예체능계열		8.18	8.67	8.11
기타		0.42	0.00	0.48
무응답		2.23	1.94	2.27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1.80	88.20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제외한 4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마지막으로, 가구원의 대학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표 5-3-10>과 같다. 경기도와 서울에 위치한 대학에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가구원의 비율이 각각 19.08%, 16.82%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산 10.41% 경상북도 8.99%, 강원도 6.36%, 대구광역시, 5.74%, 경상남도 5.52%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경기도(10.97%)와 서울(10.69%) 소재의 대학에 다닌 비율이 일반가구 가구원(20.17%, 17.6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 경상북도에 위치한 대학에 다닌 비율이 23.32%로 일반가구의 7.06%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5-3-10> 가구원의 대학교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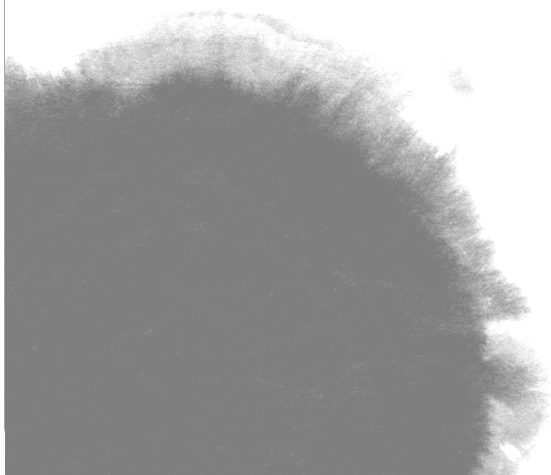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서울특별시		16.82	10.69	17.65
부산광역시		10.41	8.93	10.61
대구광역시		5.74	8.77	5.33
인천광역시		3.83	2.39	4.03
광주광역시		1.64	4.60	1.25
대전광역시		2.81	2.43	2.86
울산광역시		1.30	0.00	1.48
경기도		19.08	10.97	20.17
강원도		6.36	9.50	5.94
충청북도		2.52	0.00	2.86
충청남도		2.99	4.21	2.82
전라북도		5.33	4.66	5.42
전라남도		2.10	4.31	1.81
경상북도		8.99	23.32	7.06
경상남도		5.52	0.41	6.21
제주도		1.24	2.87	1.02
검정고시		-	-	-
북한		-	-	-
외국		1.89	0.00	2.15
무응답		1.42	1.94	1.36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1.86	88.14

주: 4차 웨이브 신규가구원 523명 중 가구주 63명을 제외한 460명을 대상으로 분석함.

# 06

## 경제활동





## 제6장 경제활동

### 제1 절 가구구성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 1. 가구주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주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표 6-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8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0.9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는 근로가능 비율이 59.8%이고, 단순 근로 미약자가 21.72%, 근로능력 없음이 2.89%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95.57%가 근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가구주의 근로능력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근로무능력의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중증장애(54.46%), 질병 또는 부상(39.2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1> 가구주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능력정도	근로가능		86.96	59.80	95.57
	단순근로가능		5.09	15.60	1.76
	단순근로미약자		6.99	21.72	2.32
	근로능력없음		0.96	2.88	0.34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근로무능력 사유	중증장애		54.46	54.29	54.92
	질병 또는 부상		39.27	38.46	41.36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5.51	7.25	1.01
	기타		0.76	0.00	2.72
	계		100.00	100.00	10.00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76.51%, 미취업자가 23.4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가구주의 취업비율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41.39%, 일반가구에서는 87.65%로 저소득층 가구의 취업 가구주 비율이 낮게 낮으며, 취업 형태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에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표 6-1-2〉 가구주의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37.50	5.72	47.58
임시직 임금근로자		9.86	6.51	10.92
일용직 임금근로자		7.17	9.20	6.53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46	1.42	0.15
고용주		4.63	1.29	5.68
자영업자		16.59	16.98	16.48
무급가족종사자		0.30	0.27	0.31
실업자		2.45	4.60	1.77
비경제활동인구		21.03	54.01	10.57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 2. 가구원의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참여 상태

가구주를 제외한 가구원의 근로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6-1-3>과 같다. 전체적으로 근로가능 비율이 90.51%로 나타났으며, 근로능력 없음이 1.5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근로가능 비율이 74.02%, 근로능력 없음이 4.04%로 나타난 반면에, 일반 가구는 근로가능 비율이 93.43%, 근로능력 없음이 1.07%로 나타났다.

근로능력이 없는 이유로는 전체적으로 중증장애(45.78%)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층 가구는 중증장애(50.91%) 및 질병 또는 부상(31.36%)을, 일반 가구는 중증장애(42.53%),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29.50%)를 주요 이유로 응답하였다.

〈표 6-1-3〉 가구원의 근로 능력 정도 및 근로 무능력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가능		90.51	74.02	93.43
단순근로가능		3.32	9.24	2.27
단순근로 미약자		4.6	12.69	3.17
근로능력 없음		1.51	4.04	1.07
모름/무응답		0.06	0.01	0.06
계		100.00	100.00	100.00
중증장애		45.78	50.91	42.53
질병 또는 부상		25.11	31.36	21.15
노령으로 인한 심신무능력		24.25	15.97	29.50
기타		0.61	0.00	0.99
모름/무응답		4.25	1.76	5.83
계		10.00	100.00	100.00

주: 만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응답함.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살펴보면, 취업자가 43.81%, 미취업자가 5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중 93.59%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가구원의 취업비율이 저소득층 가구에서는 27.89%, 일반가구에서는 46.64%로 나타났으며, 취업 형태에서도 상용직 임금근로자 비율이 저소득 가구에 비해 일반 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6-1-4〉 가구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상용직 임금근로자		17.61	2.89	20.22
임시직 임금근로자		11.17	5.44	12.19
일용직 임금근로자		5.05	7.16	4.68
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0.19	0.56	0.12
고용주		0.78	0.33	0.86
자영업자		3.84	3.78	3.85
무급가족종사자		5.17	7.71	4.72
실업자		3.60	5.53	3.25
비경제활동인구		52.53	66.57	50.04
모름/무응답		0.06	0.01	0.07
계		100.00	100.00	100.00

주: 만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응답함.

## 제2절 가구구성원의 취업실태

### 1. 가구주의 취업실태

취업 가구주 중 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1>과 같다. 고용관계로는 직접고용의 비율이 90.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고용(96.9%)이, 근로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74.93%)이, 근로지속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계속근로가능(75.61%)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간접고용(10.32%), 시간제(11.13%),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비율(57.75%)이 일반가구 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 가구주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1>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접고용		90.05	81.73	90.97
간접고용		5.43	10.32	4.89
특수고용		4.46	7.80	4.09
모름/무응답		0.06	0.15	0.05
계		100.00	100.00	100.00
시간제		2.99	11.13	2.09
전일제		96.90	88.30	97.86
모름/무응답		0.11	0.57	0.05
계		100.00	100.00	100.00
계약기간 정해짐		25.01	49.94	22.24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74.93	49.90	77.71
모름/무응답		0.06	0.16	0.05
계		100.00	100.00	100.00
계속 근로 가능		75.61	42.09	79.34
계속 근로 불가능		24.32	57.75	20.61
모름/무응답		0.07	0.16	0.05
계		100.00	100.00	100.00

제4차 웨이브에서는 임금 근로자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임금근로자 가구주가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라는 응



답이 47.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25.95%), “묵시적·관행적 계약의 종료”(20.56%)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 가구주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였으나, 저소득층 가구주의 경우 “묵시적·관행적 계약의 종료”(25.6%)와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25.52%)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6-2-2〉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25.95	25.52	26.08
묵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20.56	25.60	18.99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7.21	42.27	48.75
현재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5.00	5.02	4.99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11	0.25	0.07
특정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91	1.07	0.86
무응답		0.26	0.27	0.26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취업실태 항목으로서 4차 웨이브에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실태 문항이 추가되었다.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응답이 17.52%를 나타냈다. 소득집단별로 이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대부분(92.24%)은 노동조합이 없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18.92%로 저소득층(5.0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6-2-3〉 임금 근로자 가구주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73.29	92.24	71.16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됨		4.95	2.32	5.25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4.24	0.35	4.68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17.52	5.09	18.91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은 다음 <표 6-2-4>와 같다. 가구주의 업종은 제조업(19.73%), 건설업(10.82%), 도매 및 소매업(10.36%)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는 농업 및 임업(30.14%)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는 제조업(21.0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4> 취업 가구주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8.57	30.14	5.34	
	광업		0.36	0.24	0.37	
	제조업		19.73	10.84	21.0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91	0.00	2.2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94	0.36	1.03	
	건설업		10.82	8.28	11.21	
	도매 및 소매업		10.36	12.98	9.97	
	운수업		7.68	5.64	7.99	
	숙박 및 음식점업		4.10	6.40	3.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32	1.44	3.61	
	금융 및 보험업		3.19	0.80	3.55	
	부동산 및 임대업		1.31	0.75	1.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3	0.07	1.7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15	5.98	5.0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85	3.23	7.39	
	교육 서비스업		4.89	2.16	5.3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	1.19	2.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4	1.55	1.7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82	5.95	4.65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0.62	2.00	0.40	
국제 및 외국기관		0.11	0.00	0.13		
계			100.00	100.00	100.00	
직종	관리자		4.51	1.89	4.9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68	3.52	15.2	
	사무 종사자		15.03	3.25	16.8	
	서비스 종사자		6.63	6.83	6.6	
	판매종사자		9.43	8.19	9.62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8.28	28.78	5.2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39	9.73	12.79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4.85	7.17	16	
	단순노무종사자		14.70	30.40	12.35	
	군인		0.43	0.00	0.5	
	모름/무응답		0.06	0.24	0.03	
	계			100.00	100.00	100.00

주: 업종 및 직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제 6차 개정)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함.

가구주의 직종은 사무종사자(15.03%),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4.85%), 단순노무종사자(14.7%) 및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3.6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2.39%)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았을 때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는 단순노무종사자(30.4%)와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28.78%)가, 일반 가구는 사무종사자(16.8%)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5.2%)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4명 이하의 사업장이 36.75% 정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4명 이하가 63.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의 가구주도 4명 이하가 32.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일반가구 가구주의 경우 1,000명 이상 비율이 21.38%로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가구주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5〉 취업 가구주의 사업장 규모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6.75	63.70	32.71
5~9명		10.98	13.07	10.67
10~29명		11.19	9.49	11.45
30~49명		4.76	3.18	4.99
50~69명		3.04	0.69	3.40
70~99명		2.32	0.86	2.54
100~299명		6.81	3.22	7.35
300~499명		2.35	0.65	2.61
500~999명		2.35	0.70	2.60
1,000명 이상		19.13	4.11	21.38
잘 모름		0.27	0.33	0.27
무응답		0.03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취업 가구주 중에서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 둔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1.94% 정도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가구주(11.06%)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17.85%)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6〉 취업 가구주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직 및 폐업 여부	있다	11.94	17.85	11.06
	없다	88.06	82.15	88.94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사직 혹은 폐업의 구체적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18.67%),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17.48%), “일자리(직장)나 실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13.45%)의 사유가 높은 비율 나타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27.58%),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20.41%)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2-7〉 가구주의 사직 혹은 폐업의 구체적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구체적 이유	파산, 폐업, 휴업 등	13.45	13.99	13.32
	정리해고	1.94	3.40	1.59
	권고사직/명예퇴직	2.86	1.09	3.29
	정년퇴직	0.34	0.00	0.42
	계약기간 만료	5.97	7.13	5.70
	소득/보수 적음	7.22	8.49	6.91
	일거리 부족	17.48	27.58	15.04
	일의 장래성 없음	4.16	4.12	4.17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3.64	0.38	4.43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4.26	3.14	4.53
	자기(가족) 사업 시작	7.27	4.90	7.84
	가사 문제	2.80	2.21	2.94
	건강/고령 등	5.66	8.15	5.06
	거리가 멀어서	1.63	0.00	2.02
	학업/군 입대 등	-	-	-
	좀 더 좋은 일자리	18.67	11.45	20.41
	출산/육아	0.21	1.07	0.00
	기타	1.40	0.00	1.74
모름/무응답	1.04	2.90	0.59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주의 1년간 근로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1.68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2.23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95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보다 근로 개월, 일한 달 근로일수, 주당 근로 시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표 6-2-8〉 가구주의 1년간 근로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및 주당 근로시간

(단위: 월, 일,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1.68	11.20	11.75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2.23	20.29	22.52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95	40.26	50.24

## 2. 가구원의 취업실태

취업 가구원 중 임금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9>와 같다. 고용관계로는 직접고용(89.79%),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고용(89.06%) 이, 근로계약형태로는 무기계약(61.23%)이, 근로지속가능성에 대한 응답으로는 계속근로가능(65.22%)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간접고용의 비율(8.65%)이 일반 가구의 경우(4.5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제의 비율(26.79%) 역시 일반가구의 경우(9.43%)보다 높은 것을 보였다. 무기계약의 비율은 저소득층의 경우(43.99%) 일반가구(62.55%) 보다 낮았고, 계속 근로가 불가능한 비율(58.13%)이 일반가구 (32.6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저소득 가구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2-9〉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고용관계,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의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직접고용		89.79	85.61	90.11
간접고용		4.87	8.65	4.58
특수고용		5.00	5.68	4.95
모름/무응답		0.34	0.06	0.36
계		100.00	100.00	100.00
시간제		10.66	26.79	9.43
전일제		89.06	73.15	90.27
모름/무응답		0.28	0.06	0.3
계		100.00	100.00	100.00
계약기간 정해짐		38.49	55.95	37.15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음		61.23	43.99	62.55
모름/무응답		0.28	0.06	0.3
계		100.00	100.00	100.00
계속 근로 가능		65.22	41.81	67.01
계속 근로 불가능		34.44	58.13	32.63
모름/무응답		0.34	0.06	0.36
계		100.00	100.00	100.00

주: 만15세 이상 가구원 중 임금근로자 가구원만 응답함.

제4차 웨이브에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에 대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임금근로자 가구원이 근로지속 불가능 사유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라는 응답이 51.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26.15%), “목시적·관행적 계약의 종료”(18.88%) 등의 응답 순으로 나타나났다.

〈표 6-2-10〉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26.15	22.53	26.63
목시적·관행적인 계약 종료		18.88	27.68	17.69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51.41	47.07	51.99
현재하는 업무(프로젝트)의 종료		1.73	0.98	1.83
현재의 일자리에서 이전에 일하던 사람 복귀		0.19	0.44	0.16
특정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0.67	1.19	0.6
무응답		0.97	0.11	1.10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 이러한 경향을 유지하였으나,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경우 “묵시적·관행적 계약의 종료”(27.68%) 비율이 “정해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22.53%)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4차 웨이브에서 추가된 문항으로서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6.57%에 머물렀고, 노동조합이 없는 비율은 83.27%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볼 경우,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중 노조에 가입한 비율(2.89%)이 일반가구(6.85%)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91.78%)가 일반가구(82.63%)보다 높았다.

<표 6-2-11> 임금 근로자 가구원의 노동조합 가입 실태

(단위: %)

	전체	저소득	일반
노동조합 없음	83.27	91.78	82.63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 됨	4.19	3.75	4.2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5.97	1.58	6.29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6.57	2.89	6.85
계	100.00	100.00	100.00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은 다음의 <표 6-2-12>와 같다. 가구원의 업종은 제조업 15.14%, 도매 및 소매업 14.87%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농업 및 임업(30.02%)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일반 가구는 제조업(15.61%)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취업 가구원의 직종은 사무종사자(18.74%), 단순노무종사자(17.89%)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소득가구는 농·임·어업 숙련 근로자(28.18%)와 단순노무종사자(27.8%)가, 일반가구는 사무종사자(19.95%)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6-2-12〉 취업 가구원의 업종 및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8.03	30.02	5.7
	광업		0.09	0.00	0.10
	제조업		15.14	10.67	15.6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39	0.00	0.43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9	0.25	0.07
	건설업		3.39	2.90	3.34
	도매 및 소매업		14.87	14.49	14.91
	운수업		2.27	0.69	2.44
	숙박 및 음식점업		9.83	12.24	9.5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11	1.59	3.27
	금융 및 보험업		4.45	1.72	4.74
	부동산 및 임대업		0.89	0.14	0.9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2	0.23	1.5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5	2.73	3.6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61	3.14	3.66
	교육 서비스업		13.86	4.46	14.8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76	2.10	6.1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35	2.82	2.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13	5.73	5.06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1.82	4.08	1.58
국제 및 외국기관		0.04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직종	관리자		1.09	0.26	1.1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1.64	6.80	23.21
	사무 종사자		18.74	7.26	19.95
	서비스 종사자		11.63	12.41	11.55
	판매종사자		13.25	11.51	13.44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7.53	28.18	5.3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36	3.93	4.4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3.71	1.81	3.91
	단순노무종사자		17.89	27.80	16.85
	군인		0.03	0.00	0.04
	모름/무응답		0.13	0.04	0.13
	계			100.00	100.00

주: 1) 업종 및 직종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함.  
 2)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취업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7.93%가 4명 이하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층 가구는 4명 이하가 66.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 가구도 4명 이하가 3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다. 그러나 일반가구의 경우 1,000명 이상 비율이 15.7%로 높게 나타나, 일반 가구의 가구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규모가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3〉 취업 가구원의 사업장 규모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4명	37.93	66.73	34.88
5~9명	12.07	10.98	12.18
10~29명	14.33	10.07	14.79
30~49명	4.75	3.24	4.91
50~69명	3.58	1.14	3.84
70~99명	1.96	0.34	2.14
100~299명	6.26	1.38	6.78
300~499명	2.24	0.80	2.39
500~999명	1.37	0.80	1.43
1,000명 이상	14.58	3.94	15.70
잘 모름	0.80	0.54	0.83
무응답	0.13	0.04	0.13
계	100.00	100.00	100.00

주: 15세 이상 가구원 중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취업 가구원 중에서 1년간 직장(사업)을 그만 둔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약 16.57%정도가 직장을 그만 둔 경험이 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가구원 (16.17%)보다는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이 직장을 그만 둔 경험(20.33%)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6-2-14〉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만둔 경험여부	있다	16.57	20.33	16.17
	없다	83.43	79.67	83.83
계	100.00	100.00	100.00	

직장(사업)을 그만 둔 가구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2-1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겨서”(25.4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10.71%),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9.56%),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9.48)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득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16.58%)의 비율이, 일반가구의 경우 “좀 더 좋은 일거리가 생겨서”(26.6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2-15> 취업 가구원의 1년간 사직 혹은 폐업 여부의 구체적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유	파산, 폐업, 휴업 등		8.29	16.58	7.20
	정리해고		1.67	4.17	1.34
	권고사직/명예퇴직		0.09	0.00	0.11
	정년퇴직		-	-	-
	계약기간 만료		3.90	6.69	3.54
	소득/보수 적음		9.56	13.25	9.08
	일거리 부족		10.71	15.74	10.05
	일의 장래성 없음		8.03	3.28	8.66
	적성/지식/기능 안 맞음		2.27	0.00	2.57
	근로시간/근로환경 열악		9.48	2.52	10.39
	자기 사업 시작		3.87	4.63	3.77
	가사 문제		1.86	2.19	1.82
	건강/고령 등		6.47	10.64	5.93
	거리가 멀어서		2.60	2.06	2.67
	학업/군입대 등		3.90	1.77	4.17
	좀 더 좋은 일자리		25.48	16.48	26.67
	출산/육아		0.24	0.00	0.26
	기타		1.49	0.00	1.68
모름/무응답		0.09	0.00	0.09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1년간 근로개월 수는 평균적으로 10.83개월,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21.87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8.95시간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보다 근로 개월, 일한 달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의 평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16〉 가구원의 1년간 근로 개월 수 및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단위: 월, 일,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간 평균 근로 개월 수		10.83	10.68	10.84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		21.87	20.63	22.00
주당 평균 근로시간		48.95	40.26	50.24

### 제3절 가구구성원의 미취업실태

#### 1. 가구주의 미취업실태

앞서 제 1절 경제활동 참여상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주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체 가구주의 21.03%를 차지하였다.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6-3-1>과 같다. 근로의사 없음(66.3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구직활동포기(18.76%)가 뒤를 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68.02%)와 일반 가구의 가구주(63.76%) 모두에서 근로의사 없음의 사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6-3-1〉 가구주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4.59	5.55	3.03
군복무		0.25	0.22	0.29
학업		0.17	0.00	0.45
가사		4.33	3.38	5.86
양육		0.46	0.11	1.02
간병		1.47	1.35	1.65
구직활동포기		18.76	17.69	20.48
근로의사 없음		66.39	68.02	63.76
기타		3.40	3.68	2.97
모름/무응답		0.18	0.00	0.49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주가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만 분석함.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주를 대상으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10.99%로 나타났다<sup>1)</sup>.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는 8.34%, 일반 가구의 가구주는 14.89%로, 일반 가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3-2〉 가구주의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0.99	8.34	14.89
아니다		89.01	91.66	85.11
계		100.00	100.00	100.00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이 75.92%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9.91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의 경우 1년 이상 3년 미만의 구직기간을 갖는 비율이 25.14%인데 반해, 일반가구의 가구주의 경우는 8.45%에 머물렀으며, 평균 구직개월 수는 저소득가구의 가구주가 약 11.64개월, 일반 가구의 가구주가 약 8.48개월로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3〉 가구주의 총 구직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75.92	67.32	83.00
1년 이상 3년 미만		15.99	25.14	8.45
3년 이상 5년 미만		4.90	2.64	6.76
5년 이상 10년 미만		2.77	3.94	1.79
10년 이상 15년 이하		0.42	0.96	0.00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9.91	11.64	8.48

11) 가구주 전체 미취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0.43%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는 응답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여기서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가구주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약 3.1%로 나타난다.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을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3-4>와 같다. 구직 상 어려움 중, 개인 특성으로는 “나이 때문”이라는 의견이 3.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2.69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의 점수가 평균 1점대로 개인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82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12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개인특성 중 “나이 때문에”(3.72점),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2.87점), “건강문제로”(2.43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특성 중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4.13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36)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4> 가구주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5점 척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특성	나이 때문에	3.48	3.72	3.27
	성차별 때문에	1.65	1.71	1.60
	외모 때문에	1.59	1.58	1.59
	학력이 낮기 때문에	1.88	1.83	1.92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69	2.87	2.54
	경력이 부족해서	2.57	2.70	2.47
	건강문제로	2.04	2.43	1.73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2.18	1.95	2.35
	신용불량자라서	1.49	1.46	1.50
가구특성	가사일 때문에	1.16	1.16	1.17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14	1.13	1.14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14	1.06	1.21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12	1.03	1.20
노동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82	4.13	3.58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12	3.36	2.93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2.30	2.05	2.51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2.46	2.20	2.67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2.33	2.12	2.50

주: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평균점수를 산출해 나타냄.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주가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 즉, 실업 가구주의 희망 소득을 물어본 결과, 월평균 약 2,095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희망소득이 월평균 약 1,826천원, 일반가구 가구주가 월평균 약 2,325천원으로 일반 가구 가구주의 희망소득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3-5〉 가구주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sup>12)</sup>

(단위: 천원)

구분	특성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00	2,095.81	88.14
	저소득	1,700	1,826.34	104.69
	일반	2,000	2,325.31	135.74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주 중 실업자가 아닌 인구, 즉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를 묻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1년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8.76%였으며, 일반가구의 가구주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9.26%)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8.42%)보다 높았다.

〈표 6-3-6〉 비경제활동 가구주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8.76	8.42	9.26
	아니다	91.24	91.58	90.74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주, 즉 구직단념 가구주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가 있었을 경우 일을 할 수 있었는

12) KOWEPS 제3차 웨이브에서는 본 항목을 전체 미취업자에게 묻고 있는 반면, 2009년 4차 웨이브에서는 실업자에게만 묻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에 비해 희망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자”를 물어본 결과, 71.56%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가구주(81.5%)가 저소득가구 가구주(64.06%) 보다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6-3-7〉 가구주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71.56	64.06	81.50
아니다		28.44	35.94	18.50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가구주에게 취업을 원하면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비율이 23.85%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8〉 가구주의 지난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5.75	11.21	0.00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3.85	16.38	31.72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0.70	14.42	6.78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1.13	0.00	2.31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66	4.56	8.87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47.00	43.85	50.32
기타		3.84	7.50	0.00
모름/무응답		1.07	2.08	0.00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가구주 모두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저소득가구의 경우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일반가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 2. 가구원의 미취업실태

제 1절 가구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상태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구원 중 비경제활동 인구는 52.53%를 차지한다. 이들의 비경제활동 사유를 살펴보면, <표 6-3-7>과 같다. 첫째로 학업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사가 32.5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 가구는 가사, 학업, 근로의사 없음 등의 순으로, 일반가구는 학업, 가사, 양육, 근로의사 없음 등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6-3-9> 가구원의 비경제활동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근로무능력		2.74	5.53	2.08
군복무		1.05	1.16	1.02
학업		35.20	25.51	37.48
가사		32.51	32.21	32.58
양육		10.78	5.41	12.04
간병		0.58	1.80	0.29
구직활동포기		3.50	7.07	2.66
근로의사 없음		11.86	19.35	10.10
기타		1.53	1.85	1.46
모름/무응답		0.25	0.11	0.29
계		100.00	100.00	100.00

주: 가구원이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만 분석함.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지난 4주간 구직활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응답이 8.26%로 나타났다<sup>3)</sup>.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은 10.1%, 일반 가구의 가구원은 7.84%로, 저소득 가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의 구직활동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6-3-10〉 가구원의 지난 4주 동안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8.26	10.10	7.84
	아니다	91.69	89.86	92.12
	모름/무응답	0.05	0.04	0.05
	계	100.00	100.00	100.00

구직활동을 하였던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은 1년 미만인 69.3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2.16개월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구직 기간이 약 16.76개월, 일반 가구의 구직기간이 약 10.8개월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의 구직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표 6-3-11〉 가구원의 총 구직기간

(단위: %, 월)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69.33	63.64	71.00
	1년 이상 3년 미만	24.43	23.72	24.64
	3년 이상 5년 미만	4.27	6.11	3.73
	5년 이상 10년 미만	1.13	3.91	0.31
	10년 이상 15년 이하	0.84	2.62	0.32
	계	100.00	100.00	100.00
	평균 구직 개월 수	12.16	16.76	10.80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을 개인 특성, 가구 특성, 노동시장 특성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6-3-12>와 같다. 저소득과 일반 가구 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

13) 가구원의 전체 미취업자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41%인데, 근로능력이 없는 미취업자는 응답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여기서의 결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편, 가구원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비율인 실업률은 약 7.59%로 나타난다.

나지 않았다. 구직 상 어려움 중, 개인 특성으로는 “경력이 부족해서” 라는 의견이 2.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2.78점), “나이 때문에”(2.76점)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 특성으로는 전 항목의 점수가 1점대로 개인 특성이나 노동시장 특성에 비해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사나 양육의 문제가 비교적 큰 어려움으로 꼽혔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특성으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3.36점),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3.09점) 등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3-12〉 가구원의 구직 상 어려움

(단위: 5점 척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특성	나이 때문에		2.57	2.95	2.46
	성차별 때문에		1.58	1.71	1.54
	외모 때문에		1.60	1.88	1.51
	학력이 낮기 때문에		2.20	2.64	2.06
	기술이나 기능이 부족해서		2.78	3.16	2.67
	경력이 부족해서		2.90	3.21	2.80
	건강문제로		1.79	2.20	1.67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2.23	2.27	2.21
	신용불량자라서		1.22	1.39	1.17
가구특성	가사일 때문에		1.45	1.65	1.39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1.41	1.63	1.34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1.25	1.52	1.16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1.25	1.28	1.25
노동시장 특성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3.36	3.67	3.27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09	3.37	3.00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2.63	2.87	2.56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3.03	3.09	3.01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2.90	3.00	2.87

주: 매우 그렇다 5, 대체로 그런 편이다 4, 그저 그렇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전혀 그렇지 않다 1로 평균점수를 산출해서 기입함.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한 경우, 가구원의 희망소득을 살펴보면, 월평균 약 1,670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의 희망소득 월 평

균은 약 1,461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서는 1,731천원으로 일반가구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3-13〉 가구원의 취업(사업) 시 한 달간의 희망소득<sup>14)</sup>

(단위: 천원)

구분	특성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500	1,669.78	65.52
	저소득	1,500	1,460.53	58.59
	일반	1,500	1,731.28	86.57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 가구원 중 실업자가 아닌 인구, 즉 비경제활동 인구에 대해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를 물어본 결과 “1년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적으로 6.52%였으며, 일반가구(6.2%)에 비해 저소득의 가구(7.91%)에서 더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6-3-14〉 비경제활동 가구원의 지난 1년간 구직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6.52	7.91	6.20
	아니다	93.32	92.05	93.62
	모름/무응답	0.16	0.04	0.18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에 대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주에 알맞은 일거리가 있었을 경우 일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57.12%가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가구원(53.38%)보다 저소득가구 가구원(67.75%)이 “지난 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 가능했다”는 응

14) 한국복지패널 제3차 웨이브에서는 본 항목을 전체 미취업자에게 묻고 있는 반면, 2009년 4차웨이브에서는 실업자에게만 묻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에 비해 희망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답의 비율이 높았다.

〈표 6-3-15〉 가구원의 지난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근로가능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57.12	69.75	53.38
아니다		41.31	30.25	44.58
모름/무응답		1.57	0.00	2.04
계		100.00	100.00	100.00

“지난 주 일거리가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응답한 가구원에게 취업을 원하면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라는 비율이 34.13%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7.62%로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 가구원의 경우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는 것 같아서”(34.77%)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42.8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3-16〉 가구원의 지난주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11.07	10.21	11.38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4.13	32.34	34.77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12.39	9.35	13.47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89	3.12	6.88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0.89	0.00	1.20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27.62	42.81	22.17
기타		5.41	2.17	6.58
모름/무응답		2.60	0.00	3.54
계		100.00	100.00	100.00

## 제4 절 가구구성원의 직업기술과 직종

### 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및 직종

2008년 1년 동안 새롭게 직업기술을 취득한 가구주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1.45%에 불과했으며, 기술사, 기능장과 같은 국가기술자격검정 체계상 상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의 비율이 0.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반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 가구주의 새로운 직업기술 습득비율이 낮았다.

〈표 6-4-1〉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	-	-
기능장		-	-	-
기사		0.02	0.00	0.03
산업기사		0.13	0.00	0.17
기능사		0.34	0.28	0.35
기타 공인 면허자격증		0.89	0.66	0.96
자격증 없는 기능자		0.07	0.18	0.04
없음		98.55	98.88	98.45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7년도와 비교하여 2008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을 의미함.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6-4-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사회(16.04%), 사무관리(12.31%), 정보처리(10.41%)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가구주의 경우 사무관리(17.43%), 교통(17.09%), 보건·의료·사회(15.67%), 정보처리(15.74%)의 비율이, 일반가구 가구주의 경우 보건·의료·사회(16.12%), 기계·금속(11.66%), 사무관리(11.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6-4-2〉 가구주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9.54	0.00	11.66
화학·세라믹		-	-	-
전기·전자		3.04	0.00	3.71
통신		1.68	0.00	2.06
조선		0.92	0.00	1.12
항공		-	-	-
섬유		0.70	3.84	0.00
토목·건축		1.69	0.00	2.06
광업자원		-	-	-
정보처리		10.41	15.73	9.23
국토개발		-	-	-
농림		-	-	-
해양		-	-	-
산업디자인		-	-	-
에너지		-	-	-
환경		-	-	-
안전관리		7.28	0.00	8.9
산업응용		-	-	-
교통		7.29	17.09	5.11
공예		-	-	-
사무관리		12.31	17.43	11.18
음료품·식료품		2.31	12.71	0.00
위생		-	-	-
보건·의료·사회		16.04	15.67	16.12
금융·무역·유통		7.26	0.00	8.88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8.05	9.43	7.74
외국어·관광		-	-	-
기타		11.48	8.10	12.23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7년도와 비교하여 2008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함.

## 2.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및 직종

2008년 1년 동안 새롭게 직업기술을 취득한 가구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3.02%에 불과했으며, 이중 기타 공인면허자격증의 비율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가구주에 비해 저소득 가구주의 새로운 직업기술 습득비율이 낮았으며, 습득한 직업기술의 종류도 기능사, 기타 공인 면허 자격증, 자격증 없는 기능자로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4-3〉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술사		-	-	-
기능장		0.05	0.00	0.06
기사		0.25	0.00	0.3
산업기사		0.19	0.00	0.22
기능사		0.68	0.39	0.73
기타 공인 면허자격증		1.56	0.65	1.72
자격증 없는 기능자		0.28	0.37	0.26
없음		96.99	98.59	96.71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7년도와 비교하여 2008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을 의미함.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의 직종에 대하여 살펴보면 <표 6-4-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보건·의료·사회(24.77%), 정보처리(16.7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에서는 보건·의료·사회(45.88%)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정보처리(18.09%)의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일반가구에서도 보건·의료·사회(23.28%), 정보처리(16.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4-4〉 가구원의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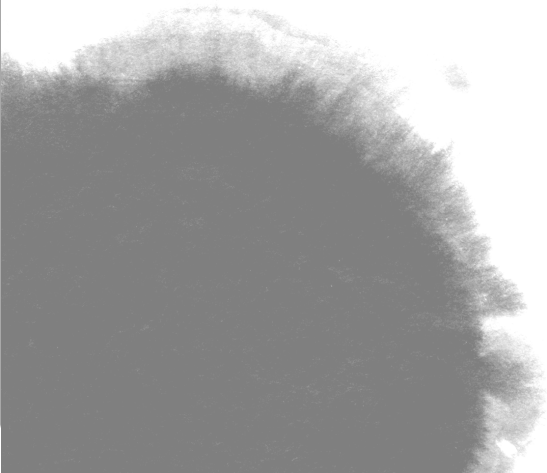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계·금속		6.84	7.06	6.82
화학·세라믹		-	-	-
전기·전자		0.42	2.37	0.28
통신		2.33	0.00	2.50
조선		-	-	-
항공		-	-	-
섬유		-	-	-
토목·건축		4.05	0.00	4.33
광업자원		-	-	-
정보처리		16.78	18.09	16.69
국토개발		-	-	-
농림		1.16	0.00	1.24
해양		-	-	-
산업디자인		1.66	8.07	1.20
에너지		-	-	-
환경		-	-	-
안전관리		1.11	0.00	1.19
산업응용		-	-	-
교통		0.70	0.00	0.75
공예		1.30	0.00	1.39
사무관리		7.26	0.00	7.77
음료품·식료품		8.00	0.00	8.57
위생		4.27	12.52	3.69
보건·의료·사회		24.77	45.88	23.28
금융·무역·유통		2.96	0.00	3.17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3.42	0.00	3.66
외국어·관광		6.88	0.00	7.36
기타		6.09	6.01	6.11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7년도와 비교하여 2008년도에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에 해당하는 직종을 의미함.



07

기공경제





## 제1절 소득

### 1. 경상소득

KOWEPS의 4차웨이브에서는 전체 대상 가구뿐만 아니라 소득집단별 2개의 계층(중위 균등화소득<sup>15)</sup>의 60% 이상인 일반가구와 그 미만인 저소득가구)으로 구분해서 비교·분석하였다. 7장 가구경제에서는 먼저 1절에서 가구의 경상소득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으로 경상소득을 구성하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 그리고 4차 조사에서 새로 추가해서 조사한 (기타 정부보조금 3개 항목, 기타소득 1개 항목) 소득을 살펴보았다. 2절에서는 총 17개 지출비목별로 가구지출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 3절에서는 가구부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7-1-1>에서 전체 가구의 연간 평균 경상소득은 39,868천원이며 중위 경상소득은 33,120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0,151천원, 일반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50,481천원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편 <표 7-1-2>에서 경상소득분포를 살펴보면 50,000천원 이상의 가구는 27.75%로 4가구 중의 1가구 이상은 연간 50,000천원 이상의 경상소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의 구간은 10%대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소득집단별 가구구분을 통해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50,000천원 이상 구간에 전체 일반가구중 37.66%가 포함되어 있고, 40,000천원 이상 50,000천원 미만 사이에도 16.43%가 분포되어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가구는 20,000천원 미만이 91.02%로 대부분을 차

15) (경상소득 - 공공부조소득)/√가구원수

지함을 알 수 있다.

〈표 7-1-1〉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33,120	39,868	446.53
저소득	9,620	10,151	327.63
일반	42,100	50,481	563.22

〈표 7-1-2〉 가구의 연간 경상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000 미만	13.84	52.60	-
10,000 ~ 20,000 미만	14.90	38.42	6.50
20,000 ~ 30,000 미만	16.06	8.75	18.67
30,000 ~ 40,000 미만	15.34	0.23	20.74
40,000 ~ 50,000 미만	12.11	-	16.43
50,000 이상	27.75	-	37.66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에서 30,000~40,000구간의 경상소득이 나타난 것은 근로소득은 적으나 가구규모가 큰 가구들의 공공부조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 2. 근로소득

<표 7-1-3>, <표 7-1-4> 그리고 <표 7-1-5>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분포와 기초통계를 구한 것으로서 근로소득으로는 상용근로소득과 임시·일용근로소득을 합하여 임금소득으로 파악하였고, 그 외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표 7-1-3>로부터 임금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임금소득의 경우 보유비율이 73.20%로 가구의 주 소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사업소득은 21.89%로 5가구 중에 1가구는 사업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며, 농림축어업소득은 6.95%, 부업소득<sup>16)</sup>은 1.48%로 10% 미만으

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에서는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83.56%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임금소득이 있는 가구가 44.21%로 약 2배 이상의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사업소득도 일반가구(24.91%)가 저소득가구(13.43%) 보다 보유비율이 높으며, 반면 농림축어업소득과 부업소득은 근소한 차이지만 일반가구(각각 5.69%, 1.20%) 보다 저소득가구(각각 10.47%, 2.26%)가 더 높은 보유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7-1-3〉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없다	26.80	55.79	16.44
	있다	73.20	44.21	83.56
사업소득	없다	78.11	86.57	75.09
	있다	21.89	13.43	24.91
농림축어업소득	없다	93.05	89.53	94.31
	있다	6.95	10.47	5.69
부업소득	없다	98.52	97.74	98.8
	있다	1.48	2.26	1.2
계		100.00	100.00	100.00

주: 부업소득의 비율이 3차 웨이브 7.47%에 비해 많이 줄어든 이유는 4차 웨이브부터는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표 7-1-4>로부터 임금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26,015천원, 19,380천원, 사업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6,494천원, 0원, 농림축어업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739천원, 0원, 부업소득에 대한 평균과 중위는 각각 20천원, 0원이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평균 임금소득은 각각 3,868천원, 33,924천원, 사업소득은 각각 -287천원, 8,915천원, 농림축어업소득은 각각 380천원, 867천원, 부업소득은 15천원, 21천원으로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가 모든 근로소득항목들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3차 웨이브에서는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주된 경제활동의 소득을 적고, 나머지 부업소득으로 조사하였으나, 4차 웨이브 부터는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득을 각각 조사하였다. 또한 만 15세 미만의 소득을 부업소득으로 조사하였다.

〈표 7-1-4〉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임금소득	전체	19,380	26,015	378.13
	저소득	0	3,868	125.75
	일반	30,000	33,924	511.83
사업소득	전체	0	6,494	300.80
	저소득	0	-287	330.33
	일반	0	8,915	419.53
농림축어업 소득	전체	0	739	63.82
	저소득	0	380	32.25
	일반	0	867	95.71
부업소득	전체	0	20	4.38
	저소득	0	15	4.57
	일반	0	21	6.26

주: 해당소득이 없는 가구까지도 포함해서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전체가구의 임금소득,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에 대한 분포형태는 <표 7-1-5>과 같다. 먼저 임금소득의 분포는 30,000천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37.16%인 반면 5,000천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도 33.16%로 나타났다. 30,000천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 가구는 거의 일반가구이고, 저소득가구의 72.15%가 5,000천원 미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간 임금소득격차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업소득, 농림축어업소득, 부업소득의 경우 주로 5,000천원 미만에 주로 분포하는데 각각 81.69%, 96.59%, 99.92%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분포차이가 확연하게 나지 않는다. 이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근로소득격차가 주로 임금소득차이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1-5〉 가구의 연간 근로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임금소득	5,000 미만	33.16	72.15	19.24
	5,000 ~ 10,000 미만	5.84	11.61	3.78
	10,000 ~ 15,000 미만	5.90	8.36	5.02
	15,000 ~ 20,000 미만	5.83	5.61	5.91
	20,000 ~ 25,000 미만	6.31	1.46	8.04
	25,000 ~ 30,000 미만	5.80	0.10	7.84
	30,000 이상	37.16	0.72	50.18
	계	100.00	100.00	100.00
사업소득 (자영업 포함)	5,000 미만	81.69	94.81	77.01
	5,000 ~ 10,000 미만	2.25	2.15	2.28
	10,000 ~ 15,000 미만	2.15	1.44	2.40
	15,000 ~ 20,000 미만	2.07	1.00	2.45
	20,000 ~ 25,000 미만	2.35	0.61	2.97
	25,000 ~ 30,000 미만	1.56	0.00	2.12
	30,000 이상	7.94	0.00	10.78
	계	100.00	100.00	100.00
농림축어업소득	5,000 미만	96.59	97.00	96.44
	5,000 ~ 10,000 미만	1.29	2.43	0.89
	10,000 ~ 15,000 미만	0.63	0.55	0.66
	15,000 ~ 20,000 미만	0.34	0.02	0.46
	20,000 ~ 25,000 미만	0.22	0.00	0.30
	25,000 ~ 30,000 미만	0.28	0.00	0.37
	30,000 이상	0.65	0.00	0.88
	계	100.00	100.00	100.00
부업소득	5,000 미만	99.92	99.94	99.91
	5,000 ~ 10,000 미만	0.06	0.06	0.06
	10,000 ~ 15,000 미만	-	-	-
	15,000 ~ 20,000 미만	0.02	0.00	0.03
	20,000 ~ 25,000 미만	-	-	-
	25,000 ~ 30,000 미만	-	-	-
	30,000 이상	-	-	-
	계	100.00	100.00	100.00

### 3. 근로소득 외 소득

<표 7-1-6>을 통해 근로소득 외 소득유무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소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산소득은 28.34%, 사회보험은 20.89%, 민간보험은 0.44%, 가구원의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은 99.0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7.46%, 기타정부보조금은 73.59%, 기타소득은 97.3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정부보조금의 보유비율이 3차 조사와 비교하여 높은 이유는 기초노령연금<sup>17)</sup>, 유류환급금, 긴급복지지원금, 바우처지원금에 기인하기 때문이다<sup>18)</sup>. 이를 참고하고 보유비율 현황을 살펴본다면 근로소득 외 소득 중에는 3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기타정부보조금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전체가구의 경우 28.34%,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18.20%, 31.97%로 일반가구가 더 높고,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경우 전체 가구에 대해서 각각 20.89%, 0.44%로 사회보험의 보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득집단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에 대해서 저소득가구가 각각 21.88%, 0.18%, 일반가구가 각각 20.53%, 0.53%로 사회보험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약간 높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민간보험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사회보험에 대한 보유비율이 미소한 차이지만 높게 나온 이유는 공적연금을 구성하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에 대한 저소득가구의 국민연금에 대한 보유비율이 일반가구보다 높기 때문이다<sup>19)</sup>.

그 외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타정부보조금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우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

17) 3차 웨이브에서는 노령연금으로 조사되었지만, 4차웨이브부터는 기초노령연금으로 2008년 1월 70세 이상의 노인,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에 이르신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보유비율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 노인교통비는 2008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여서 보유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8) 4차 웨이브부터 추가된 유류환급금, 긴급복지지원금, 바우처지원금의 문항이 추가되었고, 특히 기초노령연금, 유류환급금의 해당비율이 높게 나타나, 기타정부보조금의 보유비율이 높아 진 것으로 나타났다.

19) <표 12-1-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과 <표 12-1-1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참조



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의 경우 전체가구에 대해서 99.03%,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99.44%, 98.88%로 저소득가구가 더 높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경우 7.46%,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각각 24.96%, 1.20%로 저소득가구의 4가구 중 1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정부보조금의 경우 전체가구에 대해서 73.59%,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는 85.53%, 69.33%로 저소득가구의 5가구 중 4가구 이상은 기타정부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6〉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없다	71.66	81.80	68.03
	있다	28.34	18.20	31.97
사회보험	없다	79.11	78.12	79.47
	있다	20.89	21.88	20.53
민간보험	없다	99.56	99.82	99.47
	있다	0.44	0.18	0.5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없다	0.97	0.56	1.12
	있다	99.03	99.44	98.8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다	92.54	75.04	98.80
	있다	7.46	24.96	1.20
기타정부보조금	없다	26.41	14.47	30.67
	있다	73.59	85.53	69.33
기타소득	없다	2.66	2.49	2.72
	있다	97.34	97.51	97.28
계		100.00	100.00	100.00

주: 1) 기타정부보조금의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추가된 3개 문항으로 인해 보유비율이 높게 나타남.

2)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표 7-1-7>에서는 전체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들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별로 보유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보유비율을 보이는 항목으로는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61.03%),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재산소득(21.43%), 민간보조금<sup>20)</sup>(96.73%)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69.60%), 기초노령연금(43.91), 유류환급금(61.54%), 국

20) 민간보조금의 경우 명절 세배돈과 같은 세부항목까지도 포함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민기초생활보장급여(24.96%), 공적연금(20.31%), 민간보조금(97.24%) 항목들이 높은 비율을 보이며, 일반가구는 저소득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58.35%), 민간보조금(96.55%) 그 외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재산소득(23.77%), 공적연금(16.82%), 유류환급금(50.16%)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목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기타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에서 이자 및 배당금의 보유비율이 20.60%로 가장 높으며, 사회보험은 공적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나뉘는데 이 중 공적연금의 보유비율이 17.72%로 가장 높다. 한편 기타정부보조금의 경우 유류환급금 40.82%, 기초노령연금 17.33%로 높게 나타났다.

〈표 7-1-7〉 세부 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없다	79.40	88.29	76.23
		있다	20.60	11.71	23.77
	임대료	없다	87.67	91.04	86.46
		있다	12.33	8.96	13.54
기타	없다	99.74	99.96	99.67	
	있다	0.26	0.04	0.33	
사회보험	공적연금	없다	82.28	79.69	83.20
		있다	17.72	20.31	16.80
	고용보험	없다	96.90	98.51	96.33
		있다	3.10	1.49	3.67
산재보험	없다	99.25	99.70	99.09	
	있다	0.75	0.30	0.91	
민간보험	개인연금	없다	99.56	99.82	99.47
		있다	0.44	0.18	0.53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없다	38.97	30.40	42.04
		있다	61.03	69.60	57.96
	민간보조금	없다	3.27	2.76	3.45
		있다	96.73	97.24	96.55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없다	92.54	75.04	98.80
		있다	7.46	24.96	1.20

〈표 7-1-7〉 세부 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유무(계속)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기타 정부보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없다 있다	96.62 3.38	88.66 11.34	99.46 0.54
	기초노령연금	없다 있다	82.67 17.33	56.09 43.91	92.16 7.84
	노인교통비	없다 있다	86.70 13.30	77.58 22.42	89.95 10.05
	모부자가정수당	없다 있다	99.69 0.31	99.40 0.60	99.79 0.21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없다 있다	99.91 0.09	99.81 0.19	99.95 0.05
	영유아 보육비지원	없다 있다	93.87 6.13	96.84 3.16	92.82 7.18
	학비지원	없다 있다	97.11 2.89	94.25 5.75	98.13 1.87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없다 있다	98.64 1.36	96.32 3.68	99.47 0.53
	농어업 정부보조금	없다 있다	94.87 5.13	91.37 8.63	96.11 3.89
	유류환급금	없다 있다	59.18 40.82	85.34 14.66	49.84 50.16
	긴급복지지원금	없다 있다	99.73 0.27	99.37 0.63	99.86 0.14
	바우처 지원금	없다 있다	97.64 2.36	98.07 1.93	97.48 2.52
	기타	없다 있다	79.04 20.96	60.77 39.23	85.57 14.43
기타소득 <sup>21)</sup>	증여·상속	없다 있다	99.22 0.78	99.69 0.31	99.05 0.95
	경조금	없다 있다	94.57 5.43	95.76 4.24	94.14 5.86
	보상금	없다 있다	98.15 1.85	98.00 2.00	98.21 1.79
	사고보험금	없다 있다	89.71 10.29	94.52 5.48	87.99 12.01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없다 있다	90.72 9.28	95.57 4.43	88.99 11.01
	동산, 부동산 매매차익 <sup>22)</sup>	없다 있다	97.88 2.12	98.58 1.42	97.63 2.37
	기타 (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등)	없다 있다	3.69 96.31	2.91 97.09	3.97 96.03

21) 기타소득의 경우 조사답례품으로 인하여 보유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7-1-8>은 근로소득 외 소득에 대한 기술통계를 나타내며, 재산소득, 사회보험소득, 민간보험소득, 기타소득과 같은 항목은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같은 정부보조금 형태의 소득은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소득 외 소득 중 규모면에서 살펴보면 기타소득이 평균 3,618천원으로 가장 높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575천원, 재산소득이 평균 1,519천원, 사회보험이 평균 1,436천원의 순의 규모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정부보조금은 각각 평균 744천원, 304천원이며, 민간보험은 평균 24천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8>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전체	0	1,519	75.85
	저소득	0	460	34.29
	일반	0	1,897	113.53
사회보험	전체	0	1,436	65.35
	저소득	0	588	33.24
	일반	0	1,739	97.59
민간보험	전체	0	24	7.05
	저소득	0	2	1.37
	일반	0	32	10.71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전체	920	2,575	70.31
	저소득	1,820	2,905	60.97
	일반	690	2,458	102.48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체	0	304	16.13
	저소득	0	1,057	43.56
	일반	0	35	6.93
기타 정부보조금	전체	240	744	15.25
	저소득	1,010	1,170	26.82
	일반	240	591	18.24
기타소득	전체	30	3,618	274.46
	저소득	30	2,358	293.71
	일반	40	4,067	390.62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 웨이브 이후 기초보고서에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22) 4차 웨이브부터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다.

소득 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905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기타소득이 평균 2,358천원, 기타 정부보조금이 1,170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가 평균 1,057천원으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는다. 사회보험은 평균 588천원, 재산소득은 평균 460천원이고, 민간보험은 평균 2천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기타소득이 평균 4,067천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이 평균 2,458천원, 재산소득이 평균 1,897천원, 사회보험이 평균 1,739천원으로 기타소득 다음으로 큰 규모를 갖는다. 그 외 기타정부보조금은 평균 591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평균 35천원이고, 민간보험은 평균 32천원으로 가장 적은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는 근로소득 외 소득들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살펴본 기술통계로서 소득항목별 세부항목의 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전체가구에 대해서 재산소득은 임대료(평균 957천원), 이자 및 배당금(평균 550천원), 기타(평균 12천원)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회보험은 공적연금(평균 1,260천원), 고용보험(평균 94천원), 산재보험(평균 83천원)의 순서로 큰 규모를 갖는다. 기타소득은 동산·부동산 매매차익(평균 891천원), 퇴직금·사회보험 일시금·보장성 보험해약금(평균 858천원), 보상금(평균 634천원), 경조금(평균 457천원), 사고보험금(평균 365천원), 증여·상속(평균 294천원), 기타(평균 119천원)과 같은 순서로 큰 규모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타정부보조금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을 살펴보면 기타정부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평균 172천원), 기타(평균 154천원), 영유아 보육료지원(평균 131천원), 유류환급금(평균 106천원), 학비지원(평균 45천원),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동부양수당(평균 36천원), 농어업 정부보조금(평균 36천원), 노인교통비(평균 23천원), 바우처지원금(평균 18천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평균 13천원), 긴급복지지원금(평균 5천원) 등의 순서로 큰 규모를 갖으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의 경우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평균 1,806천원)이 민간보조금(평균 770천원)보다 더 큰 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9〉 세부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

(단위: 천원)

구분			종위	평균	표준오차
재산소득	이자, 배당금	전체	0	550	29.17
		저소득	0	212	17.49
		일반	0	671	43.35
	임대료	전체	0	957	63.49
		저소득	0	248	28.64
		일반	0	1,210	95.22
	기타	전체	0	12	4.39
		저소득	0	0	0.47
		일반	0	16	6.68
사회보험	공적연금	전체	0	1,260	62.67
		저소득	0	525	30.77
		일반	0	1,522	93.76
	고용보험	전체	0	94	7.87
		저소득	0	38	7.73
		일반	0	113	11.32
	산재보험	전체	0	83	17.17
		저소득	0	25	9.94
		일반	0	104	25.65
민간보험	개인연금	전체	0	24	7.05
		저소득	0	2	1.37
		일반	0	32	10.71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현금 및 현물)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전체	350	1,806	63.23
		저소득	1,000	2,331	58.29
		일반	240	1,618	91.49
	민간보조금	전체	30	770	33.70
		저소득	40	573	28.97
		일반	20	840	49.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전체	0	304	16.13
		저소득	0	1,057	43.56
		일반	0	35	6.93

〈표 7-1-9〉 세부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계속)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기타정부 보조금	전체	0	36	3.20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0	120	8.76
	일반	0	6	1.86
	전체	0	172	5.16
	기초노령연금	0	442	10.99
	일반	0	76	4.64
	전체	0	23	0.97
	노인교통비	0	36	1.95
	일반	0	18	1.09
	전체	0	2	0.65
	모부자가정수당	0	5	1.76
	일반	0	1	0.45
	전체	0	1	0.35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0	1	0.73
	일반	0	1	0.38
	전체	0	131	7.84
	영유아 보육료지원	0	74	9.18
	일반	0	152	11.00
	전체	0	45	4.57
	학비지원	0	76	7.92
	일반	0	34	5.69
전체	0	13	1.50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	0	35	3.78	
일반	0	5	1.24	
전체	0	36	3.19	
농어업 정부보조금	0	41	3.30	
일반	0	34	4.56	
전체	0	106	1.91	
유류환급금	0	28	1.49	
일반	20	133	2.66	
전체	0	5	1.38	
긴급복지 지원금	0	16	4.04	
일반	0	1	0.50	
전체	0	18	3.21	
바우처 지원금	0	29	6.61	
일반	0	14	3.59	
전체	0	154	6.24	
기타	0	261	11.81	
일반	0	116	7.32	

〈표 7-1-9〉 세부항목별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계속)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기타소득	증여·상속	전체	0	294	67.69
		저소득	0	202	117.55
		일반	0	327	84.42
	경조금	전체	0	457	38.20
		저소득	0	328	43.93
		일반	0	503	53.77
	보상금	전체	0	634	159.48
		저소득	0	735	205.27
		일반	0	598	219.77
	사고보험금	전체	0	365	49.78
		저소득	0	239	76.35
		일반	0	409	65.33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보장성 보험계약금	전체	0	858	97.92
		저소득	0	322	65.87
		일반	0	1,049	145.22
	동산, 부동산 매매차익	전체	0	891	178.65
		저소득	0	481	124.39
		일반	0	1,038	264.65
	기타	전체	30	119	11.07
		저소득	30	51	6.10
		일반	30	143	16.56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007년 2차웨이브 이후 기초보고서에서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표 7-1-10>에서 근로소득 외 소득의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재산소득은 1,500천원 이상이 16.82%, 그 미만이 83.18%로, 사회보험은 1,500천원 이상이 84.20%, 그 미만이 15.80%로, 민간보험은 500천원 이상이 0.43%, 그 미만이 99.57%이다. 또한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은 2,000천원 이상이 33.46%, 그 미만이 66.54%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500천원 이상이 7.18%, 그 미만이 92.82%로, 기타 정부보조금은 500천원 이상이 35.15%, 그 미만이 64.85%이며, 기타소득은 2,000천원 이상이 15.46%, 그 미만이 84.54%이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재산소득은 1,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9.75%, 19.34%, 그 미만이 각각 90.25%, 80.66%로, 사회보험은 1,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15.80%, 16.82%, 그 미만이 각각 84.20%, 83.18%로, 민간보험은 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0.13%, 0.53%, 그 미만이 각각 99.87%, 99.47%이다. 그리고 가구원 외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은 2,0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48.41%, 28.13%, 그 미만이 각각 51.59%, 71.87%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24.31%, 1.06%, 그 미만이 각각 75.69%, 98.94%로, 기타 정부보조금은 5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62.03%, 25.55%, 그 미만이 각각 37.97%, 74.45%이며, 기타소득은 2,000천원 이상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가 각각 9.98%, 17.40%, 그 미만이 각각 90.02%, 82.60%이다.

〈표 7-1-10〉 가구의 근로소득 외 소득의 분포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재산소득	500 미만	76.38	85.04	73.29
	500 ~ 1,000 미만	3.98	2.92	4.36
	1,000 ~ 1,500 미만	2.82	2.29	3.01
	1,500 ~ 2,000 미만	1.89	2.12	1.81
	2,000 ~ 2,500 미만	2.59	1.93	2.82
	2,500 ~ 3,000 미만	0.82	0.56	0.91
	3,000 이상	11.51	5.13	13.79
	계	100.00	100.00	100.00
사회보험	500 미만	79.43	78.61	79.72
	500 ~ 1,000 미만	0.61	0.68	0.59
	1,000 ~ 1,500 미만	4.16	7.76	2.87
	1,500 ~ 2,000 미만	2.70	4.19	2.17
	2,000 ~ 2,500 미만	2.19	2.56	2.06
	2,500 ~ 3,000 미만	1.04	0.89	1.09
	3,000 이상	9.87	5.32	11.50
	계	100.00	100.00	100.00

〈표 7-1-10〉 계속

(단위: 천원,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민간보험	500 미만	99.57	99.87	99.47
	500 ~ 1,000 미만	0.02	0.03	0.02
	1,000 ~ 1,500 미만	0.08	-	0.11
	1,500 ~ 2,000 미만	0.00	0.02	-
	2,000 ~ 2,500 미만	0.12	0.07	0.14
	2,500 ~ 3,000 미만	0.01	-	0.01
	3,000 이상	0.19	-	0.25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 혹은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물)	500 미만	38.09	25.26	42.68
	500 ~ 1,000 미만	12.93	11.78	13.34
	1,000 ~ 1,500 미만	10.22	8.24	10.92
	1,500 ~ 2,000 미만	5.30	6.31	4.94
	2,000 ~ 2,500 미만	5.44	6.26	5.15
	2,500 ~ 3,000 미만	3.31	4.13	3.02
	3,000 이상	24.71	38.02	19.96
	계	100.00	100.00	100.00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500 미만	92.82	75.69	98.94
	500 ~ 1,000 미만	0.39	1.23	0.09
	1,000 ~ 1,500 미만	0.43	1.19	0.16
	1,500 ~ 2,000 미만	0.45	1.39	0.11
	2,000 ~ 2,500 미만	0.47	1.25	0.19
	2,500 ~ 3,000 미만	0.51	1.77	0.05
	3,000 이상	4.93	17.47	0.45
	계	100.00	100.00	100.00
기타 정부보조금	500 미만	64.85	37.97	74.45
	500 ~ 1,000 미만	8.23	11.19	7.17
	1,000 ~ 1,500 미만	11.39	24.08	6.85
	1,500 ~ 2,000 미만	4.98	9.54	3.36
	2,000 ~ 2,500 미만	3.66	5.33	3.06
	2,500 ~ 3,000 미만	1.96	3.53	1.41
	3,000 이상	4.93	8.36	3.71
	계	100.00	100.00	100.00
기타소득	500 미만	75.26	85.17	71.72
	500 ~ 1,000 미만	3.39	2.27	3.80
	1,000 ~ 1,500 미만	3.78	1.78	4.50
	1,500 ~ 2,000 미만	2.11	0.80	2.58
	2,000 ~ 2,500 미만	2.01	1.75	2.10
	2,500 ~ 3,000 미만	0.88	0.36	1.06
	3,000 이상	12.57	7.87	14.24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6년 1차 기초보고서에서는 해당소득이 있는 가구만 분석하였으나 2차 웨이브 이후 기초보고서부터는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함.

## 제2절 지출

### 1. 총가계지출

지출부문은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송금보조(사적이전),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생활비항목들과 농림축산중사가정 혹은 어가인 경우 자가소비액, 가구부채에 대한 이자지출까지도 지출항목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이 모든 항목들을 포괄해서 총가계지출이라 칭하기로 한다. 지출액은 농림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을 제외하고 모두 월평균 지출로 조사하였으며, 연간지출로 조사된 자가소비액과 이자지출은 12(개월)로 나누어 월단위로 통일하였다.

월평균 총가계지출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 중위값은 2,550천원, 평균은 2,962천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중위값이 920천원이고, 평균이 1,221천원으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는 중위값 3,160천원, 평균 3,583천원으로 평균으로만 비교하였을때 일반가구의 총가계지출이 저소득가구보다 2.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총가계지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1〉 월간 총가계지출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550	2,962	29.15
저소득	920	1,221	19.11
일반	3,160	3,583	38.37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41.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22.54%로 3,000천원 이상 지출구간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4.32%에 불과하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지출규모별로 매우 상이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38.22%로 가장 높은 지출구간이며, 그 다음으로 1,000천원 이상 1,500천원 미만 지출가구와 500천원 미만 지출가구가 각각 19.24%와 16.39%이다.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는 5.15%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구가 53.96%로 가장 높은 지출구간이고, 다음으로 2,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가 27.16%로 3,000천원 이상지출구간 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중에서 500천원 미만을 지출하는 가구는 전체의 0.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500천원 이상 1,000천원 미만 지출가구도 1.69%에 지나지 않는다.

〈표 7-2-2〉 월간 총가계지출 규모별 분포

(단위: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00 미만	4.32	16.39	0.00
500 ~ 1,000 미만	11.30	38.22	1.69
1,000 ~ 1,500 미만	9.60	19.24	6.16
1,500 ~ 2,000 미만	11.13	11.39	11.03
2,000 ~ 3,000 미만	22.54	9.61	27.16
3,000 이상	41.12	5.15	53.96
전체	100.00	100.00	100.00

## 2. 항목별 총생활비

지출항목별 생활비에 대한 기초통계는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먼저 전체가구의 비목별 생활비를 살펴보면, 식료품비는 중위값이 580천원, 평균이 609천원으로 지출항목 중에서 가장 큰 지출규모를 보이고, 기타소비지출은 중위값이 420천원, 평균이 533천원, 교통통신비는 중위값이 310천원, 평균이 406천원, 교육비는 중위값이 0원, 평균이 240천원, 세금은 중위값이 40천원, 평균이 136천원, 사회보장부담금은 중위값이 110천원, 평균이 147천원, 송금보조(사적이전)은 중위값이 30천원, 평

균이 138천원, 보건의료비는 중위값이 60천원, 평균이 133천원, 광열수도비는 중위값이 110천원, 평균이 118천원으로 이러한 항목들은 평균적으로 월 100천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자는 132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주거비,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가구가사용품비, 농축산어가의 자가소비액과 같은 항목들은 월평균 100천원 미만의 지출규모를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식료품비는 외식비보다는 가정식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크고, 주거비는 월세보다는 주거관리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크며, 교육비의 경우는 공교육비보다는 사교육비로 인한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송금보조의 경우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비동거가구원, 가구원이 아닌 자녀,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친지·자녀) 순으로 큰 지출규모를 갖는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지출항목별 지출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저소득가구의 경우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와 같은 항목들이 지출규모가 크며, 일반가구에서는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교육비, 사회보장부담금, 세금, 송금보조와 같은 항목들의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비목들을 살펴보면, 세금의 경우 일반가구에서 평균 178천원을, 저소득가구에서 평균 1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9.37배의 차이를 보여 소득집단별로 가장 높은 차이를 보이는 항목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사회보장부담금은 저소득가구에서 28천원, 일반가구에서 189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6.75배의 차이, 교양오락비는 저소득가구에서 25천원, 일반가구에서 121천원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4.84배의 차이, 송금보조는 저소득가구에서 38천원, 일반가구에서 174천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약 4.58배(비동거가구원: 약 6.13배, 부모: 약 10.33배, 자녀: 약 1.29배, 기타: 약 2.25배)로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그 외 교육비(전체: 약 4.23배의 차이, 공교육비: 약 3.26배의 차이, 사교육비: 약 5.33배의 차이), 피복신발비(약 3.96배의 차이), 교통통신비(약 3.63배의 차이), 이지지출(약 4.91배의 차이), 가구가사용품비(약 3.03배의 차이), 기타소비지출(약 3.11배의 차이), 식료품비(전체: 약 2.10배의 차이, 가정식비: 약 1.58배의 차이, 외식비: 약 3.73배의 차이), 주거비(전체: 약 1.59배의 차이, 월세: 약 0.97배의 차이, 주거관리비: 약 2.40배의 차이), 보건의료

비(약 1.55배의 차이), 광열수도비(약 1.42배의 차이)는 1~2배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농축산업종사가정의 자가소비액은 같게 나타났다. 어가의 자가소비액은 금액도 미미할뿐더러 소득집단간의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지출항목별 월간 생활비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식료품비	합계	580	609	3.96
		가정식비	350	365	2.25
		외식비	220	244	2.50
	주거비	합계	50	99	2.57
		월세	0	38	1.32
		주거관리비	30	61	2.28
	광열수도비		110	118	0.67
	가구가사용품비		30	82	1.96
	피복신발비		60	86	1.22
	보건의료비		60	133	3.23
	교육비	합계	0	240	5.06
		공교육비	0	101	3.04
		사교육비	0	139	3.70
	교양오락비		40	96	2.03
	교통통신비		310	406	6.15
	기타소비지출		420	533	6.58
	송금보조 (사적이전)	합계	30	138	3.70
		비동거가구원	0	39	2.42
		부모	0	71	2.37
		자녀	0	21	1.28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	0	8	0.68
	세금		40	136	4.28
	사회보장부담금		110	147	1.92
자가소비액(농축산)		0	7	0.58	
자가소비액(어업)		0	0	0.02	
이자지출		0	132	14.35	

〈표 7-2-3〉 계속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저소득	식료품비	합계	290	336	3.65
		가정식비	230	256	2.40
		외식비	40	81	1.91
	주거비	합계	30	69	2.24
		월세	0	39	1.61
		주거관리비	3	30	1.65
	광열수도비		80	90	0.84
	가구가사용품비		10	33	1.33
	피복신발비		20	27	0.77
	보건의료비		40	95	3.82
	교육비	합계	0	71	3.73
		공교육비	0	38	2.64
		사교육비	0	33	2.37
	교양오락비		10	25	1.12
	교통통신비		80	138	3.59
	기타소비지출		130	209	5.80
	송금보조 (사적이전)	합계	0	38	2.63
		비동거가구원	0	8	1.54
		부모	0	9	1.18
		자녀	0	17	1.64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		0	4	0.63	
세금		1	19	1.40	
사회보장부담금		0	28	1.08	
자가소비액(농축산)		0	7	0.52	
자가소비액(어업)		0	0	0.04	
이자지출		0	34	2.47	

〈표 7-2-3〉 계속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일반	식료품비	합계	680	706	4.80
		가정식비	400	404	2.94
		외식비	280	302	3.16
	주거비	합계	60	110	3.73
		월세	0	38	1.84
		주거관리비	40	72	3.35
	광열수도비		120	128	0.87
	가구가사용품비		30	100	2.85
	피복신발비		80	107	1.68
	보건의료비		70	147	4.50
	교육비	합계	30	300	7.22
		공교육비	0	124	4.38
		사교육비	0	176	5.37
	교양오락비		60	121	2.92
	교통통신비		380	501	8.66
	기타소비지출		530	649	8.82
	송금보조 (사적이전)	합계	60	174	5.35
		비동거가구원	0	49	3.59
		부모	30	93	3.49
		자녀	0	22	1.77
기타(가구원이 아닌 부모·자녀·친지)		0	9	0.99	
세금		60	178	6.34	
사회보장부담금		160	189	2.52	
자가소비액(농축산)		0	7	0.85	
자가소비액(어업)		0	0	0.02	
이가지출		0	167	21.77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항목별 지출비중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전체가구의 총가계지출평균 2,962천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식료품비로 전체의 20.56%를 차지하고 있으며 609천원의 지출규모를 갖는다.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18.0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소비지출로 533천원의 지출규모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통신비는 13.70%, 교육비는 8.10%, 사회보



장부담금은 4.95%, 송금보조는 4.66%, 세금은 4.60%, 보건의료비는 4.50%, 이자지출은 4.45%, 광열수도비는 3.99%, 주거비는 3.36%, 교양오락비는 3.24%, 피복신발비는 2.91%, 가구가사용품비는 2.77%, 자가소비액(농축산)은 0.23%의 지출비중을 보이며, 어업 종사가구의 자가소비액은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4〉 소득수준별 지출항목별 월간 지출구성

(단위: 천원, %)

지출항목	전체		저소득		일반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식료품비	609	20.56	336	27.55	706	19.70
주거비	99	3.36	69	5.65	110	3.08
광열수도비	118	3.99	90	7.38	128	3.58
가구가사용품비	82	2.77	33	2.68	100	2.78
피복신발비	86	2.91	27	2.25	107	2.99
보건의료비	133	4.50	95	7.82	147	4.09
교육비	240	8.10	71	5.84	300	8.38
교양오락비	96	3.24	25	2.09	121	3.38
교통통신비	406	13.70	138	11.29	501	13.99
기타소비지출	533	18.00	209	17.12	649	18.10
송금보조	138	4.66	38	3.11	174	4.85
세금	136	4.60	19	1.57	178	4.97
사회보장부담금	147	4.95	28	2.31	189	5.27
자가소비액(농축산)	7	0.23	7	0.61	7	0.18
자가소비액(어업)	0	0.00	0	0.00	0	0.00
이자지출	132	4.45	34	2.75	167	4.65
총가계지출	2,962	100.00	1,221	100.00	3,583	100.00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나타났고, 지출구성에서 차이가 나는 항목으로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그리고 주거비는 일반가구보다는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은 지출비중을 보인다. 반면에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교통통신비, 송금보조, 교육비, 이자지출, 그리고 교양오락비는 저소득가구보다는 일반가구에서 더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타소비지출, 피복신발비, 이자지출, 가구가사용품비, 그리고 자가소비액은 소득집단별 지출비중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3절 재산 및 부채

### 1. 가구의 재산

가구의 재산은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이며, 총재산액과 순재산액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총재산액은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한편, 순재산액은 총재산액에서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은 2008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명의 기준으로 파악하였다.

#### 가. 총재산액과 순재산액

총재산액에는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 기타(동산 및 부동산)에 주택가격이 포함된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소유형태에 따라 자가인 경우 주택가격을, 전세의 경우 전세금을,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기타의 경우 가격이 포함된다.

총재산액은 전체 가구 평균이 246,462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03,425천원, 일반가구가 297,488천원이다.

〈표 7-3-1〉 총재산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0,720	246,462	6,964.08
저소득	31,000	103,425	11,594.70
일반	165,200	297,488	8,698.62

다음으로 순재산액은 현재 가구가 소유하는 총재산액에서 금융기관대출 등의 총부채액을 차감한 값이다. 총부채액에는 금융기관대출, 일반사채, 카드빚, 전세보증금(받은돈), 외상, 미리탄 계돈 등이 포함된다.

순재산액은 전체 가구 평균이 212,799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88,044천원, 일반가구가 257,331천원이다.

〈표 7-3-2〉 순재산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99,700	212,799	6,747.32
저소득	25,000	88,044	11,410.30
일반	137,640	257,331	8,397.05

## 나. 소유부동산

소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주택, 주택외 건물, 토지 등이 포함된다. 먼저 소유부동산 시가총액은 평균 81,569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0,021천원, 일반가구가 96,404천원이다.

〈표 7-3-3〉 소유부동산 시가총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81,569	5,554.33
저소득	0	40,021	11,055.20
일반	0	96,404	6,355.57

소유부동산을 소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3-4>와 같다. 먼저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경우 평균은 26,44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272천원, 일반가구가 33,289천원이다. 주택외 건물의 경우 평균은 23,619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3,844천원, 일반가구가 27,109천원이다. 마지막으로 토지, 양식장, 기타부동산의 경우 평균은 31,507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8,906천원, 일반가구가 36,006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4〉 소유형태별 소유부동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저소득 일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등)	전체		0	26,443	1,285.89
	저소득		0	7,272	967.61
	일반		0	33,289	1,883.10
주택외 건물	전체		0	23,619	4,706.65
	저소득		0	13,844	10,673.10
	일반		0	27,109	4,748.91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부동산	전체		0	31,507	2,276.97
	저소득		0	18,906	2,316.13
	일반		0	36,006	3,261.57

주: 주택외 건물에는 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게), 창고, 상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이 포함됨.

### 다. 점유부동산

점유부동산에는 현재 가구가 거주하는 집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기타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등이 포함된다. 먼저 점유부동산 시가총액은 평균 8,90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305천원, 일반가구가 11,617천원이다.

〈표 7-3-5〉 점유부동산 시가총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8,903	1,116.24
저소득	0	1,305	210.38
일반	0	11,617	1,770.15

점유부동산을 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3-6>과 같다. 먼저 전세보증금 준 것(가게, 사업장 등)의 경우 평균은 2,13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08천원, 일반가구가 2,745천원이다. 기타의 경우 평균은 6,77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897천원, 일반가구가 8,872천원이다.

〈표 7-3-6〉 점유형태별 점유부동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세보증금 준 것 (가계, 사업장 등)	전체	0	2,130	153.46
	저소득	0	408	82.92
	일반	0	2,745	229.02
기타	전체	0	6,773	1,138.33
	저소득	0	897	158.63
	일반	0	8,872	1,729.82

주: 기타에는 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게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이 포함됨.

## 라. 금융자산

금융자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채권 등이 포함된다. 먼저 금융자산 시가총액은 평균 34,06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9,695천원, 일반가구가 42,764천원이다.

〈표 7-3-7〉 총 금융자산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600	34,061	877.62
저소득	1,000	9,695	532.45
일반	17,690	42,764	1,278.38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8>과 같다. 먼저 예금의 경우 평균은 17,124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560천원, 일반가구가 20,540천원이다. 나머지 금융자산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의 경우 9,694천원, 1,358천원, 12,671천원, 주식·채권의 경우 4,792천원, 466천원, 6,337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기 전 부은 계돈의 경우 149천원, 4천원, 201천원,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의 경우 2,302천원, 308천원, 3,01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8〉 소유형태별 금융자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예금	전체	3,500	17,124	546.27
	저소득	900	7,560	453.01
	일반	5,000	20,540	792.18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등)	전체	0	9,694	344.08
	저소득	0	1,358	169.42
	일반	4,000	12,671	507.81
주식·채권	전체	0	4,792	308.42
	저소득	0	466	84.36
	일반	0	6,337	464.95
타기 전 부은 계돈	전체	0	149	22.95
	저소득	0	4	1.85
	일반	0	201	34.88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전체	0	2,302	276.66
	저소득	0	308	68.98
	일반	0	3,015	419.13

## 마. 농기계

농기계에는 동력 탈곡기, 경운기, 콤바인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농기계 가격에 대한 전체가구 평균은 319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68천원, 일반가구가 373천원이다.

〈표 7-3-9〉 총 농기계 자산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319	64.47
저소득	0	168	43.60
일반	0	373	95.65

보유형태별 농기계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10>과 같다. 먼저 동력탈곡기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5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천원, 일반가구가 6천원이다. 나머지 농기계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

를 살펴보면, 경운기의 경우 25천원, 31천원, 22천원, 콤바인의 경우 33천원, 4천원, 43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트랙터의 경우 200천원, 105천원, 234천원, 기타 농기계의 경우 56천원, 26천원, 6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0〉 보유형태별 농기계 자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동력탈곡기	전체	0	5	2.45
	저소득	0	1	0.57
	일반	0	6	3.71
경운기	전체	0	25	2.31
	저소득	0	31	3.75
	일반	0	22	2.97
콤바인	전체	0	33	12.86
	저소득	0	4	2.73
	일반	0	43	19.52
트랙터	전체	0	200	45.99
	저소득	0	105	40.61
	일반	0	234	66.96
기타 농기계	전체	0	56	21.00
	저소득	0	26	7.23
	일반	0	67	31.77

## 바. 농축산물

농축산물에는 소, 돼지, 닭, 채고농산물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농축산물 가격에 대한 전체가구 평균은 85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04천원, 일반가구가 1,011천원이다.

〈표 7-3-11〉 총 농축산물 자산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851	148.15
저소득	0	404	76.80
일반	0	1,011	222.15

사육형태별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12>와 같다. 먼저 소의 경우 전체가구 평균은 54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322천원, 일반가구가 617천원이다. 나머지 농축산물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돼지의 경우 0.0천원, 0.1천원, 0.0천원, 닭의 경우 19천원, 0.5천원, 25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고농산물의 경우 9천원, 5천원, 11천원, 기타 농축산물의 경우 284천원, 77천원, 358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2> 사육형태별 농축산물 자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소	전체	0	540	126.71
	저소득	0	322	72.27
	일반	0	617	189.44
돼지	전체	0	0.0	0.04
	저소득	0	0.1	0.13
	일반	0	0.0	0.00
닭	전체	0	19	21.16
	저소득	0	0.5	0.22
	일반	0	25	32.21
재고농산물	전체	0	9	2.28
	저소득	0	5	1.77
	일반	0	11	3.35
기타 농축산물	전체	0	284	71.03
	저소득	0	77	22.83
	일반	0	358	107.49

## 사.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기타 동산·부동산에는 위의 소유부동산, 점유부동산, 금융자산, 농기계, 농축산물을 제외한 자동차, 회원권이나 오토바이, 선박, 귀금속, 골동품 등이 포함된다. 먼저 자동차의 가격<sup>23)</sup>은 평균 4,212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857천원, 일반가구가 5,409천원이다.

23) 1차 웨이브와는 달리 2,3,4차 웨이브에서는 기타 동산·부동산 중 자동차를 별도로 파악하였다.



〈표 7-3-13〉 자동차 자산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	4,212	89.01
저소득	0	857	66.84
일반	2,500	5,409	125.39

다음으로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은 평균 2,68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541천원, 일반가구가 3,444천원이다.

〈표 7-3-14〉 기타위의 재산 이외 동산·부동산 자산액

(단위: 천원)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680	155.47
저소득	0	541	87.25
일반	0	3,444	231.27

소유형태별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가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15>와 같다.

〈표 7-3-15〉 소유형태별 자동차를 제외한 기타 동산·부동산의 자산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전체	0	183
	저소득	0	6	2.99
	일반	0	246	99.39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전체	0	1,844	137.47
	저소득	0	395	84.47
	일반	0	2,362	204.25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전체	0	650	31.94
	저소득	0	141	18.82
	일반	0	832	47.34
기타	전체	0	3	2.14
	저소득	0	0.2	0.17
	일반	0	4	3.26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의 경우 평균은 183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약 6천원, 일반가구가 246천원이다. 나머지 기타 동산·부동산에 대한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영업용 자동차·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의 경우 1,844천원, 395천원, 2,362천원,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의 경우 650천원, 141천원, 832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의 경우 3천원, 0.2천원, 4천원으로 나타났다.

## 2. 가구의 부채

가구의 부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 일반사채, 카드빚 등이 포함된다. 먼저 총 부채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33,617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5,373천원, 일반가구가 40,137천원이다.

〈표 7-3-16〉 총 부채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6,000	33,617	887.73
저소득		0	15,373	952.54
일반		12,000	40,137	1,246.29

부채액을 부채형태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 7-3-17>과 같다. 먼저 금융기관대출의 경우 평균은 19,186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048천원, 일반가구가 23,524천원이다. 나머지 부채형태에 대해 전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일반사채의 경우 1,480천원, 1,553천원, 1,454천원, 카드빚의 경우 704천원, 933천원, 622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세(임대)보증금(받은돈)의 경우 10,778천원, 3,977천원, 13,209천원, 외상·미리탄 계돈의 경우 17천원, 5천원, 21천원, 기타부채의 경우 1,452천원, 1,858천원, 1,30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7-3-17〉 부채형태별 부채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금융기관대출 (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전체	0	19,186	598.18
	저소득	0	7,048	467.26
	일반	0	23,524	868.74
일반사채	전체	0	1,480	218.24
	저소득	0	1,553	454.48
	일반	0	1,454	241.20
카드빚	전체	0	704	62.25
	저소득	0	933	124.78
	일반	0	622	70.99
전세(임대)보증금 (받은돈)	전체	0	10,778	491.65
	저소득	0	3,977	485.47
	일반	0	13,209	703.32
외상, 미리탄계돈	전체	0	17	4.33
	저소득	0	5	2.30
	일반	0	21	6.49
기타부채	전체	0	1,452	145.24
	저소득	0	1,858	294.90
	일반	0	1,307	163.97

주: 미리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하도록 함.

총 이자액에는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도 포함된다.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 <표 7-3-18>과 같다<sup>24)</sup>.

〈표 7-3-18〉 총 이자액과 기타이자액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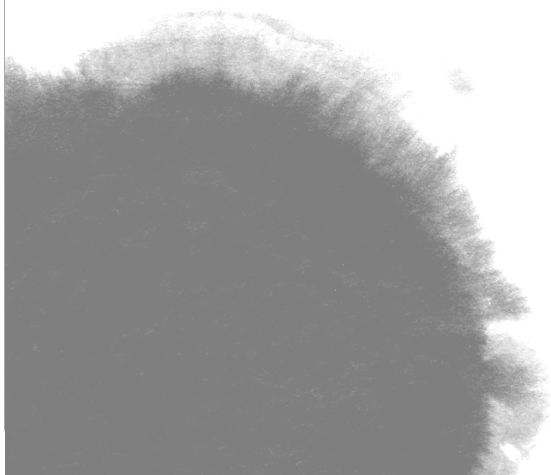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총 이자액	전체	0	1,580	172.15
	저소득	0	403	29.66
	일반	0	2,001	261.30
기타이자액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제외)	전체	0	917	157.80
	저소득	0	223	24.93
	일반	0	1,165	239.77

24)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는 제8장 주거 부분에서 다루게 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먼저 총 이자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1,580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403천원, 일반가구가 2,001천원이다. 다음으로 주거이자를 제외한 기타이자액을 살펴보면, 평균은 917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223천원, 일반가구가 1,165천원이다.

08

주거





## 제1절 주택시설 및 주택가격

### 1. 주택시설

주거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사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1-1>과 같다. 이사경험이 있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2.2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 별로 보면 저소득가구는 9.99%, 일반가구는 13.10%가 2008년 1년 사이에 이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8-1-1> 2008년 1년간 이사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27	9.99	13.10
없다		87.23	89.69	86.34
모름/무응답		0.49	0.32	0.56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유형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의 <표 8-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아파트가 38.19%,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0.81%, 일반단독주택이 17.80%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일반단독주택이 32.29%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24.88%, 일반아파트가 18.9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일반아파트가 45.06%,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19.35%, 일반단독주택이 12.6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에서는 일반단독주택, 일반가구에서는 일반아파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표 8-1-2〉 주택의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반단독주택		17.80	32.29	12.62
다가구용 단독주택		20.81	24.88	19.35
다세대주택		8.64	8.18	8.80
연립주택(빌라)		5.21	4.16	5.58
일반아파트		38.19	18.96	45.06
영구임대아파트		2.42	5.67	1.26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3.70	2.84	4.01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0.58	0.44	0.62
오피스텔		0.35	0.21	0.4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0.08	0.15	0.06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0.12	0.19	0.09
기타		0.24	0.12	0.28
국민임대아파트		1.86	1.90	1.85
계		100.00	100.00	100.00

주거의 위치는 아래의 <표 8-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지상이 94.84%, 반지하층이 3.95%, 지하층이 1.04%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지상이 91.7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반지하층 5.71%, 지하층이 2.26%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구의 경우에는 지상이 95.94%, 반지하층이 3.32%, 지하층이 0.61%로 나타났다.

〈표 8-1-3〉 주거 위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지하층		1.04	2.26	0.61
반지하층		3.95	5.71	3.32
지상		94.84	91.75	95.94
옥탑		0.17	0.28	0.13
계		100.00	100.00	100.00



주거의 점유형태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53.78%로 가장 많고,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는 19.71%이다. 주거의 점유형태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자가인 가구의 비율이 각각 42.93%, 57.66%로 가장 높다.

〈표 8-1-4〉 주거 점유형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가	53.78	42.93	57.66
전세	19.71	16.12	20.99
보증부 월세	15.42	20.71	13.53
월세	2.28	4.56	1.47
기타	8.81	15.69	6.36
계	100.00	100.00	100.00

방의 수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방의 개수가 3개인 가구가 55.39%로 가장 많고, 2개인 경우가 29.71%, 1개인 경우가 8.23% 순으로 나타났다. 방의 수를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2개인 경우가 44.23%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3개인 경우가 61.34%로 가장 높다.

〈표 8-1-5〉 방의 수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	8.23	12.83	6.59
2개	29.71	44.23	24.52
3개	55.39	38.73	61.34
4개	5.88	3.69	6.66
5개 이상	0.79	0.51	0.89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연건평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 중 66~99㎡ 미만에 살고 있는 가구가 35.77%로 가장 많고, 33~66㎡ 미만인 경우가 29.12%, 99~132㎡ 미만인 경우가 23.71%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연건평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33~66㎡ 미만인 경우가 42.03%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66~99㎡ 미만인 경우가 37.60%로 가장 높다.

〈표 8-1-6〉 주택의 연건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3㎡ 미만		7.01	13.77	4.60
33~66㎡ 미만		29.12	42.03	24.51
66~99㎡ 미만		35.77	30.64	37.60
99~132㎡ 미만		23.71	11.42	28.09
132~165㎡ 미만		3.13	1.37	3.75
165㎡ 이상		1.27	0.77	1.44
계		100.00	100.00	100.00

상·하수도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이 99.37%, 공동사용이 0.57%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이 98.95%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공동사용이 0.98%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사용이 99.52%로 가장 많았고, 공동사용이 0.42%로 나타났다.

〈표 8-1-7〉 상·하수도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		99.37	98.95	99.52
공동사용		0.57	0.98	0.42
없음		0.06	0.07	0.06
계		100.00	100.00	100.00

부엌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입식이 98.43%, 단독사용-재래식이 0.86%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입식이 95.92%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이 단독사용-재래식으로 2.81%였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도 단독사용-입식이 99.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8〉 부엌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입식		98.43	95.92	99.33
단독사용-재래식		0.86	2.81	0.16
공동사용-입식		0.56	0.83	0.47
공동사용-재래식		0.01	0.03	0.00
없음		0.14	0.41	0.04
계		100.00	100.00	100.00

화장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수세식이 94.82%로 가장 높은 가운데, 단독사용-재래식이 3.00%, 공동사용-수세식이 1.62%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수세식이 86.19%, 단독사용-재래식이 8.56%, 공동사용-수세식이 3.6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사용-수세식이 97.91%, 단독사용-재래식이 1.02%, 공동사용-수세식이 0.88% 등으로 나타났다.

〈표 8-1-9〉 화장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수세식		94.82	86.19	97.91
단독사용-재래식		3.00	8.56	1.02
공동사용-수세식		1.62	3.68	0.88
공동사용-재래식		0.51	1.45	0.17
없음		0.03	0.12	0.00
모름/무응답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는 다음의 <표 8-1-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95.57%로 가장 높은 가운데, 목욕시설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3.16%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이 87.47%, 단독사용-온수

시설 없음이 1.88%였으며, 없음이 9.64%였다.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단독사용-온수 시설 있음이 98.4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10〉 목욕시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단독사용 온수시설 있음		95.57	87.47	98.47
단독사용 온수시설 없음		0.60	1.88	0.15
공동사용 온수시설 있음		0.57	0.86	0.46
공동사용 온수시설 없음		0.08	0.16	0.05
없음		3.16	9.64	0.85
모름/무응답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난방시설의 사용형태는 아래의 <표 8-1-1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스보일러 64.95%, 기름보일러 17.24%, 중앙난방(지역난방) 10.78%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가스보일러 49.17%, 기름보일러 32.75%, 중앙난방(지역난방) 8.24% 순이었다. 일반가구는 가스보일러 70.59%, 기름보일러 11.71%, 중앙난방(지역난방) 11.68%로 나타났다.

〈표 8-1-11〉 난방시설의 사용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탄 또는 재래식(뿔갑) 아궁이		0.52	1.31	0.23
연탄보일러		1.03	2.44	0.53
나무·석탄보일러		0.42	0.80	0.28
기름보일러		17.24	32.75	11.71
가스보일러		64.95	49.17	70.59
전기보일러		4.53	4.01	4.72
중앙난방(지역난방)		10.78	8.24	11.68
전기장판		0.49	1.22	0.23
기타		0.05	0.04	0.05
계		100.00	100.00	100.00

## 2. 주택가격

자가 주택에 대한 시가총액은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3.78%)에서 평균은 186,001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98,650천원, 일반가구가 209,196천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8-1-12〉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 시가총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20,000	186,001	3,699.03
	저소득	60,000	98,650	3,348.02
	일반	140,000	209,196	4,931.60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자가를 소유한 가구(전체가구 중 53.78%)에서 1~2억원 미만인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26.55%로 가장 많고, 5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가 25.17%, 3억원 이상인 경우가 17.92%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31.24%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의 경우 1~2억원 미만인 경우가 2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13〉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의 시가총액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2.82	10.12	0.89
1천만~5천만원 미만		13.08	31.24	8.25
5천만~1억원 미만		25.17	25.74	25.02
1억~2억원 미만		26.55	18.61	28.66
2억~3억원 미만		14.45	7.76	16.23
3억원 이상		17.92	6.52	20.95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전세, 보증부월세, 그리고 기타인 가구를 대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을 내는 가구 중에서 전세, 보증부월세 외의 주택점유형태를 가진 가구는 임대료를 파악할 수 없는 무상임대의 경우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 전세, 보증부월세의 경우로만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택의 전세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9.71%)에서 평균은 62,395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38,826천원, 일반가구가 68,87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8-1-14〉 거주하고 있는 주택 전세금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5,000	62,395	1,940.42
	저소득	29,000	38,826	2,080.97
	일반	55,000	68,877	2,507.36

전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9.71%)에서 5천만원~1억원 미만인 임대보증금을 내고 있는 가구가 30.82%로 가장 많고, 1~3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4.20%, 3~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24.15%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전세금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1~3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43.92%로 가장 높고, 일반가구는 5천만원~1억원 미만인 경우가 3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15〉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금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3.06	6.18	2.21
1천만~ 3천만원 미만		24.20	43.92	18.77
3천만~ 5천만원 미만		24.15	26.69	23.45
5천만~ 1억원 미만		30.82	17.26	34.55
1억원 이상		17.77	5.95	21.02
계		100.00	100.00	100.00

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은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42%)에서 평균은 11,512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7,729천원, 일반가구가 13,581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8-1-16〉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5,000	11,512	435.81
저소득		3,000	7,729	488.11
일반		10,000	13,581	639.62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인 경우 주택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살펴보면, 보증부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5.42%)에서 1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57.22%로 가장 많고, 1~3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30.70%이다. 보증부월세에 대한 보증금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1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73.77%, 48.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17〉 주택 보증부월세의 보증금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천만원 미만		57.22	73.77	48.17
1천만~ 3천만원 미만		30.70	20.93	36.05
3천만~ 5천만원 미만		9.12	3.86	11.99
5천만~ 1억원 미만		2.96	1.44	3.79
1억원 이상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집의 점유형태가 보증부월세 및 월세인 경우 월평균 주택의 월세액을 살펴보면, 주택의 월세액은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7.70%)에서 평균은 206천원이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가 149천원, 일반가구가 241천원이다.

〈표 8-1-18〉 거주하고 있는 주택 월세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저소득 일반		200	206	4.67
		150	149	4.23
		210	241	7.24

월세로 살고 있는 가구(전체가구 중 17.70%)에서 30만원 미만인 가구가 75.29%로 가장 많고, 30~50만원 미만인 경우가 19.52%이다. 월평균 주택의 월세액을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 30만원 미만인 경우가 각각 89.07%, 66.9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1-19〉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월세액 분포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30만원 미만 30만~50만원 미만 50만~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계		75.29	89.07	66.99
		19.52	9.14	25.77
		4.48	1.79	6.11
		0.71	0.00	1.13
		100.00	100.00	100.00

## 제2절 구조·성능 및 환경

### 1. 주택 구조·성능

주택의 구조 및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료의 양호성 여부를 파악한 결과가 다음의 <표 8-2-1>과 같다. 전체적으로 양호하다는 응답(예)이 80.36%, 양호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이 19.64%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양호하다는 비율이 71.17%, 양호하지 않다는 비율이 28.83%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그 비율이 각각 83.64%와 16.36%였다.



〈표 8-2-1〉 주택의 견고성 및 주요 구조부 재질의 양호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0.36	71.17	83.64
아니오	19.64	28.83	16.36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는 아래의 <표 8-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설비가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82.88%, 설비가 없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이 17.12%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예 응답비율과 아니오 응답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각각 76.60%와 23.40%, 일반가구는 각각 85.13%와 14.87%였다.

〈표 8-2-2〉 주택의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 유무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82.88	76.60	85.13
아니오	17.12	23.40	14.87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는 아래의 <표 8-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12.14%, 없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이 87.86%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14.30%와 85.70%, 일반 가구에서는 각각 11.37%와 88.6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2-3〉 주택의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불만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12.14	14.30	11.37
아니오	87.86	85.70	88.63
계	100.00	100.00	100.00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는 아래의 <표 8-2-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는 응답(예)의 비율이 98.10%, 안전하지 않다는 응답(아니오) 비율은 1.90%였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96.55%와 3.45%, 일반가구는 각각 98.66%와 1.34%로 나타났다.

<표 8-2-4> 주택의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98.10	96.55	98.66
아니오	1.90	3.45	1.34
계	100.00	100.00	100.00

### 제3절 욕구 및 서비스 실태

#### 1. 주거비 부담

소득집단별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은 아래의 <표 8-3-1>과 같다. 1순위에서는 자기돈이 89.09%,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이 5.26%로 높았다. 2순위에서는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의 비율이 71.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돈 14.8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이 6.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8-3-1>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

(단위: %)

특성 \ 구분	1순위	2순위
자기돈	89.09	14.8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62	6.67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99	6.35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5.26	71.31
사채	0.02	0.82
모름/무응답	0.02	0.06
계	100.00	100.00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1순위)은 아래의 <표 8-3-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자기돈이 89.0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은 5.26%,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62% 순이었다. 저소득 가구는 자기돈 85.51%,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6.76%,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은 4.12%로 나타났고, 일반 가구는 자기돈 90.19%,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5.61%,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2.65%였다.

<표 8-3-2>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89.09	85.51	90.19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3.62	6.76	2.65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1.99	3.59	1.50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5.26	4.12	5.61
사채		0.02	0.03	0.02
모름/무응답		0.02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2순위)은 아래의 <표 8-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이 71.3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기돈 14.80%,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이 6.67%의 순으로 높았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57.42%, 자기돈 19.26%,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이 12.22%이었고, 일반 가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림 74.04%, 자기돈 13.92%,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이 5.68%였다.

<표 8-3-3> 주택 구입비용 및 보증금 마련 방법의 내용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기돈		14.80	19.26	13.92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6.67	12.22	5.57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6.35	9.74	5.68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포함)으로부터 빌림		71.31	57.42	74.04
사채		0.82	1.37	0.71
모름/무응답		0.06	0.00	0.07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에서 총 원금 상환액,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 대출상환액의 연체횟수의 경우 주택관련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n=1,746)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원금 상환액은 아래의 <표 8-3-4>와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2,342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680천원, 일반 가구는 2,669천원이었다.

<표 8-3-4> 총 원금 상환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	2,342	229.22
	저소득	0	680	316.72
	일반	0	2,669	277.55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은 아래의 <표 8-3-5>와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31,688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14,218천원, 일반 가구는 35,128천원이었다.

<표 8-3-5> 갚고 남은 용자액이나 부채액의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5,000	31,688	1,675.08
	저소득	5,000	14,218	1,043.30
	일반	19,160	35,128	2,090.42

소득집단별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은 아래의 <표 8-3-6>과 같다. 전체 평균 금액은 1,908천원이었고,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817천원, 일반 가구는 2,122천원이었다.

<표 8-3-6>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액 기술통계량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900	1,908	80.26
	저소득	0	817	64.45
	일반	1,030	2,122	99.1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는 아래의 <표 8-3-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의 비율이 97.56%로 가장 높았으며, 4회 이상이 1.11%, 2~3회가 0.93% 등의 순이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연체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4.90%, 4회 이상이 3.16%, 2~3회가 1.51%였고, 일반 가구는 연체한 적이 없다 98.09%, 2~3회가 0.81%, 4회 이상이 0.7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7> 대출상환액의 연체 횟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체한 적이 없다			97.56	94.90	98.09
1회			0.40	0.43	0.39
2~3회			0.93	1.51	0.81
4회 이상			1.11	3.16	0.71
계			100.00	100.00	100.00

## 2. 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주거복지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60%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5.91%, 일반가구는 1.13%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8> 영구임대주택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2.39	5.91	1.13
	없다		97.60	94.05	98.87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0	100.00	100.00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9>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5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20.73%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1.29%, 5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9> 영구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20.73	24.09	14.42
		대체로 만족	53.71	51.29	58.24
		그저 그렇다	20.36	18.81	23.26
		대체로 불만족	3.84	4.20	3.16
		매우 불만족	1.37	1.61	0.91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8.3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8.33%, 일반가구의 경우 98.38%로 소득집단별로 이용경험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8-3-10>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1.62	1.63	1.62
		없다	98.37	98.33	98.38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0	100.00	100.00

공공(국민)임대주택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1>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가 50.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전체 결과와 같이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각각 50.47%, 5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1〉 공공(국민)임대주택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9.74	9.69	9.76
	대체로 만족		50.95	50.47	51.12
	그저 그렇다		23.47	17.99	25.44
	대체로 불만족		9.37	15.97	7.00
	매우 불만족		6.46	5.88	6.67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다음으로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57%로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99.18%, 일반가구의 경우 99.72%로 소득집단별로 이용경험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8-3-12〉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41	0.78	0.28
	없다		99.57	99.18	99.72
	모름/무응답		0.01	0.04	0.04
계			100.00	100.00	100.00

전세자금(융자)지원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3>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 49.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27.18%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45.07%, 5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8-3-13〉 전세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27.18	28.05	26.33
		대체로 만족	49.52	45.07	53.91
		그저 그렇다	13.49	17.27	9.76
		대체로 불만족	5.03	0.00	10.00
		매우 불만족	4.78	9.62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저소득층 월세지원<sup>25)</sup>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93%로 높게 나타났다.

〈표 8-3-14〉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06	0.24	0.00
		없다	99.93	99.72	100.00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0	100.00	100.00

저소득층 월세지원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표 8-3-15>와 같이 모두 저소득가구에서 나타났으며,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8.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31.33%로 나타났다.

25) 3.4차 웨이브에서는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월세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표 8-3-15〉 저소득층 월세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0.00	0.00	-
		대체로 만족	68.67	68.67	-
		그저 그렇다	0.00	0.00	-
		대체로 불만족	0.00	0.00	-
		매우 불만족	31.33	31.33	-
계			100.00	100.00	-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다음으로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97%로 높게 나타났다.

〈표 8-3-16〉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02	0.08	0.00
		없다	99.97	99.88	100.00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이용경험자의 경우 <표 8-3-17>과 같이 모두 저소득가구로 나타났으며, 매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100.00%로 나타났다.

〈표 8-3-17〉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0.00	0.00	-
		대체로 만족	0.00	0.00	-
		그저 그렇다	0.00	0.00	-
		대체로 불만족	0.00	0.00	-
		매우 불만족	100.00	100.00	-
계			100.00	100.00	-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다음으로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9.66%로 높게 나타났다. “이용 경험이 있다”(0.33%)고 응답한 경우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긴급가계 생활자금이 포함되었다.

〈표 8-3-18〉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 경험	있다		0.33	0.84	0.14
	없다		99.66	99.12	99.86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0	100.00	100.00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다음 <표 8-3-19>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경우 4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31.11%로 나타났다.

〈표 8-3-19〉 기타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자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만족도	매우 만족		31.11	30.44	32.51
	대체로 만족		47.54	43.83	55.27
	그저 그렇다		9.12	7.63	12.23
	대체로 불만족		6.16	9.12	0.00
	매우 불만족		6.07	8.98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이용경험자의 만족도는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질문함.

### 3. 주거관련 생활여건

주거관련 생활여건을 알아보기 위해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아래의 <표 8-3-2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은 1.84%,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은 36.4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4.05%와 38.63%, 일반 가구는 각각 1.05%와 3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0> (돈이 없어서) 집세 연체 혹은 집세 미납부로 인한 이사경험 여부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1.84	4.05	1.05
아니오	36.44	38.63	35.65
비해당	61.71	57.31	63.27
모름/무응답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는 아래의 <표 8-3-2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예)의 비율은 2.05%, 경험이 없다는 응답(아니오)은 97.9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 가구는 이 비율이 각각 6.24%와 93.76%였고, 일반 가구는 각각 0.56%와 9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8-3-21> (돈이 없어서) 난방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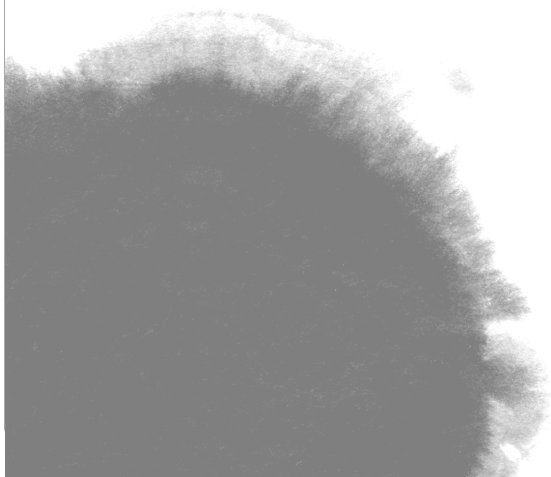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예	2.05	6.24	0.56
아니오	97.95	93.76	99.44
계	100.00	100.00	100.00



# 09

## 건강 및 의료





# 제9장 건강 및 의료

## 제1절 건강상태

건강 및 의료실태 중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는 <표 9-1-1>과 같다. 가구주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하다(아주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는 가구주는 63.15%,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가구주는 16.9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주 중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은 9.80%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중 건강하지 않다는 비율은 39.69%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주는 일반가구의 가구주보다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4.0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1> 가구주의 건강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17.96	8.00	21.12
건강한 편이다		45.19	25.88	51.31
보통이다		19.85	26.44	17.77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14.62	32.83	8.85
건강이 아주 안 좋다		2.37	6.86	0.95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표 9-1-2>와 같이 전체 가구원 중 “건강하다(아주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는 가구원은 78.27%였으며, “건강하지 않다(건강이 아주 안 좋다+건강하지 않은 편이다)”는 가구원은 9.02%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원은 6.90%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중 건강하지 않다는 가구원은 21.10%로 나타나 일반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은 일반가구의 가구원보다 건강하지 않은 비율이 약 3.0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2> 가구원의 건강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주 건강하다		26.60	19.90	27.78
건강한 편이다		51.67	43.77	53.06
보통이다		12.68	15.22	12.23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7.75	17.25	6.08
건강이 아주 안 좋다		1.27	3.85	0.82
모름/무응답		0.02	0.01	0.03
계		100.00	100.00	100.00

소득집단별 주요병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표 9-1-3>과 같다. 먼저 전체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38.7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가구원 중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은 34.73%인 반면, 저소득가구는 57.11%로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일반가구에 비해 약 1.64배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구원의 주요병명으로는 기타질병(8.04%), 고혈압(6.60%), 치아우식증(충치)(5.45%),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5.05%) 순이었다. 저소득가구 가구원의 주요병명은 고혈압(12.28%),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10.20%), 기타질병(8.64%)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의 경우 기타질병(7.91%), 치아우식증(충치)(5.97%), 고혈압(5.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결핵, 결핵의 경우 저소득가구 가구원이 앓고 있는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9배 높았고, 우울증의 경우 4.7배, 골다공증의 경우 약 4.6배, 요실금의 경우 4.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1-3〉 주요병명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61.22	42.89	65.27
암(위, 간, 폐, 기관지 등)		0.95	1.66	0.80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5.05	10.20	3.92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1.28	2.19	1.07
만성간염, 간경변		0.35	0.49	0.32
당뇨병		2.67	5.61	2.02
갑상선질환		0.65	0.80	0.62
고혈압		6.60	12.28	5.35
중풍, 뇌혈관질환		0.77	1.77	0.55
심근경색증, 협심증		0.89	2.19	0.60
폐결핵, 결핵		0.05	0.18	0.02
만성기관지염(심한가래, 기침)		0.14	0.34	0.10
천식		0.35	0.93	0.22
백내장, 녹내장		0.17	0.44	0.11
만성중이염		0.12	0.13	0.12
만성심부전증(만성신장질환)		0.31	0.62	0.24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0.49	0.77	0.43
골다공증		0.30	0.83	0.18
빈혈		0.13	0.03	0.15
고지혈증		0.28	0.20	0.29
치질(치핵)		0.18	0.04	0.21
만성부비동염(축농증)		0.18	0.13	0.19
기관지확장증		0.04	0.01	0.05
알레르기성 비염		1.29	0.63	1.43
턱관절질환		0.03	0.04	0.03
아토피성 피부염		0.64	0.38	0.69
요실금		0.03	0.09	0.02
우울증		0.50	1.41	0.30
치아우식증(충치)		5.45	3.07	5.97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0.56	0.60	0.55
기타질환		8.04	8.64	7.91
희귀난치성 질환		0.27	0.38	0.25
저혈압		0.01	0.03	0.01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가구주의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표 9-1-4>와 같다. 전체 가구 중 46.13%의 가구에서 가구주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가구주가 68.54%로 일반가구(39.02%)에 비해 약 1.76배 많아 큰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가구의 경우 6개월 이상 투병·투약

하고 있는 경우가 63.50%를 차지하였다.

〈표 9-1-4〉 가구주의 만성질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3.87	31.47	60.97
있음	계		46.13	68.54	39.02
	3개월 미만 투병·투약		6.41	3.48	7.33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86	1.56	1.95
	6개월 이상 투병·투약		37.86	63.50	29.74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의 만성질환 상태를 살펴보면, <표 9-1-5>와 같다. 가구원 중 지속적인 투병 및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는 27.40%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성질환자 비율이 일반가구보다 약 1.6배 이상 높았다(저소득가구 40.19%, 일반가구 25.15%). 6개월 이상 투병·투약을 하고 있는 만성질환자 비율 역시 저소득가구는 34.54%, 일반가구(18.05%)보다 약 1.91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표 9-1-5〉 가구원의 만성질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72.58	59.81	74.83
있음	계		27.40	40.19	25.15
	3개월 미만 투병·투약		5.50	4.38	5.70
	3~6개월 미만 투병·투약		1.38	1.27	1.40
	6개월 이상 투병·투약		20.52	34.54	18.05
		모름/무응답	0.01	0.01	0.02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의료기관 이용현황

의료기관 이용현황 중 건강검진횟수는 <표 9-2-1>과 같다. 2008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40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33회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검진횟수는 0.41회로 나타났다.

<표 9-2-1> 건강검진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40	0.00
저소득		0.00	0.33	0.01
일반		0.00	0.41	0.00

다음으로 외래진료횟수는 <표 9-2-2>와 같다. 2008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외래진료횟수는 평균 10.13회, 중위 4.00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진료횟수는 평균 17.26회, 중위 8.00회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진료횟수는 평균 8.56회, 중위 4.00회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외래진료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저소득가구에서 약 2.02배 외래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2> 외래진료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4.00	10.13	0.16
저소득		8.00	17.26	0.43
일반		4.00	8.56	0.16

다음으로 입원횟수는 <표 9-2-3>과 같다. 2008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횟수는 0.14회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당 평균 입원횟수는 0.20회, 일반가구의 경우 0.13회로 나타나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입원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9-2-3〉 입원횟수

(단위: 횟수)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0.14	0.01
	저소득	0.00	0.20	0.01
	일반	0.00	0.13	0.01

다음으로 입원일수는 <표 9-2-4>와 같다. 2008년 1년간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2.07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4.19일, 일반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60일이다.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평균입원일수가 약 2.6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4〉 입원일수

(단위: 일)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0.00	2.07	0.11
	저소득	0.00	4.19	0.32
	일반	0.00	1.60	0.11

다음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유는 <표 9-2-5>와 같다. 전체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는 지병·질병(7.28%)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2.26%), 출산(1.06%)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병원에 입원한 가장 큰 이유도 지병·질병(11.17%)이었으며, 다음으로 사고(2.60%), 출산(0.38%) 순이었다. 일반가구의 가구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병·질병(6.42%), 사고(2.19%), 출산(1.21%) 순이었다.

〈표 9-2-5〉 병원에 입원한 이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89.17	85.67	89.94
지병·질병		7.28	11.17	6.42
사고		2.26	2.60	2.19
출산		1.06	0.38	1.21
건강검진		0.06	0.05	0.06
요양/휴식		0.02	0.10	0.00
성·정형/교정		0.08	0.00	0.10
기타		0.06	0.03	0.07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한편,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는 <표 9-2-6>과 같다. 전체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64.78%), 종합, 대학병원(8.11%), 한방 병·의원(1.66%)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구원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지역내 병·의원(65.14%), 종합, 대학병원(11.02%), 보건소(2.41%), 한방 병·의원(1.99%) 순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지역내 병·의원(64.7%), 종합, 대학병원(7.47%), 한방 병·의원(1.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9-2-6〉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24.52	19.36	25.66
종합, 대학병원		8.11	11.02	7.47
지역 내 병·의원		64.78	65.14	64.70
한방 병·의원		1.66	1.99	1.59
보건소		0.85	2.41	0.50
기타		0.06	0.07	0.06
모름/무응답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sup>26)</sup> 가입률은 <표 9-2-7>과 같다. 2008년 1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가입률은 67.2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평균 가입률은 32.97%, 일반가구의 경우 평균가입률은 79.51%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가입률이 약 2.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7> 민간의료보험 가입률<sup>27)</sup>(가구 기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67.27	32.97	79.51
	미가입	32.73	67.03	20.49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표 9-2-8>과 같다. 2008년 1년간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2.7건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가입건수는 0.89건, 일반가구의 경우 3.35건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평균가입건수가 약 3.7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sup>28)</sup>(가구 기준)

(단위: 건)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0	2.70	0.04
	저소득	0.00	0.89	0.03
	일반	3.00	3.35	0.05

26) 민간의료보험 가입률, 가입건수, 월평균 보험료는 표본가구 전체를 100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7) 가구원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가 1건 이상이면 민간의료보험 가입으로 처리하였다.

2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는 민간의료보험 중 연금성격이 아닌 순수질병보장성격의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조사하였다. 한편 주계약자가 남편, 종계약자로 아내, 자녀들까지 보장받는 가족의료보험의 경우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납입기한이 끝났으나 보장받는 보험의 경우 가입건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는 <표 9-2-9>와 같다. 2008년 12월 기준 가구당 평균 월평균보험료는 134.28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구당 평균 월평균보험료는 39.55천원, 일반가구의 경우 168.12천원이었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월평균보험료가 약 4.2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2-9> 민간의료보험 월평균 보험료<sup>29)</sup>(가구 기준)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80.00	134.28	2.58
저소득		0.00	39.55	1.85
일반		120.00	168.12	3.66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표 9-2-10>과 같다. 전체 가구 중 의료기관을 이용한 가구의 62.14%가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하였고” 응답하였고,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전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하다”고 응답한 가구 비율은 9.05%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의 72.07%가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반면, 일반 가구는 58.58%가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 가구에 비해 저소득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2-10> 의료기관 서비스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그렇지 않다		1.05	0.93	1.09
별로 그렇지 않다		8.00	6.21	8.64
보통이다		28.81	20.74	31.69
대체로 그렇다		50.15	55.03	48.40
매우 그렇다		11.99	17.04	10.18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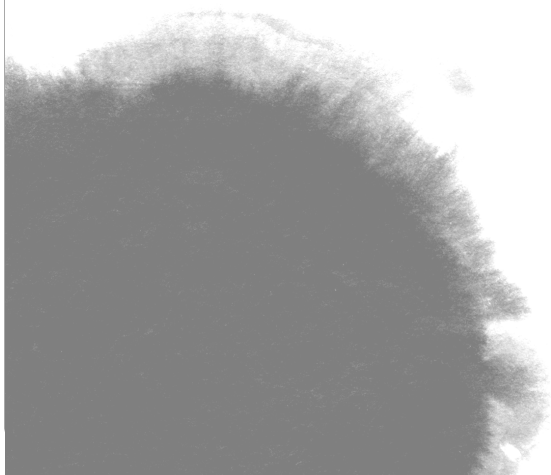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29) 2008년 12월 기준 한 가구가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월평균 보험료의 합을 조사하였다.





# 10

가  
족





# 제10장 가족

## 제1절 가족관계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

### 1.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를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0-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47.71%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소득 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29.07%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반면, 일반 가구의 경우는 51.98%가 따로 사는 부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 집단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1-1> 따로 사는 부모의 존재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7.71	29.07	51.98
없다		52.28	70.93	48.02
모름/무응답		0.00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으로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33.01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평균 29.05회, 일반가구의 경우는 평균 33.52회 왕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에서 저소득가구에 비해 왕래가 다소 많았다.

〈표 10-1-2〉 따로 사는 부모와의 왕래정도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00	33.01	0.92
	저소득	5.00	29.05	2.36
	일반	12.00	33.52	1.00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0-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89.76회 전화하였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는 평균 72.49회, 일반 가구의 경우는 평균 91.97회 전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자주 전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1-3〉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전화연락 정도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편차
	전체	48.00	89.76	1.42
	저소득	36.00	72.49	3.43
	일반	48.00	91.97	1.55

## 2. 성역할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성역할에 관한 인식(8문항)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67.86%, 76.06%, 76.35%, 59.33%)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53.78%, 67.36%, 56.99%, 84.12%)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1-4〉 성역할에 대한 인식(전체)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71	15.33	15.09	54.61	13.25	0.01	100.00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86	11.38	11.69	57.22	18.84	0.02	100.00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71	8.27	14.62	58.94	17.41	0.05	100.00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10.35	43.43	17.39	23.91	4.90	0.01	100.00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2.00	15.62	23.02	51.97	7.36	0.02	100.00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28.35	39.01	18.23	12.97	1.40	0.03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24.47	32.52	16.90	23.53	2.57	0.02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52.33	31.79	9.83	5.47	0.55	0.03	100.00

저소득가구의 성역할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1-5>와 같다.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74.35%, 80.53%, 76.99%, 60.84%)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반면,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43.85%, 59.82%, 47.38%, 80.27%)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1-5〉 성역할에 대한 인식(저소득가구)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23	11.74	12.67	60.17	14.18	0.01	100.00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56	10.02	8.83	60.33	20.20	0.05	100.00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44	7.26	15.30	60.77	16.22	0.01	100.00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6.89	36.96	17.90	31.60	6.63	0.02	100.00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1.97	14.52	22.66	52.77	8.07	0.02	100.00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25.76	34.06	18.73	18.57	2.79	0.09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23.47	23.91	16.16	31.07	5.39	0.01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53.78	26.49	10.60	8.22	0.90	0.01	100.00

일반가구의 성역할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10-1-6>과 같다.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66.38%, 75.04%, 76.20%, 59.00%)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표 10-1-6〉 성역할에 대한 인식(일반가구)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름/ 무응답	계
㉠ 여성의 전일근로제가 가족생활을 힘들게 함		1.82	16.15	15.64	53.34	13.04	0.01	100.00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쁨		0.93	11.69	12.34	56.51	18.53	0.01	100.00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함		0.77	8.50	14.47	58.52	17.68	0.06	100.00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11.14	44.91	17.27	22.16	4.51	0.01	100.00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함		2.01	15.88	23.11	51.79	7.21	0.02	100.00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28.95	40.13	18.12	11.69	1.09	0.02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24.70	34.48	17.07	21.81	1.93	0.02	100.00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		52.00	33.00	9.66	4.84	0.46	0.03	100.00

반면,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임”, “㉡ 가정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줌”,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려움”,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을 집중하기가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각각 56.05%, 69.08%, 59.18%, 85.00%)이 그렇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 제2절 가족문제

### 1. 가족문제

가구구성원의 소득집단별로 가족 갈등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1>과 같다. 전체적으로 가족 갈등 1순위 원인을 살펴보면,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41.83%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은 가구원의 건강(22.89%),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22.1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2-1> 가족 갈등 원인(1순위, 2순위)

(단위: %)

구분	특성	1순위			2순위		
		소득수준			소득수준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어려움 없다	41.83	18.71	50.08	2.27	1.57	2.81
	경제적 어려움 (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	22.13	35.46	17.38	31.10	36.89	26.70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4.69	5.15	4.53	10.94	8.83	12.54
	자녀교육 혹은 행동	3.07	0.86	3.85	10.20	4.42	14.59
	가구원의 건강	22.89	35.03	18.56	30.61	37.18	25.62
	가구원의 알코올	0.60	0.92	0.48	1.66	0.85	2.27
	가족 내 폭력	0.03	0.06	0.02	0.12	0.14	0.11
	가구원간 관계	1.27	0.86	1.42	4.06	3.99	4.11
	가구원의 가출	0.15	0.31	0.09	0.43	0.28	0.54
	주거관련 문제	0.94	0.86	0.96	3.01	2.56	3.35
	기타	1.63	1.23	1.77	1.60	1.28	1.84
	모름/무응답	0.77	0.55	0.85	4.00	1.99	5.51
	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저소득가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이 18.71%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35.46%)과 가구원의 건강(35.03%)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가 50.08%를 차지했으며, 가족 갈등 원인으로는 저소득가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17.38%), 가구원의 건강(18.56%)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갈등 2순위 원인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31.10%), 가구원의 건강(30.61%)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도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 2. 가족갈등 대처방법

가족갈등 대처방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2-2>와 같다. ‘우리가정에서는 의견 충돌이 잦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41.06%를, ‘가족 구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79.29%를 차지했다. 한편,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는 매우 그렇다(18.21%)는 비율이 전혀 그렇지 않다(1.58%)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와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각각 74.25%, 88.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 가족갈등 대처방법

(단위: %)

특성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전체	저소득	일반
우리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41.06	39.81	41.48	34.84	36.49	34.28	13.26	12.01	13.68	9.57	9.81	9.49	1.27	1.88	1.07
가족구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79.29	75.76	80.48	16.52	19.36	15.55	1.88	2.01	1.83	2.06	2.47	1.92	0.26	0.39	0.22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1.58	2.40	1.30	9.88	12.22	9.09	28.95	35.61	26.69	41.38	34.96	43.56	18.21	14.81	19.36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74.25	71.28	75.25	18.37	19.95	17.83	4.03	3.96	4.05	3.11	4.42	2.66	0.25	0.39	0.20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88.86	86.30	89.72	9.76	11.56	9.15	0.63	1.04	0.48	0.69	0.97	0.59	0.07	0.13	0.04



가족갈등 대처방법을 점수화시켜 살펴보면, 다음 <표 10-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가구는 5점 만점에 평균 4.38점, 저소득 가구는 4.32점, 일반 가구는 4.41점으로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보다 가족갈등 대처방법이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3> 가족갈등 대체방법(전체)

(단위: 점)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4.38	4.32	4.41

주: 응답 결과를 점수화하여 계산한 평균값.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갈등 대처에 뛰어난 것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그런 편이다 5. 매우그렇다). ⊕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은 code를 reverse 시킨 후 연산하였음.

### 3. 가족의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가. 흡연에 관한 생활습관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생애동안의 흡연경험과 현재의 흡연경험, 금연계획, 간접흡연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1) 생애동안 피운 담배 총량

살아오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이 총 얼마인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1.32%는 피운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25%는 5갑 미만을, 37.42%는 5갑 이상을 피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의 생애동안 피운 담배 총량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10-2-4> 생애동안 피운 담배의 총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5갑(100개비) 미만		1.25	1.24	1.26
5갑(100개비) 이상		37.42	38.40	37.20
피운 적 없음		61.32	60.36	61.54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2) 흡연경험 시기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3.14%가 만 나이로 19세 이전에 첫 담배를 피웠고, 55.04%가 20~30대에, 1.71%가 40~50대에, 0.08%가 60대 이상에 첫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대 이하일 때 첫 담배를 피운 비율이 저소득가구원은 37.73%이고 일반가구원은 44.42%로, 저소득가구원에 비해 일반가구원이 첫 담배를 피운 시기가 조금 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5〉 흡연경험 시기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0대 이하(~19세)		43.14	37.73	44.42
20~30대(20~39세)		55.04	57.30	54.51
40~50대(40~59세)		1.71	4.54	1.05
60대 이상(60세~)		0.08	0.32	0.03
모름/무응답		0.02	0.11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음.

## 3) 총 흡연기간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총 흡연기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년 미만인 1.30%, 1~5년 미만인 6.75%, 5~10년 미만인 11.40%, 10~15년 미만인 14.35%, 15년 이상이 65.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15년 이상의 흡연기간을 가진 비율이 77.41%인 반면 일반가구원은 63.29%로 나타나, 15년 이상 장기흡연자의 비율이 저소득가구원에서 더 높았다.

〈표 10-2-6〉 총 흡연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년 미만	1.30	1.62	1.23
	1년~5년 미만	6.75	6.27	6.87
	5년~10년 미만	11.40	5.19	12.87
	10년~15년 미만	14.35	9.08	15.60
	15년 이상	65.99	77.41	63.29
	모름/무응답	0.21	0.43	0.15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음.

#### 4) 흡연경험자의 현재 흡연 여부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에도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흡연을 경험한 전체 가구원 중 63.27%가 현재도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10-2-7〉 흡연경험자의 현재 흡연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피움	63.27	60.61	63.90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36.73	39.39	36.1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음.

#### 5) 하루 평균 흡연량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하루 평균 흡연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38.43%가 하루에 반갑 이내를 피운다고 응답하였고,

49.80%가 반갑~한갑 이내를, 10.77%가 한갑~두갑 이내를, 1.00%가 두갑 넘게 피운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한갑 넘게 담배를 피우는 비율이 저소득가구원은 13.62%이고 일반가구원은 11.33%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원이 일반가구원에 비해 한갑 넘게 피우는 비율이 다소 높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표 10-2-8〉 하루 평균 흡연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반갑 이내(~10개비)		38.43	39.65	38.14
반갑~한갑 이내(11~20개비)		49.80	46.73	50.53
한갑~두갑 이내(21~40개비)		10.77	12.42	10.38
두갑 초과(41개비~)		1.00	1.20	0.95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만이 응답하였음. 과거 흡연자의 경우에는 과거 흡연하던 때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응답하였음.

#### 6) 하루이상 금연시도 여부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 이상 금연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2.64%가 하루 이상 금연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9〉 하루이상 금연시도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2.64	41.61	42.87
없다		57.20	58.21	56.97
모름/무응답		0.16	0.18	0.16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 중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는 자만 응답하였음.

## 7) 향후 금연 계획

현재 담배를 피운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향후 금연할 계획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02%가 1개월 안에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5.78%는 6개월 안에 금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45.87%는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43.81%는 현재로서는 금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금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1.52%로 일반가구원의 42.0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2-10〉 향후 금연 계획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4.02	0.89	4.72
6개월 안에 금연 계획 있음		5.78	4.10	6.16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 계획 있음		45.87	43.14	46.48
현재로서는 금연 계획 없음		43.81	51.52	42.09
모름/무응답		0.52	0.36	0.56
계		100.00	100.00	100.00

주: 생애 동안 흡연경험이 있는 자 중 현재도 흡연을 하고 있는 자만 응답하였음.

## 8) 간접흡연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이 하루 몇 시간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원 중 59.08%는 0시간이라고 응답하였고, 28.79%는 1시간 미만, 8.53%는 1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소득가구원은 69.04%, 일반가구원은 56.80%로 저소득가구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0-2-11〉 하루 동안 실내에서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시간(없음)	59.08	69.04	56.80
	1시간 미만	28.79	21.14	30.54
	1시간 이상	8.53	6.05	9.10
	모름/무응답	3.60	3.77	3.55
	계	100.00	100.00	100.00

### 9) 간접흡연 노출시간

하루 1시간 이상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맡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루에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14.03%가 1시간, 38.63%가 2시간, 20.95%가 3시간, 8.04%가 4시간, 16.65%가 5시간 이상 담배연기에 노출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5시간 이상 노출되는 비율이 19.01%로 일반가구원의 16.2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2-12〉 담배연기 노출시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14.03	9.86	14.67
	2시간	38.63	40.14	38.40
	3시간	20.95	19.72	21.14
	4시간	8.04	8.45	7.98
	5시간 이상	16.65	19.01	16.29
	모름/무응답	1.68	2.82	1.51
	계	100.00	100.00	100.00

주: 담배연기를 맡는 시간이 하루 1시간 이상인 자만 응답하였음.

## 나. 음주에 관한 생활습관

### 1) 음주회수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원 중 17.93%는 월 1회 이하, 25.78%는 월 2~4회, 13.90%는 주 2~3회, 6.30%는 주 4회 이상, 36.08%는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54.03%로 일반가구원의 31.9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2-13〉 음주회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월 1회 이하		17.93	14.79	18.65
월 2~4회		25.78	15.61	28.10
주 2~3회		13.90	8.92	15.04
주 4회 이상		6.30	6.65	6.22
전혀 마시지 않는다		36.08	54.03	31.97
모름/무응답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 2) 음주량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를 마시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24.84%가 1~2잔 정도, 22.83%가 3~4잔 정도, 15.98%가 5~6잔 정도, 20.24%가 7~9잔 정도, 16.11%가 10잔 이상을 마신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1~2잔 정도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3%로 일반가구원의 23.81%보다 높고, 10잔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비율이 10.63%로 일반가구원의 16.96%보다 낮아, 전반적으로 저소득가구원의 평균적인 음주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14〉 음주량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2잔 정도	24.84	31.53	23.81
	3-4잔 정도	22.83	25.00	22.49
	5-6잔 정도	15.98	15.11	16.11
	7-9잔 정도	20.24	17.72	20.63
	10잔 이상	16.11	10.63	16.96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 3) 과음회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번에 술좌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과음회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29.99%는 과음한 적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20.70%는 몇 달에 한번 정도, 25.26%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18.38%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5.45%는 거의 매일 과음한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전혀 과음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0.30%로 일반가구원의 28.39%보다 높은 반면, 거의 매일 과음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46%로 일반가구원의 5.14%보다 역시 높게 나타났다.

〈표 10-2-15〉 과음회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29.99	40.30	28.39
	몇 달에 한번 정도	20.70	20.06	20.80
	한달에 한두번 정도	25.26	18.75	26.27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18.38	13.34	19.15
	거의 매일	5.45	7.46	5.14
	모름/무응답	0.23	0.09	0.25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 4) 음주에 관한 경험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을 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9.4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5.20%는 몇 달에 한번 정도, 7.96%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2.93%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75%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81%로 일반가구원의 68.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2-16〉 음주를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9.48	74.81	68.65
몇 달에 한번 정도		15.20	11.57	15.77
한달에 한두번 정도		7.96	6.25	8.23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2.93	2.05	3.06
거의 매일		0.75	0.47	0.79
모름/무응답		3.68	4.85	3.4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82.5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9.80%는 몇 달에 한번 정도, 3.35%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0.48%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05%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5.25%로 일반가구원의 82.1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2-17〉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2.58	85.25	82.17
몇 달에 한번 정도		9.80	5.98	10.40
한달에 한두번 정도		3.35	3.36	3.35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48	0.28	0.51
거의 매일		0.05	0.28	0.01
모름/무응답		3.74	4.86	3.57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을 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90.25%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4.10%는 몇 달에 한번 정도, 1.44%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0.29%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14%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18〉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90.25	90.49	90.21
몇 달에 한번 정도		4.10	2.80	4.30
한달에 한두번 정도		1.44	1.31	1.46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29	0.19	0.30
거의 매일		0.14	0.28	0.12
모름/무응답		3.79	4.94	3.61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5.0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4.93%는 몇 달에 한번 정도, 4.88%는 한달에 한두

번 정도, 0.98%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43%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19〉 음주 후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5.07	76.28	74.88
몇 달에 한번 정도		14.93	11.95	15.39
한달에 한두번 정도		4.88	5.42	4.79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98	1.03	0.97
거의 매일		0.43	0.47	0.42
모름/무응답		3.73	4.86	3.55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경험을 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75.35%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6.38%는 몇 달에 한번 정도, 3.55%는 한달에 한두번 정도, 0.73%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10%는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전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9.10%로 일반가구원의 74.7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0-2-20〉 음주 후 필름이 끊겼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75.35	79.10	74.77
몇 달에 한번 정도		16.38	10.82	17.23
한달에 한두번 정도		3.55	3.82	3.51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0.73	0.93	0.69
거의 매일		0.10	0.19	0.09
모름/무응답		3.90	5.13	3.71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을 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91.99%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3.19%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11%는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21〉 음주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91.99	90.67	92.19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없었다		3.19	3.26	3.18
지난 한해 동안 있었다		1.11	1.21	1.10
모름/무응답		3.71	4.85	3.54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몇 번인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80.17%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3.69%는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은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12.44%는 지난 한해 동안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22〉 주변사람들이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80.17	81.25	80.01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없었다		3.69	3.08	3.78
지난 한해 동안 있었다		12.44	10.82	12.69
모름/무응답		3.70	4.85	3.5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 5) 음주에 대한 인식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30.03%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26.12%, 일반가구원은 30.6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0-2-23〉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0.03	26.12	30.64
	없다	65.48	68.00	65.09
	모름/무응답	4.49	5.88	4.27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9.0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24〉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05	10.26	8.86
	없다	86.46	83.86	86.86
	모름/무응답	4.49	5.88	4.27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14.1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25〉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16	14.37	14.13
없다		81.34	79.76	81.58
모름/무응답		4.50	5.88	4.29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2.65%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과 일반가구원은 거의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표 10-2-26〉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는지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65	3.08	2.58
없다		92.74	91.04	93.00
모름/무응답		4.61	5.88	4.42
계		100.00	100.00	100.00

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응답하지 않았음.

#### 다. 출산경험

전체 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출산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원의 1.49%가 출산을 경험하였다. 한편 저소득가구원은 0.56%, 일반가구원은 1.71%가 출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원의 출산경험 비율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2-27〉 출산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9	0.56	1.71
없다		49.71	55.10	48.47
비해당(남성)		48.77	44.25	49.80
모름/무응답		0.03	0.09	0.02
계		100.00	100.00	100.00

## 라. 우울에 대한 인식

조사일 직전 1주일간의 우울 정도를 11문항으로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원의 우울 정도는 평균 1.39점, 저소득가구원은 1.63점, 일반가구원은 1.34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원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다.

〈표 10-2-28〉 우울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1.39	1.63	1.34
(표준편차)		(0.44)	(0.54)	(0.39)
계		100.00	100.00	100.00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극히 드물다, 2: 가끔 있었다, 3: 종종 있었다, 4: 대부분 그랬다)하고 평균을 계산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 하위문항 ④, ⑤는 역점수 처리하였음.

## 마.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조사일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10개 문항으로 조사하여 자아존중감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원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08점, 저소득가구원은 2.86점, 일반가구원은 3.13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원의 자아존중감이 더 낮았다.

〈표 10-2-29〉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3.08 (0.42)	2.86 (0.46)	3.13 (0.39)
계		100.00	100.00	100.00

주: 각 하위문항의 응답을 점수화(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대체로 그렇다, 4: 항상 그렇다)하고 평균을 계산한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음. 하위문항 ㉔, ㉕, ㉖, ㉗, ㉘는 역점수 처리하였음.

## 바. 가정폭력경험

2008년 1년간 배우자에게 모욕적, 악의적 이야기를 듣거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거나, 신체적 폭력을 당한 회수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남성과 여성가 구원의 경우를 나누어 각각 제시하였다.

### 1) 남성의 가정폭력피해 경험

남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50.62%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1.62%가 1~2번, 2.41%가 3~5번, 1.74%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2-30〉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50.62	46.24	51.52
1~2번		11.62	9.54	12.05
3~5번		2.41	3.18	2.25
6번 이상		1.74	2.60	1.56
비해당(배우자 없음)		28.80	32.76	27.99
모름/무응답		4.81	5.68	4.64
계		100.00	100.00	100.00



남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3.68%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90%가 1~2번, 0.47%가 3~5번, 0.31%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2-31〉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3.68	59.40	64.55
1~2번		1.90	1.16	2.05
3~5번		0.47	0.48	0.47
6번 이상		0.31	0.48	0.28
비해당(배우자 없음)		28.79	32.79	27.98
모름/무응답		4.85	5.69	4.67
계		100.00	100.00	100.00

남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5.15%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0.92%가 1~2번, 0.18%가 3~5번, 0.08%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2-32〉 남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5.15	60.52	66.09
1~2번		0.92	0.48	1.01
3~5번		0.18	0.29	0.16
6번 이상		0.08	0.19	0.06
비해당(배우자 없음)		28.81	32.82	27.99
모름/무응답		4.86	5.69	4.69
계		100.00	100.00	100.00

## 2) 여성의 가정폭력피해 경험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47.54%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1.46%가 1~2번, 2.36%가 3~5번, 2.25%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2-33〉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들은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47.54	36.23	50.41
1~2번		11.46	8.53	12.20
3~5번		2.36	2.50	2.32
6번 이상		2.25	2.90	2.08
비해당(배우자 없음)		34.21	47.73	30.78
모름/무응답		2.18	2.11	2.20
계		100.00	100.00	100.00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0.91%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1.76%가 1~2번, 0.35%가 3~5번, 0.55%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2-34〉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받은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0.91	47.38	64.34
1~2번		1.76	1.41	1.85
3~5번		0.35	0.55	0.30
6번 이상		0.55	0.86	0.48
비해당(배우자 없음)		34.25	47.69	30.84
모름/무응답		2.18	2.11	2.20
계		100.00	100.00	100.00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배우자로부터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62.42%가 전혀 없다고 응답하였고, 0.73%가 1~2번, 0.19%가 3~5번, 0.24%가 6번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2-35〉 여성이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혀 없다		62.42	48.98	65.83
1~2번		0.73	0.63	0.75
3~5번		0.19	0.23	0.18
6번 이상		0.24	0.31	0.22
비해당(배우자 없음)		34.24	47.73	30.82
모름/무응답		2.18	2.11	2.20
계		100.00	100.00	100.00

## 사. 가족생활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만족도

### 1) 가족생활만족도

전반적인 가족생활에 만족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15.30%가 매우 만족, 45.89%가 만족, 9.91%가 약간 만족, 18.46%가 보통, 4.01%가 약간 불만족, 1.41%가 불만족, 0.69%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은 5.96%가 매우 만족, 38.95%가 만족, 11.67%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56.58%였다. 반면 일반가구원은 17.44%가 매우 만족, 47.48%가 만족, 9.50%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74.42%로, 저소득가구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0-2-36〉 가족생활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30	5.96	17.44
만족		45.89	38.95	47.48
약간 만족		9.91	11.67	9.50
보통		18.46	25.91	16.75
약간 불만족		4.01	6.13	3.52
불만족		1.41	3.52	0.93
매우 불만족		0.69	1.89	0.41
비해당(작게할족 1촌이 없는 경우)		0.54	1.89	0.23
모름/무응답		3.80	4.08	3.73
계		100.00	100.00	100.00

2)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11.99%가 매우 만족, 28.46%가 만족, 5.69%가 약간 만족, 13.18%가 보통, 2.88%가 약간 불만족, 1.61%가 불만족, 1.01%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은 5.11%가 매우 만족, 20.72%가 만족, 6.05%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31.88%였다. 일반가구원은 13.56%가 매우 만족, 30.23%가 만족, 5.61%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49.40%였다.

〈표 10-2-37〉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1.99	5.11	13.56
만족		28.46	20.72	30.23
약간 만족		5.69	6.05	5.61
보통		13.18	15.23	12.71
약간 불만족		2.88	3.60	2.72
불만족		1.61	2.92	1.31
매우 불만족		1.01	1.29	0.95
비해당(배우자가 없는 경우)		31.78	41.40	29.58
모름/무응답		3.40	3.69	3.34
계		100.00	100.00	100.00

### 3)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19.53%가 매우 만족, 35.49%가 만족, 5.58%가 약간 만족, 8.20%가 보통, 2.08%가 약간 불만족, 0.64%가 불만족, 0.38%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은 11.75%가 매우 만족, 37.95%가 만족, 8.70%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58.40%였다. 일반가구원은 21.31%가 매우 만족, 34.93%가 만족, 4.86%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61.10%였다.

〈표 10-2-38〉 자녀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9.53	11.75	21.31
만족		35.49	37.95	34.93
약간 만족		5.58	8.70	4.86
보통		8.20	12.56	7.20
약간 불만족		2.08	3.99	1.64
불만족		0.64	1.84	0.36
매우 불만족		0.38	1.42	0.15
비해당(자녀가 없는 경우)		24.68	18.10	26.18
모름/무응답		3.43	3.69	3.37
계		100.00	100.00	100.00

### 4)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에 만족하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응답자의 12.24%가 매우 만족, 32.40%가 만족, 5.97%가 약간 만족, 7.58%가 보통, 1.73%가 약간 불만족, 0.46%가 불만족, 0.22%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가구원은 7.80%가 매우 만족, 36.35%가 만족, 9.30%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53.45%였다. 일반가구원은 13.26%가 매우 만족, 31.50%가 만족, 5.20%가 약간 만족한 것으로 나타

나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비율이 49.96%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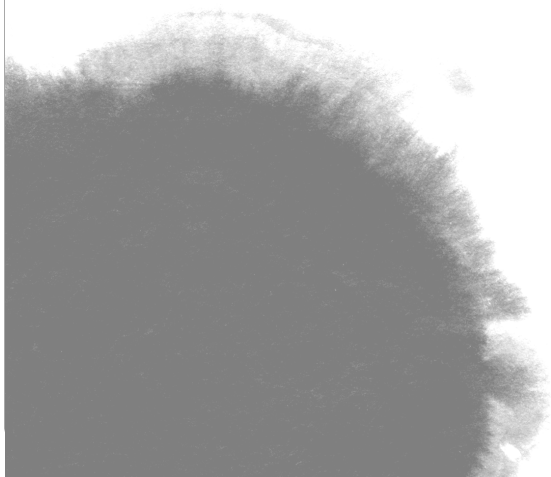
〈표 10-2-39〉 자녀들의 형제자매와의 관계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2.24	7.80	13.26
만족		32.40	36.35	31.50
약간 만족		5.97	9.30	5.20
보통		7.58	10.76	6.85
약간 불만족		1.73	2.40	1.57
불만족		0.46	1.24	0.28
매우 불만족		0.22	0.64	0.13
비해당(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36.00	27.86	37.86
모름/무응답		3.40	3.64	3.34
계		100.00	100.00	100.00

# 11

## 생활실태만족 및 지원활동







# 제1장 생활실태·만족 및 자원활동

## 제1 절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및 만족

### 1. 가구구성원의 생활실태

가구구성원의 인터넷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인터넷 사용 비율은 전체적으로 68.53%로 나타났다. 저소득 가구는 35.82%, 일반 가구는 76.02%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소득집단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1-1〉 인터넷 사용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68.53	35.82	76.02
아니다		31.47	64.18	23.9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구성원의 노동환경 유해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다(61.43%)라는 응답이 그렇다(8.44%)라는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1-1-2〉 노동환경 유해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30.13	49.74	25.64
그렇다		8.44	7.92	8.56
아니다		61.43	42.34	65.80
계		100.00	100.00	100.00

## 2. 가구구성원의 생활만족

가구구성원의 건강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매우만족+대체로만족) 비율(53.15%)이 불만족(대체로불만족+ 매우불만족) 비율(20.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43.40%)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57.9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1-3〉 건강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5.04	13.41	3.13
대체로 불만족		15.13	29.99	11.73
그저 그렇다		26.58	24.07	27.15
대체로 만족		45.08	27.78	49.04
매우 만족		8.07	4.60	8.87
모름/무응답		0.09	0.15	0.08
계		100.00	100.00	100.00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불만족 비율(36.15%)이 만족 비율(24.3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불만족 비율(66.59%)이 만족 비율(5.87%)보다 월등히 높았고, 일반가구의 경우 불만족 비율(29.20%)이 만족 비율(28.5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11-1-4〉 가족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8.24	22.76	4.93
대체로 불만족		27.91	43.83	24.27
그저 그렇다		39.53	27.50	42.28
대체로 만족		23.25	5.74	27.26
매우 만족		1.06	0.13	1.27
모름/무응답		0.01	0.05	0.01
계		100.00	100.00	100.00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55.67%)이 불만족 비율(14.07%)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만족 비율은 저소득 가구가 20.10%, 일반 가구가 12.69%로 저소득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주거 환경에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표 11-1-5〉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2.24	4.82	1.65
대체로 불만족		11.83	15.28	11.04
그저 그렇다		30.24	32.20	29.79
대체로 만족		49.67	42.48	51.32
매우 만족		6.00	5.17	6.19
모름/무응답		0.01	0.05	0.01
계		100.00	100.00	100.00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 비율(78.98%)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63.17%, 일반 가구의 82.6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저소득 가구보다 일반 가구에서 가족 관계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1-1-6〉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0.77	2.46	0.38
대체로 불만족		2.87	6.72	1.99
그저 그렇다		17.33	27.52	15.00
대체로 만족		61.98	55.25	63.52
매우 만족		17.00	7.92	19.08
모름/무응답		0.05	0.13	0.03
계		100.00	100.00	100.00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7.99%로 가장 높았고, 만족 비율(43.37%)이 불만족 비율(20.61%)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37.67%)이,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48.72%)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1-1-7〉 직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4.72	11.65	3.14
대체로 불만족		15.89	26.02	13.58
그저 그렇다		35.83	42.24	34.37
대체로 만족		37.99	18.14	42.53
매우 만족		5.38	1.82	6.19
모름/무응답		0.18	0.13	0.20
계		100.00	100.00	100.00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67.6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의 52.18%, 일반 가구의 71.13%가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11-1-8〉 사회적 친분관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03	3.29	0.51
대체로 불만족		5.27	10.11	4.17
그저 그렇다		26.02	34.38	24.11
대체로 만족		58.25	45.75	61.10
매우 만족		9.36	6.43	10.03
모름/무응답		0.07	0.05	0.07
계		100.00	100.00	100.00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그저 그렇다(39.00%), 만족한다(32.36%), 불만족한다(28.52%) 순으로 응답했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는 불만족 비율(41.13%)이 만족 비율(18.48%)보다 높았고,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35.54%)이 불만족 비율(25.65%)보다 높았다.

〈표 11-1-9〉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5.26	10.35	4.10
대체로 불만족		23.26	30.78	21.55
그저 그렇다		39.00	40.21	38.72
대체로 만족		29.25	17.10	32.03
매우 만족		3.11	1.38	3.51
모름/무응답		0.11	0.17	0.09
계		100.00	100.00	100.00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34%로 가장 높았고, 만족 비율(47.15%)이 불만족 비율(9.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22.92%)이 불만족 비율(22.52%)보다 약간 높고, 일반 가구에서는

만족 비율(52.69%)이 불만족 비율(6.98%)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표 11-1-10〉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불만족		1.17	3.39	0.67
대체로 불만족		8.69	19.13	6.31
그저 그렇다		42.38	53.91	39.75
대체로 만족		45.34	22.29	50.61
매우 만족		1.81	0.63	2.08
모름/무응답		0.60	0.66	0.59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가구구성원의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1>과 같다. 전체적으로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은 86.70%, 하고 있다는 비율은 13.30%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일반 가구(15.06%)가 저소득 가구(5.63%)에 비해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1〉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3.30	5.63	15.06
아니다		86.70	94.37	84.94
계		100.00	100.00	100.00

연간 기부액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270.40천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에서 148.27천원, 일반 가구에서 280.90천원 기부하는 것으로 응답해 일반 가구가 저소득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2-2〉 연간 기부액수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100.00	270.40	19.10
저소득		0.00	148.27	30.60
일반		100.00	280.90	20.95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2-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1년에 평균 11.01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는 평균 14.78회, 일반 가구는 평균 10.68회 자원봉사를 하여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의 평균 자원봉사 횟수가 더 많았다.

〈표 11-2-3〉 연간 자원봉사활동 횟수

(단위: 회)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2.00	11.01	0.66
저소득		4.00	14.78	2.46
일반		2.00	10.68	0.68

### 제3절 가구의 생활여건, 식생활, 주관적 최저생계비

#### 1. 가구의 생활여건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과 같다. 전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6.44%, 경험했다는 비율은 1.84%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4.05%)가 일반 가구(1.05%)에 비해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비율이 약 3.8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84	4.05	1.05
	없다	36.44	38.63	35.65
	비해당	61.71	57.31	63.27
	모름/무응답	0.02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주: 2008년 1년 내내 주거점유형태가 ‘자가’ 혹은 ‘무상’인 경우는 비해당임.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4.90%, 경험했다는 비율은 5.06%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9.15%)가 일반 가구(3.60%)에 비해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비율이 약 2.5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2〉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5.06	9.15	3.60
	없다	94.90	90.79	96.36
	모름/무응답	0.04	0.05	0.03
	계	100.00	100.00	100.00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9.25%, 경험했다는 비율은 0.70%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1.36%)가 일반 가구(0.46%)에 비해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비율이 약 2.9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3〉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전화·수도가 끊긴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70	1.36	0.46
없다		99.25	98.59	99.48
모름/무응답		0.06	0.05	0.06
계		100.00	100.00	100.00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36.47%, 경험했다는 비율은 0.32%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0.56%)가 일반 가구(0.24%)에 비해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비율이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4〉 자녀의 공교육비를 1달 이상 못 준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2	0.56	0.24
없다		36.47	20.80	42.07
비해당 <sup>30)</sup>		63.19	78.64	57.67
모름/무응답		0.02	0.00	0.03
계		100.00	100.00	100.00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5>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7.95%, 경험했다는 비율은 2.05%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6.24%)가 일반 가구(0.56%)에 비해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비율이 약 11.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는 비해당이다.

〈표 11-3-5〉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05	6.24	0.56
	없다	97.95	93.76	99.44
	계	100.00	100.00	100.00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6>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7.91%, 경험했다는 비율은 2.08%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5.28%)가 일반 가구(0.94%)에 비해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비율이 약 5.6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6〉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08	5.28	0.94
	없다	97.91	94.69	99.06
	모름/무응답	0.01	0.03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7>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3.48%, 경험했다는 비율은 6.46%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10.99%)가 일반 가구(4.85%)에 비해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비율이 약 2.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7〉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46	10.99	4.85
없다		93.48	88.80	95.15
모름/무응답		0.06	0.21	0.00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8>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하지 않았다는 비율은 91.92%, 경험했다는 비율은 1.72%를 차지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2.76%)가 일반 가구(1.35%)에 비해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비율이 약 2.0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8〉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2	2.76	1.35
없다		91.92	74.81	98.03
비해당 <sup>31)</sup>		6.36	22.43	0.62
계		100.00	100.00	100.00

## 2. 가구의 식생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자주 그렇다+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2.8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7.94%)가 일반 가구(0.97%)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31) 2008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는 가구는 비해당이다.

없었던 경험” 비율이 약 8.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9〉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0.22	0.71	0.04
가끔 그렇다		2.59	7.23	0.93
전혀 그렇지 않다		97.18	92.00	99.03
모름/거부		0.02	0.06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자주 그렇다+가끔 그렇다)는 비율이 8.7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24.85%)가 일반 가구(2.98%)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던 경험” 비율이 약 8.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자주 그렇다		1.57	5.40	0.20
가끔 그렇다		7.16	19.45	2.78
전혀 그렇지 않다		91.21	75.02	97.00
모름/거부		0.06	0.12	0.03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1>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는 비율이 0.9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3.16%)가 일반 가구(0.15%)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비율이 약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1〉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4	3.16	0.15
없다		98.90	96.66	99.70
모름/거부		0.16	0.18	0.15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가구 내 성인들이 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경험했다는 비율이 43.54%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거의 매월” 경험했다는 비율이 저소득 가구(39.75%)가 일반 가구(19.85%)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2〉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거의 매월		37.11	39.75	19.85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43.54	41.82	54.71
1~2개월 동안		17.85	16.69	25.44
모름/무응답		1.50	1.73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3>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는 비율이 1.3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4.54%)가 일반 가구(0.25%)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비율이 18.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3〉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1.38	4.54	0.25
	아니다	98.59	95.36	99.75
	모름/거부	0.03	0.10	0.00
	계	100.00	100.00	100.00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3-14>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경험했다는 비율이 0.5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 가구(1.94%)가 일반 가구(0.03%)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비율이 약 64.6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4〉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배가 고프데도 먹지 못한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그렇다	0.53	1.94	0.03
	아니다	99.43	97.93	99.96
	모름/거부	0.05	0.14	0.01
	계	100.00	100.00	100.00

### 3. 주관적 최저생계비

다음으로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표 11-3-15>와 같다. 2008년 1년 동안 균등화 1인가구 기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평균 991.47천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636.60천원, 일반가구의 경우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1,160.79천원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 주관적 최저생계비 수준이 평균적으로 약 1.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3-15〉 주관적 최저생계비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중위	평균	표준오차
	전체	919.24	1,031.89	9.72
	저소득	565.69	628.12	6.72
	일반	1,060.66	1,176.19	1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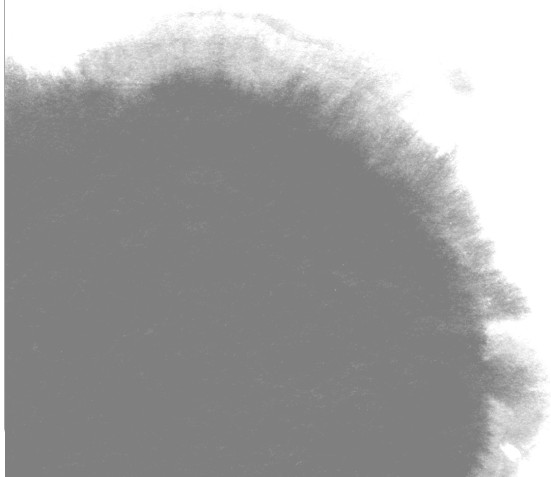
주: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2008년 월평균 기준)?” 라는 문항을 통해 응답한 값이다. 제시된 평균값은 균등화 1인 가구 기준 주관적 최저생계비 값(주관적 최저생계비/√가구원수)한 값임.





# 12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 제2장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

### 제1절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실태

#### 1. 공적연금 가입 실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의 가입여부<sup>32)</sup>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 <표 12-1-1>과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비해당<sup>33)</sup>이 56.80%, 가입이 37.29%, 수급이 5.01%, 수급하면서 가입이 0.08%, 미가입<sup>34)</sup>이 0.7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비해당 비율(71.64%)이 일반가구(53.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가구의 가입율(18.66%)은 일반가구(41.41%)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수급률은 저소득가구 8.54%, 일반가구 4.33%로 저소득가구의 수급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가입은 일반가구가 0.71%, 저소득가구가 1.16%로 나타났다.

- 
- 32) 공적연금 가입 실태는 제도상의 가입 실태를 의미한다. 예컨대, 실체는 가입자의 유소득배우자로 가입대상이라도 소득이 신고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제도상으로 가입자의 무소득배우자로 간주되어 적용제외대상이 되어있다면 비해당으로 표기하였다.
- 33) 만 18세 미만, 만6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권자 및 그의 무소득 배우자,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7세 미만으로서 학생,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비해당으로 분류하였다.
- 34) 공적연금제도 가입대상자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표 12-1-1〉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실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56.80	71.64	53.52
수급	5.01	8.46	4.25
가입	37.29	18.66	41.41
수급하면서 가입	0.08	0.08	0.08
미가입	0.79	1.16	0.71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앞의 <표 12-1-1>에서 공적연금 가입(가입+수급하면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를 묻은 결과는 다음 <표 12-1-2>와 같다. 전체적으로 국민연금(90.89%), 공무원연금(7.09%), 사학연금(1.4%), 군인연금(0.51%), 별정직우체국 직원연금(0.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 비율은 저소득가구(99.23%)가 일반가구(90.06%)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수지역연금의 경우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은 저소득가구에서는 가입비율이 잡히지 않았다.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공무원연금 7.79%, 사학연금 1.54%, 군인연금 0.56%,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12%로 나타나 특수지역연금의 가입비율은 일반가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2〉 공적연금 제도별 가입실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90.89	99.23	90.06
공무원연금	7.09	0.77	7.72
사학연금	1.4	0.00	1.54
군인연금	0.51	0.00	0.56
별정직우체국직원연금	0.11	0.00	0.12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의 종별 가입실태는 다음 <표 12-1-3>과 같다. 전체적으로 사업장가입자(60.70%)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지역가입자(38.09%)가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임의가입(0.90%)도 소수이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으로 구분해 볼 때 일반가구와 저소득가구에서 사업장가입과 지역가입의 비중이 역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71.38%)가 사업장가입자(27.55%)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사업장가입자(64.35%)가 지역가입자(34.43%)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가입 비율은 저소득가구(0.60%)가 일반가구(0.93%)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임의계속가입 비율은 저소득가구 0.30%, 일반가구 0.28%로 나타났다.

<표 12-1-3> 국민연금 종별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사업장가입	60.70	27.55	64.35
지역가입	38.09	71.38	34.43
임의가입	0.90	0.60	0.93
임의계속가입	0.28	0.30	0.28
모름/무응답	0.03	0.18	0.01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여부를 설문한 결과는 아래 <표 12-1-4>와 같다.<sup>35)</sup> 전체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경우(74.69%)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25.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미납률이 59.90%로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가구는 21.51%가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납부기한을 모르고 지나쳐버려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표 12-1-4〉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하고 있다		74.69	40.10	78.49
납부하지 않고 있다		25.31	59.90	21.51
계		100.00	100.00	100.00

위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를 납부예외의 경우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실제적으로 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로 구분해 보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학업 등의 이유로 해당사유가 지속되는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게 되는 납부예외가 전체적으로 89.65%를 차지해 보험료 미납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는 소득집단별로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표 12-1-5〉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유형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납부예외		89.65	93.61	88.44
실제 보험료 미납		10.35	6.39	11.56
계		100.00	100.00	100.00

이 같은 납부예외를 사유별로 구분해보면 아래 <표 12-1-6>과 같다. 전체적으로 생활곤란(59.84%)의 사유가 절반 이상이었고, 실직, 휴직, 사업중단(38.41%)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납부예외 사유가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때문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기타사유(0.62%), 3개월 이상 입원(0.53%), 학업(0.47%)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납부예외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생활곤란과 실직, 휴직, 사업중단인 것은 전체적인 경향과 동일하지만, 그 외의 사유의 비중이 저소득가구의 경우 학업, 3개월 이상 입원, 기타 사유 순인 반면에, 일반가구의 경우는 기타사유, 3개월 이상 입원, 학업 순이라는

차이가 있다.

〈표 12-1-6〉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직, 휴직, 사업중단		38.41	42.21	37.18
생활곤란		59.84	57.18	60.70
학업(재학)		0.47	0.31	0.52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0.62	0.09	0.79
3개월 이상 입원		0.53	0.20	0.64
모름/무응답		0.13	0.00	0.17
계		100.00	100.00	100.00

납부예외 기간은 전체적으로 88.01%가 10~12개월로 나타나 납부예외자 대부분이 장기간 납부예외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1-7〉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4.86	3.05	5.45
4 ~ 6개월		4.66	3.91	4.91
7 ~ 9개월		2.41	3.12	2.18
10 ~ 12개월		88.01	89.91	87.39
모름/무응답		0.06	0.00	0.08
계		100.00	100.00	100.00

납부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로 미납한 미납사유<sup>36)</sup>는 아래 <표 12-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대부분(96.42%)이 2008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경험이 있는 3.58% 중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

36) 공적연금 가입 관련 질문이 2008년 12월 31일 시점 기준이었으나 미납사유와 미납기간에 대한 질문은 2008년 1년간 미납경험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2.3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1.13%)과 불필요(0.13%)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두 집단 모두 대부분 미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가구의 미납경험이 없는 비중(89.23%)이 일반가구(96.85%)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미납사유는 저소득가구의 10.06%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해 일반가구의 1.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가구(각각 1.15%, 0.13%)에서 저소득가구(각각 0.71%, 0.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2-1-8〉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미납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미납경험 없음)		96.42	89.23	96.85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2.32	10.06	1.86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1.13	0.71	1.15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어서		0.13	0.00	0.13
계		100.00	100.00	100.00

그리고 이 같은 실제 보험료 미납기간은 전체적으로 미납경험 없음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미납경험이 있는 경우 중에서는 납부예외 기간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장기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납기간이 10~12개월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가구 2.62%, 저소득가구 7.87%, 일반가구 2.30%로 나타났다.

〈표 12-1-9〉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개월(미납경험 없음)		96.42	89.23	96.85
1 ~ 3개월		0.31	1.56	0.24
4 ~ 6개월		0.37	0.84	0.35
7 ~ 9개월		0.27	0.50	0.26
10 ~ 12개월		2.62	7.87	2.30
계		100.00	100.00	100.00



앞선 <표 12-1-1>에서 파악된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미가입 사유는 아래 <표 12-1-10>과 같다. 전체적으로는 가입 불필요(49.06%),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37.95%),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10.56%), 기타(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집단별로 보면, 미가입 사유의 차이가 나타난다. 저소득가구에서는 경제적 부담(71.40%)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가입 불필요(23.24%) 순이었으나, 일반가구에서는 가입 불필요(58.39%)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25.86%)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14.3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10> 국민연금 미가입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험료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7.95	71.40	25.86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10.56	0.00	14.37
가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49.06	23.24	58.39
기타		1.45	3.20	0.82
모름/무응답		0.98	2.16	0.56
계		100.00	100.00	100.00

## 2. 공적연금 수급실태

공적연금 수급실태는 다음 <표 12-1-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중 수급자는 7.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7)</sup>.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수급비율(11.69%)은 일반가구(6.1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7) <표 12-1-11>에서 공적연금 수급률 7.15%는 <표 12-1-1>의 5.09%(수급 5.01%, 수급하면서 가입 0.08%)과 차이가 난다. <표 12-1-1>의 수치는 가구용 조사표를, <표 12-1-11> 수치는 가구원용 조사표를 각각 근거로 했는데, 가구용 조사표의 해당 문항은 만 15세 미만의 가구원도 포함하여 질문을 한 결과로 낸 비율이며, 가구원용 조사표는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로 낸 비율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가구용 조사표의 경우 대표가구원이 주로 응답을 한 반면, 가구원용 조사표는 당사자가 직접 응답을 했기 때문에 약간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구원용 조사표의 경우 일련의 사유로 인해 미완이 되는 경우도 두 수치간 차이를 나타내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표 12-1-11〉 공적연금 수급 실태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수급	7.15	11.69	6.11
비수급	92.85	88.31	93.89
계	100.00	100.00	100.00

공적연금 종류별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2-1-12>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국민연금이 72.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공무원 연금(14.19%), 보훈연금(6.68%), 사학연금(2.37%), 군인연금(2.2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12〉 공적연금 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국민연금	72.05	88.48	64.85
공무원연금	14.19	1.59	19.71
사학연금	2.37	0.00	3.41
군인연금	2.23	0.39	3.03
별정직 우체국연금	0.17	0.00	0.25
보훈연금	6.68	8.67	5.8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0.54	0.00	0.77
국민연금, 군인연금	0.09	0.00	0.13
국민연금, 보훈연금	1.32	0.86	1.52
국민연금, 기타	0.05	0.00	0.08
공무원연금, 보훈연금	0.21	0.00	0.30
군인연금, 보훈연금	0.03	0.00	0.04
모름/무응답	0.09	0.00	0.12
계	100.00	100.00	100.00

그리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국민연금과 보훈연금, 공무원 연금과 보훈연금, 군인연금과 보훈연금을 같이 수급하는 경우도 극히 낮은 비중이나 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국민연금(88.48%),

보훈연금(8.67%), 공무원 연금(1.59%) 순으로 나타난 반면, 한편, 일반가구는 국민연금(64.85%), 공무원연금(19.71%), 보훈연금(5.81%), 사학연금(3.41%), 군인연금(3.03%)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표 12-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노령연금(83.20%)의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유족연금(13.72%)과 장애연금(2.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노령연금 83.56%, 유족연금 13.79%, 장애연금 1.8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역시 노령연금 82.99%, 유족연금 13.68%, 장애연금 3.09%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13> 국민연금 급여종류별 수급자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노령연금		83.20	83.56	82.99
장애연금		2.62	1.82	3.09
유족연금		13.72	13.79	13.68
분할연금		0.16	0.43	0.00
반환일시금		0.08	0.22	0.00
모름/무응답		0.21	0.18	0.24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의 연간 수급 개월 수는 다음 <표 12-1-14>와 같다. 전체적으로 10~12개월이 94.09%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1~3개월과 4~6개월, 7~9개월이 각각 1.45%, 1.88%, 2.5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수급기간이 10~12개월인 경우가 저소득가구 97.33%, 일반가구 92.21%로 나타났다.

〈표 12-1-14〉 국민연금 연간 연금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1.45	0.43	2.03
	4 ~ 6개월	1.88	0.22	2.83
	7 ~ 9개월	2.57	1.95	2.92
	10 ~ 12개월	94.09	97.33	92.21
	모름/무응답	0.02	0.06	0.00
	계	100.00	100.00	100.00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일시금 평균 수급액은 <표 12-1-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일시금 12,667천원, 연금이 2,445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일시금이 8,624천원, 연금이 1,879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일시금이 16,232천원, 연금은 2,772천원으로 나타나 일시금과 연금 수급액은 일반가구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54

〈표 12-1-15〉 국민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12,667	8,624 <sup>1)</sup>	16,232 <sup>2)</sup>
	연금	2,445	1,879	2,772

주: 1) 해당 사례 4케이스, 2) 해당 사례 3케이스

보훈연금 급여 수급자의 연간 수급 개월 수는 아래 <표 12-1-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95.44%가 10~12개월의 장기수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95.28%, 일반가구는 95.53%로 나타났다.

〈표 12-1-16〉 보훈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1.09	0.00	1.68
	4 ~ 6개월	-	-	-
	7 ~ 9개월	3.47	4.72	2.80
	10 ~ 12개월	95.44	95.28	95.53
	계	100.00	100.00	100.00

보훈연금 연평균 수급액은 다음 <표 12-1-17>과 같다. 2008년 1년간 보훈연금 일시금을 수급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가구의 평균 연금 수급액은 8,850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10,052천원)가 저소득가구(6,623천원)보다 약 1.52배 높게 나타났다.

〈표 12-1-17〉 보훈연금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	-	-
	연금	8,850	6,623	10,052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급여종류별 수급현황은 다음 <표 12-1-18>과 같다. 전체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급여가 86.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족급여가 9.57%,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수급하는 경우가 2.3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일반가구 모두에서 퇴직급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경우 재해보상급여, 유족급여 순으로, 일반가구의 경우 유족급여,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1-18〉 특수지역연금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퇴직급여		86.94	80.25	87.15
유족급여		9.57	2.35	9.80
재해보상급여		0.53	17.40	0.00
퇴직수당		0.63	0.00	0.65
퇴직급여, 퇴직수당		2.33	0.00	2.40
계		100.00	100.00	100.00

이 같은 특수지역연금 급여의 연간 수급 개월 수를 살펴보면, <표 12-1-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99.73%가 10~12개월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수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특수지역연금을 수급한 가구는 모두 10~12개월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99.72%가 10~12개월의 장기수급으로 나타났다.

〈표 12-1-19〉 특수지역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	-	-
4 ~ 6개월		0.27	0.00	0.28
7 ~ 9개월		-	-	-
10 ~ 12개월		99.73	100.00	99.72
계		100.00	100.00	100.00

특수지역연금의 연평균 급여액은 다음 <표 12-1-20>과 같다. 전체가구의 연평균 일시금 수급액은 182,858천원, 연금은 22,268천원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 중 일시금을 수급한 경우는 없었으며, 연금은 12,645천원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가구는 일시금으로 182,858천원을, 연금으로 22,574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1-20〉 특수지역연금 연간 연금-일시금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연금		182,858 <sup>1)</sup>	0	182,858 <sup>1)</sup>
		22,268	12,645 <sup>2)</sup>	22,574

주: 1) 해당 항목 3케이스 2) 해당 항목 9케이스

## 제2절 건강보험 가입 실태

건강보험 가입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2-1>과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93.27%, 미가입자가 6.7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가입률(76.45%)이 일반가구(99.27%)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종류별로 보면 66.13%는 직장가입자, 33.63%는 지역가입자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지역가입자 비율이 저소득가구에서 45.23%로 일반가구 30.45%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보험 미가입가구의 대부분은 의료급여 1종(65.95%), 의료급여 2종(27.98%)을 수급하고 있다.

〈표 12-2-1〉 건강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가입		93.27	76.45	99.27
	직장	66.13	53.93	69.48
	지역	33.63	45.23	30.45
	모름/무응답	0.24	0.84	0.08
	소계	100.00	100.00	100.00
미가입		6.73	23.55	0.73
	의료급여 1종	65.95	70.30	15.86
	의료급여 2종	27.98	25.19	60.10
	보훈병원 무료진료	5.65	4.06	24.03
	기타	0.42	0.46	0.00
	소계	100.00	100.00	100.00
계		100.00	100.00	100.00

앞의 <표 12-2-1>에서 의료급여 1종, 2종 수급 가구의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경험상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은 다음 <표 12-2-2>와 같다.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71.76%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본인 부담대비 혜택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15.84%), 일반 환자와의 차별대우(8.34%),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라는 점(2.94%)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2-2-2>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상의 문제점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71.76
혜택범위가 좁다(본인부담이 많다)		15.84
적용기간이 제한적이다		2.94
차별대우를 받는다		8.34
기타		0.92
모름/무응답		0.20
계		100.00

건강보험료 납부실태는 다음 <표 12-2-3>과 같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가 4.16%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일반가구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있는 가구는 3.40%인 반면, 저소득가구에서는 6.94%로 나타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가구에서 미납률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2-2-3> 건강보험료 미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미납경험 있음		4.16	6.94	3.40
미납경험 없음		95.29	91.80	96.25
모름/무응답		0.54	1.26	0.35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경험이 있는 가구에 대해 그 사유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2-4> 와 같다. 전체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 서라”는 응답이 75.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라는 응답은 12.38%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응답의 비율은 일반가구(67.81%)보다 저소득가구(88.97%)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4> 건강보험료 미납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5.59	3.04	7.04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75.46	88.97	67.81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0.61	0.00	0.96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0.94	0.00	1.48
납부기한을 잊어버려서		12.38	5.75	16.13
기타		0.38	0.00	0.60
모름/무응답		4.63	2.24	5.99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료 미납기간은 <표 1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1~3개월의 단기미납이 47.64%, 10~12개월의 장기미납이 23.13%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미납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단기미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2-5> 건강보험료 미납 기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47.64	42.04	50.82
4~6개월		15.51	20.90	12.45
7~9개월		9.55	9.27	9.71
10~12개월		23.13	26.83	21.03
모름/무응답		4.17	0.96	5.99
계		100.00	100.00	100.00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음 <표 12-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는 건강보험 제도에 특별한 문제없다는 응답이 60.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월보험료 부담이 22.56%,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5.82%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특별한 문제없음이 65.73%, 월보험료 부담이 18.91%,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3.97%로 각각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특별한 문제없음이 59.58%, 월보험료 부담이 23.56%, 보험 적용범위 협소가 16.33%로 나타났다.

<표 12-2-6>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태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특별한 문제점 없음		60.91	65.73	59.58
월보험료 부담		22.56	18.91	23.56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15.82	13.97	16.33
기타		0.28	0.08	0.34
모름/무응답		0.43	1.31	0.19
계		100.00	100.00	100.00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보장의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2-7>과 같다.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39.68%, 보통이 19.6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40.49%로 나타났다.

<표 12-2-7> 보험료 부담 대비 건강보험 보장의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불만족		9.49	5.13	10.69
불만족		31.00	17.95	34.59
보통		19.62	22.62	18.79
만족		32.60	42.95	29.75
매우만족		7.08	10.55	6.12
모름/무응답		0.21	0.80	0.05
계		100.0	100.0	100.0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53.50%, 보통이 22.62%,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23.08%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35.87%, 보통이 18.79%,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45.28%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는 다음 <표 12-2-8>과 같다.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62.14%, 보통이 28.81%,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9.0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72.07%, 보통이 20.74%,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7.14%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는 만족(매우 만족+만족)이 58.58%, 보통이 31.69%,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이 9.73%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건강보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2-8> 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불만족		1.05	0.93	1.09
불만족		8.00	6.21	8.64
보통		28.81	20.74	31.69
만족		50.15	55.03	48.40
매우만족		11.99	17.04	10.18
모름/무응답		0.01	0.04	0.00
계		100.0	100.0	100.0

### 제3절 고용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1. 고용보험 가입실태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실태<sup>38)</sup>는 아래 <표 12-3-1> 과 같다. 전체 가구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48%, 미가입률은 10.25%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가입률(4.68%)이 일반가구의 가입률(23.97%)을 훨씬 밑도

38) 15세 이상 응답자 중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농어민, 비경제활동인구 및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등은 고용보험의 비해당자로 분류하였다.

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일수록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2-3-1〉 고용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9.26	85.66	65.64
가입		20.48	4.68	23.97
미가입		10.25	9.66	10.38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 2. 고용보험 수급실태

2008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3-2>와 같다. 전체가구 중에서 고용보험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는 1.3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1.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가구의 경우는 1.47%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비해 고용보험 수급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2-3-2〉 고용보험 급여 수급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39	1.04	1.47
없다		98.59	98.96	98.51
모름/무응답		0.01	0.00	0.02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sup>39)</sup> 수급 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3-3>과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실업급여가 79.81%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성보호급여 13.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는 80.8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으며, 11.57%가 현물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79.65%가 실업급여를, 14.84%가 모성보호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3-3> 고용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실업급여	79.81	80.80	79.65
모성보호급여	13.03	1.81	14.84
기타 현금급여	1.44	4.56	0.94
현물급여	2.07	11.57	0.54
실업급여, 기타 현금급여	0.63	0.00	0.73
실업급여, 현물급여	2.02	0.00	2.35
기타 현금급여, 현물급여	0.17	1.26	0.00
모름/무응답	0.82	0.00	0.95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고용보험 연간 수급 개월 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3-4>와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1~3개월 수급이 57.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 1~3개월이 6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6개월은 28.75%로 나타났다. 일반가구는 1~3개월의 비중(56.20%)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4~6개월(33.08%)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9)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를, 기타 현금급여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현물급여는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위탁 훈련지원, 근로자 학자금대부 등 현물지원으로 각각 구성된다.

〈표 12-3-4〉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57.40	65.21	56.20
4 ~ 6개월		32.50	28.75	33.08
7 ~ 9개월		5.37	0.00	6.20
10 ~ 12개월		3.88	6.05	3.54
모름/무응답		0.85	0.00	0.98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은 전체가구의 경우 평균 2,994천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2,404천원, 일반가구는 3,08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저소득가구의 연간 수급액이 높은 것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일반가구에 비해 고용보험 급여 중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업급여를 받는 비율이 높고,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표 12-3-3, 표 12-3-4 참조).

〈표 12-3-5〉 고용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연간현금급여액		2,994	2,404	3,085

## 제4절 산재보험 가입 및 수급실태

### 1. 산재보험 가입실태

산재보험 가입실태<sup>40)</sup>는 아래 <표 12-4-1>과 같다. 전체가구는 가입(21.93%)이 미가입(10.83%)을 상회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미가입(10.55%)이 가입(5.60%)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일반가구는 전체가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40) 15세 이상 응답자 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 농어민, 비경활자 및 특수지역연금 가입자 등은 산재보험의 비해당자로 분류하였다.

있다. 이 같은 결과를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정규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2-4-1〉 산재보험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7.21	83.85	63.54
가입		21.93	5.60	25.54
미가입		10.83	10.55	10.89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 2. 산재보험 수급실태

2008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수급경험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4-2>와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수급경험이 없다는 99.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수급경험이 있는 가구가 극소수라는 특징은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 수급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고용보험과는 달리 소득집단별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표 12-4-2〉 산재보험 급여 수급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3	0.33	0.33
없다		99.63	99.60	99.63
모름/무응답		0.04	0.07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은 다음 <표 12-4-3>과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는 휴업급여(30.35%), 장해연금(29.94%), 요양급여(18.07%)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요양급여, 유족연금, 장해연금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휴업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순이었다.

〈표 12-4-3〉 산재보험 급여 종류별 수급 현황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요양급여		18.07	48.75	10.94
휴업급여		30.35	9.92	35.10
장해급여-연금		29.94	11.57	34.22
장해급여-일시금		10.70	6.96	11.57
유족급여-연금		9.03	22.79	5.84
요양급여, 휴업급여		1.90	0.00	2.3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산재보험 연간 수급 개월 수를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4-4>와 같다. 먼저 전체가구의 경우는 10~12개월의 장기수급이 72.76%로 가장 많았고 1~3개월의 단기수급이 18.21%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10~12개월(84.07%), 4~6개월(15.93%), 일반가구의 경우는 10~12개월(70.46%), 1~3개월(21.91%)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4-4〉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 개월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18.21	0.00	21.91
4 ~ 6개월		7.21	15.93	5.44
7 ~ 9개월		1.82	0.00	2.19
10 ~ 12개월		72.76	84.07	70.46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산재보험급여 연간 평균 수급액은 다음 <표 1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일시금은 7,542천원, 연금은 13,833천원을 각각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가구는 일시금으로 8,135천원, 연금으로 8,991천원을, 일반가구는 일시금으로 7,362천원을, 연금으로 14,818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4-5〉 산재보험 급여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7,542	8,135 <sup>1)</sup>	7,362 <sup>3)</sup>
연금		13,833	8,991 <sup>2)</sup>	14,818 <sup>4)</sup>

주: 1) 해당 항목 3케이스 2) 해당 항목 5케이스 3) 해당 항목 8케이스 4) 해당 항목 24케이스

## 제5절 개인연금, 퇴직금 적용 및 수급실태

### 1. 적용 및 가입실태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1>과 같다. 전체가구의 경우 17.79%가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14.06%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는 불과 3.53%만이 적용을 받고 있는 반면, 12.57%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20.94%가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퇴직금 적용에 있어서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1〉 퇴직금제(종업원 퇴직보험제) 적용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8.11	83.89	64.63
적용		17.79	3.53	20.94
미적용		14.06	12.57	14.38
모름/무응답		0.05	0.00	0.06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실태는 다음 <표 12-5-2>와 같다. 전체적으로 1.69%가 적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일반가구의 적용비율(2.05%)이 저소득가구의 적용비율(0.1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2-5-2> 퇴직연금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비해당		68.09	83.95	64.59
적용		1.69	0.10	2.05
미적용		29.81	15.76	32.92
모름/무응답		0.40	0.19	0.45
계		100.00	100.00	100.00

개인연금 가입 실태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3>과 같다. 시중 보험사를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종신보험은 개인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신보험 가입여부도 본 문항에서 같이 설문하였다. 전체적으로 어느 것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78.9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경우 가입자의 비율이 4.82%인 반면, 일반가구의 경우는 24.50%가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 개인연금 가입자 비율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5-3> 개인연금(종신보험 포함) 가입 실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개인연금만 가입		5.55	0.98	6.56
종신보험만 가입		12.87	3.27	14.99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2.52	0.57	2.95
미가입		78.98	95.15	75.40
모름/무응답		0.09	0.03	0.10
계		100.00	100.00	100.00

## 2. 수급실태

2008년 1년간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4>와 같다.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99.78%) 응답자가 수급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의 경우는 0.08%, 일반가구의 경우 0.24%가 개인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4> 개인연금 급여 수급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21	0.08	0.24
없다		99.78	99.92	99.74
모름/무응답		0.01	0.00	0.01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개인연금 연간 수급 개월 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5>와 같다. 개인연금을 수급하는 가구 전체가 10~12개월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5>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3개월		-	-	-
4~6개월		-	-	-
7~9개월		-	-	-
10~12개월		100.00 <sup>1)</sup>	0.00	100.00 <sup>1)</sup>
계		100.00	100.00	100.00

주: 1) 해당 항목 15케이스

2008년 1년간 개인연금의 연간 평균 수급액을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가구의 경우 일시금 2,490천원, 연금 6,346천원을 수급하였으며,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7,730천원, 일반가구는 일시금 1,455천원, 연금 6,346천원을 각각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6〉 개인연금 급여 연간 수급액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2,490	7,730 <sup>1)</sup>	1,455 <sup>2)</sup>
연금		6,346	-	6,346 <sup>3)</sup>

주: 1) 해당 항목 3케이스 2) 해당 항목 9케이스 3) 해당 항목 15케이스

2008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인 95.85%가 수급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에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는 1.34%에 불과한 반면, 일반가구에서는 4.78%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집단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5-7〉 퇴직금(퇴직보험금) 수급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14	1.34	4.78
없다		95.85	98.63	95.21
모름/무응답		0.01	0.02	0.01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 수에 대해 설문한 결과는 다음 <표 12-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금을 받는 가구 모두 10~12개월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8〉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수급 개월 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 ~ 3개월		-	-	-
4 ~ 6개월		-	-	-
7 ~ 9개월		-	-	-
10 ~ 12개월		100.00	100.00 <sup>1)</sup>	100.00 <sup>2)</sup>
계		100.00	100.00	100.00

주: 1) 해당 항목 1케이스 2) 해당 항목 5케이스

2008년 1년간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평균 수령액은 다음 <표 12-5-9>와 같다. 전체적으로는 일시금으로 6,934천원을 받았고, 연금형태의 퇴직보험금은 1,594천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는 일시금 10,262천원, 연금 600천원, 일반가구는 일시금 6,722천원, 연금 1,723천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5-9> 퇴직금(퇴직보험금) 연간 지급액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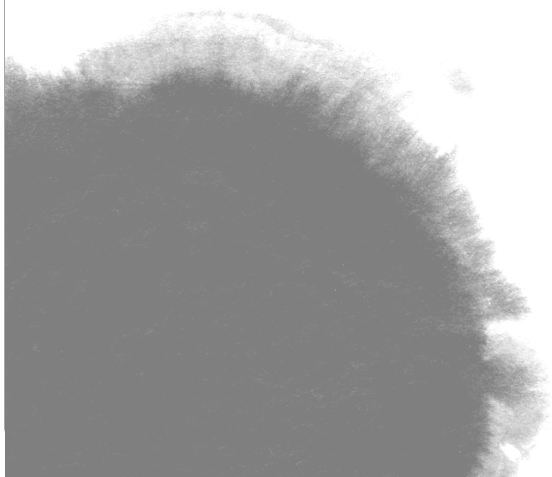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일시금		6,934	10,262	6,722
보험금		1,594	600 <sup>1)</sup>	1,723 <sup>2)</sup>

주: 1) 해당 항목 1케이스 2) 해당 항목 5케이스



# 13

공공부조







## 제3장 공공부조

### 제1절 신청 및 신청탈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대한 최종적인 사회안전망(last social safety-net)이다. 2008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를 살펴보면, <표 13-1-1>과 같이 신청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전체의 1.36%, 신청 경험이 없는 가구가 전체의 98.59%로 나타났다.

<표 13-1-1>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여부	있다	1.36
	없다	98.59
	무응답	0.06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경험자를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표 13-1-2>와 같이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7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7.87%)라는 응답과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5.67%)라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이유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6.34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7.87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0.00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5.67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0.64
	기타	0.00
	모름/무응답	9.48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후 선정여부는 <표 13-1-3>과 같다. 급여 신청 가구 중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는 가구는 전체의 49.34%, 선정되지 않았다는 가구는 전체의 41.18%로 선정되지 않은 가구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신청을 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8.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타의 이유”(11.61%),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8.06%)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 또한 8.78%를 차지하였다.

〈표 13-1-3〉 수급자 선정 여부 및 신청탈락 사유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 선정 여부	그렇다	49.34
	그렇지 않다	41.18
	모름/무응답	9.48
계		100.00
신청 탈락 사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8.06
	자동차가 있어서	1.89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3.78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7.51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58.37
	기타	11.61
	잘 모르겠다	8.78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가구의 생계문제 해결방안 1순위는 다음 <표 13-1-4>와 같다.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3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했다”는 응답(32.06%)도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빛을 내어서 생활했다”는 응답(13.26%)과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9.66%)라는 응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1-4>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1순위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생계문제의 주된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32.59
	빛을 내어서 생활	13.26
	민간단체의 도움	-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32.06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1.63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9.66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기타	-
	모름/무응답	10.80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가구의 생계문제 해결방안 2순위는 다음 <표 13-1-5>와 같다. 1순위만 응답하고 2순위는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약 57.76%로 나타났는데, 2순위로 응답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했다”는 응답이 16.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도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10.25%), “부양의무자, 친지 및 이웃의 도움”(8.72%)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표 13-1-5〉 신청탈락 후 생계문제해결 방안 2순위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생계문제의 주된 해결방안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8.72
	빛을 내어서 생활	1.93
	민간단체의 도움	2.37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16.08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공공근로사업(차상위 자활사업 포함)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10.25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0.00
	기타	2.90
모름/무응답	57.75	
계		100.00

## 제2절 수급 및 탈피

2008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가구의 수급기간<sup>41)</sup>을 살펴보면, <표 13-2-1>과 같이 대부분(89.76%)의 가구가 12개월 동안 수급을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 11.24%가 12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1〉 1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개월 수

(단위: %)

구분	비율
3개월 미만	2.0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2.60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2.14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41
12개월	89.76
계	100.00

주: 본 문항에 대한 분석은 기존 연도의 분석과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 VIII 소득 부분의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 총 수급개월수를 활용함. 이는 X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문항2)의 수급비율과 달리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분에서 의료, 자활, 교육 등의 특례가구와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를 포함해 더 포괄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41) 2007년 10월 1일~2007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가구를 생성하여 2008년도 이전부터 수급을 받기 시작한 가구는 2008년도 이후의 수급 개월 수만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유를 물어본 결과, <표 13-2-2>와 같이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응답이 35.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17.28%),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11.93%), 그리고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11.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2-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이유

(단위: %)

구분	비율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11.93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35.99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6.77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17.28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9.47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1.08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11.77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0.33
기타	1.02
모름/무응답	4.37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수준에 대해서는, <표 13-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족하다라는 응답이 46.33%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부족하다(21.55%), 보통이다(19.51%)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13-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준

(단위: %)

구분	비율
매우 적절하다	0.43
적절하다	7.53
보통이다	19.51
부족하다	46.33
매우 부족하다	21.55
모름/무응답	4.65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3-2-4>와 같이 2008년 말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중 72.94%가 앞으로도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반면 1년 이내에 수급에서 탈피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구비율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2-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예상기간

(단위: %)

구분	비율
6개월 이내	0.73
6개월 후~1년 이내	0.24
1년 후~3년 이내	2.96
3년 후	9.44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72.94
잘 모르겠다	9.10
무응답	4.58
계	10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으로는 <표 13-2-5>와 같이 의료비 지원(58.61%)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주거비 지원(21.2%)과 교육비 지원(12.60%)이 그 뒤를 이었다.

<표 13-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에도 필요한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58.61
교육비 지원	12.60
주거비 지원	21.20
자활관련 지원	2.30
기타	0.64
모름/무응답	4.66
계	100.00

2008년 말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더 이상 받지 않게 된 가구의 탈피 사유를 물어본 결과, <표 13-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22.6%), “기타”(18.13%),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11.9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표 13-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의 주된 사유

(단위: %)

구분	비율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11.94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어서	22.60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4.49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3.10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6.62
가족의 병이 나아서	-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33.11
기타	18.13
계	100.00

주: 탈피로 응답한 가구 수 표본가중치 부여한 후 21.54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은, <표 13-2-7>과 같이 의료비 지원이 54.81%로 가장 높았으며, 주거비 지원이 19.4%로 뒤를 이었다. 수급자 탈피 후 아쉬운 지원으로서 교육비 지원 또한 15.5%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13-2-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피 후 가장 아쉬운 지원 항목

(단위: %)

구분	비율
의료비 지원	54.81
교육비 지원	15.50
주거비 지원	19.40
자활관련 지원	8.42
없다	-
기타	-
모름/무응답	1.86
계	100.00

### 제3절 의료급여 수급실태

2008년 12월 31일 기준,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를 받고 있는 가구<sup>42)</sup> 중 65.95%가 의료급여 1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급여 2종을 받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27.98%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5.65%로 나타났다.

〈표 13-3-1〉 의료급여(국가유공자 무료진료 포함)수급여부 (200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의료급여 수급형태		의료급여(1종)	65.95
		의료급여(2종)	27.98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5.65
		기타	0.42
계			100.00

의료급여 수급시 문제점으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1.76%를 차지하였고, 혜택 범위가 좁은 것(본인 부담이 많은 것)(15.84%), 차별대우를 받음(8.34%)이 기타 이유로 나타났다.

〈표 13-3-2〉 의료급여 수급시 문제점

(단위: %)

구분	비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71.76
혜택 범위가 좁은 것(본인 부담이 많은 것)	15.84
적용기간의 제한	2.94
차별대우를 받음	8.34
기타	0.92
모름/무응답	0.20
계	100.00

42) 전체 의료급여수급가구수가 전체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가구수보다 적게 나타난다. 그 이유는 첫째,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이고, 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가구는 2008년 1년 동안의 기간을 기준으로 조사하기 때문이고, 둘째,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의 경우 대표적인 가구주를 기준으로 (공적)건강보험가입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 제4절 근로장려세제 인식 및 실태

KOWEPS 4차 웨이브에서는 2009년부터 급여가 주어지게 되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및 실태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 조사되었다.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적이 있는 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78.2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는 비율이 11.51%를 차지하였다.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에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는 92.44%가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1%로 나타났다.

〈표 13-4-1〉 근로장려세제 제도 및 수급요건 충족에 대한 인식

(단위: %)

특성	구분	비율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가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78.28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른다	11.51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8.03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2.15
	모름/무응답	0.03
계		100.00
근로장려세제의 수급 요건에 충족한다고 생각하는 가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92.44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5.10
	잘 모르겠다	2.41
	모름/무응답	0.05
계		100.00

한편, “근로장려세제의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자”들 중, “2009년에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신청 예정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28.65%가 “신청할 예정이라”고 응답하였고, 25.65%가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신청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4.36%, “신청하였다”는 응답이 18.93%를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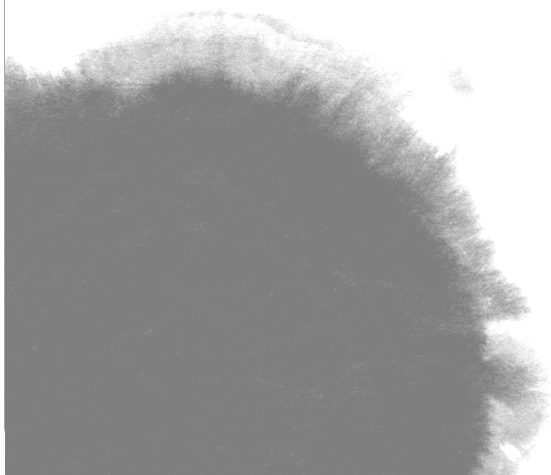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표 13-4-2〉 2009년 근로장려세제 급여 신청 여부

(단위: %)

구분	비율
신청하였다	18.93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할 예정이다(신청하겠다)	28.65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겠다	24.36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25.65
모름/ 무응답	2.41
계	100.00

# 14

## 사회복지서비스





## 제4장 사회복지서비스

### 제1절 가구 복지욕구 및 서비스 실태

#### 1. 생계비 지원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생계비 혹은 생계보조수당을 지원받은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 중 22.35%가 생계비 지원을 경험하였는데, 저소득가구 중에서는 58.69%가 경험하였고, 일반가구 중에서는 9.3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해 생계비 지원을 경험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다.

〈표 14-1-1〉 생계비 지원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2.35	58.69	9.36
없다		77.62	41.31	90.60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생계비 지원을 경험한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계비 지원을 경험한 전체 가구의 12.27%가 매우 만족하였고 45.56%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57.8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22.67%,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13.07%,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3.54%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

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한편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의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14-1-2〉 생계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2.27	12.02	12.85
	대체로 만족	45.56	45.25	46.26
	그저 그렇다	22.67	20.90	26.64
	대체로 불만족	13.07	15.46	7.71
	매우 불만족	3.54	4.70	0.93
	모름/무응답	2.89	1.67	5.61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생계비 지원을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계비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97.62%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모름/무응답’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았다.

〈표 14-1-3〉 생계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7.62	98.64	95.33
	사회복지관련 기관	0.00	0.0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2.38	1.36	4.67
	계	100.00	100.00	100.00

## 2. 의료비 지원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9.99%가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저소득가구는 29.76%가 경험하였고 일반가구는 2.93%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지원이 저소득가구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1-4〉 의료비 지원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99	29.76	2.93
없다		89.98	70.24	97.03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 지원을 경험한 전체 가구의 27.54%가 매우 만족하였고 51.53%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79.0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10.95%,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3.86%,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81%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높았다.

〈표 14-1-5〉 의료비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7.54	30.60	16.42
대체로 만족		51.53	51.33	52.24
그저 그렇다		10.95	10.47	12.69
대체로 불만족		3.86	4.31	2.24
매우 불만족		0.81	0.82	0.75
모름/무응답		5.31	2.46	15.67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의료비 지원을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94.03%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병원이 0.65%, 보건소 0.32%, 기타 0.32%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의 경우 모름/무응답의 비율이 저소득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서비스 제공기관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4-1-6〉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4.03	97.33	82.09
사회복지관련 기관		0.00	0.0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32	0.41	0.00
병원		0.65	0.41	1.49
학교		0.00	0.00	0.00
기타		0.32	0.00	1.49
모름/무응답		4.68	1.85	14.93
계		100.00	100.00	100.00

### 3. 물품 지원(식료품, 의료, 가구 등)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식료품, 의료, 가구 등 물품을 지원받은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6.48%가 물품을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저소득가구는 21.19%가 경험하였고 일반가구는 1.22%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7〉 물품 지원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48	21.19	1.22
없다		93.49	78.81	98.73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물품 지원을 경험한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품 지원을 경험한 전체 가구의 8.68%가 매우 만족하였고 44.17%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52.8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33.25%,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6.95%,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1.49%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1-8〉 물품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8.68	8.36	10.71
대체로 만족		44.17	45.53	35.71
그저 그렇다		33.25	33.72	30.36
대체로 불만족		6.95	7.20	5.36
매우 불만족		1.49	1.44	1.79
모름/무응답		5.46	3.75	16.07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물품 지원을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물품을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67.91%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17.91%, 사회복지관련 기관 9.20%, 보건소와 학교가 각각 0.25%, 기타가 0.50%로 나타났다.

〈표 14-1-9〉 물품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7.91	68.88	61.82
사회복지관련 기관		9.20	9.80	5.45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7.91	18.16	16.36
보건소		0.25	0.29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25	0.00	1.82
기타		0.50	0.58	0.00
모름/무응답		3.98	2.31	14.55
계		100.00	100.00	100.00

#### 4.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1.19%가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3.18%가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0.48%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10〉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19	3.18	0.48
없다		98.76	96.75	99.48
모름/무응답		0.05	0.06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0.27%가 매우 만족하였고 47.30%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67.5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12.16%,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2.70%,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4.05%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14-1-11〉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0.27	19.23	22.73
대체로 만족		47.30	55.77	27.27
그저 그렇다		12.16	15.38	4.55
대체로 불만족		2.70	1.92	4.55
매우 불만족		4.05	1.92	9.09
모름/무응답		13.51	5.77	31.82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가정봉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정봉사 서비스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48.65%가 사회복지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21.62%, 기타가 10.8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4.05%, 보건소가 1.35%로 나타났다. 가정봉사 서비스는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과 달리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공공기관에 비해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4-1-12〉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1.62	25.00	13.64
사회복지관련 기관		48.65	55.77	31.82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05	3.85	4.55
보건소		1.35	0.00	4.55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10.81	9.62	13.64
모름/무응답		13.51	5.77	31.82
계		100.00	100.00	100.00

## 5.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식사 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1.26%가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4.04%가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0.26%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13〉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6	4.04	0.26
없다		98.71	95.96	99.69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1.79%가 매우 만족하였고, 51.28%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73.0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19.23%,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2.56%,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로, 전반적으로 불만족하는 비율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을 경험한 사례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특히 일반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수가 작으므로 일반가구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분포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14〉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1.79	19.70	33.33
	대체로 만족	51.28	54.55	33.33
	그저 그렇다	19.23	21.21	8.33
	대체로 불만족	2.56	3.03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5.13	1.52	25.00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식사배달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사배달 서비스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44.87%가 사회복지관련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32.05%, 공공기관이 16.67%, 기타가 1.28%로 나타났다. 식사배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이며, 공공기관은 세 번째 순위에 머물고 있다.

〈표 14-1-15〉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6.67	15.38	23.08
사회복지관련 기관		44.87	47.69	30.7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32.05	33.85	23.08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1.28	1.54	0.00
모름/무응답		5.13	1.54	23.08
계		100.00	100.00	100.00

## 6.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집수리, 도배 등 주택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0.64%가 주택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1.90%가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0.20%만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16〉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64	1.90	0.20
없다		99.24	98.10	99.65
모름/무응답		0.11	0.00	0.15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주택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5.00%가 매우 만족하였고 50.00%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75.0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5.00%,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와 매

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관련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례 수가 작아서 이용만족도를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14-1-17〉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5.00	32.26	0.00
대체로 만족		50.00	48.39	55.56
그저 그렇다		5.00	3.23	11.11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20.00	16.13	33.33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29.27%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14.6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12.20%, 기타가 26.83%로 나타났다.

〈표 14-1-18〉 주택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9.27	32.26	20.00
사회복지관련 기관		14.63	16.13	1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2.20	16.13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26.83	22.58	40.00
모름/무응답		17.07	12.90	30.00
계		100.00	100.00	100.00

## 7.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3.40%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4.78%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2.9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지원과 의료비 지원을 제외하면, 취업지원 서비스는 일반가구가 이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표 14-1-19〉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40	4.78	2.91
없다		96.57	95.22	97.05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18.75%가 매우 만족하였고 56.73%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75.4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18.75%,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3.37%,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2.4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분포는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14-1-20〉 취업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8.75	21.79	16.92
대체로 만족		56.73	51.28	60.00
그저 그렇다		18.75	17.95	19.23
대체로 불만족		3.37	6.41	1.54
매우 불만족		2.40	2.56	2.31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93.40%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3.30%로 나타났다.

〈표 14-1-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3.40	97.47	90.98
사회복지관련 기관		3.30	1.27	4.5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3.30	1.27	4.51
계		100.00	100.00	100.00

## 8.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0.37%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0.92%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0.1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22〉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7	0.92	0.17
없다		99.58	99.02	99.78
모름/무응답		0.05	0.06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1.74%가 매우 만족하였고 34.78%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56.5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13.04%,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8.7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상담 서비스 이용을 경험한 사례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특히 일반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수가 작으므로 일반가구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분포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14-1-23〉 상담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1.74	26.67	12.50
대체로 만족		34.78	26.67	50.00
그저 그렇다		13.04	20.00	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8.70	13.33	0.00
모름/무응답		21.74	13.33	37.50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31.82%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27.27%, 병원과 학교가 각각 9.09%,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와 보건소가 각각 4.55%로 나타났다.

〈표 14-1-24〉 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1.82	18.75	66.67
사회복지관련 기관		27.27	31.25	16.6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55	6.25	0.00
보건소		4.55	6.25	0.00
병원		9.09	12.50	0.00
학교		9.09	12.50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3.64	12.50	16.67
계		100.00	100.00	100.00

## 9.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0.10%가 약물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0.18%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 가구는 0.0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25〉 약물(알코올)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0	0.18	0.07
없다		99.87	99.82	99.89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약물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수가 작아서 생략하였다.

## 10.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0.05%가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였다.

〈표 14-1-26〉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05	0.00	0.07
없다		99.92	100.00	99.89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  
공기관은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수가 작아서 생략하였다.

## 11.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0.34%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0.24%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  
반가구는 0.3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1-27〉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34	0.24	0.37
없다		99.63	99.76	99.58
모름/무응답		0.03	0.00	0.04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13.64%가 매우 만족하였고 40.91%가 대체로 만족한 것  
으로 나타나 54.5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27.27%,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와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이  
용을 경험한 사례 수가 많지 않은 가운데 특히 일반가구 중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사례 수가 작으므로 일반가구의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분포를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  
요하다.

〈표 14-1-28〉 이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3.64	25.00	11.11
대체로 만족		40.91	25.00	44.44
그저 그렇다		27.27	50.00	22.22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8.18	0.00	22.22
계		100.00	100.00	100.00

2008년 1년간 이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지원받는 전체 가구 중 19.05%가 사회복지관련 기관 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하였고, 학교가 23.81%, 공공기관과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각각 4.76%, 기타가 33.33%를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14-1-29〉 이동을 위한 부모상담 및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4.76	25.00	0.00
사회복지관련 기관		19.05	50.00	11.76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4.76	25.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23.81	0.00	29.41
기타		33.33	0.00	41.18
모름/무응답		14.29	0.00	17.65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바우처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실태

### 1.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4차 웨이브에서는 가구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사에서 바우처서비스 욕구 및 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2008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2.31%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1.72%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2.52%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복지서비스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는데 반해 바우처서비스의 경우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1〉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31	1.72	2.52
없다		97.69	98.28	97.48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2.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구체적인 사업에 따라 2008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과 이용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의 분석에 활용된 문항에서는 2008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만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 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과 같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55%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13.33%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0.00%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2〉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55	13.33	0.00
없다		94.90	86.67	96.85
모름/무응답		2.55	0.00	3.15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2008년 1년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을 이용한 사례수가 작아 이용만족도는 생략하였다.

#### 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7.01%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16.13%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4.76%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3〉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01	16.13	4.76
없다		90.45	83.87	92.06
모름/무응답		2.55	0.00	3.17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2008년 1년간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6.67%가 매우 만족하였고 46.67%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73.34%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와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경험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14-2-4〉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6.67	40.00	20.00
	대체로 만족	46.67	60.00	40.00
	그저 그렇다	0.00	0.00	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26.67	0.00	20.00
	계	100.00	100.00	100.00

#### 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5.77%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0.00%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7.14%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5〉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5.77	0.00	7.14
	없다	91.67	100.00	89.68
	모름/무응답	2.56	0.00	3.17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2008년 1년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15.38%가 매우 만족하였고 30.77%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46.1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23.08%,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경험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14-2-6〉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38	-	15.38
대체로 만족		30.77	-	30.77
그저 그렇다		23.08	-	23.08
대체로 불만족		0.00	-	0.00
매우 불만족		0.00	-	0.00
모름/무응답		30.77	-	30.77
계		100.00	-	100.00

## 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을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5.13%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16.67%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2.38%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7〉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5.13	16.67	2.38
없다		92.31	83.33	94.44
모름/무응답		2.56	0.00	3.17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2008년 1년간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41.67%가 매우 만족하였고 25.00%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66.6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0.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경험한 사례 수가 많지 않아 해석에 주의를 필요로 한다.

〈표 14-2-8〉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41.67	60.00	28.57
	대체로 만족	25.00	40.00	14.29
	그저 그렇다	0.00	0.00	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33.33	0.00	57.14
	계	100.00	100.00	100.00

#### 마.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54.49%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26.67%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61.1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가장 활성화된 바우처서비스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표 14-2-9〉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54.49	26.67	61.11
	없다	42.95	73.33	35.71
	모름/무응답	2.56	0.00	3.17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2008년 1년간 이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17.98%가 매우 만족하였고 58.43%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76.41%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는 13.48%, 대체로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4.49%, 매우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가구는 1.12%로 나타났다.

〈표 14-2-10〉 이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7.98	22.22	17.50
	대체로 만족	58.43	44.44	60.00
	그저 그렇다	13.48	11.11	13.75
	대체로 불만족	4.49	22.22	2.50
	매우 불만족	1.12	0.00	1.25
	모름/무응답	4.49	0.00	5.00
	계	100.00	100.00	100.00

## 바.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008년 1년간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1.28%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0.00%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1.5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11〉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28	0.00	1.59
	없다	96.15	100.00	95.24
	모름/무응답	2.56	0.00	3.17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2008년 1년간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사례수가 작아 이용만족도는 생략하였다.

### 사. 기타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2008년 1년간 기타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타 바우처서비스는 앞서 살펴본 사업 이외에 지역개발형 사업 등을 포함한다.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의 22.22%가 기타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40.00%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17.89%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2-12〉 기타 바우처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2.22	40.00	17.89
없다		75.16	60.00	78.86
모름/무응답		2.61	0.00	3.25
계		100.00	100.00	100.00

주: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 있는 사람만 응답하였음.

기타 바우처서비스 중에서는 학습지 바우처가 다수를 차지하였고, ADHD 아동 프로그램, 문제행동 아동 프로그램, 장애아동 재활 프로그램 등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일부 존재하였다. 그 외에도 취약계층 방역지원 서비스, 문화 바우처 등이 소수 존재하였다.

## 제3절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 1.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경험 여부 및 이용금액

4차 웨이브에서는 가구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사에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2008년 1년간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가구의 0.52%인 32가구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저소득가구는 1.10%가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가구는 0.31%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1〉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2	1.10	0.31
	없다	99.48	98.90	99.69
	계	100.00	100.00	100.00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를 월단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0원이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33.33%이며, 저소득가구의 44.44%, 그리고 일반가구의 16.67%였다. 5만원이하라고 응답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33%로서 저소득가구 중 22.22% 였다. 5만원초과~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는 가구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6.67%이며, 저소득 가구의 11.11%였으며,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가구는 전체 서비스 이용 가구의 33.33%로서 저소득가구의 16.67% 그리고 일반가구의 58.33%를 차지하였다. 15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3.33%로서 저소득 가구의 5.56%, 그리고 일반가구의 25.00%였다.

〈표 14-3-2〉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금액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원	33.33	44.44	16.67
	5만원 이하	13.33	22.22	0.00
	5만원초과~10만원 이하	6.67	11.11	0.00
	10만원초과~15만원 이하	33.33	16.67	58.33
	15만원초과	13.33	5.56	25.00
	계	100.00	100.00	100.00

주: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 2.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경험 및 이용만족도

### 가. 방문요양 서비스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가구 중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75.86%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저소득가구의 82.35%, 그리고 일반가구의 66.67%가 방문요양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14-3-3〉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5.86	82.35	66.67
없다		24.14	17.65	33.33
계		100.00	100.00	100.00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만족도의 경우 매우 만족은 전체의 18.18%로 저소득 7.14%, 일반가구 37.50%로 일반가구가 저소득가구에 비해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전체가구의 63.64%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71.43%, 그리고 일반가구의 50.0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3-4〉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8.18	7.14	37.50
대체로 만족		63.64	71.43	50.00
그저 그렇다		0.00	0.00	0.00
대체로 불만족		13.64	21.43	0.00
매우 불만족		4.55	0.00	12.50
계		100.00	100.00	100.00

### 나. 방문목욕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 가구 중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26.92%

로 저소득가구의 28.57%, 일반가구 중 25.00%였다. 사례수가 7가구로 적어 이용만족도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14-3-5〉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6.92	28.57	25.00
	없다	73.08	71.43	75.00
	계	100.00	100.00	100.00

#### 다. 방문간호 서비스

장기요양보험서비스 이용 가구 중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24.00%로 저소득가구의 35.71%, 일반가구 중 9.09%였다. 사례수가 6가구로 적어 이용만족도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14-3-6〉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4.00	35.71	9.09
	없다	76.00	64.29	90.91
	계	100.00	100.00	100.00

#### 라. 주·야간 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경험 가구 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1가구여서 분석을 생략하였다.

#### 마. 단기보호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경험 가구 중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0이다.

## 바.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경험 가구 중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0이다.

## 사. 시설급여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 가구 중에서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18.52%로 저소득가구의 20.00%, 일반가구 중 16.67% 였다. 사례수가 5가구로 적어서 이용만족도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14-3-7〉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8.52	20.00	16.67
	없다	81.48	80.00	83.33
	계	100.00	100.00	100.00

## 아.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경험 가구 중 기타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0이다.

## 제4절 노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 1. 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전체 가구 중 28.51%인 1,770가구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노인관련 서비스 이용경험과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4-1>~<표 14-4-31>과 같다.

## 가.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을 받은 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4-1>와 같다. 전체노 인가구의 61.30%의 가구가 경로연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 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76.96%로 일반가구(43.48%)에 비해 높 게 나타났다.

<표 14-4-1>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61.30	76.96	43.48
없다		38.47	22.93	56.16
모름/무응답		0.23	0.11	0.36
계		100.00	100.00	100.00

경로연금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2>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52.34%, 그저 그렇다가 25.90%, 매우 만족이 14.88%, 대체로 불만족 5.79% 매우 불만족 0.28%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이용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비슷하였다.

<표 14-4-2>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4.88	15.70	15.43
대체로 만족		52.34	54.82	53.99
그저 그렇다		25.90	20.11	22.04
대체로 불만족		5.79	7.44	6.89
매우 불만족		0.28	1.38	1.01
모름/무응답		0.00	0.55	0.64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표 14-4-3>과 같이 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가 구 중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가구 전체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4-4-3〉 경로연금 급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9.63	99.86	99.18
사회복지관련기관		-	-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	-	-
보건소		-	-	-
병원		-	-	-
학교		-	-	-
기타		-	-	-
모름/무응답		0.37	0.14	0.82
계		100.0	100.0	100.0

## 나.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4-4>와 같다. 전체노인가구의 14.34%인 가구가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23.25%로 일반가구(4.2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4-4〉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4.34	23.25	4.22
없다		85.43	76.65	95.42
모름/무응답		0.23	0.11	0.36
계		100.00	100.00	100.00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5>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59.46%, 매우 만족이 27.03%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86.49%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만족도가 일반가구의 만족도보다 대체로 약간 높았다.

〈표 14-4-5〉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7.03	30.14	29.69
	대체로 만족	59.46	55.71	56.25
	그저 그렇다	2.70	9.59	8.59
	대체로 불만족	2.70	4.11	3.91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본 결과 <표 14-4-6>과 같이 서비스이용경험이 있는 가구의 대부분이 공공기관(97.28%)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보건소(0.78%), 병원(0.39%) 등이 있었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모두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6〉 노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7.28	98.17	92.11
	사회복지관련기관	0.00	0.0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78	0.91	0.00
	병원	0.39	0.46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모름/무응답	1.56	0.46	7.89
	계	100.00	100.00	100.00

#### 다. 노인무료급식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4-7>과 같다. 노인전체 가구의 7.74%의 가구가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11.48%로 일반가구(3.5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4-7〉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7.74	11.48	3.50
	없다	91.92	88.20	96.14
	모름/무응답	0.34	0.32	0.36
	계	100.00	100.00	100.00

노인무료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8>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61.22%, 매우 만족이 15.65%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76.87%는 노인무료급식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소득 가구에서 만족하는 비율 78.86%로 일반가구의 만족도(70.58%)보다 높았다.

〈표 14-4-8〉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65	16.81	11.76
	대체로 만족	61.22	61.95	58.82
	그저 그렇다	17.01	15.93	20.59
	대체로 불만족	1.36	1.77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4.76	3.54	8.82
	계	100.00	100.00	100.00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 본 결과는 <표 14-4-9>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서 제공을 받은 경우가 78.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서 공공기관(8.9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7.53%)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14-4-9〉 노인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8.90	9.73	6.06
사회복지관련기관		78.77	79.65	75.76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7.53	7.08	9.09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68	0.88	0.00
모름/무응답		4.11	2.65	9.09
계		100.0	100.0	100.0

## 라. 물품지원

물품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4-10>과 같다. 노인전체가구의 9.70%가 물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16.84%로 일반가구(1.5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14-4-10〉 노인물품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70	16.84	1.57
없다		90.07	83.05	98.07
모름/무응답		0.23	0.11	0.36
계		100.00	100.00	100.00

물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11>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52.84%, 매우 만족이 11.93%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64.77%는 물품지원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4-11〉 노인물품지원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1.93	13.13	0.00
	대체로 만족	52.84	53.13	50.00
	그저 그렇다	26.14	26.25	25.00
	대체로 불만족	6.82	6.88	6.25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2.27	0.63	18.75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4-12>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66.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사회복지 관련기관(11.9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18.18%) 등이 있었다.

〈표 14-4-12〉 노인물품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6.48	66.88	62.50
	사회복지관련기관	11.93	12.50	6.25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8.18	18.75	12.5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1.14	1.25	0.00
	모름/무응답	2.27	0.63	18.75
	계	100.00	100.00	100.00

#### 마. 가정봉사 서비스

가정봉사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4-13>과 같다. 노인 전체 가구의 2.48%만이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3.72%이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서

비스 이용경험은 1.08%였다.

〈표 14-4-13〉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48	3.72	1.08
	없다	97.24	96.07	98.56
	모름/무응답	0.28	0.21	0.36
	계	100.00	100.00	100.00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14>와 같이 대체로 만족이 41.67%이고 매우 만족이 25.00%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66.67%는 가정봉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4-4-14〉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5.00	21.62	36.36
	대체로 만족	41.67	48.65	18.18
	그저 그렇다	16.67	18.92	9.09
	대체로 불만족	2.08	2.70	0.00
	매우 불만족	4.17	2.70	9.09
	모름/무응답	10.42	5.41	27.27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4-15>와 같이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36.73%이고 공공기관이 28.57%, 기타가 16.3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8.16%를 차지했다.

〈표 14-4-15〉 노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8.57	28.95	27.27
사회복지관련기관		36.73	44.74	9.09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8.16	7.89	9.09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16.33	13.16	27.27
모름/무응답		10.20	5.26	27.27
계		100.00	100.00	100.00

## 바. 식사 배달서비스

식사배달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는 <표 14-4-16>과 같다. 노인전체가구의 2.76%가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 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4.88%로 일반가구(0.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16〉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76	4.88	0.36
없다		96.96	94.90	99.28
모름/무응답		0.28	0.21	0.36
계		100.00	100.00	100.00

식사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17>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4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이 20.37%로, 이용경험가구의 약 68.52%는 식사배달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소득가구의 만족도가 일반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4-17〉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0.37	20.83	16.67
	대체로 만족	48.15	50.00	33.33
	그저 그렇다	18.52	20.83	0.00
	대체로 불만족	3.70	4.17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9.26	4.17	50.00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4-18>와 같이 사회복지 관련기관 (44.44%)과 종교 혹은 시민단체(33.33%)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공공기관(11.11%)등이 있었다.

〈표 14-4-18〉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1.11	12.50	0.00
	사회복지관련기관	44.44	47.92	16.6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33.33	33.33	33.33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1.85	2.08	0.00
	모름/무응답	9.26	4.17	50.00
	계	100.00	100.00	100.00

### 사.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4-19>와 같다. 노인전체가구의 3.39%가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5.53%로 일반가



구(0.9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4-19〉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39	5.53	0.97
없다		96.33	94.26	98.67
모름/무응답		0.28	0.21	0.36
계		100.00	100.00	100.00

노인에 대한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만족이 48.44%, 매우 만족이 21.88%로 나타나 약 70.32%의 가구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20〉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1.88	24.07	10.00
대체로 만족		48.44	51.85	30.00
그저 그렇다		18.75	16.67	30.00
대체로 불만족		3.13	3.7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7.81	3.70	30.00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4-21>과 같이 보건소에서 제공한 경우가 62.12%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사회복지관련 기관과 공공기관이 각각 12.12%로 나타났다.

〈표 14-4-21〉 방문 가정간호 및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2.12	9.26	25.00
사회복지관련기관		12.12	14.81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62.12	66.67	41.67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6.06	5.56	8.33
모름/무응답		7.58	3.70	25.00
계		100.00	100.00	100.00

### 아. 이동편의 서비스<sup>43)</sup> 지원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4-22>와 같다. 전체노인가구의 0.51%가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경험률이 0.96%로 일반가구(0.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4-22〉 노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1	0.96	0.00
없다		99.21	98.83	99.64
모름/무응답		0.28	0.21	0.36
계		100.00	100.00	100.00

교통수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23>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40.00%, 매우 만족이 30.00%로 만족하는 비

43) 이동편의 서비스는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함.

율이 70%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4-23〉 노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0.00	30.00	-
대체로 만족		40.00	40.00	-
그저 그렇다		10.00	10.00	-
대체로 불만족		10.00	10.00	-
매우 불만족		10.00	10.00	-
계		100.00	100.00	-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4-24>와 같이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80.00%를 차지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보건소가 각각 10.00%로 조사되었다.

〈표 14-4-24〉 노인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0.00	10.00	-
사회복지관련기관		80.00	80.00	-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
보건소		10.00	10.00	-
병원		0.00	0.00	-
학교		0.00	0.00	-
기타		0.00	0.00	-
계		100.00	100.00	-

## 자. 주·야간보호 서비스

노인 가구 중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0.17%로 이용경험이 매우 적었다. 사례수가 적어서 이용만족도와 제공기관의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14-4-25〉 노인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7	0.11	0.24
없다		99.49	99.57	99.40
모름/무응답		0.34	0.32	0.36
계		100.00	100.00	100.00

### 차. 노인일자리 사업<sup>44)</sup>

노인일자리 사업의 이용경험을 살펴본 결과 <표 14-4-26>와 같다. 전체 노인가구의 1.75%의 가구가 노인일자리 사업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저소득가구의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2.34%로 일반가구(1.09%)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4-26〉 노인 일자리사업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75	2.34	1.09
없다		97.63	97.13	98.19
모름/무응답		0.62	0.53	0.72
계		100.00	100.00	100.00

노인일자리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27>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48.39%, 매우만족이 45.16%여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44) 노인소득보장 사업 중 노후생활지원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파견형으로 구분되며, 공익형과 교육형, 복지형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있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하는 경우와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재가복지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업집행 기관 및 지자체별로 명칭은 다를 수 있음.

〈표 14-4-27〉 노인 일자리사업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45.16	45.45	44.44
대체로 만족		48.39	45.45	55.56
그저 그렇다		6.45	9.10	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4-28>과 같이 공공기관(96.7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사회복지관련 기관이 3.23%를 차지하였다.

〈표 14-4-28〉 노인 일자리사업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6.77	100.00	88.89
사회복지관련기관		3.23	0.00	11.11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카. 노인 사회교육 서비스

4차 웨이브에서는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사에서 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과 같은 사회교육서비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 추가되었다. 사회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노인 가구는 전체가구의 3.16%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이용경험의 비율이 비슷하였다.

〈표 14-4-29〉 노인 사회교육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16	3.08	3.26
없다		96.21	96.39	96.02
모름/무응답		0.62	0.53	0.72
계		100.00	100.00	100.00

노인 사회교육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14-4-30>과 같이 대체로 만족이 48.15%, 매우만족이 40.74%여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4-30〉 노인 사회교육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40.74	40.00	40.35
대체로 만족		48.15	53.33	50.88
그저 그렇다		11.11	6.67	8.77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표 14-4-31>과 같이 사회복지기관이 50.91%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이 38.18%, 그리고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10.91%를 차지하였다.

〈표 14-4-31〉 노인 사회교육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8.18	39.29	37.04
사회복지관련기관		50.91	42.86	59.26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0.91	17.86	3.7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제5절 장애인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전체 가구 중 16.11%인 1,000가구가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등록장애인, 비등록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과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5-1> ~ <표 14-5-30>과 같다.

### 1.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이용경험 및 만족도

#### 가. 장애수당

<표 14-5-1>에서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수당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이다. 전체장애인가구 중 장애수당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19.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의 이용 경험률이 39.86%인 것에 비해 일반가구 이용률은 불과 3.68%로 매우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1> 장애수당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9.20	39.86	3.68
없다		78.60	58.74	93.52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수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5-2>와 같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36.08%, 그저 그렇다 31.44%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불만족이 22.16%, 매우 불만족은 3.61%였다. 저소득층의 이용경험이 월등히 높아서 전체 이용만족도와 저소득의 이용만족도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표 14-5-2〉 장애수당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6.19	5.81	9.09
	대체로 만족	36.08	36.05	36.36
	그저 그렇다	31.44	31.98	27.27
	대체로 불만족	22.16	22.09	22.73
	매우 불만족	3.61	3.49	4.55
	모름/무응답	0.52	0.58	0.0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수당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는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100.00%로 나타났다.

#### 나.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의 이용경험은 다음 <표 14-5-3>과 같다. 전체장애인 가구 중 장애아동 부양수당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1.00%에 불과했다.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이용경험은 1.63%이며 일반가구의 이용경험은 0.53%였다.

〈표 14-5-3〉 장애아동부양수당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0	1.63	0.53
	없다	96.80	96.98	96.67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부양수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5-4>와 같이 5점 만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66.67%, 그저 그렇다 33.33%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이용만족도가 같았다. 그러나 사례수가 10가구



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5-4〉 장애인동부양수당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0.00	0.00	0.00
대체로 만족		66.67	66.67	66.67
그저 그렇다		33.33	33.33	33.33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 이동부양수당 지원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100.00%를 차지하고 있다.

#### 다.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와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 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의 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포함하는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뜻하며 결과는 <표 14-5-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7.70%로 나타나 장애인 자립자금 서비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의 경험기구가 2가구이어서 이용만족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분석을 생략하였다.

〈표 14-5-5〉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10	0.23	0.00
없다		97.70	98.37	97.20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 라.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장애인 보장구 할인 포함)

다음으로 <표 14-5-6>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1.50%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 가구에서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2.56%이며, 일반가구에서는 0.70%였다.

<표 14-5-6>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50	2.56	0.70
없다		96.30	96.04	96.50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5-7>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이 60.00%, 매우 만족이 20.00%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5-7>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0.00	10.00	40.00
대체로 만족		60.00	70.00	40.00
그저 그렇다		13.33	20.00	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6.67	0.00	2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14-5-8>에서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는 응답이

71.43%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그 다음은 사회복지 관련기관(21.4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7.14%) 순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경우도 공공기관을 통해 제공받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8〉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 용품 지원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1.43	80.00	50.00
사회복지관련기관		21.43	10.00	5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7.14	1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마. 의료재활서비스

다음으로 <표 14-5-9>에서는 의료재활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장애인가구 중 의료재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1.00%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이용경험은 1.17%였으며, 일반가구의 이용경험은 0.88%였다. 이용만족도와 제공기관은 사례수가 10가구여서 생략하였다.

〈표 14-5-9〉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0	1.17	0.88
없다		96.80	97.43	96.32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 바. 가정봉사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5-10>은 가정봉사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가정봉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3.1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5.83%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1.05%로 이용해 본 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10>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10	5.83	1.05
없다		94.70	92.77	96.15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5-11>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이 50.00%, 매우 만족이 33.33%를 차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표 14-5-11>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3.33	20.83	23.33
대체로 만족		50.00	58.33	56.67
그저 그렇다		0.00	12.50	10.00
대체로 불만족		0.00	4.17	3.33
매우 불만족		16.67	4.17	6.67
계		100.00	100.00	100.00

<표 14-5-12>에서는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관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53.33%, 공공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3.33%를 차지하였다.

〈표 14-5-12〉 장애인 가정봉사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43.33	41.67	50.00
사회복지관련기관		53.33	54.17	5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사.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5-13>은 장애인 방문가정간호 혹은 간병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한 결과이다. 전체장애인 3.00%의 가구가 방문가정간호 혹은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5.36%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1.23%로 이용해 본 경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5-13〉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00	5.36	1.23
없다		94.80	93.24	95.97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방문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대체로 만족이 각각 25.00%였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가구가 12.50%였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만족도 분포가 비슷하였다.

〈표 14-5-14〉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5.00	27.27	26.67
	대체로 만족	25.00	45.45	40.00
	그저 그렇다	12.50	18.18	16.67
	대체로 불만족	0.00	4.55	3.33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모름/무응답	37.50	4.55	13.33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방문가정 간호 혹은 간병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소가 50.00%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 26.92%, 사회복지관련기관 23.08%의 분포를 보였다.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결과이며,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의 주의를 요한다.

〈표 14-5-15〉 장애인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6.92	31.82	0.00
	사회복지관련기관	23.08	18.18	5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50.00	50.00	5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아. 이동편의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5-16>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전체장애인가구 중 이동편의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1.5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2.33%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88%로 나타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5-16〉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50	2.33	0.88
없다		96.30	96.27	96.32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5-17>과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3.75%, 매우 만족 한다는 응답이 37.50%로 분포되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4-5-17〉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7.50	40.00	33.33
대체로 만족		43.75	30.00	66.67
그저 그렇다		6.25	10.00	0.00
대체로 불만족		6.25	10.00	0.00
매우 불만족		6.25	1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표 14-5-18>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복지관련기관에서 받았다는 응답이 68.75%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과 병원이 각각 12.50%, 보건소가 6.25%로 나타났다.

〈표 14-5-18〉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2.50	10.00	16.67
사회복지관련기관		68.75	60.00	83.3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6.25	10.00	0.00
병원		12.50	2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자. 주택관련 서비스

다음으로 <표 14-5-19>에서는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개조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1.6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2.80%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70%로 나타나 이용경험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4-5-19>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0	2.80	0.70
없다		96.20	95.80	96.50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만족도의 경우 대체로 만족이 66.67%, 매우 만족이 33.33%를 차지하고 있다.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생략하였다.

<표 14-5-20> 장애인 주택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3.33	41.67	0.00
대체로 만족		66.67	58.33	100.00
그저 그렇다		0.00	0.00	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차.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

다음으로 <표 14-5-21>에서는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장애인가구 중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0.5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률은 0.93%로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의 경우는 0.17%로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용만족도와 제공기관은 사례수가 적어 분석을 생략하였다.

<표 14-5-21> 장애인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0	0.93	0.17
없다		97.30	97.67	97.03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 카.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표 14-5-22>에서는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이용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직업재활 시설 및 보호작업장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와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장애인 가구 중 2.10%가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에 관한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저소득 가구의 1.86% 일반가구의 2.28%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4-5-22>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10	1.86	2.28
없다		95.70	96.74	94.92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과 그저그렇다가 각각 38.10%였으며, 매우만족과 대체로 불만족의 비율이 각각 9.52% 였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이용만족도 보다 일반가구의 이용만족도가 대체로 높았다.

〈표 14-5-23〉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9.52	14.29	7.14
대체로 만족		38.10	14.29	50.00
그저 그렇다		38.10	28.57	42.86
대체로 불만족		9.52	28.57	0.00
매우 불만족		4.76	14.29	0.0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을 살펴보면 77.27%가 공공기관이라고 응답하여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에 사회복지관련기관이라고 한 응답이 22.73%를 차지하였다.

〈표 14-5-24〉 장애인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77.27	75.00	78.57
사회복지관련기관		22.73	25.00	21.43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타.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다음으로 <표 14-5-25>에서는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의 이용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80%로 나타났으며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경우 0.93%이고, 일반가구의 경우는 2.4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용률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5-25〉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80	0.93	2.45
없다		96.00	97.67	94.75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이 53.33%, 그저 그렇다 26.67%, 대체로 만족이 20.0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구분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100%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에서는 매우만족에 42.11%, 대체로 만족 36.84%, 그저 그렇다에 21.05%가 응답하였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100.00% 공공기관이라고 조사되었다.

〈표 14-5-26〉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53.33	0.00	42.11
대체로 만족		20.00	100.00	36.84
그저 그렇다		26.67	0.00	21.05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파.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학습지원 서비스 등)

다음으로 <표 14-5-27>에서는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해보았는데, 전체 장애인가구 중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가구는 불과 0.90%로 나타났으며 저소득 가구의 0.23%, 일반가구의 1.40%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이용률이 매우 낮다. 응답가구가 9가구이어서 이용만족도와 제공기관 분석은 생략하였다.

〈표 14-5-27〉 장애인녀 관련 프로그램 서비스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90	0.23	1.40
	없다	96.90	98.37	95.80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 하.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다음으로 <표 14-5-28>에서는 장애인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의 이용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전체 장애인가구중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8.73%로 나타났다. 소득구분별로 볼 때 저소득가구에서는 10.98%, 일반가구에서는 42.03%의 비율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에 비해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4-5-28〉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8.73	10.98	42.03
	없다	69.07	87.62	55.17
	모름/무응답	2.20	1.40	2.80
	계	100.00	100.00	100.00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표 14-5-29>와 같이 살펴본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6.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에서도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58.33%와 56.25%로 나타나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표 14-5-29〉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6.94	8.33	6.67
대체로 만족		56.60	58.33	56.25
그저 그렇다		29.86	27.08	30.42
대체로 불만족		5.21	6.25	5.00
매우 불만족		1.39	0.00	1.67
계		100.00	100.00	100.00

<표 14-5-30>에서는 자동차관련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이 97.91%로 다수로 조사되었다.

〈표 14-5-30〉 장애인 차량관련 지원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7.91	97.87	97.92
사회복지관련기관		0.00	0.0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35	0.00	0.42
모름/무응답		1.74	2.13	1.67
계		100.00	100.00	100.00

## 제6절 이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1. 이동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전체 가구 중 38.68%인 2,401가구가 만 17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있는 가구(저소득가구 350가구, 일반 가구 2,051가구)를 대상으로 2008년 1년간 이동관련 서비스 이용경험과 각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14-6-1>~<표 14-6-27>과 같다.

### 가.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주간보호 및 특별 활동)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어린이집 이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97.13%, 있었다는 2.21%에 불과하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의 이용비율이 2.34%, 저소득가구의 이용비율이 1.43%로 일반가구의 이용률이 높았다.

〈표 14-6-1〉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이용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2.21	1.43	2.34
없다		97.13	97.99	96.98
모름/무응답		0.67	0.57	0.68
계		100.00	100.00	100.00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이용만족도는 전체 가구의 85.45%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매우)불만족하다는 응답비율은 9.09%였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만족도는 (매우)만족한다는 비율이 87.75%인데 반해, 저소득가구는 66.66%로 낮았다.

〈표 14-6-2〉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이용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36.36	33.33	36.73
대체로 만족		49.09	33.33	51.02
그저 그렇다		5.45	16.67	4.08
대체로 불만족		3.64	16.67	2.04
매우 불만족		5.45	0.00	6.12
계		100.00	100.00	100.00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98.15%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관련기관이 1.85%를 차지하였다.

〈표 14-6-3〉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8.15	100.00	97.96
사회복지관련기관		1.85	0.00	2.04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나.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받아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82.74%)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16.76%만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비교해 볼 때, 있다는 응답은 저소득가구가 15.47%로 일반가구 16.98%에 비해 더 적은 지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6-4〉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6.76	15.47	16.98
없다		82.74	84.24	82.49
모름/무응답		0.50	0.29	0.54
계		100.00	100.00	100.00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4.13%로 나타났다. (매우)불만족하다는 응답비율은 11.19%로 나타났다.

〈표 14-6-5〉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4.63	24.07	24.71
	대체로 만족	49.50	61.11	47.70
	그저 그렇다	14.68	9.26	15.52
	대체로 불만족	9.20	5.56	9.77
	매우 불만족	1.99	0.00	2.30
	계	100.00	100.00	100.00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이라는 응답이 98.51%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그 외는 기타가 1.24%로 나타났다.

〈표 14-6-6〉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98.51	100.00	98.28
	사회복지관련기관	0.00	0.0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0.00	0.00	0.00
	기타	1.24	0.00	1.43
	모름/무응답	0.25	0.00	0.29
	계	100.00	100.00	100.00

#### 다.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 가운데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성격, 정서 문제, 독서지도 등)을 이용해 본 경험에 대해서는 있다는 응답은 전체가구의 4.45%였으며, 저소득 가구 중에서는 5.13% 일반 가구 중에서는 4.34%였다.



〈표 14-6-7〉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4.45	5.13	4.34
없다		94.92	94.59	94.98
모름/무응답		0.62	0.28	0.68
계		100.00	100.00	100.00

아동상담, 집단프로그램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30%로 나타나 (매우)불만족하다는 응답비율은 4.72%보다 월등히 높았다.

〈표 14-6-8〉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15.09	11.11	15.91
대체로 만족		63.21	61.11	63.64
그저 그렇다		12.26	11.11	12.50
대체로 불만족		1.89	0.00	2.27
매우 불만족		2.83	16.67	0.00
모름/무응답		4.72	0.00	5.68
계		100.00	100.00	100.00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기타가 60.00%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은 26.67%, 사회복지관련기관이 4.76%로 조사되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 기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아동바우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영리기관의 서비스 제공 확대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6-9〉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6.67	17.65	28.41
사회복지관련기관		4.76	23.52	1.14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95	0.00	1.14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2.86	17.65	0.00
기타		60.00	41.18	63.64
모름/무응답		4.76	0.00	5.68
계		100.00	100.00	100.00

## 라. 방과 후 지도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방과 후 지도(공부방 등)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방과 후 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가구는 3.0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가구 유형별로는 저소득 아동 가구의 12.00%가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구의 1.47%보다 훨씬 높았다.

〈표 14-6-10〉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3.00	12.00	1.47
없다		96.33	86.86	97.95
모름/무응답		0.67	1.14	0.59
계		100.00	100.00	100.00

방과 후 지도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체 가구의 78.88%는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보면, 저소득가구의 만족도가 일반가구의 만족도 보다 대체적으로 높았다.

〈표 14-6-11〉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9.58	33.33	24.14
대체로 만족		49.30	52.38	44.83
그저 그렇다		16.90	9.52	27.59
대체로 불만족		1.41	2.38	0.00
매우 불만족		2.82	2.38	3.45
계		100.00	100.00	100.00

방과 후 지도 서비스를 받은 해당가구의 이용기관은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49.32%, 공공기관이 23.29%, 사회복지관련기관이 17.81%, 종교 및 시민단체가

8.22%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방과후 지도프로그램 제공기관의 분포는 비슷하였다.

〈표 14-6-12〉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3.29	18.60	30.00
사회복지관련기관		17.81	18.60	16.67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8.22	9.30	6.67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49.32	51.16	46.67
기타		1.37	2.33	0.00
계		100.00	100.00	100.00

## 마. 무료급식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무료급식(동사 무소나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경험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6-13>과 같다. 무료급식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 가구의 15.84%에 해당하였다. 일반아동 가구는 10.44%인 반면 저소득아동가구는 47.56%로 2가구 중 1가구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표 14-6-13〉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5.84	47.56	10.44
없다		83.66	52.15	89.02
모름/무응답		0.50	0.29	0.54
계		100.00	100.00	100.00

무료급식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90.29%가 (매우)만족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가구별로도 저소득가구의 95.21%, 일반가구의 86.44%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4-6-14〉 무료급식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9.92	31.74	28.50
	대체로 만족	60.37	63.47	57.94
	그저 그렇다	7.61	4.19	10.28
	대체로 불만족	1.84	0.60	2.80
	매우 불만족	0.26	0.00	0.47
	계	100.00	100.00	100.00

무료급식을 받은 경험이 있었던 가구가 이용한 기관은 학교가 60.21%로 가장 높았으며, 공공기관이 38.74%로 뒤를 이었다.

〈표 14-6-15〉 무료급식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38.74	27.54	47.44
	사회복지관련기관	0.26	0.6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52	0.00	0.93
	병원	0.26	0.60	0.00
	학교	60.21	71.26	51.63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바. 학비지원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학비지원(장학금 등)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14-6-16>과 같다. 전체 가구의 9.08%만 학비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5.85%로 낮은 반면, 저소득가구는 28.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4-6-16〉 학비지원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08	28.00	5.85
없다		90.34	71.71	93.52
모름/무응답		0.58	0.29	0.63
계		100.00	100.00	100.00

학비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가구의 94.52%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소득별로도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만족도의 분포는 비슷하였다.

〈표 14-6-17〉 학비지원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42.01	38.38	45.00
대체로 만족		52.51	56.57	49.17
그저 그렇다		3.65	3.03	4.17
대체로 불만족		1.83	2.02	1.67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학비지원을 받은 가구 가운데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기관은 공공기관 (63.64%)이었고, 학교(19.09%), 기타(10.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아동가구는 공공기관이 57.85%, 학교가 16.53%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공공기관을 통한 학비지원이 70.71%,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비지원은 22.22%로 조사되었다.

〈표 14-6-18〉 학비지원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63.64	70.71	57.85
사회복지관연기관		0.00	0.00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7.27	7.07	7.44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19.09	22.22	16.53
기타		10.00	0.00	18.18
계		100.00	100.00	100.00

## 사. 예체능 교실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예체능 교실(컴퓨터, 영어, 미술 등)을 이용해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1.50%만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5)</sup>. 저소득가구 가운데 5.41%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일반가구 0.83%에 비해 다소 높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표 14-6-19〉 예체능 교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50	5.41	0.83
	없다	97.88	93.73	98.59
	모름/무응답	0.62	0.85	0.59
	계	100.00	100.00	100.00

예체능 교실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94.45%가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표 14-6-20〉 예체능 교실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41.67	26.32	58.82
	대체로 만족	52.78	68.42	35.29
	그저 그렇다	5.56	5.26	5.88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예체능 교실 서비스를 제공받은 기관은 학교라는 응답이 61.11%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19.44%, 공공기관이 11.11%로 조사되었다. 가구별로 보면 저소득 가구의 아동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84.21%, 공공기관이 10.53%,

45) 설문내용이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만 해당되고 비용을 스스로 전부 부담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요함.

사회복지관련기관이 5.26%로 조사되는데 반해, 일반가구의 아동은 학교와 사회복지관련기관이 각각 35.29%, 기타기관이 17.65%, 공공기관이 11.76%를 차지하였다.

〈표 14-6-21〉 예체능 교실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11.11	10.53	11.76
	사회복지관련기관	19.44	5.26	35.29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0.00	0.00	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61.11	84.21	35.29
	기타	8.33	0.00	17.65
	계	100.00	100.00	100.00

## 아. 문화활동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문화 활동 서비스(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를 받아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1.0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소득 아동 가구 가운데 문화 활동 서비스를 받은 비율은 3.99%로 일반 가구 아동의 0.49% 보다는 높았다.

〈표 14-6-22〉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1.00	3.99	0.49
	없다	98.42	95.16	98.98
	모름/무응답	0.58	0.85	0.54
	계	100.00	100.00	100.00

문화 활동 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95.66%의 높은 비율이 (매우)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소득구분에 따른 가구별로 보면, 일반아동가구 가운데서는 90.00%가 (매우)만족한 반면, 저소득아동가구 가운데 문화 활동 서비스

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0.00%로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4-6-23〉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 만족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만족	26.09	30.77	20.00
	대체로 만족	69.57	69.23	70.00
	그저 그렇다	4.35	0.00	10.00
	대체로 불만족	0.00	0.00	0.00
	매우 불만족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문화활동 서비스 이용기관은 전체적으로는 학교가 56.00%, 공공기관이 28.00%, 종교단체나 시민단체가 12.00%, 사회복지기관 4.00%의 순이었다. 일반가구의 경우 학교가 70.00%, 공공기관 2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가 10.00%를 차지한데 반해, 저소득가구의 경우 학교 46.67%, 공공기관 33.33%, 종교 혹은 시민단체 13.33%, 사회복지관련기관이 6.67%를 차지하였다.

〈표 14-6-24〉 문화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공공기관	28.00	33.33	20.00
	사회복지관련기관	4.00	6.67	0.00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12.00	13.33	10.00
	보건소	0.00	0.00	0.00
	병원	0.00	0.00	0.00
	학교	56.00	46.67	7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 자. 아동가구의 가정봉사 서비스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봉사서비스를 받아 본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0.5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별로는 저소득가구의 0.86%, 일반가구의 0.44%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이용만족도와 제공기관은 사례수가 적어서 생략하였다.

〈표 14-6-25〉 가정봉사 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50	0.86	0.44
없다		98.88	98.29	98.98
모름/무응답		0.62	0.86	0.58
계		100.00	100.00	100.00

## 2. 아동의 건강

### 가. 추가된 아동여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질문하였다<sup>46)</sup>. 조사결과, 전체 아동 가구 가운데 9.00%의 가구에서 217명의 아동이 2008년에 새로 아동이 추가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가구별로는 일반가구는 9.18%, 저소득가구는 7.95%로 일반가구가 다소 높았다.

〈표 14-6-26〉 새로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9.00	7.95	9.18
없다		91.00	92.05	90.82
계		100.00	100.00	100.00

### 나. 출생 당시 체중

2008년에 추가된 아동 217명의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인지 살펴본 결과, 4.95%의 아동가구가 2.5kg 미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에 추가된 아동가

46) 새로 추가된 아동은 신생아를 비롯하여, 입양이나 친척아동 등 같이 살게 된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가구의 기준이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규정됨에 따라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추가된 아동만이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추가 아동 여부와 출생 당시 체중과 선정성 기형 또는 질환 여부에 응답하였음.

구 가운데 2.5kg 미만은 5.18%로 저소득가구의 추가된 아동의 3.45%보다 높았다. 그러나 저소득가구에 추가된 아동의 경우 30명 미만이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6-27〉 출생당시 체중정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2.5kg 이상		92.34	96.55	91.71
2.5kg 미만		4.95	3.45	5.18
모름/무응답		2.70	0.00	3.11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가구에 추가된 아동의 경우 30명 미만이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2008년에 새로 추가된 아동 217명이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추가 아동가구 중 0.45%이었다. 저소득가구에 추가된 아동의 경우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은 없었으며, 일반가구의 경우 0.52%의 아동이 선천성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층가구에 추가된 아동의 수는 30명 미만이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14-6-28〉 선천성 기형 또는 선천성 질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다		0.45	0.00	0.52
없다		95.96	93.33	96.37
모름/무응답		3.59	6.67	3.11
계		100.00	100.00	100.00

주: 저소득가구에 추가된 아동의 경우 30명 미만이어서 해석에 주의를 요함.

### 3. 아동가구의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

#### 가.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

2008년 1년간 만 0~17세 이하 아동(자녀)을 둔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동 중 한명이라도 학교 교육 이외의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

율은 무응답을 제외하고 81.23%,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아동가구의 18.36%였다. 일반가구는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84.65%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61.30%로 낮게 나타났다. 자연히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저소득아동가구는 38.42%로, 일반 가구 14.91%보다 높았다.

〈표 14-6-29〉 사교육·보육기관 이용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이용함		81.23	61.30	84.65
이용하지 않음		18.36	38.42	14.91
모름/무응답		0.41	0.28	0.44
계		100.00	100.00	100.00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기관의 종류를 각 아동별로 최대 5개까지 조사한 결과, 학교 교육 외 사교육 기관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 이용 기관수는 2.43개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는 평균 1.94개, 일반가구는 평균 2.50개로 나타났다.

〈표 14-6-30〉 사교육·보육기관 평균이용 기관 수

(단위: 개)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2.43	1.94	2.50
표준오차		0.03	0.07	0.03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들의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은 크게 민간학원 및 사교육이 65.00%로 가장 높고, 보육시설이 20.52%,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이 10.28%, 기타는 3.38%였다. 세부적으로는 학원이라는 응답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습지(13.41%)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수준별로 볼 때, 저소득아동가구에서 학원을 이용한 비율은 43.63%, 일반아동가구는 47.68%였으며 개인·그룹과외를 받는 아동은 일반가구아동의 4.46%, 저소득가구아동은 3.07%로 나타났다. 일반가구 아동 가운데 민간학원 및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65.81%였다. 이는 저소득

아동가구 57.78%보다 높은 수치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은 일반 가구는 20.82%, 저소득아동가구는 17.94%였다.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은 일반가구는 9.08%였으나, 저소득아동가구는 20.99%로 2배 이상 저소득가구가 높았다. 반면 일반 가구는 친인척 혹은 이웃, 민간 아이 돌보미를 이용한 경우가 있으나 저소득가구는 전혀 없었다.

〈표 14-6-31〉 사교육·보육기관 평균이용 기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2.82	2.36	2.87
	민간어린이집		10.88	10.38	10.94
	사설놀이방		0.50	0.71	0.48
	직장보육시설		0.24	0.24	0.24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2.00	1.89	2.02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4.08	2.36	4.27
민간학원 및 사교육	학원		47.27	43.63	47.68
	개인·그룹과외		4.32	3.07	4.46
	학습지		13.41	11.08	13.67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8.28	15.80	7.43
	방과후 교실		2.00	5.19	1.65
기타	친·인척		0.64	0.00	0.72
	이웃		0.10	0.00	0.11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0.07	0.00	0.08
	민간아이돌보미		0.19	0.00	0.21
	기타		0.95	0.24	1.04
	그 외 보육시설		1.43	1.89	1.38
모름/무응답			0.81	1.18	0.77
계			100.00	100.00	100.00

## 나. 가구의 사교육비와 보육비 지출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36만 3천원이었다. 소득에 따른 가구별로는 저소득층은 18만 3천원인 반면, 일반아동가구는 38만 7천 원으로 대략 2배 이상 높았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

육비 지출은 21만 2천원이다. 저소득가구 아동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0만 7천원, 일반가구 아동은 22만 6천원으로 아동당 월 평균 지출도 일반가구에서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자녀)이 있는 가구의 11.22%는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았다<sup>47)</sup>(저소득가구: 18.37%, 일반가구: 10.26%).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30.95%는 월 2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고 있었다. 가구별로는 일반가구에서는 28.13%인 반면, 저소득가구의 51.84%의 대다수가 월 20만원 이하의 지출을 하였다. 월 평균 가구 사교육비 지출이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20.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10만원 초과에서 20만원 이하(13.99%)로 많았다. 일반가구는 월평균 사교육비로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지출한다는 가구가 22.28%로 가장 높았다. 또한 100만원 넘게 월평균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가구도 6.07%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가 18.3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5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가구가 17.55%였다.

〈표 14-6-32〉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원		11.22	18.37	10.26
5만원 이하		8.36	17.55	7.12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8.60	15.92	7.61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13.99	18.37	13.40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3.12	8.98	13.68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9.09	8.57	9.16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9.57	3.27	10.42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0.60	8.16	22.28
100만원 초과		5.39	0.41	6.07
모름/무응답		0.05	0.41	0.0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 평균(표준오차)		363.24(7.85)	183.48(14.10)	387.43(8.54)
1인당 평균(표준오차)		212.38(4.57)	107.74(8.79)	226.46(4.95)

주: 저소득가구 중 한달 평균 사교육비가 100만원이 초과하는 가구는 1가구임.

47) 사교육비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포함됨.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가구의 월평균 보육비는 7만 6천원으로 저소득층 2만 7천원, 일반가구 8만 2천원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1인당 월평균 보육비 지출은 4만 6천원이고 저소득가구 아동은 1만 5천원, 일반가구 아동은 5만원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이나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자녀)가 있는 가구의 69.16%는 보육비를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sup>48)</sup>. 일반가구는 67.68%, 저소득가구의 80.25%는 보육비를 별도로 지출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를 지출하는 비율이 7.88%로 가장 높다. 보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비율은 2.24%로 나타났다. 가구별로 보면, 일반가구는 20만원 초과~30만원이하를 지출하는 비율이 8.68%로 가장 높았고, 저소득가구는 5만원 이하가 8.23%로 가장 높았다. 100만원 넘게 보육비를 지출한 경우는 저소득가구 가운데서는 한 사례도 없는 반면에 일반 가구는 0.50%가 존재하였다.

〈표 14-6-33〉 아동이 있는 가구의 한 달 평균 보육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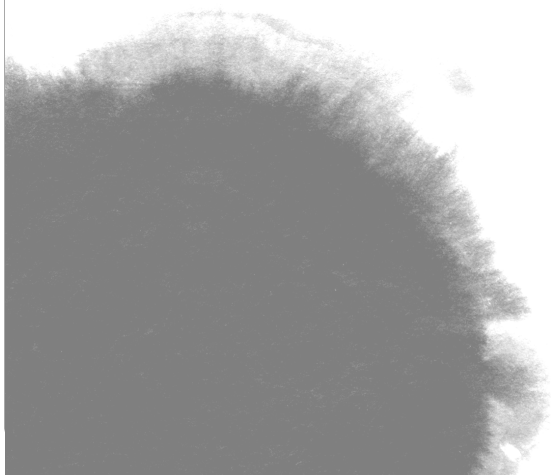
(단위: %,천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0원		69.16	80.25	67.68
5만원 이하		4.52	8.23	4.03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3.94	2.47	4.14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6.37	4.94	6.56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7.88	2.47	8.60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3.84	1.23	4.19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1.61	0.00	1.82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24	0.41	2.48
100만원 초과		0.44	0.00	0.50
계		100.00	100.00	100.00
가구 평균(표준오차)		76.15(3.57)	27.20(5.85)	82.73(3.95)
1인당 평균(표준오차)		46.72(2.39)	15.25(3.19)	50.95(2.66)

48) 보육비 역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만 해당됨.

# 15

## 이동 부가조사







# 제15장 아동 부가조사

## 제1절 응답자 특성

### 1. 일반 특성

아동부가조사의 대상이 된 중학교 1,2,3학년 아동 수는 총 608명이다. 학년별 빈도수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인 아동이 199명으로 32.79%이고 중학교 2학년인 아동이 108명으로 17.74%, 중학교 3학년이 178명으로 29.35%의 비중을 보인다. 성별로는 남자가 432명으로 70.99%, 여자가 176명으로 29.01%의 분포를 보여 남자가 여자의 두 배 이상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표 15-1-1〉 학년과 성별

(단위: 명, %)

구분	특성	빈도	비율
학년	중 1	199	32.79
	중 2	108	17.74
	중 3	178	29.35
	모름/무응답	122	20.12
	계	608	100.00
성별	남	432	70.99
	여	176	29.01
	계	608	100.00

## 2. 신체적 특성

아동의 신체적 특성으로 학년별 키와 몸무게 그리고 건강상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조사대상 전체 아동의 키 평균은 161.23cm이며 중학교 1학년은 158.12cm, 중학교 2학년은 161.60cm, 중학교 3학년은 167.68c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평균 키는 165.81cm로 일반가구 아동의 159.67cm보다 약 6cm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저소득가구 아동이 163.03cm로 일반가구 아동 156.46cm보다 크며, 중학교 2학년 역시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162.34cm, 일반가구 아동이 161.40cm로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저소득가구 아동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학교 3학년의 경우도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72.93cm로 일반가구 아동 165.17cm로 6cm가량 더 크게 나타났다.

몸무게의 경우 전체 아동의 평균은 54.31kg이며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50.27kg, 중학교 2학년 52.82kg, 중학교 3학년 59.96kg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평균 몸무게는 59.85kg으로 일반가구 아동의 평균 몸무게 52.42kg보다 약 6kg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은 저소득가구 아동이 49.85kg로 일반가구 아동 50.42kg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각각 54.35kg, 67.96kg으로 일반가구의 아동 52.40kg, 56.13kg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표 15-1-2〉 키와 몸무게

(단위: cm, kg)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키	중 1	158.12	34.96	163.03	68.73	156.46	7.29
	중 2	161.60	7.16	162.34	9.07	161.40	6.59
	중 3	167.68	8.38	172.93	8.75	165.17	6.94
	전체	161.23	9.13	165.81	11.45	159.67	7.60
몸무게	중 1	50.27	10.68	49.85	8.72	50.42	11.28
	중 2	52.82	10.03	54.35	11.84	52.40	9.50
	중 3	59.96	12.97	67.96	11.36	56.13	11.93
	전체	54.31	11.97	59.85	14.28	52.427	10.43

이어 건강상태에 대한 살펴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건강상태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47.96%로 절반 정도였으며 좋다고 응답한 경우도 38.37%에 달해 전체적으로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매우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61.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좋다고 응답한 경우는 28.17%이다. 보통이라 응답한 아동은 9.08%이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는 1.70%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매우 좋다고 답한 경우가 43.48%로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약 17% 정도 낮았으나 좋다고 답한 경우는 41.86%로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약 14% 높았다.

〈표 15-1-3〉 건강상태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매우 좋음	47.96	61.05	43.48
	좋음	38.37	28.17	41.86
	보통	10.75	9.08	11.32
	나쁨	2.78	1.70	3.15
	아주 나쁨	0.14	0.00	0.18
	계	100.00	100.00	100.00

## 제2절 학교생활

### 1. 학업성적

아동의 학업성적에 대해 지난 1년간의 전과목, 국어, 수학, 영어의 학업성적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우선 전과목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38.90%,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32.14%로 70%가 넘는 아동들이 보통 또는 보통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54.71%가 보통이라고 대답하고 보통이상이 13.14%, 아주 잘함이 1.67%인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33.49%, 보통이상 38.65%, 아주 잘함 7.09%인 것으로 보아 일반가구의 아동의 경우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전과목 성적이 보통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국어성적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28.37%, 보통이상 31.69%, 아주 잘함 21.03%로 80% 이상의 아동이 보통과 그 이상인 것으로 대다 하였다. 하지만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보통이하가 31.60%로 가장 많고 이어서 보통이상 29.62%, 보통 27.72%, 아주잘함으로 응답한 경우가 9.18%인데 비해 일반가구의 아동의 경우 보통이하는 12.64%인 반면 보통 28.59%, 보통이상 32.40%, 아주잘함으로 응답한 경우가 25.09%로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국어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년간의 수학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37.1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보통 20.29%, 보통이상 17.98%, 아주잘함이 13.90%이며 아주 못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0.58%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보통이하가 54.00%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3.69% 보통이상 11.63%, 아주 못함 11.23%, 아주 잘함이 9.45%를 차지하였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보통이하가 31.38%로 저소득가구보다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보통 22.55%, 보통이상 20.15%, 아주 못함, 10.36%,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5.43%로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영어성적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66%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보통이하 20.77%, 보통이상이 21.70%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경우가 39.64%로 가장 높으며 이어서 보통 24.83%, 아주 못함이 13.58%를 차지하며 아주 잘한다고 응답한 아동은 8.62%이다. 이와 반면에 일반가구의 아동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아동이 32.66%로 가장 높고 이어서 보통 이상 24.57%, 아주 잘함 14.69%로 응답하여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영어성적이 높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15-2-1〉 학업성적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전과목	아주 잘함	5.71	1.67	7.09
	보통 이상	32.14	13.14	38.65
	보통	38.90	54.71	33.49
	보통 이하	14.92	17.59	14.00
	아주 못함	5.74	3.83	6.40
	모름/무응답	2.59	9.05	0.38
	계	100.00	100.00	100.00
국어	아주 잘함	21.03	9.18	25.09
	보통 이상	31.69	29.62	32.40
	보통	28.37	27.72	28.59
	보통 이하	17.48	31.60	12.64
	아주 못함	1.35	1.88	1.16
	모름/무응답	0.09	0.00	0.12
	계	100.00	100.00	100.00
수학	아주 잘함	13.90	9.45	15.43
	보통 이상	17.98	11.63	20.15
	보통	20.29	13.69	22.55
	보통 이하	37.15	54.00	31.38
	아주 못함	10.58	11.23	10.36
	모름/무응답	0.09	0.00	0.12
	계	100.00	100.00	100.00
영어	아주 잘함	13.14	8.62	14.69
	보통 이상	21.70	13.33	24.57
	보통	30.66	24.83	32.66
	보통 이하	20.77	39.64	14.31
	아주 못함	13.64	13.58	13.66
	모름/무응답	0.09	0.00	0.12
	계	100.00	100.00	100.00

## 2. 학교생활

지난 1년간의 학교생활에 관하여 아동이 인식하고 있는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학교환경에 대한 질문은 하위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 이 중 문항 ㄱ, ㄴ, ㄷ는 역점수 처리)을 부여하여 총 27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학교생활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조사 결과 전체 아동의 평균점수는 20.23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0.18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0.25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 가구의 아동보다 학교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교유대감에 대한 질문은 총 6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 이 중 문항 ㉠, ㉡는 역점수 처리)을 부여하여 총18점 만점으로 처리하였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교유대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의 학교유대감 평점은 12.34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2.80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12.18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학교유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2-2〉 학교환경 및 학교유대감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학교환경	평균	20.23
	표준편차	3.17	2.91	3.26
학교유대감	평균	12.34	12.80	12.18
	표준편차	2.32	2.13	2.37

### 3. 전학 경험

아동에게 지난 1년간의 전학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아동의 3.17%만이 전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67%, 일반가구의 아동은 3.34%가 전학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전학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 전학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에게 전학 횟수에 대해 물어본 결과 83.34%가 1번의 전학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3회의 전학경험을 가진 경우는 3.29%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전학경험이 있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모두 단 1회의 전학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의 경우 3회에 걸쳐 전학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4.19%로 조사되었다.

〈표 15-2-3〉 전학경험

(단위: %,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경험여부	있음	3.17	2.67	3.34
	없음	96.83	97.33	96.66
	계	100.00	100.00	100.00
경험횟수	1회	83.34	100.00	78.77
	3회	3.29	0.00	4.19
	모름/무응답	13.37	0.00	17.04
	계	100.00	100.00	100.00

### 제3절 정서와 행동

#### 1. 아동의 정서

아동의 정서에 대해 자아존중감, 우울/불안, 주의집중, 위축, 비행, 공격성의 6가지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첫째, 자아존중감은 13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 이 중 문항 ㉠, ㉡, ㉢, ㉣, ㉤는 역점수 처리), 총 39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아동 전체의 평점은 26.01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7.01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5.66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질문은 14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2점(전혀 아니다:0점,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총28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정도가 심한 상태를 보여준다. 분석결과 전체의 평점은 4.11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3.33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4.37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아동의 우울/불안정도가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 아동의 주의집중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질문의 개수는 11개이며 각각 0~2점(전혀 아니다:0점,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총22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주의집중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의 주의집중도는 4.38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

의 아동이 각각 3.86점, 4.55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의 주의집중도가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아동의 위축을 살펴보는 질문은 9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0~2점(전혀 아니다:0점,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18점 만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정도가 심한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전체아동의 위축정도는 2.71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일반가구의 아동이 2.88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 2.20점보다 높아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위축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아동의 비행정도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는 13개의 하위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0~2점(전혀 아니다:0점,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총 26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정도가 심함을 보여준다. 조사결과 전체아동의 비행정도는 1.20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1.14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1.22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비행정도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공격성에 관한 질문은 19개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0~2점(전혀 아니다:0점, 그런 편이다:1점, 자주 그렇다:2점)의 총 3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한 것을 보여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3.70점의 공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3.44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3.79점으로 일반가구 아동의 공격성이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5-3-1〉 정서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26.01	5.73	27.01	5.62	25.66	5.73
우울/불안		4.11	4.69	3.33	4.56	4.37	4.71
주의집중		4.38	3.46	3.86	3.45	4.55	3.44
위축		2.71	2.80	2.20	2.52	2.88	2.87
비행		1.20	1.59	1.14	1.63	1.22	1.58
공격성		3.70	4.11	3.44	3.45	3.79	4.31



## 2. 아동의 비행행동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해 음주 및 흡연과 흡치기, 구타, 뺨음, 성인사이트 방문, 가출, 무단결석, 폭력씨클가입, 패싸움 등의 기타 비행행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아동의 음주 및 흡연에 관한 분석결과는 <표15-3-2>와 같다.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에 대해 지난 1년간 음주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89.35%가 음주경험이 없다고 답하였으며 10.65%가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은 15.45%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01%가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음주경험 비중이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에게 연평균 음주횟수를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2.06회라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63회, 일반가구의 아동은 2.31회로 응답하였다.

흡연경험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흡연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5.49%가 지난 1년간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43%, 일반가구의 아동은 6.88%가 흡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연평균 흡연횟수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흡연을 경험한 전체 아동이 평균적으로 연10.59회 흡연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3.91회, 일반가구의 아동은 11.07회의 흡연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15-3-2> 음주 및 흡연

(단위: %, 회)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음주	경험여부	있다	10.65	15.45	9.01
		없다	89.35	84.55	90.99
		계	100.00	100.00	100.00
	경험횟수	평균	2.06	1.63	2.31
표준편차		3.15	1.87	3.70	
흡연	경험여부	있다	5.49	1.43	6.88
		없다	94.51	98.57	93.12
		계	100.00	100.00	100.00
	경험횟수	평균	10.59	3.91	11.07
표준편차		50.79	4.02	52.60	

아래는 훔치기, 구타, 빼음, 성인사이트 방문, 가출, 무단결석, 폭력씨클가입, 패싸움 등의 8개 항목의 비행행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첫째, 아동에게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89.42%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39%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은 96.51%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87.00%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1.62%, 일반가구의 아동은 6.69%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지난 1년간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의 92.29%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5.53%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2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은 1.48%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89.45%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6.05%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3.51%가 2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3.26%가 구타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5.35%이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아동의 95.68%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3.31%의 아동이 1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94.64%, 일반가구의 96.04%의 아동이 돈이나 물건을 빼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저소득가구 아동의 4.71%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아동은 2.83%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어 지난 1년간 성인사이트 방문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의 88.21%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5.73%가 1번의 경험, 4.58%가 3번 이상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82.19%가 성인사이트에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5.26%의 아동이 1번의 방문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0.27%가 성인사이트방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1번 방문했다고 대답한 아동은 2.46%, 3번 이상 방문했다고 대답한 아동은 5.7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난 1년간 가출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의 97.31%

는 가출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45%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97.55%, 일반가구 아동의 97.23%가 가출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1번의 가출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각각 1.78%, 1.34%로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저소득가구 아동의 가출 비중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의 97.63%는 경험이 없다고 대답했으며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1.06%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아동은 95.22%가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것으로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2.55%로 나타났으나 일반가구의 아동은 98.45%가 무단결석 경험이 없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아동에게 지난 1년간 폭력씨클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의 97.02%가 가입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2.83%는 2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99.83%, 일반가구 아동의 96.07%가 폭력씨클 가입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 아동의 폭력씨클 가입경험이 저소득가구 아동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지난 1년간 패싸움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아동의 98.18%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37%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97.65%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1.59%는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의 경우 98.36%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1.30%가 1번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표 15-3-3〉 비행행동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훔치기	경험 없음	89.42	96.51	87.00
	1번	5.39	1.62	6.69
	2번	1.53	0.46	1.90
	3번 이상	3.65	1.41	4.42
	계	100.00	100.00	100.00
구타	경험 없음	92.29	89.45	93.26
	1번	5.53	6.05	5.35
	2번	1.48	3.51	0.79
	3번 이상	0.70	0.98	0.60
	계	100.00	100.00	100.00
돈이나 물건을 뺏음	경험 없음	95.68	94.64	96.04
	1번	3.31	4.71	2.83
	2번	0.61	0.14	0.77
	3번 이상	0.40	0.50	0.36
	계	100.00	100.00	100.00
성인사이트 방문	경험 없음	88.21	82.19	90.27
	1번	5.73	15.26	2.46
	2번	1.48	1.45	1.50
	3번 이상	4.58	1.10	5.77
	계	100.00	100.00	100.00
가출	경험 없음	97.31	97.55	97.23
	1번	1.45	1.78	1.34
	2번	0.33	0.18	0.38
	3번 이상	0.91	0.49	1.05
	계	100.00	100.00	100.00
무단결석	경험 없음	97.63	95.22	98.45
	1번	1.06	2.55	0.55
	2번	0.24	0.14	0.28
	3번 이상	1.07	2.08	0.72
	계	100.00	100.00	100.00
폭력씨클 가입	경험 없음	97.02	99.83	96.07
	1번	0.14	0.17	0.13
	2번	2.83	0.00	3.80
	3번 이상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패싸움	경험 없음	98.18	97.65	98.36
	1번	1.37	1.59	1.30
	2번	0.29	0.15	0.34
	3번 이상	0.16	0.61	0.00
	계	100.00	100.00	100.00

### 3. 피해경험

아동의 피해경험에 대해 지난 1년간 성추행 피해 경험과 학교 내에서의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성추행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첫 번째로 아동 본인이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지려고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98.38%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이 0.52%, 5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이 0.80%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96.32%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5번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가 2.47%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9.09%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여 저소득가구 아동의 성추행 피해경험이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 피해경험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이 싫은데도 옷을 벗기고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99.54%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 아동의 99.47%, 일반가구 아동의 99.57%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4〉 성추행 피해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을 만짐	경험 없음	98.38	96.32	99.09
	1번	0.52	0.58	0.50
	2번	0.08	0.32	0.00
	4번	0.21	0.31	0.18
	5번 이상	0.80	2.47	0.23
	계	100.00	100.00	100.00
다른 사람이 나의 옷을 벗기고 몸을 보려고 함	경험 없음	99.54	99.47	99.57
	1번	0.23	0.35	0.18
	2번	0.18	0.00	0.25
	3번	0.05	0.18	0.00
	계	100.00	100.00	100.00

학교내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총6개의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첫째, 다른 아이들이 놀리거나 조롱을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70.70%가 경험이 없다

고 대답하였으며 20.78%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경우 49.30%의 아동이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40.52%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78.02%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여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놀림이나 조롱을 경험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른 아이들이 고의로 따돌리거나 무시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체 아동의 89.26%가 경험이 없으며 1번의 경험이 있는 아동은 7.57%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1.19%가 경험이 없으며 1번의 경험이 있는 경우가 5.94%인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경험이 없는 아동이 88.59%, 1번의 경험이 있는 아동이 8.13%로 나타나 따돌림이나 왕따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중이 일반가구의 아동이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비방이나 헐뜯음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아동의 91.79%는 경험이 없으며 6.16%가 1번의 경험이 있고 1.60%가 2~3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93.57%는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3.59%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1.18%가 경험이 없으며 7.04%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교내에서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지 않으면 그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97.68%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9.06%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7.20%가 경험이 없으며 1.65%가 2~3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이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내에서 다른 아이들이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로는 전체 아동의 97.59%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65%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은 97.77%가 경험이 없으며 2.23%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대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7.52%가 경험이 없으며 1.44%가 1번의 돈을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서 다른 아이들이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아동의 93.31%는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4.98%로 나타났다. 소득 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3.24%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5.73%이다. 일반가구의 아동은 93.34%가 경험이 없으며 4.72%가 1번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여 소득집단별 피해경험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3-5〉 학교 내 피해경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놀림이나 조롱 당함	경험 없음	70.70	49.30	78.02
	1번	20.78	40.52	14.03
	2-3번	4.94	7.01	4.23
	4번 이상	3.58	3.17	3.72
	계	100.00	100.00	100.00
따돌림이나 왕따 당함	경험 없음	89.26	91.19	88.59
	1번	7.57	5.94	8.13
	2-3번	2.51	1.21	2.96
	4번 이상	0.66	1.66	0.32
	계	100.00	100.00	100.00
비방이나 헐뜯음 당함	경험 없음	91.79	93.57	91.18
	1번	6.16	3.59	7.04
	2-3번	1.60	1.74	1.55
	4번 이상	0.45	1.11	0.23
	계	100.00	100.00	100.00
협박이나 위협 당함	경험 없음	97.68	99.06	97.20
	1번	0.63	0.50	0.68
	2-3번	1.31	0.31	1.65
	4번 이상	0.38	0.13	0.47
	계	100.00	100.00	100.00
돈을 빼앗김	경험 없음	97.59	97.77	97.52
	1번	1.65	2.23	1.44
	2-3번	0.71	0.00	0.96
	4번 이상	0.05	0.00	0.07
	계	100.00	100.00	100.00
폭행 당함	경험 없음	93.31	93.24	93.34
	1번	4.98	5.73	4.72
	2-3번	0.76	0.73	0.77
	4번 이상	0.95	0.31	1.17
	계	100.00	100.00	100.00

## 제4절 부모와의 관계

### 1. 부모의 역할

아동에게 부모 또는 부모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역할에 대해 교육참여와 지도감독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우선 교육참여 정도에 대해서 대화, 학교방문, 학교행사참여, 숙제에 대한 관심 등의 4개의 하위문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각의 질문은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별로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의 총 12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평점은 4.78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00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5.04점으로 나타나 일반가구의 부모 또는 부모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교육참여 정도가 저소득가구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이나 부모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지도감독에 대해 방과 후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을 중심으로 4가지의 하위문항으로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별로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의 총 12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이 철저한 것을 나타낸다. 그 결과 전체아동의 부모의 지도감독 평점은 7.18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가 6.42점으로 일반가구의 7.44점보다 낮게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지도감독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5-4-1〉 부모의 교육참여 및 지도감독

(단위: 점)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교육참여	4.78	2.35	4.00	1.74	5.04	2.48
	지도감독	7.18	2.59	6.42	2.33	7.44	2.63



## 2. 부모의 학대와 방임

지난 1년간 아동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방임에 대해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 가지의 항목으로 질문하였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0~4점(전혀 없었다:0점, 1년에 1~2번:1점, 2~3개월에 1~2번:2점, 한달에 1~2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의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학대를 당한 것을 나타낸다. 조사결과 전체아동의 평점은 0.28점으로 나타나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0.11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0.34점으로 일반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정서적 학대는 관련된 3개의 하위항목으로 질문하였으며 각각 0~4점(전혀 없었다:0점, 1년에 1~2번:1점, 2~3개월에 1~2번:2점, 한달에 1~2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의 총12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전체아동의 점수는 0.91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0.78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0.95점으로 일반가구의 아동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방임에 대해서는 4개의 하위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각각 0~4점(전혀 없었다:0점, 1년에 1~2번:1점, 2~3개월에 1~2번:2점, 한달에 1~2번:3점, 일주일에 1~2번:4점)의 총16점으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빈번하게 방임을 경험한 것을 나타낸다. 분석결과 전체 아동의 평점은 0.32점으로 부모님들의 방임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0.31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0.32점으로 소득집단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5-4-2〉 부모의 학대와 방임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적 학대		0.28	0.69	0.11	0.44	0.34	0.74
정서적 학대		0.91	1.81	0.78	1.91	0.95	1.77
방임		0.32	1.15	0.31	1.08	0.32	1.18

## 제5절 친구관계

### 1. 친구들과의 접촉

아동의 친구들과의 접촉에 대해 친한 친구의 수와 친구에게 느끼는 애착정도 그리고 친구와의 접촉 빈도의 세 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친구의 수에 대해서는 아동들에게 학교친구, 동네친구 및 선후배를 포함한 친한 친구들이 몇 명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친구들은 15.2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친구 수는 18.08명, 일반가구 아동의 친구 수는 14.26명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친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친구들의 수가 1명 이상이라고 답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친구들과의 애착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관련된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0~4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1점, 보통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총16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친구들에게 느끼는 애착정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점수는 12.12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12.31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12.06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에 비해 친구들에게 느끼는 애착정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친구들의 수가 1명 이상이라고 답한 아동에게 친구들과의 접촉빈도를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82.72%가 친구들과 거의 매일 만난다고 대답하였으며 2~3일에 한번 만난다고 답한 경우가 9.96%, 일주일에 한번 만난다고 대답한 경우가 3.80%이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86.69%가 거의 매일 만난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어서 2~3일에 한번 만난다고 답한 경우가 7.66%, 일주일에 한번 본다고 답한 경우가 3.65%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 아동의 경우 거의 매일 만난다고 대답한 경우 81.36%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에 비해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5-1〉 친구들과의 접촉

(단위: 명, 점,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친구의 수	평균		15.24	18.08	14.26
	표준편차		14.01	11.94	14.53
친구애착	평균		12.12	12.31	12.06
	표준편차		2.76	2.50	2.84
접촉빈도	거의 매일		82.72	86.69	81.36
	2~3일에 한번 정도		9.96	7.66	10.75
	일주일에 한번 정도		3.80	3.65	3.85
	2~3주에 한번 정도		1.65	0.80	1.94
	한 달에 한번 정도		0.97	0.77	1.04
	몇 달에 한번 정도		0.91	0.43	1.07
	계		100.00	100.00	100.00

## 2.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

친한 친구가 1명이상 있다고 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친구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친구들이 본인에게 대하는 태도, 친구들의 학습태도 및 일탈행동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친구들이 아동 본인에게 대하는 태도에 대해 4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각각의 질문은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이 아동에게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첫째, 친구들이 본인이 외롭거나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평균점수는 2.19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2.29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2.15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어서 친구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전체 아동의 점수는 2.29점이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2.43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2.24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일반가구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친구들이 본인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점수는 2.30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2.42점, 일반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2.26점으로 저소득가구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에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은 2.48점의 점수를 보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65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42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5-5-2〉 친구들의 아동에 대한 태도

(단위: 점)

구분 \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외롭거나 힘들 때 함께 있어줌	2.19	0.60	2.29	0.70	2.15	0.55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줌	2.29	0.55	2.43	0.57	2.24	0.53
나를 좋아함	2.30	0.53	2.42	0.55	2.26	0.51
나와 사이좋게 지냄	2.48	0.55	2.65	0.53	2.42	0.55

다음으로는 친구들의 학습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친구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는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런 편이다:2점, 항상 그렇다:3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태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전체 아동의 점수는 2.12점이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45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2.01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5-5-3〉 친구들의 학습태도

(단위: 점)

특성 \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2.12	2.45	2.01
표준편차	0.65	0.65	0.61

친구들의 일탈행동에 대해서는 흡연/음주, 물건이나 돈을 훔친 경험, 폭력, 무단결석,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경험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친구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질문 역시 0~3점(전혀 그렇지 않다:0점, 거의 그렇지 않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항상 그렇다: 3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이 심각

한 것을 보여준다. 흡연/음주의 경우 전체 아동의 점수는 0.21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0.32점, 일반가구의 아동은 0.18점으로 나타나 저소득가구 아동의 친구들이 일반가구 아동의 친구들보다 음주/흡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두 번째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점수는 0.15점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0.08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0.17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세 번째, 친구들이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점수는 0.16점이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0.13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0.17점으로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일반가구의 아동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친구들의 무단결석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아동의 점수는 0.11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아동 모두 0.11점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돈을 뺏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아동의 점수는 0.16점이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이 0.12점으로 일반가구 아동의 0.17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15-5-4〉 친구들의 일탈행동

(단위: 점)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음주/흡연	0.21	0.54	0.32	0.71	0.18	0.46
	물건이나 돈을 훔침	0.15	0.41	0.08	0.32	0.17	0.44
	다른 사람을 구타함	0.16	0.45	0.13	0.42	0.17	0.46
	무단결석	0.11	0.37	0.11	0.38	0.11	0.36
	물건이나 돈을 뺏음	0.16	0.45	0.12	0.41	0.17	0.46

다음으로 친구들의 일탈행동에 대해 아동의 친구들 중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로 학교를 중단한 친구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94.55%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있다고 대답한 아동은 5.45%이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92.39%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7.61%가 있다고 대답하였

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5.29%가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4.71%가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아 저소득가구 아동이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중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의 수를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2.82명으로 대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01명, 일반가구의 아동은 2.15명으로 대답하였다.

〈표 15-5-5〉 학교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친구 유무		없음	94.55	92.39	95.29
		있음	5.45	7.61	4.71
		계	100.00	100.00	100.00
친구 수		평균	2.82	4.01	2.15
		표준편차	2.40	2.96	1.78

아래의 <표 15-5-6>는 아동에게 경찰서에 잡혀간 친구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전체 아동의 95.52%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4.48%가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한 결과 저소득가구 아동은 95.10%가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아동은 95.67%가 없다고 대답하여 소득집단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몇 명의 친구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3.18명의 친구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2.73명, 일반가구의 아동은 3.36명의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5-5-6〉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는 친구들

(단위: %, 명)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친구 유무		없음	95.52	95.10	95.67
		있음	4.48	4.90	4.33
		계	100.00	100.00	100.00
친구 수		평균	3.18	2.73	3.36
		표준편차	4.25	2.80	4.76

## 제6절 생활 및 서비스 이용

### 1. 아동의 방과 후 생활

아동의 방과 후의 생활을 살펴보기 위해 평일 방과 후에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지 질문하였으며 이어서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일과 주말시간에 주로 하는 일을 1순위, 2순위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우선 아동이 방과 후에 귀가하면 집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의 <표 15-6-1>과 같다. 전체 응답 아동의 57.54%가 부모나 조부모, 친척, 19세 이상의 형제, 자매 등의 보호자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24.60%가 18세 이하의 형제, 자매만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무도 없다고 대답한 아동도 17.77%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77.05%가 보호자가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형제, 자매만 있는 경우는 13.57%, 아무도 없는 경우는 9.38%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반가구의 아동은 50.87%가 보호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형제, 자매만 있는 경우가 28.38%, 아무도 없는 경우가 20.64%라고 보고하였다.

<표 15-6-1> 방과 후 보호자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무도 없음		17.77	9.38	20.64
형제, 자매만 있음(18세 이하의 형제자매)		24.60	13.57	28.38
보호자 있음(부모, 할머니, 친척 등)		57.54	77.05	50.87
기타		0.09	0.00	0.12
계		100.00	100.00	100.00

이어서 방과 후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거나 18세 이하의 형제, 자매만 있다고 응답한 아동들에게 방과 후 보호자 없이 몇 시간 동안 지내는지 추가로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아동의 57.62%가 1시간이상 ~ 3시간미만을 보호자 없이 지낸다고 조사되었으며 3시간이상 ~ 5시간미만을 지낸다고 응답한 아동이 21.06%, 1시간미

만을 지낸다고 응답한 아동은 13.56%를 차지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3시간이상~5시간미만이 4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1시간미만이 25.28%, 1시간이상~3시간미만이 23.07%로 나타났다.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1시간이상~3시간미만이 6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5-6-2〉 방과 후 보호자 없이 자내는 시간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시간 미만		13.56	25.28	11.68
1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57.62	23.07	63.16
3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21.06	41.29	17.82
5시간 이상		7.11	9.67	6.70
모름/무응답		0.65	0.69	0.64
계		100.00	100.00	100.00

주 : 방과 후에 집에들어가면 아무도 없거나 형제자매만 있다고 대답한 아동에 한해 질문한 결과임.

아동이 평일 방과 후에 주로 하는 일을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체 아동의 39.83%가 학습이나 예체능 특기를 배우기 위해 학원에 다니며 32.15%가 집안에서의 오락시간을 갖는다고 대답하였으며 집안에서 공부를 한다고 응답한 아동이 11.18%, 집안에서 신변정리 등의 시간을 갖는다는 아동이 9.36%로 보고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은 절반이상인 59.24%가 집안에서 오락시간으로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17.58%의 아동이 학습, 예체능 특기를 배우기 위한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일반가구의 아동은 약 절반정도인 47.45%의 아동이 학습, 예체능 특기를 배우기 위한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하였으며 22.87%가 집안에서 오락시간으로 보낸다고 대답하여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일반가구 아동의 평일 방과 후 시간의 활용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6-3〉 평일 방과 후 하는 일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집안에서의 신변정리 및 휴식		9.36	5.96	10.52
	집안에서의 오락		32.15	59.24	22.87
	집안에서의 학업		11.18	8.11	12.23
	학원, 예체능 특기 배우기		39.83	17.58	47.45
	집밖에서의 오락		4.33	4.32	4.34
	지역복지관, 수련관 및 기타기관 활동		0.14	0.18	0.13
	학교 내 활동		2.92	4.60	2.34
	봉사, 종교활동		0.09	0.00	0.12
	아르바이트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계			100.00	100.00	100.00
2순위	집안에서의 신변정리 및 휴식		13.84	16.74	12.85
	집안에서의 오락		46.34	32.87	50.93
	집안에서의 학업		13.90	8.34	15.79
	학원, 예체능 특기 배우기		16.33	33.30	10.54
	집밖에서의 오락		7.27	6.50	7.53
	지역복지관, 수련관 및 기타기관 활동		0.00	0.00	0.00
	학교 내 활동		2.05	2.08	2.04
	봉사, 종교활동		0.00	0.00	0.00
	아르바이트		0.00	0.00	0.00
	기타		0.28	0.17	0.32
계			100.00	100.00	100.00

다음은 주말시간에 주로 하는 일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약 절반정도인 전체 아동의 46.35%가 집안에서의 오락으로 주말시간을 주로 보낸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19.38%가 집안에서의 신변정리 및 휴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1%가 집 밖에서의 오락으로 시간을 보내고 학습, 예체능 특기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에서 주말시간을 주로 보낸다는 아동은 9.70%으로 보고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나 일반가구의 아동 모두 약 46%가 집안에서의 오락으로 주말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어서 저소득가구의 23.77%가 주말시간을 학습, 예체능 특기를 배우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일반가구 아동의 22.98%는 집안

에서의 휴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표 15-6-4〉 주말시간에 주로 하는 일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1순위	집안에서의 신변정리 및 휴식	19.38	8.83	22.98
	집안에서의 오락	46.35	46.18	46.40
	집안에서의 학업	7.13	4.45	8.05
	학원, 예체능 특기 배우기	9.70	23.77	4.88
	집밖에서의 오락	12.81	14.20	12.33
	지역복지관, 수련관 및 기타기관 활동	0.00	0.00	0.00
	학교 내 활동	0.16	0.24	0.13
	봉사, 종교활동	4.28	2.02	5.05
	아르바이트	0.00	0.00	0.00
	기타	0.20	0.30	0.17
계		100.00	100.00	100.00
2순위	집안에서의 신변정리 및 휴식	21.27	13.75	23.84
	집안에서의 오락	38.29	20.44	44.38
	집안에서의 학업	12.06	8.37	13.32
	학원, 예체능 특기 배우기	3.91	3.39	4.09
	집밖에서의 오락	22.04	51.80	11.88
	지역복지관, 수련관 및 기타기관 활동	0.29	0.26	0.30
	학교 내 활동	0.00	0.00	0.00
	봉사, 종교활동	1.65	1.53	1.69
	아르바이트	0.00	0.00	0.00
	기타	0.48	0.46	0.49
계		100.00	100.00	100.00

## 2.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

아동의 하루 평균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시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하루에 평균 몇 시간씩 TV를 시청하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1시간이하라고 대답한 아동이 34.08%였으며 이어서 2시간이하가 29.47%, 3시간이하가 21.20%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은 2시간이하가 43.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다음으로 3시간이하 21.93%, 1시간이하 19.56%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가구의 아동은 1시간이하가 3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이어서 2시간이하 24.65%, 3시간이하 20.95%로 나타나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TV시청 시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하루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이 몇 시간인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아동의 42.98%가 1시간이하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시간이하가 34.64%, 3시간이하가 12.28%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1시간이하가 46.88%, 2시간이하 27.64%, 3시간이하 15.46%로 응답하였으며 일반가구의 아동은 1시간이하 41.64%, 2시간이하 37.03%, 3시간이하 11.20%로 보고하였다.

〈표 15-6-5〉 TV 시청 및 인터넷 사용시간

(단위: %)

구분	특성	전체	저소득	일반
TV 시청	전혀 보지 않음	2.91	2.24	3.13
	1시간 이하	34.08	19.56	39.05
	2시간 이하	29.47	43.56	24.65
	3시간 이하	21.20	21.93	20.95
	4시간 이하	7.91	7.43	8.08
	4시간 초과	4.43	5.27	4.14
	계	100.00	100.00	100.00
인터넷 사용	전혀 하지 않음	4.09	3.73	4.22
	1시간 이하	42.98	46.88	41.64
	2시간 이하	34.64	27.64	37.03
	3시간 이하	12.28	15.46	11.20
	4시간 이하	4.01	1.72	4.79
	4시간 초과	2.00	4.57	1.11
	계	100.00	100.00	100.00

### 3. 의논 상대

아동에게 평소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와 의논하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44.44%가 친구, 44.04%가 부모님에게 의논한다고 대답하여 아동의 의논상대는 주로 친구와 부모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의논상대의 1순위가 친구로 69.37%, 2순위가 부모님으로 18.79%로 나타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1순위가 부모님으로 52.68%, 2순위 친구는 35.91%로 응답하여 아동의 의논상대가 소득집단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15-6-6〉 의논 상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음		6.82	7.10	6.72
부모님		44.04	18.79	52.68
형제자매		3.35	2.74	3.57
친구		44.44	69.37	35.91
학교선생님		0.67	1.25	0.47
함께 사는 어른(할머니, 삼촌 등)		0.08	0.33	0.00
복지관 선생님		0.00	0.00	0.00
기타		0.22	0.42	0.15
모름/무응답		0.37	0.00	0.50
계		100.00	100.00	100.00

#### 4. 굶주림 경험 여부

아동에게 지난 1주일동안 먹을 것이나 돈이 없어서 밥을 굶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전체 아동의 97.70%가 1주일간 굶어본 경험이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1.36%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99.04%가 굶은 경험이 없다고 대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7.24%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1.56%의 아동이 굶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7〉 굶주림 경험 여부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없음		97.70	99.04	97.24
있음		1.36	0.78	1.56
모름/무응답		0.94	0.17	1.20
계		100.00	100.00	100.00

## 5. 참여활동 및 서비스이용 경험

아동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과 서비스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고민 및 문제상담, 학습지도,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캠프 및 수련활동, 견학 및 체험활동, 관계 향상프로그램, 취미 및 특기활동, 체력단련활동, 자원봉사활동, 타지역 및 국가와의 교류활동 등의 10개의 항목으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의 참여 또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질문하였다. 추가로 참여 또는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 한해 년 또는 월 이용횟수를 조사하였다.

첫째, 아동에게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개인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8.52%가 이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6.81%가 이용경험이 있는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9.1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의 아동의 이용률이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고민이나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을 상대로 연평균 이용횟수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전체아동은 4.13회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9.20회, 일반가구의 아동이 2.84회로 응답하여 저소득가구의 이용횟수가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둘째, 아동에게 학원을 제외한 사회복지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학습지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14.39%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일반가구의 아동의 14.47%, 14.37%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소득집단에 따른 이용여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월평균 이용횟수를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이용횟수는 11.23회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하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12.01회로 일반가구 아동의 이용횟수 10.96회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세 번째로 아동에게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2.05%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19%, 일반가구의 아동은 2.00%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소득가구의 이용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연 평균 이용횟수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연평균 이용횟수는 6.26회인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16.82회로 보고되어 일반가구의 아동의 이용횟수 2.30회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에게 1박이상의 캠프 및 수련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53.52%가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절반 이상의 아동이 1박이상의 캠프 및 수련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3.03%, 일반가구의 아동은 57.11%로 일반가구의 아동의 참여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연평균 이용횟수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이 연1.77회 참여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연1.51회, 일반가구의 아동이 연1.84회로 보고하였다.

이어서 다섯 번째로 아동에게 견학 및 문화체험 및 방문, 예술 관련 감상 등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38.14%가 견학 및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7.71%, 일반가구 아동 41.71%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일반가구 아동의 견학 및 체험활동이 경험율이 저소득가구 아동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견학 및 체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연평균 참여횟수를 물어본 결과 전체 아동은 2.74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일반가구의 아동이 각각 2.37회, 2.83회로 응답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아동에게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7.10%가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22%, 일반가구의 아동은 8.09%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연평균 프로그램의 참여횟수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연평균 이용횟수는 5.16회,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5.96회, 일반가구의 아동은 5.01회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로 아동에게 비디오/사진촬영, 가요/댄스활동, 악기연주, 만화창작, 프라

모델제작, 비독교습 등의 취미특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20.05%가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0.39%, 일반가구의 아동은 19.94%가 취미특기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중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월 평균 참여횟수를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월5.28회의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5.98회, 일반가구의 아동은 5.04회라고 응답하였다.

여덟 번째로 아동에게 축구, 야구, 농구, 태권도, 등의 체력단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28.74%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43.48%, 일반가구의 아동은 23.70%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소득가구 아동의 체력단련 활동 참여율이 일반가구 아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체력단련 활동의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월평균 참여횟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아동의 참여횟수는 월6.17회로 보고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월2.35회, 일반가구의 아동은 월8.57회로 나타나 일반가구 아동의 참여횟수가 저소득가구의 아동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이나 환경보호관련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22.62%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19.10%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23.83%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월평균 참여횟수를 질문한 결과전체 아동의 경우 월2.34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월1.87회, 일반가구의 아동은 월2.47회 참여했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 아동의 참여횟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국가에서 다른 청소년들과 사귀면서 체험을 공유한 적이 있는지 혹은 외국에 나간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4.9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15%, 일반가구의 아동은 5.92%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일반가구 아동의 교류활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연

평균 참여횟수를 추가로 질문한 결과 전체 아동의 경우 년2.55회의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년4.66회, 일반가구의 아동이 년2.29회라고 응답하였다.

〈표 15-6-8〉 참여활동 및 서비스 이용경험

(단위: %, 회)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여부	평균	표준 편차	여부	평균	표준 편차	여부	평균	표준 편차
고민 및 문제 상담		8.52	4.13	8.09	6.81	9.20	16.98	9.10	2.84	2.35
학습지도		14.39	11.23	8.20	14.47	12.01	8.48	14.37	10.96	8.15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2.05	6.26	13.95	2.19	16.82	26.16	2.00	2.30	2.88
1박이상의 캠프 및 수련활동		53.52	1.77	1.45	43.03	1.51	0.78	57.11	1.84	1.57
건강 및 체험활동		38.14	2.74	3.97	27.71	2.37	3.35	41.71	2.83	4.11
관계향상 프로그램		7.10	5.16	9.78	4.22	5.96	9.63	8.09	5.01	9.93
취미 특기 활동		20.05	5.28	6.77	20.39	5.98	7.96	19.94	5.04	6.33
체력단련 활동		28.74	6.17	7.63	43.48	2.35	3.71	23.70	8.57	8.45
자원봉사 활동		22.62	2.34	2.86	19.10	1.87	1.19	23.83	2.47	3.17
타지역 및 국가와의 교류활동		4.96	2.55	7.63	2.15	4.66	4.97	5.92	2.29	7.93

주: 여부는 전체 중 활동에 참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비중이며 횟수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의 평균 이용횟수임. 이 중 학습지도, 취미특기활동, 체력단련활동, 자원봉사 활동은 월평균 횟수이며 나머지는 연평균 횟수임.

## 6. 아르바이트 경험

다음으로 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경험한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기간, 시간에 대해 추가로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7.7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득집단별로 구분해보면 저소득가구의 아동은 24.61%, 일반가구의 아동은 1.95%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저소득가구 아동의 아르바이트 경험율이 일반가구 아동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6-9〉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있음	7.73	24.61	1.95
	없음	92.23	75.25	98.05
	모름/무응답	0.04	0.14	0.00
	계	100.00	100.00	100.00

위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아동의 75.31%가 PC방, 당구장, 만화방의 카운터로 일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단지 돌리기 18.31%,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이 3.39%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PC방, 당구장, 만화방 카운터로 일한 아동이 92.78%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전단지 돌리기가 80.28%,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카운터/서빙/배달 13.18%로 소득집단별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가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6-10〉 아르바이트 종류

(단위: %)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PC방,당구장,만화방카운터/서빙	75.31	92.78	0.00
	전단지 돌리기	18.31	3.94	80.28
	패스트푸드점,음식점카운터/서빙/배달	3.39	1.12	13.18
	기타	2.98	2.16	6.54
	계	100.00	100.00	100.00

이어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아동에게 아르바이트 기간 및 시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체 아동의 연간 아르바이트 일수는 3.94일, 주간 아르바이트 일수는 2.77일,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은 2.59시간으로 보고되었다. 소득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저소득가구 아동의 경우 연간 아르바이트 일수는 3.24일, 주간 일수는 2.98일,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은 2.27시간인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연간 일수 6.97일, 주간 일수 1.65일, 하루 아르바이트 시간은 3.93시간으로 저소득 가구의 이동과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표 15-6-11〉 아르바이트 기간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연간 일수		3.94	5.73	3.24	2.95	6.97	11.76
주간 일수		2.77	0.79	2.98	0.46	1.65	1.23
일일 시간		2.59	1.79	2.27	1.54	3.93	2.25

## 제7절 진로

### 1. 희망진로

아동의 진로에 대해서는 희망진로와 진로성숙도를 조사하였다. 희망진로에 대해 서는 자신이 장래에 가지고 싶은 직업을 원하는 순서대로 2가지로 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조사 당시 구체적인 직업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 개정 기준에 의거하여 직업을 분류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아동의 3/4이상인 75.14%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직업을 갖기를 원했으며 이어서 서비스 종사자 9.79%, 사무종사자 5.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3.61% 순으로 응답하였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아동 모두 70%이상인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를 희망 직업으로 응답하여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희망 직업 2순위의 경우 역시 1순위와 동일하게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희망하는 아동이 64.15%로 가장 많으며 관리 14.58%, 서비스종사자 9.37% 순으로 조사되었다.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경우 2순위의 희망 직업으로 80.39%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응답한 반면 일반가구의 아동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8.50%, 관리자 19.62%, 서비스 종사자 10.23% 순으로 응답하여 저소득가구의 아동과 달리 희망 직업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사 결과 전체 아동의 평균 점수는 45.06점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집단별로는 저소득가구의 아동이 46.29점, 일반가구의 아동이 44.64점으로 저소득가구의 아동의 진로성숙도가 일반가구의 아동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15-7-2〉 진로성숙도

(단위: 점)

특성	구분	전체	저소득	일반
	평균	45.06	46.29	44.64
	표준편차	8.13	8.34	8.03

## 참고 문헌

- 김영원·류제복·박진우·홍기학, 『표본조사의 이해와 활용』, 자유아카데미, 2000.
- 김종호, 『표본조사법』, 자유아카데미, 1991.
- 노대명 외,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노동부, 『‘08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분석』, 2008
- 박홍래, 『통계조사론』, 영지문화사, 1993.
- 백화종 외, 『빈곤 및 공공부조 패널 데이터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_\_\_\_\_, 『차상위·빈곤패널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보건복지부,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각년도
- \_\_\_\_\_, 『2008년도 자활사업안내』, 2008.
- 이봉주 외, 『한국복지패널조사 2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6.
- 이용하, 『국민연금 패널데이터 구축방안 연구』, 국민연금관리공단, 2003.
- 이현주 외, 『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 한국통계학회 조사통계연구회, 『무응답 오차』, 자유아카데미, 2000.
- 홍종선 외, 『설문조사자료의 통계분석』, 자유아카데미, 2007.
- Biemer, P. P., Lyberg, L. E.,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John Wiley and Sons, 2003.
- Brewer, K., Combined Survey Sampling Inference, Arnold, 2002.

Chambers, P. L, Skinner, C. J., Analysis Of Survey Data, London, John Wiley & Sons, 2003.

Cochran. W. G., Sampling Techniques, John & Wiley Sons, Inc., 1977.

Groves, R. M., et al., Nonsampling Error in Surveys, John Wiley & Sons, Inc., 1992.

Groves, R. M., et al., Survey Nonresponse, John Wiley and Sons, 2002.

Kasprzyk, D., et al., Panel surveys, John Wiley & Sons, Inc., 1989.

Lohr, S.L., Sampling: Design and Analysis, Duxbury Press, 1999.

SAS/STAT User's Guide, Version 8, SAS Publishing.

Scheaffer, R.L., Mendenhall, W. & Ott, R.L., Elementary Survey Sampling, 6th Ed., Duxbury Press, 2004.

Thompson, S.K., Sampling 2nd Ed., John & Wiley Inc., 2002.

Tourangean, R., Survey Methodology, John Wiley and Sons, 2004.

<http://psidonline.isr.unich.edu> (미국 PSID)

[http://www.kli.re.kr/30\\_labp/01\\_labor\\_p/main.asp](http://www.kli.re.kr/30_labp/01_labor_p/main.asp)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

<http://www.koweps.re.kr>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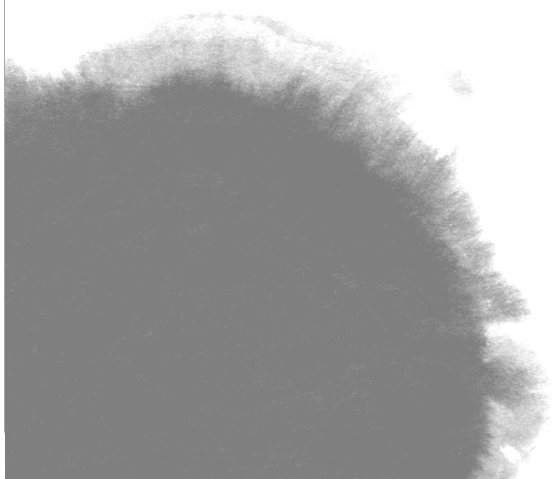
<http://www.melbourneinstitute.com/hilda> (호주 HILDA)

<http://www.sipp.census.gov/sipp/> (미국 SIPP)

<http://www.statcan.ca/english/survey/household/dynamic/income.htm>(캐나다 통계청: SLID)

<http://www.statistics.gov.uk> (영국 통계청)

부 록







# 부록

- [부록 1]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 405
- [부록 2]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4차 신규가구용(유형2) / 447
- [부록 3]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 489
- [부록 4]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4차 신규가구원용(유형4) / 506
- [부록 5]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 527



# 부록 1



승인번호  
제 33109 호



##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용(유형1)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상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61, 8358, 8273, 8352, 830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인포시스템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1차 가구: 01 -2차 신규가구: 02 -3차 신규가구: 03		-1차 가구: 01 -첫 번째 분리가구: 01 -두 번째 분리가구: 02 -세 번째 분리가구: 03		
*인포시스템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스템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인포시스템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 _____ )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 미완사유코드 ⑥ 비해당(완료) ⑦ 낮은 평가 ⑧ 장기출타 ⑨ 부재중(원인미파악) ⑩ 일부문항 미완 ⑪ 조사거부 ⑫ 이사(주소추적불가) ⑬ 사망으로 인한 가구소실 ⑭ 기타 추적불가사유 ⑮ 기타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I. 가구일반사항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일반사항은 [인포시트]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가구원 변동이 없는 경우 반드시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옮겨 주셔야 합니다. 단, 가구주가 바뀐 경우 바뀐 가구주 를 가구원번호 1번에 기입.

**문1) 귀택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2008년 1년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진입 자주	개인 패널ID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인포시트상의 개인패 널ID를 그대로 이기하 고, 4차 진입가구원의 경우 새로운 개인패널 ID를 부여	가정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① 남 ② 여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生年)		생월 (生月)	문5-1)	문5-2)	
4차 가구진입 가구원04  그 외는 인포시트상 의 숫자를 그대로이기			1	0	1	0					
			2								
			3								
			4								
			5								
			6								
			7								
			8								
			9								

###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  |   |
|--|---|
| <p><b>010.</b> 가구주</p> <p><b>001.</b> 가구주의 아버지<br/><b>002.</b> 가구주의 어머니</p> <p><b>005.</b> 가구주의 조부<br/><b>006.</b> 가구주의 조모</p> <p><b>011.</b> 가구주의 첫째 자녀<br/><b>012.</b> 가구주의 둘째 자녀<br/><b>013.</b> 가구주의 셋째 자녀<br/>(넷째 = 14, 다섯째 = 15, ...)</p> <p><b>031.</b> 가구주의 형제/자매<br/>(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p> <p><b>051.</b>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br/>(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p> <p><b>111.</b>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br/><b>112.</b>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br/>(셋째 = 113, 넷째 = 114, ...)</p> <p><b>121.</b>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br/><b>122.</b>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br/>(셋째 = 123, 넷째 = 134, ...)</p> <p><b>131.</b>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br/><b>132.</b>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br/>(셋째 = 133, 넷째 = 134, ...)</p> <p><b>997.</b>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br/><b>998.</b>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p> | <p><b>020.</b> 가구주의 배우자</p> <p><b>003.</b>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br/><b>004.</b>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p> <p><b>007.</b>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br/><b>008.</b>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p> <p><b>021.</b>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b>022.</b>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b>023.</b>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br/>(넷째 = 24, 다섯째 = 25, ...)</p> <p><b>041.</b>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br/>(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p> <p><b>061.</b>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br/>(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p> <p><b>211.</b>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b>212.</b>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셋째 = 213, 넷째 = 214, ...)</p> <p><b>221.</b>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b>222.</b>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셋째 = 223, 넷째 = 224, ...)</p> <p><b>231.</b>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b>232.</b>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셋째 = 233, 넷째 = 234, ...)</p>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②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신경장애 ③ 시각장애 ④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⑤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⑥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⑦ 인면장애 (지적장애) ⑧ 장루·요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⑧ 간질장애 ⑩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 중복장애의 경우에는 중복장애가 복 자카드에 표시되어 합산되어 있는 경 우 이를 그대로 기 입합니다.	① 비해당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남18세 이상 여16세 이상, 미혼모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밀려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문12)	의료급여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의료급여1종(가구) ② 의료급여2종(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개인)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부자: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단,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한다.)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세대, 107개 회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 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중항쟁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세대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가구원중 일부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의료특례, 18세미만 입양아동, 최상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1, 2 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중 일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08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문2) 2008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문4)
		2008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2008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2008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⑩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형/교정 ⑦ 기타	⑩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외래진료횟수는 범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향이 있다면 2008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⑥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08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08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08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1 없음 →0	① 비해당 ②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위염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5대 영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병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 감기와 같이 계절성 질환의 경우는 '㉞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 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2>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㉞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2>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 **민간의료보험 적용상품**(암보험, C(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 **C(Critical Illness)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보형을 말함.
- \*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형을 말함(직장단체가입이 많음).
-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임(위, 간, 폐, 기관지등)	⑥ 폐결핵, 결핵	⑬ 고지혈증	㉞ 치아우식증(충치)
② 관절염, 요통, 저골통, 디스크	⑦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⑭ 치질(치핵)	㉟ 만성치주질환(충치, 잇몸병)
③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	⑧ 전식	⑮ 만성부비동염(축농증)	㊱ 기타질환(급성질환 등)
④ 만성간염, 간경변	⑨ 백내장, 녹내장	⑯ 기관지확장증	㊲ 희귀난치성 질환
⑤ 당뇨병	⑩ 만성중이염	⑰ 알레르기성 비염	㊳ 저혈압
⑥ 갑상선 질환	⑪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⑱ 턱관절질환	㊴ 없음
⑦ 고혈압	⑫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⑳ 아토피성 피부염	
⑧ 중풍, 뇌혈관질환	⑬ 골다공증	㉑ 요실금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	⑭ 빈혈	㉒ 우울증	

###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장애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2쪽의 가구원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만4세 이하 → [IV.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④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 (집안일도 불가능)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문2)에 응답한 모든 응답자는 문3) 주된경제활동참여상태는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문11) 비경제활동사유는 '① 근로무능력'으로 응답함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1				
2				
3				
4				
5				
6				
7				
8				
9				

〈 용어예시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임금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2.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
실업자	3.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선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	
	4. 자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비경제활동인구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함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공익근로요원 등 점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유직 지도 취업자로 파악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농업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를 택해서 응답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를 순서 대 로 기재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 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b>문3)로 갈 것</b>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b>문7-1)로 갈 것</b>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독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 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 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 시용-종속관계가 긴밀함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사실상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 성립.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지만, 시용-종속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일용대기, 독립도급, 채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 렉서비스노동자, 방문학습지도사,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화장품외관원, 보험판매원, 카드모집인,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구성작가, 레미콘·화물·덤프·학원차량 등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전하는 지입차주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됨
- ②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예. 6개월, 1년, 2년, 3년 등)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삼정(축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 [지침서] <부록3> 산업분류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십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직종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지침서] <부록4>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십시오.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학업 ④ 가사 ⑤ 양육 ⑥ 간병 ⑦ 구직활동포기 ⑧ 근로의사 없음 ⑨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재수생은 ③ 학업 선택 ※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직업명	직업코드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종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단,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로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 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하청업체의 경우는 원청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하청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며, 명확하게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아닌 경우 주인(고용주)을 포함하되,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①'로 간주한다.  
 •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 1~4명'로 응답한다.

②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문3) 가입종별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 쪽 의 가구원 번호 를 순서대 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9)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아래 [문1] 공적연금 가 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지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 음 →문5)로 갈 것  * 12월 31일 기준으 로 납부기한을 짚 박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 납부하고 있 음으로 응답.	① 납부에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에외자는 국 민연금가입자가 지만 실직, 사업 중단, 군입대, 학업, 휴직(출산, 육아) 등의 이유 로 보험료를 납 부하지 않는 사 람임.
1						
2						
3						
4						
5						
6						
7						
8						
9						

**문 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해당되는 항목에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  
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가  
입으로 봄).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  
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데, 미가입인 경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신고서  
받지 않은 경우나 신고서를 받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침서] 참조)
- ①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이상 등) 중 ① 연금수급④ 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에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업종, 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의 사유	문6-1) 납부예의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08년 1년간 납부예외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문9)로 같게 * 2008년 1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을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걱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④ 모름 ⑤ 기타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12월 31일 이전에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2008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까? → 문9)로 같게 * 2008년 1년 기준임. * 2008년 1년간 미납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1			개월		개월	
2			개월		개월	
3			개월		개월	
4			개월		개월	
5			개월		개월	
6			개월		개월	
7			개월		개월	
8			개월		개월	
9			개월		개월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응답하며,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는 별도로 기입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 비경제활동중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① 비해당',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므로 따라 '① 가입' 또는 '② 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기록합니다. * 비경제활동중인구는 '① 비해당'임.	귀하는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① 비해당(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설문함 * 퇴직금중장장산등으로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제도임. *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1					
2					
3					
4					
5					
6					
7					
8					
9					



문 2) 귀댁에서는 2008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08년 1년 중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08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보험료 합계  만원  
 백    십    원







문 10)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1)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빨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2) 2008년 1년간 귀댁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경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영구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공공(국민)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2008년 이전부터 임주하여 2008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 ㉤의 경우는 2008년 당해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 VII. 생활비

〈 유의사항 〉		
※ 생활비 :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기입합니다. 따라서 <b>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b>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료, 난방용품 등)도 <b>현금으로 환산하여</b> 해당 비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할부 구매의 경우 <b>구입시점기준(2008년 구입)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입합니다.</b> 예) 2008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는 금액(100만원) 기입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할부로 구입한 후 2008년에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b>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b>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 ※ 자가소비(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혹은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1-2) 의 식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외식비는? ※ 직장인의 중식비(우료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의 무료식사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2)	주거비(주택구입비용 제외)	문 2-1) 월세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월세(사글세 포함)는?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기입 ※ 전세, 자기인 경우 '0' (단, 자기이나 지대를 내는 경우 월평균 지대액을 기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기입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2-2) 주거관리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주거 관리비 및 수선비는? ※ 주택관리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전화초비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3)	광 열수도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광열수도비는?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4)	가구사용품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조리기기, 화장지, 전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침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파출부, 청소비 등), 가져가 값, 정수기 대여료 등 ※ 보육료(메이비스터, 놀이방) 포함(단, 유치원은 제외)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5)	피복신발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피복신발비는? ※ 의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모자 등 구입비 및 수선비, 세탁료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6)	보건의료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보건의료비는?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료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기입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교육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공교육비는? ※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문방구비, 보충수업비, 야외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7-2) 사교육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사교육비는?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8)	교양오락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교양·오락비는?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유선방송, 피아노, 장난감,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방, 노래방, 운동강습료,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VCD) 대여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TV수신료 등 월평균 <input type="text"/> 원

문 9)	교 통 통 신 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교통·통신비는?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대대운전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0)	기 타 소 비 지 출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담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목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제비용, 친목회비, 종교관련(שמאל 등) 비용, <u>보장성보험료</u> (자축성보험 제외), <u>관상상비</u> ,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1)	사 이 적 전 비 동 구 가 원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장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1-2) 타	기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2)	세 금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김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연간 총납세액을 12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소득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3)	사 회 보 장 부 담 금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전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u>사보험료(임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u> ※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4)	총 생 활 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지출하신 총 생활비는? ※ <u>총생활비 = 1~13의 합계</u> ※ 저금, 자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말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 15)	사 회 복 지 서 비 스 용 비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장기요양과 배우자 이용에 따른 월평균 비용은? ※ 본인 가구가 부담한 금액만 기입. 동 비용은 앞의 생활비에도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실이나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액 ※ 배우자 비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시간명 방문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비만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 기타 배우자 서비스 등의 <u>배우자용</u> 이용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중목(예, 노인 이면서 장애인인 것은 제공 사업을 중심으로 기입(예,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이면 노인에 기입)	장기요양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노인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장애인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아동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 없음은 반드시 '0' 표시.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 VIII. 소득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활동: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3.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제외)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무급가족종사자·가사 또는 육아·학생·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4에서 소득기입).
- ※ 개월수는 2008년 동안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07)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현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된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임시·일용근로자 :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제외)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경 영 주 :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판매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2008. 12. 31. 시점에 10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된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상용근로자: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연간 급여 총액**(원천징수전 총급여)은 얼마였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용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li> <li>※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li> <li>※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li> <li>※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이하 동일함).</li> </ul> <p>→ 상용근로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문 3) 임시·일용근로자

[보조기입란 3-a]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1회당(일당)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2008년 1년 동안 전체 일한 횟(일)수를 12개월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08년 1월 1~6일까지는 월 5회, 7~12월까지는 월 15회 일하였다면, 월 10회(30+90회)/12개월) 기재</li> <li>※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li> <li>※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li> </ul>	1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만	천원				

3-1.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1년 동안 벌어들인 <b>연간 총급여</b> (원천징수전 총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급여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용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li> <li>※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li> <li>※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과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li> </ul> <p>→ 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원	

문 4) 고용주 및 자영자									
<p><b>[보조기입란 4-a]</b>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총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p> <p>※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함.</p> <p>※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p> <p>※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매출액 (A)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p><b>[보조기입란 4-b]</b>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p> <p>※ 경비에는 재료비, 적원 인건비 및 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기계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p> <p>※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총비용 (B)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p><b>4-1.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p>※ 순소득은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간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p> <p>※ 순소득은 소득세, <b>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b></p> <p>※ 순소득에는 <b>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b></p> <p>※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b>“-” 표(마이너스 표시)</b>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p> <p>※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둠.</p> <p>→ <b>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기시오.</b></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순소득 (A-B)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p><b>4-2.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1년 동안 연간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p>※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2008년 2,000만원을 벌어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업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700만원 기입</p> <p>※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p> <p>※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p> <p>※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전입소득					
	1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5)	농림축산업 경영주						
<p>5-1.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sup>2</sup></p>							
① 논	총						m <sup>2</sup>
② 밭	총						m <sup>2</sup>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m <sup>2</sup>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m <sup>2</sup>
* 없음 0							

[보조기입란 5-a]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업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량 + 임차료(소작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축의 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작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곡 : 메벼, 멥쌀, 찰벼, 잡쌀 곡류 : 미곡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 고구마 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마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애플 등									
	여름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담배,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봉인, 과수묘, 병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장작 등									
총 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깃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수확한 농림축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농림축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십억	만원	천원	연간 총	십억	만원	천원	연간 총	십억	만원	천원	연간 총	십억	만원	천원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농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피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연간 잡수입 총액(D)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b].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 가축사육에 소요된 지출(농업경영비)의 세부항목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시	연간 품목별 비용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농기계 할부금 포함), 영농잡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연한(내구연수)을 절문**하여 그 연수(年數)만큼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0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0만원으로 기재  
※ 영농광열비는 배·고추 등 농작물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명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농·임산물 생산과 가축사육에 소요된 연간 총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귀 가구의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순소득 (A+B+C+D-E)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보조기입란 6-a]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연간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들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시	종류	판매량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출하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수산물 판매수입 (A)				자가소비액 (B)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연간 총	.....			연간 총	.....			연간 총	.....			연간 총	.....		
	십억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없음 0

6-2.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어업관련 기타잡수입은 연간 총 얼마였습니까?										연간 잡수입 총액(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응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연간										.....			만원			
십억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보조기입란 6-b]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지출의 세부항목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연간총지출금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			만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남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류비,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연간	.....			만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연간	.....			만원	
십억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6-3.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어업활동에 소요된 총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총비용(E)						
연간										.....			만원			
십억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귀 가구의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연간 순소득(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연간										.....			만원			
십억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문 7) 기타 근로소득: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게 질문하세요.	성명	가구원 번호	연간 기타 근로소득													
		1	연간	.....			만원									
		2	연간	.....			만원									
		3	연간	.....			만원									
		4	연간	.....			만원									
		5	연간	.....			만원									
		6	연간	.....			만원									
		7	연간	.....			만원									
		8	연간	.....			만원									
		9	연간	.....			만원									
십억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천	십	만원

※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문	재 산 소 득	2008년 1년 동안 받은 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세부 항목	금 액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문 8)	재 산 소 득	2008년 1년 동안 받은 소득의 유형별 소득액은?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 ×12를 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그대로 기입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1년에 한번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10×12)+100=220만원으로 기입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연간						만원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연간						만원
			③ 기타(자격증 대여 등)	연간						만원
문 9)	사 회 보 험	2008년 1년 동안 받은 사회보험의 유형별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연간						만원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연간						만원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연간						만원
문 10)	민 간 보 험	2008년 1년 동안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총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연간						만원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타 금	2008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유형별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4번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⑥, ⑦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급식비 지원, 문구대, 수련회비, 정부활인보조금(전기료, 전화비, 인터넷, 장애인 LPG 등), 노인위생비, 자활사업,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u>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u>	①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연간						만원
			② 기초노령연금	연간						만원
			③ 노인교통비	연간						만원
			④ 모부자가정수당	연간						만원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연간						만원
			⑥ 영유아 보육료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만원
			⑦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연간						만원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연간						만원
			⑨ 농어업 정부보조금	연간						만원
			⑩ 유희환급금	연간						만원
			⑪ 긴급복지지원금	연간						만원
			⑫ 바우처 지원금	연간						만원
			⑬ 기타( )	연간						만원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2008년 1년 동안 발생한 기타소득의 유형별 금액은?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상용 또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① 증여·상속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② 경조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⑦ 기타(부권/경품당첨금, 상품권, 켄돈 등)	연간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	원

※ 없음 0

※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다음 소득은 얼마입니까?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현금 및 현물)	2008년 1년 동안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주택구입자금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부모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	원	
			자녀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	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	2008년 1년 동안 9개월 미만 생계를 같이 하다가 분가한 가구원이 함께 살 때 짐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2008년 1년 동안 귀댁의 가구원으로 새로 들어온지 9개월 미만된 가구원이 짐으로 가지고 들어온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총금액은? ※ 혼수용품이나 혼수비 등을 제외한 정규적인 소득만을 기입함.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	원		
민 간 보 조 금(현금 및 현물)	2008년 1년 동안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총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	원			
문 14)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2008년 1년 동안 정부(동 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연간 수급개월수와 총(현금급여)금액은?  ※ 동 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 수급 개월수는 2008년 수급 개월수를 적고, 연간 금액은 월평균(현금급여액)×수급개월수로 계산하여 기입(예, 2008년 3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받았다면, 수급개월수에는 03, 금액에는 60만원 기입)	연간 수급 개월수								
			개월	연간	일억	천	백	십	만	원	

430

2009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 상태	2008.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일반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 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 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⑥ 기타부채에 포함.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험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 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일반사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카드빚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외상, 미리란 계돈 ※ 미리 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여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⑥ 기타부채( )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2)	이자	2008년 1년(2008.1.1~12.31) 동안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연간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연체한 경우 0	① 주거관련 부채의 연간이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주거이자 제외) 기타 연간이자	연간	십억	억	천	백	십	만

\* 없음 0

※ 귀하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3)	귀 가구가 1달 동안 <b>근근이</b>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2008년 월평균 기준)  ※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가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아 생활하는 금액	월평균 천 백 십 만

431

부  
록

##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 12. 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게)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유산	2008.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액(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주택외 건물(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게)·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2)	점부동산 유산	2008.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액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게,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기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3)	금융자산	2008.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타기 전 부은 계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4)	농 기계	2008.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콤팩트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⑤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5)	농 축산물	2008.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원용 및 식용 가죽 제외	① 소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돼지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닭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계고농산물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⑤ 기타( ) ※ 유실수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6)	자 동 차	2008.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b>비영업용</b>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원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만원
				대						
문 7)	기 재 타 산	2008.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b>영업용 자동차</b>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 없음 0

## XI. 생활여건

문 1) 2008년 1년 동안 귀택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가 2008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나 2008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다 2008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라 2008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마 2008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바 2008년 1년 동안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사 2008년 1년 동안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아 2008년 1년 동안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유의사항〉

- \* ㉔ 문항의 경우 2008년 1년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기' 혹은 '무상' 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㉕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㉖ 문항의 경우 2008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08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에 응답합니다.
- \* ㉗ 문항의 경우 2008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 만을 받는 가구는 '③비해당'에 응답합니다.

문 2) 2008년 1년 동안에 귀택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가 2008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b>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b>	①	②	③	④
나 2008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b>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㉘ 2008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b>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b> 적이 있습니까?	① <del>→아니로 같</del> 것	② <del>→아니로 같</del> 것	③ <del>→아니로 같</del> 것
㉙ (㉘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㉚ 2008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b>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b>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㉛ 2008년 1년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b> 적이 있습니까?	①	②	③

##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생계비,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의료특례·자활특례·교육특례 등 특례가구와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문 1) 귀댁은 2008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1-1)로 갈 것**                      ② 없다 → **문2)로 갈 것**

< 유의사항 >

- \* 공식적인 서류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이미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2008년에 신청한 적이 없으면 '②없다'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기본적인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②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
- ③ 주거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④ 자녀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 ⑤ 취업알선, 창업 등 자활지원을 받기 위해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2)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신청한 결과 귀댁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2)로 갈 것**                      ② 그렇지 않다 → **문1-3)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 2008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단, 급여신청을 2008년 12월에 하였고 선정은 2009년에 되었지만, 선정이 되면서 2008년 12월까지의 급여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받았다면 2008년에 선정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 1-3)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② 자동차가 있어서
- ③ 살고 있는 집의 가격이 높아서
- ④ 살고 있는 집 이외에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서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⑦ 잘 모르겠다.

문 1-4) (문1-2)의 ②번 응답자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후 귀댁의 생계문제는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다? 주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부양의무자(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지 및 이웃의 도움
- ② 빚을 내어서 생활
- ③ 민간단체의 도움
- ④ 이전보다 더 절약하며 생활
- ⑤ 저축 등 있는 재산을 줄여서
- ⑥ 공공기관 프로그램(공공근로 사업, 차상위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으로
- ⑦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공공기관 프로그램 참여 제외)
- ⑧ 기존에 받던 '가구원 중 일부수급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은 2008년 1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2008년 1년 동안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칼) 권
- ② 2008년 이전부터 2008년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③ 2008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08년 말까지 받았다
- ④ 2008년 이전부터 받아오다가 2008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 ⑤ 2008년 들어와서 받기 시작해서 2008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응답 후 문4)로 갈 것

문 2-1)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2008년 동안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2	0	0	8	년			월	~	2	0	0	8	년			월
두 번째	2	0	0	8	년			월	~	2	0	0	8	년			월
세 번째	2	0	0	8	년			월	~	2	0	0	8	년			월

< 유의사항 >  
 \* 2008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2008년 이전부터 급여를 받은 경우 2008년 1월부터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2)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2008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②~⑤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유의사항 >  
 \* 2008년 들어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④ 3년 후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③ 1년 후 ~ 3년 이내 ⑥ 잘 모르겠다.

- 문 3-1)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여러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귀댁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계속 받고 싶은 지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의료비 지원                      ④ 자활관련 지원  
 ② 교육비 지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주거비 지원

응답 후 'XII-1. 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문 4)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마지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하고 있던 일의 수입이 늘어서  
 ② 가구원이 취업을 하게 되서  
 ③ 상속, 증여, 재개발 등으로 재산이 늘어서  
 ④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서  
 ⑤ 친인척이 좀 더 도와주어서  
 ⑥ 사망, 이혼, 분가 등 가구원수가 줄어들어서  
 ⑦ 가족의 병이 나아서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서  
 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변화는 없으나 조사결과가 달라져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4-1) (문2)의 ④, ⑤번 응답자만 귀댁이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지원 중 생계비를 제외하고 가장 아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중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 ① 의료비 지원                      ④ 자활관련 지원  
 ② 교육비 지원                      ⑤ 없다  
 ③ 주거비 지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XII-1. 근로장려세제

< 유의사항: 다음의 내용을 응답자에게 알려 주시고 질문하십시오. >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가구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형 세액공제제도로서 2009년부터 급여가 주어집니다.  
 ① 2008년 부부 합산 연간 근로소득이 1,700만원 이하이고, ②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③ 2008년 6월 1일 기준 무주택자 혹은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④ 2008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 주어집니다.

- 문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①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른다  
 ②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  
 ③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들어본 적이 있고, 내용도 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 문 2) 귀댁은 근로장려세제 급여를 받을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 'XIII.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② 수급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한다 → 문2-1)로 갈 것  
 ③ 잘 모르겠다

- 문 2-1) 귀댁은 올 해(2009년)에 근로장려세제의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신청하겠습니까?

- ① 신청하였다                      ② 신청하지 않았지만 신청할 예정이다(신청하겠다)  
 ③ 신청하지 않았고, 신청하지 않겠다                      ④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육구와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약물(알코올)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호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용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모부자기정지원 등의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보육료 지원비 등은 포함 안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체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1,2종,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화서비스 모두 포함). 단,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상담: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아동을 위한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말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2008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㉕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㉖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㉗ 가시간병 방문서비스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㉙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㉚ 기타 바우처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 지침서 확인)	①	②	종류(적을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요의사항 〉

- 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㉕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한다.
- ㉖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㉗ 가시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노인,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㉘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㉙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㉚ 기타 바우처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가족기능회복서비스, 경제활동지원서비스, 주거환경지원서비스, 학습비전형성 서비스, 현장체험서비스, 취약계층 사회참여 서비스 등이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2008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  
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  
료는 해당되지 않음.

월단위 금액				
월단위	백만	십만	일만	천 원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2008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에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  
습니까?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가 방문요양 (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번정돈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나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라 주, 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마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바 기타재가급여 (휠체어, 침대, 이동목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사 시설급여 (2008년 중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아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야간보호 서비스 (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건강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1,2종,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원서비스 모두 포함). 단,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를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표.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는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과 후 지도(공부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무료급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p> <p>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p> <p>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p> </div> <div style="width: 45%;"> <p>④ 보건소</p> <p>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p> <p>⑥ 학교</p> <p>⑦ 기타(적용 것 : _____)</p> </div> </div>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음 문2)~문6)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 각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아래 응답지에 개별 아동(자녀)별로 아동의 가구원 번호에 따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2) 귀댁에 가구원으로 2007. 4. 1 ~ 2008. 3. 31 동안에 새롭게 추가된 아동(자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아동(자녀)은 누구입니까?

(※ 2쪽의 가구원현황과 4차년도에 추가된 가구원 중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여 기재해주시시오.)

- ① 있다 → 문 2-1)로 갈 것                      ② 없다 → 문 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이상이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의 아동(자녀) □□□는 아기 때부터 앓아온 선천성 기형이나 선천성 질환(심장질환 등)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small>(※ 2쪽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하도록 기재시오)</small>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2-1) 체중	문2-2) 선천성 기형 및 질환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댁의 아동(자녀) □□□는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는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댁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5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 문 6) 귀댁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구 분	< 보 기 >	
보육시설 (만 6세 미만)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② 민간어린이집 ③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⑦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초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	④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⑥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⑦ 학원 ⑧ 개인·그룹과의	⑨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⑩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⑪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⑫ 친·인척 ⑬ 이웃 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지침서 확인) ⑮ 민간 아이 돌보미 ⑯ 기타(적을 것 : _____) (* 친인척과 이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가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㉑ 장애인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㉒ 장애인아동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㉓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확인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㉕ 의료 재활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㉖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㉗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㉘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㉙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㉚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㉛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㉜ 장애인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㉝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㉞ 자동차 관련 지원(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㉞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㉙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XVII. 가족

문 1) 2008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li> <li>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li> <li>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li> <li>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li> <li>⑤ 가구원의 건강</li> <li>⑥ 가구원의 알코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가족 내 폭력</li> <li>⑧ 가구원간 관계</li> <li>⑨ 가구원의 가출</li> <li>⑩ 주거관련 문제</li> <li>⑪ 기타(적용 것 : _____)</li> </ul>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2008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실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 15일까지 귀댁의 가구원은 경제위기로 인한 회사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혹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가구원 번호	문 1) 실직 경험		문 2) 실직 시기				문 3) 실직 이후 상태(2009년 4월 15일 기준)		
	있었다	없었다	년	월	재취업	구직활동중	구직활동포기		
1	①	②	2	0	0	①	②	③	
2	①	②	2	0	0	①	②	③	
3	①	②	2	0	0	①	②	③	
4	①	②	2	0	0	①	②	③	
5	①	②	2	0	0	①	②	③	
6	①	②	2	0	0	①	②	③	
7	①	②	2	0	0	①	②	③	
8	①	②	2	0	0	①	②	③	
9	①	②	2	0	0	①	②	③	

###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부록 2



승인번호  
제 33109 호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4차 신규가구용(유형2)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61, 8358, 8273, 8352, 830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 패널 ID	가구생성차수	가구분리일련번호	* 분가사유
※인포시스템상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4차 신규가구: 04	-첫번 째 4차 신규가구: 01 -두번 째 4차 신규가구: 02 -세번 째 4차 신규가구: 03	
	0 4		① 결혼 ② 직장 ③ 학업 ④ 이혼 ⑤ 별거 ⑥ 위탁 ⑦ 기타(※기타내용은 가구정보란에 기록)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 _____ ) _____ - _____	

가구주 성명	응답자 1			응답자 2		
	성명	가구원 번호		성명	가구원 번호	
	휴대폰			휴대폰		

조사표완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1. 완료 2.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_____	지도원	(인)
--------	--------	-----------------------------	-----	-----

# I. 가구일반사항

\* 본 조사의 조사시점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신규가구는 2008년 9월 30일 이전에 생성된 가구만 해당됩니다(10월 1일 이후 생성 가구는 신규가구가 아니라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간주하여 조사).

\* 신규가구 생성 시기 ((인포시트) 내용 이기) 년  월

문1) 귀택에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 가구 생성 시점~ 2008년 12월 31일까지 3/4 이상 생계를 같이하였던 가구원을 기준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단,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명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 패널ID	가구원 번호	이름	문2) 가구주와의 관계		문3) 성별	문4) 태어난 연도, 월		문5) 교육수준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와의 관계 코드		생년 (생우)	생월 (생월)	문5-1)	문5-2)
4차 가구원 진입 차수 - 그 외는 인포시트상의 숫자로 기타	* 인포시트와 지침서를 참고하여 부여	* 순서 대로 기입	가구원 이름	* 가구주와의 관계는 주관식 으로 기입후 아래 [가구주 와의 관계표]를 참고하여 코드번호 기입	* 가구주 정의: 호주 또는 세 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 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자 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① 남 ② 여	* 주민등록상의 생년, 생월을 기재하여 주심 시오 (반드시 [인포시트]와 비교하여 확인)	① 미취학 (만 7세미만) ② 무학 (만 7세이상)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⑥ 전문대학 ⑦ 대학교 ⑧ 대학원(석사) ⑨ 대학원(박사)	① 비취학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⑤ 수료 ⑥ 졸업	
		1		0	1	0				
		2								
		3								
		4								
		5								
		6								
		7								
		8								
		9								

## 문 2) 가구주와의 관계표

- |  |   |
|--|---|
| <p>010. 가구주</p> <p>001. 가구주의 아버지<br/>002. 가구주의 어머니</p> <p>005. 가구주의 조부<br/>006. 가구주의 조모</p> <p>011. 가구주의 첫째 자녀<br/>012. 가구주의 둘째 자녀<br/>013. 가구주의 셋째 자녀<br/>(첫째 = 14, 다섯째 = 15, ...)</p> <p>031. 가구주의 형제/자매<br/>(첫 번째 사람 = 31, 두 번째 사람 = 32, ...)</p> <p>051.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배우자<br/>(첫 번째 사람 = 51, 두 번째 사람 = 52, ...)</p> <p>11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br/>112.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br/>(셋째 = 113, 넷째 = 114, ...)</p> <p>121.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br/>1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br/>(셋째 = 123, 넷째 = 134, ...)</p> <p>131.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br/>132.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br/>(셋째 = 133, 넷째 = 134, ...)</p> <p>997. 기타 친인척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br/>998.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숫자에 관계없이 동일번호)</p> | <p>020. 가구주의 배우자</p> <p>003. 가구주의 배우자의 아버지<br/>004. 가구주의 배우자의 어머니</p> <p>007.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부<br/>008. 가구주의 배우자의 조모</p> <p>021. 가구주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022. 가구주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023. 가구주의 셋째 자녀의 배우자<br/>(넷째 = 24, 다섯째 = 25, ...)</p> <p>04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br/>(첫 번째 사람 = 41, 두 번째 사람 = 42, ...)</p> <p>061. 가구주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br/>(첫 번째 사람 = 61, 두 번째 사람 = 62, ...)</p> <p>211. 가구주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212. 가구주 첫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셋째 = 213, 넷째 = 214, ...)</p> <p>221. 가구주 둘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222. 가구주 둘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셋째 = 223, 넷째 = 224, ...)</p> <p>231. 가구주 셋째 자녀의 첫째 자녀의 배우자<br/>232. 가구주 셋째 자녀의 둘째 자녀의 배우자<br/>(셋째 = 233, 넷째 = 234, ...)</p> |
|--|---|

가구원 번호	문6) 장애종류 및 등급		문7) 혼인상태	문8) 종교	문9) 동거여부
	문6-1) 장애종류	문6-2) 장애등급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입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지체장애    ⑧ 정신장애 ② 뇌병변장애    ⑨ 신장장애 ③ 시각장애    ⑩ 심장장애 ④ 청각장애    ⑪ 호흡기장애 ⑤ 언어장애    ⑫ 간장애 ⑥ 정신지체    ⑬ 인면장애 (지적장애)    ⑭ 장루·요루장애 ⑦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⑮ 간질장애 ⑯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장애인포함)  ※ 가장최근에 판정받은 장애유형을 기록 ※ 중복장애의 경우 주요 장애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등급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로 표시하면 됩니다.	① 비해당(비장애인) ① 1급 ② 2급 ③ 3급 ④ 4급 ⑤ 5급 ⑥ 6급 ⑦ 비등록 장애인 (보훈처등록 장애인포함)  ※ 중복장애의 경우에 는 중복장애가 복지 카드에 표시되어 합 산되어 있는 경우 이 를 그대로 기입합니 다.	① 비해당 (남17세 이하 여15세 이하) ① 유배우 ② 사별 ③ 이혼 ④ 별거 ⑤ 미혼 (남18세 이상 여16세 이상, 미혼도 포함) ⑥ 기타(사망등)	① 있음 ② 없음	① 같이 살고 있다. ② 다른 지방에 근무(국내) ③ 해외 근무 중 ④ 학업(해외 유학 포함) ⑤ 입원, 요양 ⑥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⑦ 가출 ⑧ 분가 ⑨ 사망 ⑩ 다른 곳에 맡겨진 미취학 자녀 ⑪ 기타(군복무 등)  ※ 주거지를 정하지 않은 여행 등 일시적인 비동거자는 동거자로 구분합니다.
1					
2					
3					
4					
5					
6					
7					
8					
9					

문10)	가구형태	① 단독    ② 모자    ③ 부자    ④ 소년소녀가장    ⑤ 기타
문11)	기초보장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일반수급가구    ② 조건부수급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④ 특례가구
문12)	의료급여 수급형태	① 비해당    ① 의료급여1종(가구)    ② 의료급여2종(가구)    ③ 가구원중 일부수급(개인)

〈 용어 해설: 가구형태 〉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부자: 아버지와 17세 이하의 미혼자녀(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단,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며, 이 경우도 소년소녀가장으로 구분한다.)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용어 해설: 의료급여 수급형태 〉

-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저하,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 이체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우영문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의료급여 2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저하 등으로 가구(세대) 모두가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가구원중 일부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가구원중 일부수급가구, 의료특례, 18세미만 임양아동, 처상위의료급여 수급자 등으로 1, 2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중 일부만 의료급여 수급자인 가구

〈 유의사항: 기초보장 수급형태 / 의료급여 수급형태 〉

※ 기초보장수급 형태 및 의료급여 수급형태는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얻어, 2008년 12월 31일 기준 수급가구 여부 및 수급형태를 확인하여 기입한다.

## II. 건강 및 의료 A

\* 가구원 번호와 이름은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문2) 2008년 1년 중 의료기관 이용			문3)	문4)
		2008년 12월 31일 기준 건강상태				2008년 1년 중 병원에 입원한 이유	2008년 1년 중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가구원 이름	① 아주 건강하다 ② 건강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⑤ 건강이 아주 안 좋다	문2-1) 외래진료횟수 (예) 3회 →003 없음 →000	문2-2) 입원횟수 (예) 3회 →03 없음 →00	문2-3) 입원일수 (예) 20일 →020 없음 →000	⑩ 비해당 ① 지병/질병 ② 사고 ③ 출산 ④ 건강검진 ⑤ 요양휴식 ⑥ 성·정행/교정 ⑦ 기타	⑩ 비해당 ① 종합, 대학병원 ② 병·의원(지역내지역외) ③ 한방 병·의원 ④ 보건소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 2-1) 외래진료횟수

- \*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합니다. 순회진료를 받은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동일병원에서 각각 다른 진료과목을 2회 이상 진료한 경우는 1회로 표시하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2회로 표시합니다. 건강검진은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2-2) 입원횟수

- \* 장기입원환자가 365일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1회로 기록합니다.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도 그 횟수를 포함합니다. 응급실에 당일 입·퇴원하는 경우, 교통사고나 재활치료 등의 이유로 여러 병원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는 모두 1회로 표시합니다.

문 3) 병원에 입원한 이유

- \*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으면 '⑩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병원에 입원한 경향이 있다면 2008년 1년 중 가장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이유를 기입합니다.

문4)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 \* 노인복지관에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노인복지관 내에 의사가 1인 이상 적원으로 상주할 경우 이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⑥기타'로 표시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5) 2008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문6) 만성질환	문7) 주요 병명	문8) 2008년 12월 31일 기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2008년 1년 중 건강검진 횟수 (예) 1회 →1 없음 →0	① 비해당 ② 3개월 미만 투병·투약하고 있다 ③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투병·투약 하고 있다 ④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고 있다	(예) 위염 → 03 없음 → 00	(예) 3개 → 03 없음 → 00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5) 건강검진 횟수

※ 학교나 유치원에서 지정병원을 정하여 혈액, 소변, 엑스레이, 심전도 등 핵심 검진항목을 건강검진 받거나, 5대 영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받는 경우도 건강검진 횟수로 포함합니다.

문6) 만성질환

※ 투병 때문에 지속적인 투약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기간은 최초 투약 및 투약시점 부터 산정합니다.

문7) 주요 병명

※ 아래 [주요병명코드] 를 참조하여 번호로 기재합니다. 중복질환을 알고 있는 경우 주된 질환 한 가지만 표기합니다.

※ 감기와 같이 계절성 질환의 경우는 '㉞ 없음'으로 표기합니다.

※ 급성질환의 경우 주요 병명에 포함되지 않으며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2> ① 급성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정신분열 등)의 경우에도 '㉞ 기타 질병'으로 기록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㉞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기록(의료급여제도에서 의료급여특례로 인정하는 세부질환은 지침서 <부록 2> ②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코드 참고)합니다.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민간의료보험 전용상품**(암보험, C(Critical Illness)보험, 어린이의료보험, 실손형 의료보험, 실버 및 간병보험, 일반질병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해당건수를 기록합니다. (예) ○○○ 의료, 질병, 암, 건강보험

※ **C(Critical Illness)보험**: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이라도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지급하는 보형을 말함.

※ **실손형 의료보험**: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의 일종으로 실제 발생한 의료비에 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형을 말함(직장단체가입이 많음).

※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의 가입건수를 체크합니다.

※ 납입기간이 끝났으나 보장받고 있는 보험이 있으면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월평균 납입보험료는 0으로 간주합니다.

※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제외하고,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주로 판매하는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됨)은 포함시켜 건수를 계산합니다.

[주요병명코드]

① 임(위, 간, 폐, 기관지등)	⑩ 폐결핵, 결핵	⑲ 고지혈증	㉞ 치아우식증(충치)
②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⑪ 만성기관지염(심한 가래, 기침)	⑳ 치질(치핵)	㉟ 만성치주질환(풍치, 잇몸병)
③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등	⑫ 전식	㉑ 만성부비동염(축농증)	㉒ 기타질환(급성질환 등)
④ 만성간염, 간경변	⑬ 백내장, 녹내장	㉒ 기관지확장증	㉓ 희귀난치성 질환
⑤ 당뇨병	⑭ 만성중이염	㉓ 알레르기성 비염	㉔ 저혈압
⑥ 갑상선 질환	⑮ 만성신부전증(만성신장질환)	㉔ 턱관절질환	㉕ 없음
⑦ 고혈압	⑯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㉕ 아토피성 피부염	
⑧ 중풍, 뇌혈관질환	⑰ 골다공증	㉖ 요실금	
⑨ 심근경색증, 협심증	⑱ 빈혈	㉗ 우울증	

### III. 경제활동상태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당시 만14세 이하이었던 경우는 문1)의 '0'에 체크하고, 다음 [Ⅳ.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넘어갑니다.  
 ※ 당시 만15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은 응답해야 합니다.

가구원 번호	이름	문1) 근로능력정도 (* 심신등록상)	문2) 근로무능력사유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가구원 이름	① 만4세 이하 → [Ⅳ. 사회보험]으로 갈 것 ② 근로가능 ③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④ 단순근로미약자 (집안 일만 가능) 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집안일도 불가능) → [문2]로 갈 것	① 중증장애 ② 질병 또는 부상 ③ 노령으로 인한 심신 무능력 ④ 기타 ※ 문2)에 응답한 모든 응답자는 문3) 주된경제활동참여상태는 ⑨ 비경제활동인구로, 문11) 비경제활동사유는 '① 근로무능력'으로 응답함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 ④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 고용주 ⑥ 자영업자 ⑦ 무급가족종사자 ⑧ 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 [Ⅳ.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으로 갈 것 ⑨ 비경제활동인구 → [문11]로 갈 것
1				
2				
3				
4				
5				
6				
7				
8				
9				

〈 용어예시 〉

문3)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된 임금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2. 임시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
4. 자활·공공근로, 노인일자리	3. 일용직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으로 임금을 선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	
	6. 자영업자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8. 실업자	유급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들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자	
9. 비경제활동인구	6. 자영업자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함	
8. 실업자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공공근로무원 등 점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9. 비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경우,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공공근로무원 등 점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함		

※ 상용/임시/일용 구분은 **근속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 학생, 주부라 하더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니라** 취업자로 파악하며, 일시유직자도 취업자로 파악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농업 등)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 현재는 쉬고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를 택해서 응답합니다. (지침서 사례 참조)

가구원 번호	문4) 고용관계	문5) 근로시간형태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문7) 근로지속가능성	문7-1) 근로지속불가능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직접고용 ② 간접고용 ③ 특수고용  * 아래 [문4] 고용관계] 참조	① 시간제 ② 전일제  *아래 [문5] 근로시간형태] 참조	①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음 ② 계약기간이 정 해져 있지 않음  *아래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참조	① 특별한 사유(본인의 중대한 과 실, 폐업 등 사업체 자체의 소멸 또는 고용조정, 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 <b>문3)로 갈 것</b>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 <b>문7-1)로 갈 것</b>	①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② 독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 문에 ③ 사업주가 그만두려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 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④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⑤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 하기 때문에 ⑥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9					

**문4) 고용관계**

- ① 직접고용: 사용자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둘 사이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고용형태. 시용-종속관계가 긴밀함
- ② 간접고용: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사실상의 사용자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상 사용자-사실상 사용자-근로자간의 삼각관계 성립.
  - 파견근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근무
  - 용역근로: 용역회사(용역을 받고자 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회사의 직원을 보내 해당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회사)에 고용되어 이 회사의 지휘 하에 이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예: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 ③ 특수고용: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일대일 대응관계가 있지만, 시용-종속관계가 직접고용에 비해 느슨하며 공간적·시간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일용대기, 독립도급, 채택근무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 렉서비스노동자, 방문학습지도사,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화장품외관원, 보험판매원, 카드모집인, 텔레마케터, 골프장 캐디, 구성작가, 레미콘·화물·덤프·학원차량 등 차량을 직접 소유해 운전하는 지입차주 등

**문5) 근로시간 형태**

- ①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동안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됨
- ② 전일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문6)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 ①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음: 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설정(예. 6개월, 1년, 2년, 3년 등)되어 있는 경우
- ②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근로계약상 명시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일정한 사업(프로젝트)완료 기간에 한해 고용된 경우: 사업완료기간이 명백하면 계약기간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사업완료 기간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 \* 일용직의 경우: 인력시장에서 하루하루 고용되어 일을 하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으로 보고, 삼정(혹은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기간이 결정되어 본인은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경우는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봄

**문7) 근로지속가능성: 근로계약기간의 설정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문함**

- 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근로가 가능함: 일반적으로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경우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음: 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사정상 언제든지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한시적 근로자)와 ii)근로계약상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갱신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번호	문8) 업종	문9) 직종	문10) 사업장 규모	문11) 비경제활동 사유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십시오	* [지침서] <부록3> 산업분류코드에서 중분류 코드 2자리를 기입하십시오.  * 자활 및 공공근로, 노인일자리도 해당 업종의 산업코드를 기입함.	* 직종 직업명은 주관식으로 기입, 우측 직업코드는 [지침서] <부록4> 직업분류코드에서 소분류 코드 4자리를 기입하십시오.  직업명                      직업코드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49명 ⑤ 50~69명 ⑥ 70~99명 ⑦ 100~299명 ⑧ 300~499명 ⑨ 500~999명 ⑩ 1000명 이상 ⑪ 잘 모르겠다	① 근로무능력 ② 군복무 ③ 학업 ④ 가사 ⑤ 양육 ⑥ 간병 ⑦ 구직활동포기 ⑧ 근로의사 없음 ⑨ 기타  * 사유가 겹치는 경우에 주된 사유 하나만 응답 * 재수생은 ③ 학업 선택 * 군복무 대기자도 ② 군복무로 응답
1				
2				
3				
4				
5				
6				
7				
8				
9				

< 유의사항 >

**문8)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9) 직종**  
\* 한국표준직업분류(6차 개정)를 따른다(지침서 참조).

**문10) 사업장 규모**  
①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  

- 중사업체의 상호로 파악되는 전체 사업장 차원의 종사자수를 말하며, 소유, 경영, 인사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의 종사자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OO은행의 OO지점일 경우 종사자수는 지점의 종사자수가 아니라 그 은행의 전체 종사자수다. 단,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일 경우 소유와 운영이 모회사와 별도로기 때문에 해당사업장의 종사자수에 해당하는 번호를 찾아 기입한다. 그룹사의 경우 해당 계열사 차원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등은 '⑩ 1000명 이상'으로 기입한다.
- 허정업체의 경우는 원정업체가 아닌 자신이 소속된 허정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파견근로 및 용역근로의 경우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의 사업장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예를 들어, A업체와 고용계약을 맺어 A업체(고용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등 인사관리 대상이 되는 사람이 B업체(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업체의 종사자수를 기입한다.
-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는 사업단 인원수가 되며, 명확하게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지 아닌 경우 주인(고용주)을 포함하되, 직업소개소 등과 같은 송출업체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부 등)는 '1'로 간주한다.
- 남의 집에서 혼자 일하는 육체적 단순노무, 가사서비스 등과 같은 일용임금근로자는 자신만 종사자로 파악, ① 1~4명'로 응답한다.

 ② 비임금근로자(고용주/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 고용주: 고용주를 포함한 자기 사업체내의 전체 종사자수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종사자수

###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아래의 모든 조사항목은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원번호와 이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2쪽의 순서 및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이름	공적연금 가입		국민연금		
		문1) 공적연금가입형태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문3) 가입종별	문4) 국민연금납부여부	문5) 미납유형
* 2쪽의 가구원 번호 를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비해당 →문9)로 갈 것 ① 연금수급 →문9)로 갈 것 ② 연금가입 →문2)로 갈 것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문2)로 갈 것 ④ 미가입 →문9)로 갈 것 * 공적연금에는 국민,공 무원,사학,군인,별정직 우체국직원연금이 포 함됨. *아래 [문1] 공적연금 가 입형태] 참조	① 국민연금 →문3)으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학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모름 * 아래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보충설명] 참조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직장이 나 지역가입자는 아 니지만 미래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④ 임의계속가입자(60~ 65세인데 수급권을 얻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있음) ⑤ 모름 →문9)로 갈 것 * 실업상태로 납부에 외지의 경우는 ② 지역가입자로 응답.	① 납부하고 있음 →문7)로 갈 것 ② 납부하지 않고 있 음 →문5)로 갈 것 *12월 31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깜빡 잊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는 ① 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	① 납부에외자 →문6)으로 갈 것 ② 보험료 미납 →문7)로 갈 것 * 납부에외자는 국민연금가입 자이지만 실직, 사업중단, 군입대, 학업, 휴직(출산,육아 )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임.
1						
2						
3						
4						
5						
6						
7						
8						
9						

**문 1) 공적연금 가입형태**

**<질문시 유의사항>** 공적연금 가입현황을 먼저 질문합니다. 즉, ①, ②, ③을 먼저 질문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먼저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① 비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아래 지침을 참조하여 '④ 미가입'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파악하도록 합니다.

**<용어해설>**

- ① 연금수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수급자(재직자노령연금 수급자도 포함).
- ② 연금가입: 국민연금(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의 가입자 (만18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라 하더라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준 경우는 연금 가입으로 봄)
- ③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받으면서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관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됨.
- ④ 미가입: 공적연금 가입대상자인데, 어떤 공적연금제도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이고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가 아닌데, 미가입인 경우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가입신청서 받지 않은 경우나 신고서를 받았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지침서] 참조)
- ① 비해당: 국민연금 적용제의 대상자(만18세 미만, 만60세이상 등) 중 ① 연금수급\*④ 미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지침서) 참조)

**문2)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 \* 과거 가입했던 제도가 아니라 현재 가입하고 있는 제도 기준임.
- \* 국민연금 납부에외자, 그 외 보험료 미납자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포함됨.
- \* 임종, 각종 분류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등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 등 해당 적역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예를 들어, 구청직원이라 하더라도 일용직, 용역직원 등은 공무원연금 가입대상이 아닐 수 있음.

가구원 번호	이름	국민연금				
		문6) 납부예의 사유	문6-1) 납부예의 기간	문7) 미납 이유	문7-1) 미납 기간	문8) 미가입 이유
* 2쪽의 가구원 번호를 순서대로 기재	가구원 이름	① 실직, 휴직, 사업중단 ② 3개월 이상 입원 ③ 생활곤란 ④ 학업(재학) ⑤ 기타(자연재해, 교도소 수감 등)	2008년 1년간 납부예의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 문9)로 같겠 * 2008년 1년 기준임.	① 비해당(미납경험없음) ②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③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④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격정이 없을 것 같아서 ⑤ 모름 ⑥ 기타 * 문4)에서 '①납부하고 있음'으로 응답한 사람 중 12월 31일 이전에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본문항에 응답하도록 함.	2008년 1년간 보험료를 몇 개월이나 미납하셨습니까? → 문9)로 같겠 * 2008년 1년 기준임. * 2008년 1년간 미납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기입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②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③ 가입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④ 모름 ⑤ 기타
1						
2						
3						
4						
5						
6						
7						
8						
9						

가구원 번호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개인연금
	문9) 산재보험 가입여부	문10) 고용보험 가입여부	문11) 퇴직금 적용여부	문12) 퇴직연금 가입여부	문13) 개인연금 가입여부
* 2쪽의 가구원 번호 순서대로 기재하시오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응답하며,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는 별도로 가입여부를 질문해야 합니다. * 비경제활동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 다른 종사자 없이 혼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① 비해당' 고용주는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인지에 따라 '① 가입' 또는 '② 미가입'으로 분류함.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의 경우 '① 비해당'으로 기록합니다. * 비경제활동동인구는 '① 비해당'임.	귀하에 현재의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① 비해당(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별정직우체국직원 포함) ① 받을 것이다 ② 받지 못할 것이다 ③ 모름 * 직장에서 퇴직금제 시행여부가 아니라 응답자본인이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 * 퇴직금중간정산 앞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①로 응답 * 회사가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사외적립해서 근로자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①로 응답	① 비해당 ① 가입 ② 미가입 ③ 모름 * 법정퇴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단독으로 혹은 근로자와 공동으로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여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공적연금 제도임. *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① 개인연금만 가입 ② 종신보험만 가입 ③ 개인연금, 종신보험 둘 다 가입 ④ 미가입 ⑤ 모름 *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강제적용되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사적인 저축수단임. *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써 개인연금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음.
1					
2					
3					
4					
5					
6					
7					
8					
9					



문 2) 귀댁에서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건강보험을 별로 이용할 일이 없어서                      ④ 제도에 대한 불신 때문에  
 ②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⑤ 납기기한을 잊어버려서  
 ③ 내는 돈에 비해 혜택이 적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2)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연간  개월

문 3)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경험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② 보험의 적용범위가 좁음  
 ① 월보험료 부담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건강보험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만큼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5) 귀댁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니까?



문 6) ("II. 건강 및 의료" 문 8)의 가구원별 민간 의료보험 가입건수를 고려할 때) **2008년 12월 기준으로** 귀댁이 가입하고 계신 모든 민간의료보험의 월평균 보험료는 총 얼마나 됩니까?

월평균 보험료 합계  만원



## VI. 주거

문 1)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한 주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 |  |  |
|--|--|
| ① 일반단독주택<br>② 다가구용 단독주택<br>③ 다세대주택<br>④ 연립주택(빌라)<br>⑤ 일반아파트<br>⑥ 영구임대아파트 | ⑦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br>⑧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br>⑨ 오피스텔<br>⑩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br>⑪ 임시가건물 (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br>⑫ 기타(적을 것 : _____)<br>⑬ 국민임대아파트 |
|--|--|

문 2)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

- |        |      |
|--------|------|
| ① 지하층  | ③ 지상 |
| ② 반지하층 | ④ 옥탑 |

< 유의사항 >

\* 한 가구가 여러 층을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위치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3)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사용하였던 방은 **모두** 몇 개였습니까?(세준 경우 제외)

총  개

< 유의사항 >

\* 사용하는 방의 수를 파악할 때 세를 준 경우는 포함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거실의 경우,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나 침실로 사용이 가능하면 방수에 포함하여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4)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하는 귀댁의 건평(APT 등의 경우 분양면적)은 얼마나 됩니까?(1평≒3.3㎡)

m<sup>2</sup>

< 유의사항 >

\* 마당, 정원, 창고 등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세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하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5)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

- |  |   |
|--|---|
| ① 자가 <input style="width: 6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b>문6)으로 갈 것</b><br>② 전세<br>③ 보증부월세 <input style="width: 6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④ 월세(사글세) <input style="width: 6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b>문9)로 갈 것</b><br>⑤ 기타 <input style="width: 60px; border: 1px solid black;" type="text"/> |
|--|---|

< 유의사항 >

\*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합니다. 기령, 할머니(가구주)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들(가구원이 아님) 명의로 해놓고 살고 있는 경우, 조사 대상인 할머니 집의 (등기상) 점유형태는 '⑥기타' 가 됩니다.  
 \* 점유형태 '⑥기타' 에는 **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문 6)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집의 가격(현시가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  십억  만억  천  백  십  만 원

< 유의사항 >

\* **자가**의 경우 주택가격, **전세**의 경우 전세금,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응답하여 주십시오.  
 \* 집의 가격은 반드시 명의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기령, 집이 (가구원이 아님)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집의 가격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문 7)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이 거주하였던 주택의 구입비용, 보증금 혹은 증·개축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2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① 자기돈(상속인 경우 포함)
- ② 무상으로 도움을 받음
- ③ 부모·형제·친척·친구 등으로부터 빌림
- ④ 금융기관(회사에서 용자받은 경우 혹은 모기지론도 포함)으로부터 빌림
- ⑤ 사채

문 8)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하였던 귀댁의 주택관련 부채에 대해 응답하여 주십시오

구분							
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관련부채를 얼마나 갚으셨습니까? (※ 원금만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2008년 12월 31일 기준 주택관련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 단, 이자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갚지 못한 이자만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십억	일억	천	백	십	만원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 :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 \* 없음= '0' 으로 표시합니다.

문 8-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대출상환액(이자포함)의 연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① 연체한 적이 없다
- ② 1회
- ③ 2~3회
- ④ 4회 이상

<유의사항>

- \* 주택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또는 2008년 이전에 주택관련 부채를 다 갚은 경우 '0' 연체한 적이 없다가 표기해 주십시오.

문 9)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거주한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이 어떠하였습니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	예	아니오
가 영구건물로서 튼튼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이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갖추고 있다.	①	②
나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고 있다.	①	②
다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으로 인하여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②
라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문 10)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댁의 주거시설 종류와 사용형태를 응답해 주십시오.

시설종류	사용형태
가 상·하수도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③ 없음
나 부엌	① 단독사용-입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입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다 화장실	① 단독사용-수세식 ② 단독사용-재래식 ③ 공동사용-수세식 ④ 공동사용-재래식 ⑤ 없음
라 목욕시설	① 단독사용-온수시설 있음 ③ 공동사용-온수시설 있음 ② 단독사용-온수시설 없음 ④ 공동사용-온수시설 없음 ⑤ 없음
라 난방시설	① 연탄 또는 재래식(떨감) 아궁이 ④ 기름보일러 ⑦ 중앙난방(지역난방) ② 연탄보일러 ⑤ 가스보일러 ⑧ 전기장판 ③ 나무·석탄보일러 ⑥ 전기보일러 ⑨ 기타(적을 것: _____)

문 1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귀택에서 이용한 적이 있는 주거복지 관련 사업이 있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였습니까?

주거복지 관련 사업	이용경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영구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공공(국민)임대주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전세자금(융자)지원 (저소득·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저소득층 월세지원 (※ 지자체의 월세지원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근로자·서민)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기타(적을 것: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유의사항 >

-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 \* '기타'에는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부모임대주택 임차인지원, 고령자 임대주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 ㉢, ㉣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전부터 입주하여 2008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 ㉣의 경우는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동안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①있다'로 응답합니다.

## VII. 생활비

〈 유의사항 〉

- ※ 생활비 : **신규가구 생성이후** 가정생활을 위한 비용만 가입합니다.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합니다.**
- ※ 친인척, 이웃,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받는 각종 현물(장학금, 의료비, 각종 공과금 대납, 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도 **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 비용의 생활비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 ※ 할부 구매의 경우 **구입시점기준이며, 그 품목의 가격+12를 기일** 예) 2008년 10월에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할부(월 50만원)로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총가격을 12개월로 나눈 금액(100만원) 가입합니다. 따라서 2007년에 할부로 구입한 후 2008년에 월 50만원씩 할부금을 내는 경우는 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 **신규가구 생성이후 3/4 미만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있을 경우 이들의 지출은 총생활비에서 제외합니다.** 그 이유는 가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구분	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가정식비는?	월평균	천	백	십	원	만원	
문 1)	식료품비	문 1-1) 가정 식비	※ 가정에서 먹는 주식, 부식, 간식비용, 음주비용, 제사비용 ※ 자가소배(자기가 농사를 지어 먹는 것, 자기가 운영하는(혹은 고용된)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 등) 포함							만원
		문 1-2) 외 식비	※ 직장인의 중식비(무로 중식비 포함), 가족 및 가구원 외식비, 학교 급식비, 밖에서 먹는 술(음주) 비용, 복지관에서 무료식사 등							만원
문 2)	주거비(주택구입비 제외)	문 2-1) 월세	※ 돈이 없어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어도 '계약한 월세액'을 가입 ※ 전세 지원된 경우도 (단, 자기나 재배를 내는 경우 월평균 자체비용 가입)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제외							만원
		문 2-2) 주거관리비	※ 주택관리비 및 수선비, 아파트 등 관리비, 이사비, 복비, 정화조비 등							
문 3)		광 열수도비	※ 수도비, 전기료, 난방비(연탄, 등유, 경유, 도시가스, LPG 등)							만원
문 4)		가구사용요금비	※ 가구, 가정용기기(냉장고, 세탁기, 가스렌지 등),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조명기구, 화장지, 천구, 공구, 세탁청소용품 등), 청구 및 실내장식품, 가사서비스 비용(피출부, 청소비 등), 가전취급, 정수기 대여료 등 ※ 보육료(베이비시터, 놀이방) 포함(단, 유치원은 제외)							만원
문 5)		피복신발비	※ 의의 내의, 학생복(교복), 구두, 운동화 등 구매품 및 수선비, 세탁료 등							만원
문 6)		보건의료비	※ 입원비, 외래진료비, 치료진료비, 수술비(임플란트, 성형수술 등도 포함), 약값, 간병비, 산후조리비, 건강진단비, 건강보조식품, 보건의료용품비(안경,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등. 보건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가입							만원
문 7)	교육비	문 7-1) 공 교육비	※ 등록금, 납입금, 교재비, 운방구비, 보충수업비, 어학학습비, 수학여행비 등							만원
		문 7-2) 사 교육비	※ 학원비, 유치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							만원
문 8)		교양오락비	※ 신문, 서적, 잡지, 영화 및 공연관람, 교양오락용품 구입비(TV, 오디오, 유선방송, 피아노, 컴퓨터 등산용품, 낚시대, 골프채 등), 교양오락서비스(PC넷, 노래방, 운동강습료, 어학학습비, 단체관광비 등), 비디오(VCD) 대여료, TV수신료, 애견(강아지) 구입비, 화분 구입비 등							만원

문 9)	교통통신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교통·통신비? * 택시·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자동차 구입 및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전화·휴대폰 구입 및 이용요금, 인터넷 이용료, 대리운전비 등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0)	기타소비지출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기타소비지출은? * 당배, 이미용용품 구입 및 서비스화장품, 비누, 샴푸, 이·미용실, 욕욕료 등), 장신구(핸드백, 시계, 귀금속 등), 경조비, 교체비용, 종교관련(심혈조) 비용, 보장성보험료(저축성보험 제외), <b>관혼상비</b> , 용돈 등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1)	사적이전	문 11-1) 비동거가구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따로 사는 가구원(타지에서 공부하는 학생,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사는 배우자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현물 포함 * 자취비용, 생활잡비, 용돈 등(단, 등록금 등 교육비는 7.교육비에 기입)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1-2) 기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 자녀, 친지 등에게 보낸 월평균 송금보조금은? * 농사지에서 친인척에서 보낸 것(현금으로 환산) 포함 * 자녀의 결혼 등으로 집을 사준 경우(전세자금 포함)는 증여로 보아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부채에 대한 이자(예컨대, 아들 명의의 집에 대한 이자 내는 경우) 포함	부모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자녀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2)	세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세금은? *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갑근세, 재산세, 자동차세, 환경개선분담금, 주민세, 취득세 등의 신규가구 생성이후 납부한 총납세액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의 월로 나눈 값 (단, 법인세 등 사업용도의 세금은 제외함) * 본인 명의가 아닌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3)	사회보장부담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사회보장부담금은? * 가족 모두의 국민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월 합산액 * 본인부담의 보험료만 포함(사업장이나 제3자가 부담해주는 보험료는 제외) * <b>사보보험(암보험, 보장성보험 등) 제외</b> * 돈이 없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사회보험료도 포함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문 14)	총생활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지출한 월평균 총 생활비는? * <b>총생활비 = 1~13의 합계</b>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과, 주택부금상환, 월부, 외상 밀린 돈(이자 포함) 같은 금액 등 부채 감소를 위한 지출은 제외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 없음을 반드시 '0' 표시. 지출 소득의 경우 이하 동일

\*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예, 5천원 → 0.5).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예 11만5천원의 경우 12만원으로 기입

문 15)	사회복지서비스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장기요양과 바우치 이용에 따른 월평균 비용은? * 본인 가구가 부담한 금액만 기입. 돌 비용은 앞의 생활비에 포함되고 여기에도 포함되어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실시로 사실이나 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은 경우 본인 부담액 * 바우치 비용: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비만 아동건강 관리 서비스, 기타 바우치 서비스 등의 <b>바우치를</b> 이용하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 * 중목에, 노인 이면서 장애인인 것은 재공 사업을 중심으로 기입(예,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이면 노인에 기입)	장기요양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노인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장애인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아동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기타	월평균	천	백	십	단	만원

\* 없음을 반드시 '0' 표시. 천원 단위 이하는 소수점으로 표시. 단 1만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처리.

### VIII. 소득

문 1) 가구원의 경제 활동: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귀 가구 가구원 중 **만 15세 이상(1993.12.31.이전 출생자)이었던 모든 가구원의 경제 활동**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⑥의 활동 분류 중 **해당하는 경우 '1'로 표시**)  
 ※ 단, 2007.10.1~2007.12.31 사이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면 됩니다.

성명	가구원 번호	① 상용근로자		②임시·일용 근로자		③고용주·자영자 (농림축어업계의)		④ 농림축산업 경영주		⑤ 어업 경영주		⑥ 무급가족종사자, 가사 또는 육아, 학생, 기타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일한 개월수	해당 여부	해당 개월수
	1												
	2												
	3												
	4												
	5												
	6												
	7												
	8												
	9												
합계		명		명		명		명		명		명	
		문항 2로 가시오		문항 3으로 가시오		문항 4로 가시오		문항 5로 가시오		문항 6으로 가시오		문항 7로 가시오	

〈 유의사항 〉

- ※ 15세 미만의 경우 이름만 기입,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순에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 한 시점에 직업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여부에 모두 '1'로 표시(예, 공무원이면서 농사를 짓는 경우 상용근로자와 농림축산업 경영주에 모두 '1'로 표시하고 문항 2와 문항 4에서 소득 파악).
- ※ 개월수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일한(해당) 개월수 기입(예, 전년(2007)부터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3월에 퇴직하여 3개월 동안 원 후 7월에 상용근로자로 취업하여 2개월 일한 경우 '상용근로자 일한 개월수'는 5개월임, 농업의 경우 12개월로 기입.)
- ※ 자영업, 농림축산업, 어업 등에 종사하는 가구 중 2명 이상의 가구원이 하나의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는 그 중 1명만 고용주·자영자, 농림축산업 경영주, 어업 경영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⑥무급가족종사자로 표시함.

※ 주원활동구분

① 상 용 근 로 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등. 일반직장인, 공무원, 법인경영자(월급 사장)등을 포함함.
②임시·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란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사람으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예컨대,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 등을 말함. 일용근로자란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면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을 말함.
③ 고용주·자영자 :	(농림축어업계의) 1명 이상의 유급종업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고용주와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과 함께 일을 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 및 경영하는 경우.
④ 농 림 축 산 업	10a(약 300평) 이상의 경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거나,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단, 경 영 주 : 판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2008. 12. 31. 시점에 100만원 이상의 가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
⑤ 어 업 경 영 주 :	어업에 종사하면서 연간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 동식물의 포획·채취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사람.
⑥ 무급 가족 종사자:	일정한 보수 없이 자기 가족(동일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장 혹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가사 또는 육아:	자기의 시간 대부분을 자기집에서 가사업무를 하거나 가구원의 간병을 수행한 경우 또는 미취학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집에 있는 경우임.
학 생: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로 재학생도 포함함. (※ 직장인이 야간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 주원 활동은 해당 근로활동(위의 ①~⑤)으로 표시함)
기 타:	실업자,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등

문 2)	<p>상용근로자: <b>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b> 상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b>월평균 급여(월천정수전 총급여의 월평균)</b>는 얼마였습니까?</p> <p>※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법인 경영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로 분류함.</p> <p>※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이 상용근로인 경우 가구원 번호 1번과 3번에 이름을 기입하고 총급여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이하 동일함).</p> <p>→ <b>상용근로소득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b></p>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3)	<p>임시·일용근로자</p> <p>※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보조기입란 3-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일한 횟수(출근일수)와 1회(1일)당 지급되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일한횟수 (A)	1회당(일당) 보수 (B)						
	<p>※ 월별로 일한 횟(일)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월별로 일한 횟(일)수를 확인한 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전체 일한 횟(일)수를 생성 개월수로 나눈 것을 월평균 일한 횟(일)수로 기재함.          예) 2008년 5월 생성가구의 가구원 A가 5~10월까지는 월 20회, 11~12월까지는 월 10회 일하였다면, 17.5회(140회/8개월)가 되어 반올림하여 18회로 기재</p> <p>※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 소득 포함</p>	1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2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4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5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6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7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8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9		백만	십만	일만	일	천원				

3-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임시·일용근로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벌어들인 월평균 급여는 얼마였습니까?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급여액 (A×B)						
	<p>※ 총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경상적으로 매월 지급된 수당,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분, 판공비, 복지카드, 회사에서 내준 자동차 유지비 및 휴대폰 요금, 무료중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임.</p> <p>※ 총급여는 소득세, 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세금 및 각종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p> <p>※ 신규가구는 원가구와 달리 총급여의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p> <p>※ 순서는 <b>반드시</b>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p> <p>※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이 임시·일용인 경우 가구원 번호 2번과 3번에 이름, 일한 횟수, 1회당 보수를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b>임시·일용 외 다른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b></p>	1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일억	천	백	십	만			

문 4)	<p><b>고용주 및 자영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li> <li>※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li> <li>(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li> </ul>
------	---

<p><b>[보조기입란 4-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얼마였습니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동일 매장 및 사업점을 운영할 경우, 대표자 1명만 고용주 및 자영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서는 월급을 받으면 근로자로, 월급을 받지 않으면 무급가족중시자로 분류함.</li> <li>※ 일한 개월 수, 월간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파악</li> <li>※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매출액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li> </ul>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매출액 (A)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p><b>[보조기입란 4-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고용주 혹은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이 매장 및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비에는 재료비, 직원 인건비 및 직원 사회보험료, 법인세, 복리후생비, 공장 또는 가게 월임대료, 차량유지비, 광고비, 소모품비용 등이 포함됨.</li> <li>※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총 비용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li> </ul>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총비용 (B)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p><b>4-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소득은 월평균 총매출액에서 월평균 총비용을 감하여 구함.</li> <li>※ 순소득은 소득세, <b>본인과 가족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부담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임.</b></li> <li>※ 순소득에는 <b>자가소비, 고용주와 사업주가 용돈 및 개인경비로 쓰는 비용도 포함됨.</b></li> <li>※ 순소득이 마이너스일 경우, 숫자 앞 칸에 “-” 표(마이너스 표시)를 하고 금액을 기입함.</li> <li>※ 순서는 반드시 가구일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li> <li>※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li> </ul>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순소득 (A-B)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p>4-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고용주 및 자영자였던 가구원 각각의 생성시점 이후 월평균 전입소득은 얼마였습니까?</p> <p>※ 전입소득은 총수입중에서 가구로 가지고 오는 금액이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1,500만원을 벌어 1,0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5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500만원을 신규가구 생성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 값을 기입 ※ 그러므로 전입소득은 4-1의 순소득과 다를 수 있다. 전입소득은 음수(-)가 없음. ※ 순소득이 음수(-)인 경우도 전입소득은 있을 수 있음(즉, 0이 아닐 수 있음).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반사항을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예: 문 1)에서 가구원 번호 3번이 고용주 및 자영자인 경우 가구원 번호 3번에 이름과 순소득을 파악 기입한 후 나머지 가구원은 빈 칸으로 둬.</p> <p>→ 고용주 및 자영자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p>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전입소득						
		1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2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3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4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5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6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7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8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9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5)	<p>농림축산업 경영주</p> <p>※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 ~ 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p>
------	---

5-1.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귀 가구가 경작하고 있는(소득이 발생하는) 경지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소작하는 것은 포함하고, 소작을 준 것은 제외함.)	(참고) 1평≒3.3 m <sup>2</sup>
① 논	총 <input type="text"/> m <sup>2</sup>
② 밭	총 <input type="text"/> m <sup>2</sup>
③ 임야(산(유실수, 산나물 채취 등)	총 <input type="text"/> m <sup>2</sup>
※ 없음 0	④ 기타(특용농작물, 비닐하우스 등) 총 <input type="text"/> m <sup>2</sup>

**[보조기입란 5-a] 신규기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농림·축산물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가구원 1인 이상이 농림축산경영주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 소비액을 기입함.

※ 보조기입란 순서대로 기입한 후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을 계산함.

※ 판매량 = 판매량 + 다음 농사를 위한 종자 량 + 임차료(소적료) 및 임금으로 지불한 수확량

※ 이전소비액은 농축산물을 가구원이 아닌 자녀, 형제, 부모, 친지 등에게 보낸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임.

※ 판매수입 = 판매량 × 판매단가 ÷ 10, 자가소비액 = 자가소비량 × 판매단가 ÷ 10, 이전소비액 = 이전소비량 × 판매단가 ÷ 10 (단위에 주의할 것)

※ 축산업에서 총 수확량은 가족의 총보유량임.

구분	예시	종류	총 수확량 (a+b+c)	판매량 (종자, 소적료 포함) (a)	자가 소비량 (b)	이전 소비량 (c)	판매단가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 소비액 (만원) (B=b*p÷10)	이전 소비액 (만원) (C=c*p÷10)
곡류	미국 : 메밀, 햅쌀, 찰벼, 찰쌀 곡류 : 미국을 제외한 맥류, 잡곡, 콩류, 감자고구마등 서류 등									
채소 과일류	봄 채소 : 봄동, 미나리, 냉이, 달래, 오이, 쪽파, 파, 당근, 양파, 호박, 배추, 양배추, 상추, 시금치, 양송이, 아욱, 등 과일 : 사과, 딸기, 토마토, 영두 등									
	여름 채소 : 셀러리, 양파, 부추, 감자, 풋고추, 마늘, 무, 오이, 가지, 호박, 배추, 양배추, 생강, 깻잎, 열무, 옥수수, 피망 등 과일 : 토마토, 참외, 수박, 포도, 복숭아, 자두 등									
	가을 채소 : 고구마, 붉은고추, 당근, 양파, 파, 무, 콩, 배추, 시금치, 호박 등 과일 : 배, 사과, 감, 대추, 유자, 키위, 은행 등									
	겨울 채소 : 우엉, 연근, 아욱, 양파, 봄동, 시금치 등 과일 : 사과, 귤 등									
기타 작물	특용작물 : 참깨, 들깨, 섬유작물, 인삼, 달래, 버섯, 기타약용작물 등 기타농작물 : 화훼, 봉인, 과수묘, 뽕묘, 묘목 등 임산물 : 밤, 잣, 호도, 도토리, 자연산 버섯이나 나물, 견과 등									
총 계										
축산업	소, 젓소, 우유, 돼지, 닭, 달걀, 개, 젓산양, 염소, 사슴, 토끼, 오리, 꿀벌, 기타 가축(면양 등)									
총 계										

**5-2. 신규기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월평균 자가소비액, 월평균 이전소비액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 계 (A + B + C)			
월	별	평균	만원	월	별	평균	만원	월	별	평균	만원	월	별	평균	만원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십	억	천	백

※ 재고량은 판매수입에 포함하여 계산  
 ※ 보조기입란 5-a의 합계를 기입. 농지를 임대해 준 경우 문항 8의 재산소득에 기입  
 ※ 없음 0

5-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농업관련 월평균 기타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 농업잡수입에는 농업소득외해보상금, 폐농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 없음 0)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보조기입란 5-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 가족사육에 소요된(농업경영비)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농림축산경영주인 가구원이 1명 이상인 경우, 농림축산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기입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품목별 비용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재료비	종자및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소동물비, 사료비, 기타양축비, 양잠비, 기타재료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노무비	지불임금(남자, 여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경비	영농광열비(유류대 포함), 수선비, 농기구비, 수리비, 임차료, 농작업 위탁수수료, 농업부문 조세부담금, 농업부문 이자비용, 감가상각비(농기계 할부금 포함), 영농접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판매 및 관리비	도정료, 농업보험료, 농산물판매수수료, 농산물판매용 자재비, 생산관리비, 기타지출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 고가(高價)의 농기계를 일시불로 구입한 경우 **사용가능 개월수(내구 개월수)를 절문**하여 그 사용가능 개월수로 나누어서 기입함.  
예) 트랙터를 일시불 1200만원에 구입하여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경우 10만원(=1200만원÷12개월)으로 기재  
※ 영농광열비는 배·고추 등 농작을 말리기, 비닐하우스 조영 및 난방 등.  
※ 수리비는 논밭에 물을 대는 비용임.

5-4.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농·임산물 생산과 가족사육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5-5. 농림축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농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가구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농림축산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 농림 축산업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원

문 6)	어업 경영주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

[보조기입란 6-a]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 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  
※ 용어 설명은 5-a와 동일함.

분류	예 시	종류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판매단가	월평균	월평균	월평균
			판매량 (a)	자가소비량 (b)	이전소비량 (c)	(천원) (p)	판매수입 (만원) (A=a*p÷10)	자가소비액 (만원) (B=b*p÷10)	이전소비액 (만원) (C=c*p÷10)
어로 어업	어선, 어구, 어망 등을 사용하여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포획·채취하는 것 (※ 해녀의 채취활동 포함)								
양식 어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기르는 것								
수산 가공업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해조류 등을 가공하는 것								
총계									

6-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출하한 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액, 이전소비액의 월평균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판매수입 (A)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자가소비액 (B)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이전소비액 (C)				합계 (A+B+C)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천

\* 없음 0

6-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어업관련 월평균 잡수입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잡수입 (D)					
* 어업잡수입에는 어업소득피해보상금, 어업용폐자재 판매대금 등이 포함됨.										월	단	원	원		
										십억	억	천	백	십	만

[보조기입란 6-b]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세부항목의 월평균 지출															
* 가구에서 가구원이 어업경영주에 1명 이상 해당하는 경우 어업에 소요된 가구전체의 비용을 합산하여 계산함.															
지출항목	예 시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지출액							
어로지출	미끼구입비, 얼음구입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틸리티,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어선 및 대어구 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양식지출	어미구입 및 종묘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낚자 및 여자 임금, 전기료, 연료 및 유틸리티, 수선유지비, 토지 및 시설임차료, 용기대, 단순가공비, 보관비 등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수산가공지출	자재및원료비, 지불임금, 광열비, 수선유지비, 수산가공수수료, 기타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6-3.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어업활동에 소요된 월평균 비용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비용 (E)					
										월	단	원	원		
										십억	억	천	백	십	만

6-4. 수산물의 자가소비액, 판매액, 어업잡수입, 총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귀 가구의 월평균 어업 순소득은 얼마였습니까?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까지 월평균 순소득 (A+B+C+D-E)					
→ 어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으로 가시오.										월	단	원	원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7) 기타 근로소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위에 응답한 소득 외에 다른 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총 얼마였습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기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현재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 문1) ~ 문6)에서 응답한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 * 순서는 반드시 가구원번호를 기재했던 순서대로 기록함. *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에게 질문하세요.	성명	가구원 번호	월평균 기타 근로 소득													
		1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2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3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4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5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6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7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8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9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월	단	원	원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세부 항목	금 액						
문 8)	재 산 소 득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얻은 재산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 월평균액을 기입하고, 일시금으로 들어오는 경우 일시금 금액을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눔 예) 매월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배당금으로 100만원을 받는 경우: 신규생성기간이 5개월이라면 10÷20만원=30만원	① 이자(은행, 사채), 배당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② 임대료(월세, 토지임대료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③ 기 타(자격증 대여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문 9)	사 회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받은 사회보험의 형태와 월평균 소득액은? ※ 일시불은 제외	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②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③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문 10)	민 간 보 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받은 민간보험사에서 받은 월평균 개인연금액은? ① 개인연금(※ 일시불은 제외)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문 11)	기 정 부 보 조 금 타 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정부(중 사무소)로부터 받은 보조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제외)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4면 문항에 기입 ※ 현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학비, 보육료 등) 이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기입함. ※ ⑥, ⑦의 경우 농림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포함 ※ 기타 정부보조금으로 보기 외에 급식비 지원, 문구대, 수련회비, 정부할인보조금(전기료, 전화비, 인터넷, 장애인 LPG 등), 노인위생비, 지원사업, 직업훈련수당, 교통안전공단지원금 등이 있음. 이들은 기타에 포함. ※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①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부양수당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② 기초노령연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③ 노인교통비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④ 모부자가정수당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⑤ 가정위탁금 또는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⑥ 영유아 보육료지원(농림부 지원 포함)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⑦ 학비지원(농림부 지원)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⑧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조금(보훈연금 제외)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⑨ 농업업 정부보조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⑩ 유희환급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⑪ 긴급복지지원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⑫ 바우처 지원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⑬ 기타( )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단	

문 12)	기 타 소 득	이 외에 <b>신규가구생성 이후 2008년 12월까지</b> 발생한 기타소득의 형태와 월평균 금액은?  ※ 기타소득은 일시금이므로 신규생성기간으로 나누어 기입함. ※ 퇴직금의 경우 목돈으로 받는 경우 여기서 파악, 월급에 포함되어 받는 경우 상용 또는 임시 근로 소득으로 파악	① 증여·상속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② 경조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③ 보상금(사고보상금, 이주민주거대책비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④ 사고 및 질병 보험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⑤ 퇴직금, 사회보험 일시금, 개인연금 일시금, 보장성 보험 해약금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⑥ 동산·부동산 매매차익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⑦ 기타(복권/경품당첨금, 상품권, 갯돈 등)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 없음 0

※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다음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신규가구는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것에 유의함.  
 ※ 신규가구의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생성시점~2008년 12월까지 소득) ÷ 신규생성기간(개월))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한해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함)

				금 액					
문 13)	부모나 자녀로부터의 <b>보조금</b> (현금 및 현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의 월평균 금액은?  ※ 분가이후 주택구입용과 결혼자금 제외 ※ 일회성 보육대가 포함, 단, 월급형식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기입 ※ 부모 자녀의 경우 가구주 기준 ※ 신규가구에서 분리되었거나 새로 들어온 가구원 중, 신규가구 '생성시점~2007.12' 기간 중 3/4 미만 동안 생계를 같이한 사람의 소득은 기타에 기입	부모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자녀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기타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민간보조금 (현금 및 현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친척·친지, 친구나 이웃, 복지관, 종교·사회단체(학교 장학금 포함), 회사(자녀학자금보조 포함) 등 민간부문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현금환산액) 보조금의 월평균 금액은?  ※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로부터 받은 현금과 현물 제외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문 14)	국민기초생활여부 보장급 수령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정부(동사무소)로부터 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기구의 수급개월수와 월평균 금액(현금급여)은?  ※ 동사무소에서 파악하십시오. ※ 쌀값 포함(일부 동사무소에서는 쌀값을 공제하고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 수급개월수는 신규 가구생성이후 급여를 받은 개월수를 적고, 월평균 급여액을 기입.(예,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월 2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5월에 급여 중지 되었다면, 수급개월 수에는 05, 금액에는 20만원 기입)	총 수급 개월수						
			개월	월평균	만원	천	백	십	원

\* 없음 0

##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 귀하 가구의 부채 및 이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 12. 31기준,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함.)

		세부항목	금액							
문 1)	부채 채태	2008.12.31 기준으로 부채의 형태별 부채액(명의기준)은 얼마입니까?  ※ 명의기준 ※ 밀린 월세, 교통안전공단지원대부금 등은 기타 부채에 포함. ※ 카드 할부구매는 ③ 카드빚에, 현금 할부 구매는 ⑥ 기타부채에 포함. ※ 주거부채, 영농부채도 파악함. ※ 사회보장 연체금은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 친인척에게 돈을 빌린 경우, 이자가 있으면 ② 일반사채에, 이자가 없으면(무이자) ⑥ 기타부채에 기입함.	①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일반사채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카드빚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④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⑤ 외상, 미리탄 계돈 ※ 미리 탄 계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⑥ 기타부채( )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2)	이자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까지 부채에 대해 지출한 이자는 월평균 총 얼마였습니까?  ※ 명의기준 ※ 신규가구의 월평균 이자 계산방법: ((생선시점~2008년 12월까지의 월평균 이자) 연체하는 경우 0	① 주거관련 부채의 이자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기타이자 (주거이자 제외)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 없음 0

※ 귀하 가구의 주관적 최저생계비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월평균 기준)

		금액						
문 3)	귀 가구가 1달 동안 '근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금으로 지출되는 비용 + 자기소비액 + 현물로 지원받이 생활하는 금액	월평균	십억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만		

## X. 재산

※ 귀 가구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 12. 31 기준, 명의 기준으로 조사하며, 가구원명의의 사업장(가계)도 포함된다.)

		세부항목	금액						
문 1)	소부동산 유산	2008.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소유부동산의 유형별 가액(현시가기준)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주택외 건물(가족명의로의 사업장(가계)·창고·상가·콘도·별장·오피스텔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③ 토지(택지, 논, 밭, 임야 등), 양식장, 기타 부동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2)	전부동산 유산	2008.12.31 기준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점유부동산의 유형별 가액은?  ※ 거주하고 있는 집은 VI 주거에서 파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제외.	① 가계, 사업장 등의 전세보증금 준 것, 비동거가구원의 전세보증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② 기타(권리금, 사업설비, 공장가계, 가계물건, 비닐하우스시설, 양식장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문 3)	금융자산	2008.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유형별 가격은? ※ 가구원 전부 파악	① 예금(청약예금, 정기예금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적금(정기적금, 연금형 적금, 종신보험,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주식·채권·펀드(적립식, 거치식)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타기 전 부은 계돈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⑤ 기타(남에게 빌려준 돈, 아파트 중도금(계약금) 부은 것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4)	농 기계	2008.12.31 기준으로 보유하고 계신 농기계의 유형별 가격은? ※ 기타에는 살포기, 이앙기, 미증기(도정기), 보행관리기, 로타리 등이 포함됨.	① 동력탈곡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경운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콤팩트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트랙터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⑤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5)	농 축산물	2008.12.31 기준으로 (판매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형별 가격은? ※ 애원용 및 식용 가축 제외	① 소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돼지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닭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계고농산물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⑤ 기타( ) ※ 유실수 포함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문 6)	자 동 차	2008.12.31 기준으로 소유하고 계신 <b>비영업용</b> 자동차의 대수와 가격은? ※ 자동차를 세는 기준은 명의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명의로 아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그 가구의 자동차가 아니며, 가구원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현재 타고 있지 않아도 그 자동차는 가구소유의 자동차입니다. ※ 자동차 모델, 연식별 가격은 별책을 참조하여 원산해 주십시오.	보유대수	단위						만원
				대						
문 7)	기 재 타 산	2008.12.31 기준으로 위의 재산 이외의 소유하고 계신 재산의 유형별 가격은?	① 운동클럽 등의 회원권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② <b>영업용 자동차</b> ·자동차 번호 값, 오토바이·선박, 굴삭기, 포크레인, 트럭 등 운송 및 생계수단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③ 귀금속, 골동품, 상품권 등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④ 기타( )	십억	억	천	백	십	만	만원

\* 없음 0



## XI. 생활여건

문 1)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있다	없다	비해당
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공과금(사회보험료와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전기세, 전화세, 수도세 중 하나 이상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 등이 끊긴 적이 있다	①	②	
라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자녀(대학생 포함)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을 하지 못한 적이 있다	①	②	
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적이 있다	①	②	
사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구원 중에 신용불량자인 사람이 있었다	①	②	
아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 유의사항 〉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주거 점유형태가 '자기' 혹은 '무상'인 경우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미취학', '대학원생(석·박사)'인 경우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있다'에 응답합니다.
- \* ㉣ 문항의 경우 신규가구 생성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전료 면을 받는 가구는 '㉢비해당'에 응답합니다.

문 2)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귀댁은 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2008년 1월 1일 이전(2007.10.1~12.31)에 분가한 신규가구의 경우 2008년 경험을 파악하면 됩니다.)**

구 분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거부
가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도 더 살 돈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나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균형 잡힌 식사(다양한 식품을 충분한 양으로)</b> 를 할 수가 없었다	①	②	③	④

구 분	그렇다	아니다	모름/거부
다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귀하 가구 내 성인들이 <b>식사의 양을 줄이거나 식사를 거른 적이</b> 있습니까? ① <b>아니로</b> 같겠 ② <b>아니로</b> 같겠 ③ <b>아니로</b> 같겠	①	②	③
라 (㉢에서 ①번 응답자만) 얼마나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몇 개월 동안(매월은 아님) ③ 1-2개월 동안			
마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충분히 살 수 없어서 <b>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양보다 적게 드신 적이</b> 있습니까?	①	②	③
바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b>배가 고프는데도 먹지 못한 적이</b> 있습니까?	①	②	③



문 2) (모든 응답자) 귀댁은 신규가구생성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가구생성 이후 2008년 12월 말까지 받은 적이 없다 → XII-1.근로장려세제'로 갈 것
- ② 가구생성 이후 2008년 12월 말까지 받았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3)으로 갈 것
- ③ 가구생성 이후 받아오다가 2008년 말 이전에 더 이상 받지 않게 되었다 → 문2-1), 문2-2), 문2-3) 응답 후 문 4)로 갈 것

문 2-1)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신규가구 생성 이후 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input type="text"/>	월			
두 번째	2	0	0	8	년	<input type="text"/>	월	~	2	0	0	8	년	<input type="text"/>	월
세 번째	2	0	0	8	년	<input type="text"/>	월	~	2	0	0	8	년	<input type="text"/>	월

< 유의사항 >

- \* 2008년 동안 여러 차례 수급과 탈퇴를 반복하였다면 그 기간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 \* 원가구원이 분가를 하여 생성된 신규가구가 생성 이전부터 수급을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 기간은 가구생성시점부터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2-2)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귀댁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은 하고 있었지만 수입이 줄어서
- ② 소득이 발생하였던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 ③ 도와주던 친인척의 경제적 형편이 나빠져서(혹은 도움이 끊겨서)
- ④ 이혼, 가구원의 분가 등으로 인해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빠져나가서
- ⑤ 소득이 있는 가구원이 사망해서
- ⑥ 소득은 동일하나 가구원이 증가해서
- ⑦ 의료비 지출이 커져서
- ⑧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서
- ⑨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 2008년 들어 수급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가장 마지막에 수급한 이유를 응답해 주십시오.

문 2-3) (문2)의 ②, ③번 응답자만)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적절하다
- ② 적절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족하다
- ⑤ 매우 부족하다

< 유의사항 >

- \* 2008년 들어 수급과 탈퇴를 반복한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3) (문2)의 ②번 응답자만) 귀댁은 앞으로 얼마 후에 수급대상 가구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① 6개월 이내
- ② 6개월 후 ~ 1년 이내
- ③ 1년 후 ~ 3년 이내
- ④ 3년 후
- ⑤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 ⑥ 잘 모르겠다.



###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복지서비스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 구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생계비(혹은 생계보조수당)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료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직업훈련, 취업상담, 취업알선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약물(알코올)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용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모부자가정지원 등의 생계비 보조를 목적으로 보조하는 현금을 말한다(보육료 지원비 등은 포함 안됨). 쌀이나 식료품 등은 생계비 지원에 해당하지 않고 ㉢의 물품지원에 채크하도록 한다.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1,2종,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화서비스 모두 포함). 단,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 상담: 성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상담 및 심리재활서비스를 말한다.
- ㉨ 아동을 위한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아동의 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말한다.

다음은 바우처서비스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바우처란 어떤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때 일종의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자바우처는 현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문 2)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문2-1) 응답 후, 문3)으로 갈 것**
- ② 아니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기타 바우처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 지침서 확인)	①	②	종류(적용 것)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유의사항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65세 이상 노인 중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가사 활동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보조 서비스를 말한다.
-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저소득 가정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노인, 장애인과 중증질환자에게 제공하는 무료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 ㉤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비만아동건강 관리서비스: 경도 이상 비만 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 기타 바우처서비스: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가족기능회복서비스, 경제활동지원서비스, 주거환경지원서비스, 학습비전형성 서비스, 현장체험서비스, 취약계층 사회참여 서비스 등이 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 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생활이 힘든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자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목욕, 배설 등) 또는 가사지원(세탁, 청소 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문 3)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습니까  
(단, 3등급 이상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① 예 → **문3-1), 문3-2) 응답 후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② 아니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으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귀댁이 지불하신 금액은 월단위 얼마였습니까?**

※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서비스 이용료(월단위)를 말함.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되지 않음.

월단위 금액				
월단위	백만	십만	일만	천 원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 동안 급여(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떤 종류의 급여를 받으셨습니까?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급여(서비스) 유형	이용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가 방문요양 (목욕, 옷입히기, 취사, 주변정돈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나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제공)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다 방문간호 (간호사 방문 간호, 요양상담, 구강위생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라 주 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마 단기보호 (단기보호시설 보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바 기타재가급여 (휠체어, 침대, 이동목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사 시설급여 (2008년 중 장기요양보호시설 이용)	①	②	①	②	③	④	⑤
아 특별현금급여 (특별한 사유로 가족이 보살피는 경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65세 이상 어르신(노인)이 있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해당하지 않는 가구는 XV.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의료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 무료 급식(동사무소나 사회복지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물품지원(식품품, 의류, 가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식사(혹은 밑반찬) 배달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주·야간보호 서비스 (일정시간 복지관 등에서 보호해주는 것)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사회교육 서비스(한글교실, 생활요가, 노래교실 등, 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용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 의료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의한 의료급여 1,2종, 사회복지관련기관 및 종교(시민)단체에서 의료비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현금, 현물, 재활서비스 모두 포함). 단, 의료비 지출을 위한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지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노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만0~17세 이하 아동(자녀)를 둔 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X표.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아동(자녀)는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 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은 모두 해당됩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국공립(사회복지법인)보육시설 (주간보호 및 특별활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아동상담, 집단 프로그램 (성격, 정서문제, 독서지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방과 후 지도(공부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무료급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학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예체능 교실(컴퓨터, 미술, 음악, 체육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문화활동(문화유산답사, 연극, 영화, 견학, 방학 중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p>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p> <p>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p> <p>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p> </div> <div style="width: 48%;"> <p>④ 보건소</p> <p>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p> <p>⑥ 학교</p> <p>⑦ 기타(적용 것 : _____)</p> </div> </div>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인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문 3) 다음은 공적인 학교교육 이외의 학원, 과외, 학습지, 유아원 등 사교육과 보육기관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택의 아동(자녀) □□□는 <보기>와 같은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한 후 질문합니다. 사교육과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자녀)은 이용여부에 '㉔ 안한다'로 기재한 후 다른 아동에 대해 질문합니다.)
- 문 4) 귀택의 각각의 아동(자녀)이 이용하는 사교육·보육기관을 아래의 <보기>에서 주로 이용하는 순서대로 5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 문 5) 귀택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사교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사교육기관보다 더 많은 사교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사교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 문 6) 귀택에서 각각의 아동(자녀)에게 든 보육비는 한 달 평균 얼마입니까? 교재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부대비용까지 포함하여 다음의 응답지에 아동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 한 아동(자녀)이 위 문4)에서 응답한 보육기관보다 더 많은 보육기관(6개 이상 이용자)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이용하고 있는 모든 보육기관의 이용비용과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 부대비용까지를 합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모든 비용은 가구에서 실제 지출한 실비만 포함 시킵니다
-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없음= 0000

구분	< 보 기 >	
보육시설 (만 6세 미만)	① 국공립(국립·시립·구립 등)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② 민간어린이집 ③ 사설놀이방(개인가정에서 운영하는 놀이방) ⑦ 그 외 보육시설(방과후 학교 조등보육프로그램,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반일제 이상의 학원, 선교원, 문화센터 등)	④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설치한 보육시설) ⑤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⑥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민간학원 및 사교육	⑦ 학원 ⑧ 개인·그룹과외	⑨ 학습지(온라인 학습지 포함)
학교 및 사회복지 관련기관	⑩ 방과후 교내보충학습(만6세 이상으로 학교내에서 자발적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충학습을 하는 경우) ⑪ 방과후 교실(만6세 이상으로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관, 유치원 등에서 보육이 아닌 특기 지도, 보충학습 등을 하는 것)	
기타	⑫ 친·인척 ⑬ 이웃 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 돌보미(지침서 확인) ⑮ 민간 아이 돌보미 ⑯ 기타(적용 것 : _____) (* 친인척과 이웃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문3)~문6) 응답지

아래 응답지에 모든 아동(자녀)을 가구원 번호에 따라 차례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가구원번호 및 이름은 2쪽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아동(자녀)의 가구원 번호	아동(자녀) 가구원의 이름	문3) 이용여부		문4) 이용기관	문5)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부대비용 포함)	문6) 한 달 평균 보육비 (부대비용 포함)
		한다	안한다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①	②	A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월평균 <input type="text"/> 단원
				B		
				C		
				D		
				E		

##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다음은 가구에 장애인(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해 주십시오. 없다면 다음 페이지의 XVII.가족에 대한 질문으로 가십시오. 조사대상 기간은 신규가구 생성시점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다음 각각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용하셨다면 제공기관은 어디이며, 이용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이용경험이 없는 경우 경험여부에 '없다'로 응답한 후 다음 서비스 항목에 대해 질문합니다.)

서비스 유형	경험여부			이용만족도				
	있다	없다	서비스 제공기관 ※ 참조	매우 불만족	다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다체로 만족	매우 만족
㉑ 장애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㉒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㉓ 장애인 자립지원 서비스(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㉔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장애인보장구 할인 포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㉕ 의료 재활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㉖ 가정봉사 서비스(청소, 세탁, 식사준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㉗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㉘ 이동편의 서비스(병원 동행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㉙ 주택관련 서비스(집수리, 도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㉚ 가족상담 및 심리재활 서비스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㉛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㉜ 장애아동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㉝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 학습지원 서비스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㉞ 자동차 관련 지원(지침서 확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b>※ 참조 : 서비스 제공기관</b>	① 공공기관(동사무소, 구청, 노동부, 보훈처 등) ② 사회복지관련기관 (복지관, 가정폭력상담소,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등) ③ 종교단체 혹은 시민단체			④ 보건소 ⑤ 병원(국공립병원 및 민간병원 등) ⑥ 학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유의사항 〉

- 위 질문에서 묻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부문에서 일부 보조해 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 가장 주되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하나만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

- ㉔ 이동편의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이동수단(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하거나, 간병인 등이 이동 동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 장애인이 혼자 일반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나, 교통수당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할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 ㉙ 주택 관련 서비스: 공공기관에서 제공(일부 보조)하거나, 사회복지관련기관, 종교(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집수리, 도배 등의 주거시설 개선 및 주택 개조를 말한다.

## XVII. 가족

문 1)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귀댁에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우선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①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br>② 경제적 어려움(부채 또는 카드 빚 문제)<br>③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br>④ 자녀교육 혹은 행동<br>⑤ 가구원의 건강<br>⑥ 가구원의 알코올 | ⑦ 가족 내 폭력<br>⑧ 가구원간 관계<br>⑨ 가구원의 가솔<br>⑩ 주거관련 문제<br>⑪ 기타(적을 것 : _____) |
|---|--|

문 2) 다음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어떻게 지내고 논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가구생성 이후부터 2008년 1년간** 귀댁은 어떠하였습니까?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 '비해당'으로 표시하고 '추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십시오. 비가구원인 직계혈족 1촌이 있는 1인 가구(독신가구)이지만 지난 1년간 상호 교류가 전혀 없었다면, '비해당'으로 표시합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비해당
㉠ 우리 가정에서는 의견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물건 등을 집어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항상 침착하게 문제를 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자주 서로를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 가족원들이 가끔 서로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은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위기의 여파가 실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입니다.  
 (질문) 신규가구 생성이후 2009년 4월 15일까지 귀댁의 가구원은 **경제위기로 인한 회사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권고사직** 혹은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 2007년 10월~12월에 생성된 신규가구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 15일까지의 경험을 파악합니다.

가구원 번호	문 1) 실직 경험		문 2) 실직 시기				문 3) 실직 이후 상태(2009년 4월 15일 기준)		
	있다	없다	년	월	재취업	구직활동중	구직활동포기		
1	①	②	2	0	0	①	②	③	
2	①	②	2	0	0	①	②	③	
3	①	②	2	0	0	①	②	③	
4	①	②	2	0	0	①	②	③	
5	①	②	2	0	0	①	②	③	
6	①	②	2	0	0	①	②	③	
7	①	②	2	0	0	①	②	③	
8	①	②	2	0	0	①	②	③	
9	①	②	2	0	0	①	②	③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부록 3



승인번호  
제 33109 호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가구원용(유형3)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택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61, 8358, 8273, 8352, 830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당가구원		
가구패널ID	가구생성자수	가구분리일련번호	가구원진입자수	개인패널ID (인포시트상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대리응답여부	① 예	☐ 사유 (번호기재)	*대리응답사유코드	①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전투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별(사실상 장모양)	성명	가구원번호	
				⑨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 ⑩ 기타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_____ 구·시·군 _____ 동·읍·면 _____		
	상세주소	_____동·리 _____번지 _____호 (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 _____ ) _____ - _____					
조사표원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① 비해당(원표) ② 늦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문항 미완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⑥ 조사거부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⑦ 뇌병변장애 ⑧ 정신지체, 발달장애 1,2급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⑨ 사망 ⑩ 기타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 사유(번호기재):	지도원	(인)	

##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08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② 공무원연금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④ 군인연금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⑥ 보훈연금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로 갈 것**  
 ⑥ 보훈연금 → **문1-6)로 갈 것**

< 유의사항 >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② 장애연금  
 ③ 유족연금  
 ④ 분할연금  
 ⑤ 사망일시금  
 ⑥ 반환일시금  
 ⑦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3)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r> </table>						만원				
연금	연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r> </table> 개월			연간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td> </tr> </table>						만원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퇴직급여  
 ② 유족급여  
 ③ 재해보상급여  
 ④ 퇴직수당  
 ⑤ 부조급여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문 1-6) (문1-1)의 ⑥ ⑦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보험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가 2008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②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 ④ 현물급여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위탁훈련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가 2008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 ① 요양급여
- ② 휴업급여
- ③ 장해급여-연금
- ④ 장해급여-일시금
- ⑤ 유족급여-연금
- ⑥ 유족급여-일시금
- ⑦ 기타 현금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간병급여 등)
- ⑧ 잘 모르겠다

문 3-2) 귀하가 2008년 1년간 본인이 직접 받은 산재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연금 연간  개월 연간 총액  만원

**개 인 연 금**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8년 1년 동안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가입했던 개인연금 급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8년 1년 동안 받은 개인연금 급여액은 총 얼마입니까

일시금 총액  만원

연금 연간  개월 연간 총액  만원

**퇴직금 및 퇴직보험**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8년 1년 동안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을 받으셨습니까

(※ 퇴직금 중간정산금, 퇴직보험일시금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문5-1)로 갈 것**
- ② 아니다 → **B. 근로로 갈 것**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8년 1년 동안 받은 퇴직금 또는 퇴직보험금은 얼마입니까

(※ 퇴직금과 퇴직보험금을 동시에 받으셨을 경우는 합계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만원

연금 연간  개월 연간 총액  만원

**B. 근로**

문 1) 귀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근로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임금근로자 → 문2)~문6)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② 자영업, 고용주 → 문2)~문5) 응답한 후 문9)로 갈 것
- ③ 무급 가족 종사자 \_\_\_\_\_
- ④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 문7)로 갈 것
- ⑤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 C. 생활실태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갈 것

〈 Q의사항 〉  
 ※ 가구용 6쪽 III.경제활동상태의 '문1)근로능력정도' 및 '문3)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와 일치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①임금근로자'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금근로자: 고용되어 월급, 일당 등의 형태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임금근로자).
2. 자영업, 고용주: 혼자 혹은 유급종업원을 고용하거나 무급가족과 함께 기업이나 농장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일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자.
3.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4.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실업자(2008.12.31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한 자), 근로무능력의 사유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가사, 학업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사가 없는 자)
5.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 근로의사와 무관하게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심신무능력을 사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 다음 문2) ~ 문6)까지는 취업자용(임금근로자, 자영업 및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질문입니다.

문 2) (문1)의 ①~③번 응답자만) 2008년 1년간 귀하께서는 다니던 직장(사업)을 그만 둔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 Q의사항 〉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는 일자리(직장)나 사업을 그만 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일용직 등 불규칙한 일자리 구분방식  
 ① 일하는 장소(00건설현장, 00식당 등)에서 1주일 이상 안정적으로 일하였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② 일하는 장소가 수시로 바뀌더라도 중간에 1달 이상의 공백기간 없이 같은 일(건설현장인부, 식당일, 파출부 등)을 계속 했다면, 하나의 일자리로 파악함  
 ③ 같은 일을 했다라도 1달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월에 일하고 5월에 일할 경우, 1월에 했던 일과 5월에 했던 일을 다른 일자리로 취급함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사업)을 그만두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 사례를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만 골라 주십시오

- |                               |                          |
|-------------------------------|--------------------------|
| ① 일자리(직장)나 사업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 ⑩ 근로시간 또는 근로 환경이 나빠서     |
| ② 정리해고로                       | ⑪ 자기(가족)사업을 새로 하려고       |
| ③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 ⑫ 결혼, 가족 간병 등의 가사 문제로    |
| ④ 정년퇴직                        | ⑬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
| ⑤ 계약기간이 끝나서                   | ⑭ 회사나 우리 집의 이사로 거리가 멀어져서 |
| ⑥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 ⑮ 학업, 군입대 등의 이유로         |
| ⑦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 ⑯ 좀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
| ⑧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 ⑰ 출산, 육아 때문에             |
| ⑨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 ⑱ 기타(적을 것 : _____)       |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취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과 8월에 20일씩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개월) = 14.25(일)$ 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유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 유의사항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2008년 기준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 7) ~ 문 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구직활동이란 원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문7)의 ①번 응답자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직상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성차별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외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경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건강문제로	①	②	③	④	⑤
가구 특성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신용불량자라서	①	②	③	④	⑤
	가사일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①	②	③	④	⑤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①	②	③	④	⑤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①	②	③	④	⑤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천  백  십  원 정도

< 유의사항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8) (문7)의 ②번 응답자만)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8-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9)로 갈 것**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알맞은 일거리나 직장이 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문8-2)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 아니다"에 해당합니다.

문 8-2) (문8-1)의 ①번 응답자만) 취업을 원하면서도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③ 근처에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 ④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 ⑤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 ⑥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 ⑦ 기타( \_\_\_\_\_ )

**\* 다음 문 9) ~ 문 10)은 모든 취업 및 미취업 응답자용 질문입니다.**

문 9) (문1)의 ①~④번 응답자) 귀하는 2008년 1년간 **정부가 제공하는** 아래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참여 여부		만족도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참여 기간 (개월)	
	있다	없다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만 기입	
① 공공근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② 노인일자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③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④ 사회적 일자리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⑤ 직장체험연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⑥ 실업자 직업훈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⑦ 창업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X	
⑧ 기타 ( _____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개월

< 유의사항 >

\* 각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②없다'면 '만족도, 참여기간은 표기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문 9)의 ①부터 ⑧까지 모두 '② 없다'고 응답한 경우 → 문10) 새로 습득한 직업기술 문항으로 기입시오.**

문 9-1) (문9)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① 있다는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신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문 10) 귀하는 2008년 1년 동안에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습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
| ① 기술사  | ⑤ 기능사                          |
| ② 기능장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 ③ 기사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 ④ 산업기사 | ⑧ 없다 → C.생필품대 만족 및 인식 문항으로 길 것 |

문 10-1) (문 9)의 ① ~⑦번 응답자만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하셨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         |                |
|----------|---------|----------------|
| ① 기계·금속  | ⑪ 국토개발  | ⑳ 공예           |
| ② 화공·세라믹 | ⑫ 농림    | ㉑ 사무관리         |
| ③ 전기·전자  | ⑬ 해양    | ㉒ 음료품·식품       |
| ④ 통신     | ⑭ 산업디자인 | ㉓ 위생           |
| ⑤ 조선     | ⑮ 에너지   | ㉔ 보건·의료·사회     |
| ⑥ 항공     | ⑯ 환경    | ㉕ 금융·무역·유통     |
| ⑦ 섬유     | ⑰ 안전관리  | ㉖ 교육·공무원 관련 자격 |
| ⑧ 토목·건축  | ⑱ 산업응용  | ㉗ 외국어·관광       |
| ⑨ 광업자원   | ⑲ 교통    | ㉘ 기타           |
| ⑩ 정보처리   |         |                |

< 유의사항 >

\* 문10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8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만하다
- ② 매우 조심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에: (현혈 등)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8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셨습니까

연간 총액      만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08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셨습니까

연간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 ② 없다 → **문6)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08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왕래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2008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문 1) (모든 응답자) 귀하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피운 담배의 양은 총 얼마입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5갑(100개비) 미만 } → 문 2)로 갈 것  
 ② 5갑(100개비) 이상  
 ③ 피운 적 없음 → 문 5)로 갈 것
- 문 2)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는 언제입니까  
 만  세
- 문 3)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총 흡연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담배를 주기적으로 피우던 시기를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금연하였던 기간은 제외합니다.)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총 흡연기간  년  개월
- 문 4)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께서는 현재 담배를 피우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피움 → 문 4-1), 문 4-2), 문 4-3) 응답 후 문 5)으로 갈 것  
 ② 과거에는 피웠으나 현재는 피우지 않음 → 문 4-1)에 응답 후 문 5)으로 갈 것
- 문 4-1) (문 1)의 ①~②번 응답자만 귀하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몇 개비입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과거흡연자는 과거 흡연하던 때의 하루 평균 흡연량을 응답합니다)
- 개비
- 문 4-2)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최근 1년 동안 담배를 끊고자 하루(24시간) 이상 금연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문 4-3) (문 4)의 ①번 응답자만 앞으로 담배를 끊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1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② 6개월 안에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③ 6개월 이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금연할 계획이 있다.  
 ④ 현재로서는 전혀 금연할 계획이 없다.
-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는 시간은 하루 몇 시간 정도입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① 0시간(없음) ② 1시간 미만 ③ 1시간 이상 → 문 5-1)로 갈 것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② 월 2~4회
  - ③ 주 2~3회
  - ④ 주 4회 이상
  -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6-1)로 갈 것
- 문 7)으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 ② 3~4잔 정도
- ③ 5~6잔 정도
- ④ 7~9잔 정도
- ⑤ 10잔 이상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번에 술잔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몇달에 한번정도
- ③ 한달에 한두 번 정도
- ④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09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항목	전혀 없음	몇 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8년 1년간(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③ 보통이다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 부록 4



승인번호  
제 33109 호



##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4차 신규가구원용(유형4)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61, 8358, 8273, 8352, 830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원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당가구원		
가구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응 답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사유 (번호기제)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① 비해당(직접응답) ③ 병원입소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③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	⑥ 감옥수감 ⑦ 군대 혹은 친부경찰 ⑧ 사법부사설 장기요양 ⑩ 기타	가구주성명 대리응답자 성명    가구원번호	
주소지	행정코드				시·도	구·시·군	동·읍·면
	상세주소	통·리	번지	호 (    아파트    동    층    호)	☎ (    )		
조사표원료 소요시간	총	분	총방문횟수	총	회		
1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① 비해당(완료) ② 낮은 귀가 ③ 장기출타 ④ 부재중(원인미파악) ⑤ 일부료항 미완 ⑥ 조사거부		
3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⑥ 뇌병변장애 ⑦ 정신지체, 발달장애 1,2급 ⑧ 사망 ⑨ 기타		
4차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최종방문	__월 __일 __시 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지도원	(인)	



##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문 1) 귀하는 2008년 1년간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직우체국 연금)을 받으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1-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2)로 갈 것**

문 1-1) (문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공적연금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 국민연금 → **문1-2)로 갈 것**
  - ② 공무원연금
  - ③ 사립학교교원연금
  - ④ 군인연금
  - ⑤ 별정직우체국연금
  - ⑥ 보훈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문1-4)로 갈 것**

→ **문1-6)로 갈 것**

〈유의사항〉

\* 중복응답일 경우, 아래 문1-2)~문1-6)에서 해당하는 모든 공적연금의 급여종류와 급여액을 기입해 주십시오.

문 1-2) (문1-1)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 ① 노령연금
- ⑤ 사망일시금
- ② 장애연금
- ⑥ 반환일시금
- ③ 유족연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④ 분할연금

문 1-3)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국민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일</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십</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able>	일	천	백	십					만원							
일	천	백	십															
연금	연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able>	십				개월	연간 총액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천</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백</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십</td> <td style="width: 25%; 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text-align: center;"> </td> </tr> </table>	천	백	십						만원
십																		
천	백	십																

문 1-4) (문1-1)의 ②~⑤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 우체국 연금 등)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퇴직급여
- ④ 퇴직수당
- ② 유족급여
- ⑤ 부조급여
- ③ 재해보상급여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그렇다면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특수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원, 군인, 별정직우체국  
연금 등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문1-4)에서 응답한 특수직역연금의 총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문 1-6) (문1-1)의 ⑥번 응답자만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보험연금 및 기타 연금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의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일시금 총액 

--	--	--	--	--	--

 만원

연금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고 용 보 험**

문 2) (모든 응답자) 귀하가 2008년 1년간 고용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2-1)로 갈 것**      ② 없다 → **문3)으로 갈 것**

문 2-1) (문2)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받은 고용보험의 급여 종류는 무엇입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b>1순위</b>	<b>2순위</b>
------------	------------

- ①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 ② 모성보호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직급여)
- ③ 기타 현금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근로자수강지원금, 수강료지원)
- ④ 현물급여 (재취직 훈련지원, 정부위탁훈련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등 비현금지원)

문 2-2) 그렇다면 귀하가 2008년 1년간 받은 고용보험의 총 현금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 현금급여액은 본인이 직접 받은 현금을 말합니다.)

연간 

--	--

 개월 연간 총액 

--	--	--	--	--	--

 만원

**산 재 보 험**

문 3) (모든 응답자) 귀하가 2008년 1년간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문 3)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2월 31일 당시에 재직 중인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취업을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월

문 4)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년간 일을 한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그리고,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며칠입니까

연간 총 개월 일한 달 평균 근로일수 일

< 유의사항 >  
 ※ 불규칙적으로 일을 한 경우, 하루라도 일한 달은 1개월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년 중 3월에 2일, 4월에 15일, 7월과 8월에 20일씩 일 한 경우 '4개월'로, 일한 달의 평균 근로일수는  $57(2+15+20+20) \div 4(개월) = 14.25(일)$ 이므로 반올림 적용하여 '14일'로 기입합니다.  
 ※ 직장에 계속 있기는 하였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 1년 중 7개월 휴직을 하였다면 연간 총 근로 개월은 5개월로 적어주고, 평균근로일수도 실제 일한 달의 평균을 적어주면 됩니다.  
 ※ 1년간 농사를 지은 경우는 12개월로 간주합니다.

문 5) (모든 취업 응답자) 2008년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 주당 평균 시간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

< 유의사항 >  
 ※ 1년 동안 직장(사업)의 변동이 있었다면 2008년 기준 가장 최근의 직장(사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직업, 예를 들어 농사나 일용 건설 노동자의 경우라면 1년 중 일한 날의 하루 평균 시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 점심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문1)의 ①번 응답자만)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① 노동조합이 없음
- ②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 ③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 ④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 다음 문 7) ~ 문 8)까지는 미취업자용 (근로능력있음) 질문입니다.**

문 7) (문1)의 ④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난 4주 동안 돈을 벌 목적으로 일자리(사업)를 구해보셨습니까?

- ① 그렇다 → **문7-1)로 갈 것**      ② 아니다 → **문8)로 갈 것**

< 유의사항 >  
 \* 구직활동이란 원시접수, 취직시험 응시부터 친구, 친지에게 소개부탁, 직업알선기관에 등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이 주어졌더라도 가사나 학업 등의 이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나, 근로의사가 없는 사람은 '②아니다'로 응답합니다.

문 7-1) (문7)의 ①번 응답자만 마지막으로 직장(사업)을 그만둔 후 총 구직 기간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구직 기간            년            개월

문 7-2) (문7)의 ①번 응답자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구직상의 어려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개인 특성	나이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성차별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외모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학력이 낮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경력이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건강문제로	①	②	③	④	⑤
가구 특성	일자리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서	①	②	③	④	⑤
	신용불량자라서	①	②	③	④	⑤
	가사일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자녀를 돌보는 문제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가족을 간병해야 하기 때문에	①	②	③	④	⑤
	가족(배우자, 부모 등)의 반대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①	②	③	④	⑤
노동 시장 특성	근로조건이나 근로환경이 열악해서	①	②	③	④	⑤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일자리여서	①	②	③	④	⑤
	고용이 불안정해서(비정규직이라서)	①	②	③	④	⑤

문 7-3) (문7)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취업 혹은 사업을 한다면 한 달 벌이가 적어도 얼마나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월                            만원 정도

< 유의사항 >  
 \* 자영업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순수익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지로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 후 문9) 고용지원 프로그램 문항으로 가십시오.**



문 9-1) (문9)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 있다'는 응답자만

귀하가 참여하신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구직(또는 창업)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직업능력 개발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사업 참여로 인해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인식

※ 아래의 모든 조사 항목은 2008년 1년 동안에 대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1)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대부분의 사람들을 믿음만하다
- ② 매우 조심해야 한다
- ③ 잘 모르겠다

문 2) 귀하는 만약 지역사회 내에서 누군가 위급하게 도움을 필요에: 헌혈 등)로 하는 경우 기꺼이 도움을 줄 의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귀하의 지역사회 내에 새롭게 화장시설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이 입지한다면 받아들여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귀하는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 ① 그렇다 → **문4-1)로 갈 것**
- ② 아니다 → **문5)로 갈 것**

< 유의사항 >

※ 정기적인 기부: 교회나 절에 내는 십일조, 시주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 4-1)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2008년 1년간 얼마 정도 기부하십니까?

연간 총액      만원

문 4-2) (문4)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는 자원봉사활동을 2008년 1년간 몇 회 정도 하십니까?

연간  회

문 5)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

- ① 있다 → **문5-1)로 갈 것**
- ② 없다 → **문6)으로 갈 것**

< 유의사항 >

※ 계부, 계모도 포함하며,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응답합니다.

※ 이 문항에서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이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하는 부모님**을 말합니다.

문 5-1) (문5)의 ①번 응답자만) 2008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왕래를 하십니까?

· 주  회 또는 · 월  회 또는 · 년  회

< 유의사항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거의 매일 왕래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하루 1회 이상 왕래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문 5-2) 2008년 1년간 귀하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과 얼마나 자주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 주 \_\_\_\_\_ 회 또는 · 월 \_\_\_\_\_ 회 또는 · 년 \_\_\_\_\_ 회

< 유의사항 >

- \* 주나 월, 년 중에서 한 가지로만 응답해 주십시오.
- \* 거의 매일 전화통화 하는 경우는 주7회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 하루 1회 이상 전화통화 하더라도 1회로 계산합니다.

※ 다음은 성역할에 관한 문항입니다.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6) 귀하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여성이 전일제로 일할 경우 가족의 일상생활은 힘들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 미취학 아동의 어머니가 일을 할 경우 미취학 아동에게 나쁘다	①	②	③	④	⑤
㉢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의 임무는 밖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여성의 임무는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남성과 여성 모두 가구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정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 가족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문 5-1) (문 5)의 ③번 응답자만 귀하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정도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맡으셨습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시간

문 6) (모든 응답자) 귀하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① 월 1회 이하  → 문 6-1)로 갈 것
- ② 월 2~4회
- ③ 주 2~3회
- ④ 주 4회 이상
-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 → 문 7)으로 갈 것

문 6-1)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보통 술을 마실 때 몇 잔 정도 마십니까?

- ① 1~2잔 정도
- ② 3~4잔 정도
- ③ 5~6잔 정도
- ④ 7~9잔 정도
- ⑤ 10잔 이상

문 6-2)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한번에 술잔식에서 6잔 이상 마시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됩니까?

- ① 전혀 없다
- ② 몇달에 한번정도
- ③ 한달에 한두 번 정도
- ④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 ⑤ 거의 매일

문 6-3) (문 6)의 ①~④번 응답자만 2009년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해 동안 귀하는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한 적은 몇 번입니까?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항목	전혀 없음	몇 달에 한번	한달에 1~2번	주에 1~2번	거의 매일
㉠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둘 수 없었던 적이 얼마나 자주입니까?					
㉡ 해야 할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 과음을 한 다음날 해장술을 마셔야 했던 적이 얼마나 됩니까?					
㉣ 술을 마신 후에 좌절감을 느끼거나 후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 술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얼마나 됩니까?					
항목	전혀 없음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난 한해 동안 없음	지난 1년 동안 있었음		
㉥ 술로 인해 자신이 다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 친척, 친구나 의사와 같은 주변사람들이 귀하의 음주를 걱정하거나 술을 줄이도록 권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 6-4) (문 6)의 ㉠~㉣번 응답자만) 2008년 1년간(2008. 1. 1 ~ 2008. 12. 31) 귀하는 다음과 같이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항 목	예	아니오
㉠ 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술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있다	①	②
㉢ 술을 계속 마시는 것이 나쁘다고 느껴거나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아침에 깨자마자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문 7) (모든 응답자) 귀하는 2008년 1년간(2008. 1. 1 ~ 2008. 12. 31) 출산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비례당(남성의 경우)

문 8) (모든 응답자) 귀하는 지난 1주일간 얼마나 자주 다음과 같이 느끼셨습니까  
(\* 조사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지난 1주일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항 목	극히 드물다 (일주일에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일주일에 2~3일간)	종종 있었다 (일주일에 4~5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6일 이상)
㉠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 잠을 설치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 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가 가장 가깝다고 느끼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항 목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문 10) 살다보면 부부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08년 1년간(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 당신의 배우자가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없음	1~2번	3~5번	6번이상	비해당
㉠ 모욕적, 악의적인 이야기를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신체적 폭력의 위협을 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문 11) 귀하는 귀하의 가족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2)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배우자가 없는 경우(사별, 이혼, 미혼)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3)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는 경우(비가구원 포함)에만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14) 귀하는 귀하의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조사 시점(2009년 조사일 현재)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본 문항은 대리응답이 불가능합니다.)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약간 불만족 ④ 보통 ⑤ 약간 만족 ⑥ 만족 ⑦ 매우 만족 ⑧ 비해당

< 유의사항 >

-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에만(비가구원 포함) '비해당'으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 교육

문 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중학교 졸업 이하</li> <li>② 고등학교 중퇴, 졸업</li> <li>③ 전문대학 재학, 중퇴, 졸업</li> <li>④ 대학교(4년제) 재학, 중퇴, 졸업</li> <li>⑤ 대학원 이상</li> </ul> |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50px; margin: 0 auto;"></div> | <p><b>G.개인사로 갈 것</b></p> <p><b>문 2)로 갈 것</b></p> |
|--|--|--|

문 2) (㉒~㉟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고등학교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1) 고등학교 유형	2-2) 소재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①일반계(일반)</td> <td style="width: 33%;">⑦실업계(농업)</td> <td style="width: 33%;">⑬특성화고</td> </tr> <tr> <td>②일반계(특목:과학고)</td> <td>⑧실업계(공업)</td> <td>⑭대안학교</td> </tr> <tr> <td>③일반계(특목:외국어고)</td> <td>⑨실업계(상업)</td> <td>⑮검정고시</td> </tr> <tr> <td>④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td> <td>⑩실업계(수산 및 해양)</td> <td>⑯기타</td> </tr> <tr> <td>⑤일반계(특목:예술고)</td> <td>⑪실업계(가사 및 실업)</td> <td></td> </tr> <tr> <td>⑥일반계(특목:체육고)</td> <td>⑫실업계(종합)</td> <td></td> </tr> </table>	①일반계(일반)	⑦실업계(농업)	⑬특성화고	②일반계(특목:과학고)	⑧실업계(공업)	⑭대안학교	③일반계(특목:외국어고)	⑨실업계(상업)	⑮검정고시	④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⑩실업계(수산 및 해양)	⑯기타	⑤일반계(특목:예술고)	⑪실업계(가사 및 실업)		⑥일반계(특목:체육고)	⑫실업계(종합)		<p>고등학교의 소재지</p> <p><b>*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b> 예) 서울시 강남구</p>
①일반계(일반)	⑦실업계(농업)	⑬특성화고																	
②일반계(특목:과학고)	⑧실업계(공업)	⑭대안학교																	
③일반계(특목:외국어고)	⑨실업계(상업)	⑮검정고시																	
④일반계(자립형사립고, 국제고)	⑩실업계(수산 및 해양)	⑯기타																	
⑤일반계(특목:예술고)	⑪실업계(가사 및 실업)																		
⑥일반계(특목:체육고)	⑫실업계(종합)																		

〈유의사항〉

- \* 2007년부터는 “실업계”의 명칭이 “전문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응답자가 “전문계”라고 할 경우 해당 “실업계”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고등학교”는 ⑧실업계(상업)에 표시합니다.
- \* ④ 자립형사립고 예시
  - 민족사관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포항제철고등학교, 부산해운대고등학교, 울산현대정운고등학교, 전주상산고등학교
- \* ⑬ 특성화고등학교
  - 디자인고등학교: 서울디자인고등학교, 메일디자인고등학교, 부산디자인고등학교, 인천디자인고등학교, 서울동일여자전신디자인고등학교, 대전전지디자인고등학교, 경주디자인고등학교 등
  - 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애니메이션고등학교: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연기성남고등학교, 경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등
  - 골프고등학교: 부산골프고등학교, 청도한양국제골프고등학교, 형평골프고등학교
  - 관광고등학교: 서울관광고등학교,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대구관광고등학교, 선정관광고등학교, 한국관광고등학교 등
  - 미용고등학교: 서울연희미용고등학교, 부산미용고등학교, 경북미용예술고등학교, 경남미용고등학교, 전남미용고등학교 등
  - 자동차고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인천인평자동차정보고등학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경북자동차고등학교, 부산자동차고등학교 등
- \* ⑭ 대안학교 예시
  - 간디학교, 경기대명고등학교, 경주화랑고등학교, 고양자유학교, 공동체비전고등학교, 광주동명고등학교, 대구달구벌고등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 부산자유학교, 서울크리스천중고등학교 등

문 3) (㉓~㉟ 응답자만) 귀하가 다니신 대학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3-1) 대학 전공 계열	3-2) 소재지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①인문계열</td> <td style="width: 33%;">⑤교육계열</td> <td style="width: 33%;">⑨의약계열(약학)</td> </tr> <tr> <td>②사회계열(경상계열)</td> <td>⑥공학계열</td> <td>⑩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td> </tr> <tr> <td>③사회계열(법학계열)</td> <td>⑦자연계열</td> <td>⑪예체능계열</td> </tr> <tr> <td>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td> <td>⑧의약계열(의학)</td> <td>⑫기타</td> </tr> </table>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예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p>대학교의 소재지</p> <p><b>* 특별(광역시·도 단위까지 기재)</b> 예) 경기도</p>
①인문계열	⑤교육계열	⑨의약계열(약학)											
②사회계열(경상계열)	⑥공학계열	⑩의약계열(간호,치료보건)											
③사회계열(법학계열)	⑦자연계열	⑪예체능계열											
④사회계열(사회과학계열)	⑧의약계열(의학)	⑫기타											

〈유의사항〉

- \* 응답자가 다닌(혹은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등이 사회과학계열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②사회계열(경상계열)”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 개인사

문 1) 아동기(만 0~17세)에 귀하가 가장 오랜 기간 성장한 곳은 다음 중 어느 지역입니까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기타 시도)    ③ 농어촌(읍면지역)    ④ 외국

문 2) 귀하가 아동기(만 0~17세)에 가구의 경제적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 ① 매우 가난    ② 가난    ③ 보통    ④ 부유    ⑤ 매우 부유

문 3) 귀하는 만 15세 이후 한 번이라도 직장(사업)을 가진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3-1)로 갈 것**    ② 없다 → **문4)로 갈 것**

〈유의사항〉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문 3-1)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만 15세 이후 첫 직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고용형태였습니까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첫 직장							

문 3-2) **(문3)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의 첫 직장 이후의 취업 기간과 고용형태를 최근 것부터 연차적으로 주요한 직업 경력을 6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 분	기 간						고용형태
가장 최근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주된 일자리 A							
주된 일자리 B							
주된 일자리 C							
주된 일자리 D							
주된 일자리 E							

### 〈보기〉 고용 형태

1.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 파견·용역근로, 특수고용 종사자, 가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
2.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이 아닌 임금근로자
3.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4. 자영업자: 유급고용인 없이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농업의 경우 자영업에 포함)
5. 무급가족종사자: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여준 데 온 자로 취업시간이 주당 18시간 이상인 자

< 유의사항 >  
 ※ 일주일에 평균 18시간 이상씩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장 혹은 사업만 응답하십시오.  
 ※ 동일직종에 근무하면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근무기간은 구분하지 말고 고용형태는 마지막 형태를 기입합니다. 고용형태는 바뀌지 않았지만 직장을 바꾼 경우에는 바뀐 직장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인 경우는 3-1)과 3-2) 최근일자리에 동시에 기입합니다.  
 ※ 첫 직장 이후 다른 직장을 다닌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3-1)에만 기입하고, 3-2)에는 최근 일자리부터 순차적으로 적되, 마지막에 첫 직장은 적지 않습니다.

문 4) (모든 응답자) 귀하는 어떤 직업기술을 갖고 계십니까 주요한 순서대로 3개까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술사
  - ⑥ 기타 공인면허자격증
  - ② 기능장
  - ⑦ 자격증 없는 기능자
  - ③ 기사
  - ⑧ 잘 모르겠다
  - ④ 산업기사
  - ⑨ 없다
  - ⑤ 기능사
- 문5)로 갈 것

문 4-1) (문 4)의 ①~⑦번 응답자만) 직업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직종에 해당합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기계 · 금속
- ⑪ 국토개발
- ⑳ 공예
- ② 화공 · 세라믹
- ⑫ 농업
- ㉑ 사무관리
- ③ 전기 · 전자
- ⑬ 해양
- ㉒ 음료품 · 식료품
- ④ 통신
- ⑭ 산업디자인
- ㉓ 위생
- ⑤ 조선
- ⑮ 에너지
- ㉔ 보건 · 의료 · 사회
- ⑥ 항공공공
- ⑯ 환경
- ㉕ 금융 · 무역 · 유통
- ⑦ 섬유유
- ⑰ 안전관리
- ㉖ 교육 · 공무원 관련 자격
- ⑧ 도목 · 건축
- ⑱ 산업응용
- ㉗ 외국어 · 관광
- ⑨ 광업자원
- ⑲ 교통
- ㉘ 기타
- ⑩ 정보처리

< 유의사항 >  
 ※ 문4)에서 응답한 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5) (모든 응답자) 귀하께서는 아동기(만 0~17세)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살이었습니까

항 목	경험 여부			당시 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	모름	
㉔ 부모님 중 한분이 이상이 일찍 돌아가셨다	①	②	③	만 ___ 세
㉕ 부모님이 이혼하셨다	①	②	③	만 ___ 세
㉖ 생계가 곤란하여 학업을 중단(진학포기)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만 ___ 세
㉗ 경제적 이유로 친척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	①	②	③	만 ___ 세

< 유의사항 >  
 ※ '무응답'의 경우에도 '모름'으로 표기하십시오.  
 ※ 생계곤란으로 처음부터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다'로 응답한 후 당시 나이는 취학연령인 만 7세로 기재합니다.

문 6) 귀하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부  모

- ① 무학
- ④ 중학교졸
- ⑦ 대학교졸
- ② 서당수학
- ⑤ 고등학교졸
- ⑧ 대학원졸
- ③ 초등학교졸
- ⑥ 대학(전문대)졸
- ⑨ 모름

< 유의사항 >  
 ※ 중퇴 수료는 이전 학교 졸업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오. 예를 들어, 중학교 중퇴(수료)인 경우는 '초등학교 졸'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문 7) 귀하 부모님의 주된 직업은 무엇입니까(이었습니까)?

부	모
---	---

- |                      |                     |
|----------------------|---------------------|
| ① 비해당                | ⑩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 ②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⑪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
| ③ 전문가                | ⑫ 단순 노무 종사자         |
| ④ 기술공 및 준전문가         | ⑬ 직업군인              |
| ⑤ 사무종사자              | ⑭ 주부                |
| ⑥ 서비스 종사자            | ⑮ 무직                |
| ⑦ 판매 종사자             | ⑯ 기타(적을 것 : _____)  |
| ⑧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 ⑰ 모름                |

< 유의사항 >

\*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문 8) 귀하는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8-1)로 갈 것**      ② 없다 → **문9)로 갈 것**

< 유의사항 >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마련자금 또는 전세자금),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본인의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정도의 비정기적 증여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예를 들어,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쌀, 대학등록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8-1) (문8)의 ①번 응답자만 귀하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이나 증여(결혼 시 받은 물질적 도움 등)가 현재 경제상황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전혀 도움 안 됨 | ④ 약간 도움이 됨   |
| ② 별로 도움 안 됨 | ⑤ 매우 큰 도움이 됨 |
| ③ 보통        |              |

문 9) 귀하는 결혼 혹은 근로 등의 사유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유의사항 >

\* 본 질문은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가정 등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 해외에 거주하였다가 귀국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장시간 조사에 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

조사원의 평가

문) 조사 설문지에 대한 응답자의 응답내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전체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하다
- ② 대체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 ③ 보통이다
- ④ 부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 ⑤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부록 5



승인번호  
제 33109 호



## 2009년 한국복지패널조사 부가조사(유형5)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사회복지연구소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계층별, 연령별 인구집단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 욕구를 역동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복지정책 수립시 활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댁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 4월

< 문의 및 연락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02-380-8198, 8261, 8358, 8273, 8352, 8304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02-880-6320

* 가구용의 숫자를 그대로 이기					해 당 가 구 원			
가구패널 ID	가구 생성차수	가구분리 일련번호	가구원 진입 차수	개인패널ID (인포시스템의 개인패널ID)	성명	가구원 번호	전화 번호	
								휴대폰
대리응답 여부	① 예	<input type="checkbox"/> 사유 (번호기제)	* 대리응답 사유코드	④ 비해당(직접응답)	⑤ 병원입소	⑥ 감옥수감	가구주성명	
	② 아니오			① 해외거주(기러기부모)	④ 가출	⑦ 군대 혹은 친부경찰	대리응답자	
			② 여행 및 출장	⑤ 별거(가정분화)	⑧ 사별/사실 장기요양	⑩ 기타	성명	가구원번호
			③ 정신지체, 발달장애 3급					
주소지	행정코드				_____시·도	_____구·시·군	_____동·읍·면	
	상세주소	_____통·리 _____번지 _____호 ( _____아파트 _____동 _____층 _____호) ☎ ( ) _____ - _____						
조사표원료 소요시간		총 _____분	총방문횟수	총 _____회				
1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 미완사유코드		
2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⑥ 비해당(완료) ① 낮은 귀가 ② 장기출타 ③ 부재중(원인미파악) ④ 일부분할 미완 ⑤ 조사거부		
3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⑥ 너별변장애 ⑦ 정신지체, 발달장애 1,2급 ⑧ 사망 ⑨ 기타		
4차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최종방문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방문결과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조사원 이름		지도원 확인	① 완료 ② 미완	<input type="checkbox"/> 사유(번호기제):		지도원	(인)	

※ 본 조사의 응답시점은 조사당시(2009년)를 기준으로 하며, 2006년 1차 조사 당시 아동조사표 응답자와 2009년 현재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합니다[인포시트 참조].  
 ※ 별도의 기준시점을 대상으로 설문할 경우 문항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A. 나의 학교생활

문 1)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터 ㉣까지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①부터 ④중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학교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 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2)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학교 성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아주 못함	중간 이하	중간	중간 이상	아주 잘함
㉠ 전과목 평균	①	②	③	④	⑤
㉡ 국 어	①	②	③	④	⑤
㉢ 수 학	①	②	③	④	⑤
㉣ 영 어	①	②	③	④	⑤

문 3) 평상시 우리학교에 대한 나의 생각을 표시해주세요. ㉠부터 ㉥까지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①부터 ④중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전반적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열심히 하면 칭찬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 수업 중에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기를 죽인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학교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 크게 잘못된 일이 없는데 선생님께 혼나는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 B. 나의 생각과 행동

문 4) 다음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부터 ㉤까지 각각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같은 정도에 따라 ①부터 ④ 중 하나만 표시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뭐든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재주가 많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지가 강하다	①	②	③	④
㉧ 나는 처음에 못할지라도 잘 할 때까지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 나는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문 5) 각 항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자신과 꼭 들어맞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5-1)	㉠ 외롭다고 불평한다	①	②	③
	㉡ 잘 운다	①	②	③
	㉢ 나쁜 생각이거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①	②	③
	㉣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①	②	③
	㉥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①	②	③
	㉪ 자의식이 지나치고(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쉽게 무안해 한다	①	②	③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②	③
	㉬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 의심이 많다.	①	②	③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5-2)	㉠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	①	②	③
	㉡ 집중력이 없고 어떤 일에 오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①	②	③
	㉢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지나치게 많이 움직인다	①	②	③
	㉣ 정신이 헛갈리거나 혼미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 공상을 하거나 멍하게 자기 생각에 빠지곤 한다	①	②	③
	㉥ 충동적이고 생각없이 행동한다	①	②	③
	㉦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 불안으로 인해 몸을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움찔거리다 (눈 깜박임, 안면 싹룩거림 포함)	①	②	③
	㉨ 학교 공부가 시원치 않다	①	②	③
	㉩ 운동신경이 둔하고 움직임이 어색하다	①	②	③
㉪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①	②	③	
문 5-3)	㉠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①	②	③
	㉡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①	②	③
	㉢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	①	②	③
	㉣ 수줍거나 소심하다	①	②	③
	㉤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곤 한다	①	②	③
	㉥ 자주 뻘뻘해진다	①	②	③
	㉦ 비활동적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①	②	③
	㉧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 한다	①	②	③
㉨ 위축되서 남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	①	②	③	
문 5-4)	㉠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①	②	③
	㉡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①	②	③
	㉢ 거짓말을 하거나 남들을 속인다	①	②	③
	㉣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애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 가출한다	①	②	③
	㉥ 불을 지른다	①	②	③
	㉦ 집 밖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	①	②	③
	㉧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을 쓴다	①	②	③
	㉨ 성적인 행동이나 성적인 관계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한다	①	②	③
	㉩ 학교를 빼먹는다(무단결석)	①	②	③
	㉪ 술을 마시거나 약(본드, 부탄가스, 각성제 등)을 사용한다	①	②	③
	㉫ 물건이나 시설을 부순다	①	②	③
㉬ 집안에서 물건을 훔친다	①	②	③	



문항		전혀 아니다	그런 편이다	자주 그렇다
문 5-5)	㉠ 말다툼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 허풍치고 자랑을 많이 한다	①	②	③
	㉢ 동물을 잔인하게 다룬다	①	②	③
	㉣ 나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기를 요구한다	①	②	③
	㉤ 내 물건을 부순다	①	②	③
	㉥ 가족이나 다른 아이의 물건을 부순다	①	②	③
	㉦ 집에서 말을 안 듣는다	①	②	③
	㉧ 학교에서 말을 안 듣는다	①	②	③
	㉨ 책을 잘 낸다	①	②	③
	㉩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 신체적으로 남을 공격한다	①	②	③
	㉫ 고함을 지른다	①	②	③
	㉬ 으스스대거나 남을 웃기려고 싱거운 짓을 한다	①	②	③
	㉭ 고집이 세고 시무룩해지거나 성질을 부린다	①	②	③
	㉮ 감정이나 기분이 갑자기 변하곤 한다	①	②	③
	㉯ 지나치게 수다스럽다	①	②	③
	㉺ 남을 잘 놀린다	①	②	③
	㉻ 성미가 급하고 제 뜻대로 안되면 데굴데굴 구른다	①	②	③
	㉼ 남을 위협한다	①	②	③

문 6) 다음 문항을 읽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옳고 그른 답은 없으며 비밀이 보장되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6-1) 술을 마신 적이 있다. (\* 지난 1년간이나 한 달간 중 해당하는 하나에만 응답해 주세요.)

- ① 지난 1년 동안 몇 번 마셨으면 지난 1년간에 대해 기록: 지난 1년간  회
- ②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마시면 지난 1달간에 대해 기록: 한 달에  회

문 6-2)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 지난 1년간이나 한 달간 또는 하루 중 해당하는 하나에만 응답해주세요.)

- ① 지난 1년 동안 몇 번 피워봤으면 지난 1년간에 대해 기록: 지난 1년간  회
- ② 한달에 한번 이상 자주 피우면 지난 1달간에 대해 기록: 한 달에  회
- ③ 하루에 한번 이상 피우면 하루 평균에 대해 기록: 하루 평균  회

문 6-3) **지난 1년 동안** 자기에게 해당되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항	그런적 없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상
가 <b>지난 1년 동안</b>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나 <b>지난 1년 동안</b>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다 <b>지난 1년 동안</b>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뺏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라 <b>지난 1년 동안</b>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마 <b>지난 1년 동안</b>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바 <b>지난 1년 동안</b> 학교를 이유없이 빼먹은(무단 결석)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사 <b>지난 1년 동안</b> 폭력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아 <b>지난 1년 동안</b>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자 <b>지난 1년 동안</b>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나의 땀(성기)을 만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차 <b>지난 1년 동안</b> 내가 싫은데도 다른 사람이 옷을 억지로 벗게 하여 내 몸을 보려고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 7) **지난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경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문항	전혀 없다	1번	2~3번	4번 이상
가 다른 아이들이 듣기 싫은 별명을 부르며 나를 놀리거나 조롱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나 다른 아이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따돌리고 무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다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대한 나쁜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그 소문을 수군거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라 다른 아이들로부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마 다른 아이들이 나에게 겁을 주거나 때려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바 다른 아이들이 나를 손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 8) 여러분은 평일 방과 후 시간과 주말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별로 2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문 8-1) 평일 방과 후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1순위		2순위	
-----	--	-----	--

문 8-2) 주말 시간에 주로 하는 일은

1순위		2순위	
-----	--	-----	--



문 10)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 부모님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	①	②	③	④

문 11) 다음은 부모님이나 부모님 역할을 하시는 어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들이 **지난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는지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없었다	1년에 1~2번 정도	2~3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정도	일주일에 1~2번 정도
㉠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와 같은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님이 나에게 '명청한 것', '개만 못한 것', '비보자식'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 학교수업이 끝난 후 내가 집에 늦게 들어와도 우리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님은 이유 없이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한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님은 내가 몰래 남의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도 모른 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부모님은 내가 불량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D. 나의 친구는?

※ 다음은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친한 친구란 평소 잘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으로서 학교 친구 동네 친구 및 선후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질문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문 12)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명

문 12-1) **그 친구들**과는 얼마나 자주 만납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2-3일에 한번 정도                      ③ 일주일에 한번 정도
- ④ 2-3주에 한번 정도                      ⑤ 한 달에 한번 정도                      ⑥ 몇 달에 한번 정도

문 12-2) 그 친구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㉗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㉘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㉙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㉚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12-3) 그 친구들은 지난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행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또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런 편이다	항상 그렇다
㉛ 내 친구들은 내가 외롭거나 힘들 때 나와 함께 있어준다	①	②	③	④
㉜ 내 친구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㉝ 내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㉞ 내 친구들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	①	②	③	④
㉟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㊱ 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㊲ 내 친구들은 학교에 무단으로 결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㊳ 내 친구들은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뺏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㊴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 한다	①	②	③	④
㊵ 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낸다	①	②	③	④

문 12-4) 그 친구들 중에서 학교에서 근신, 정학 또는 퇴학 등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없을 경우 0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명

문 12-5) 그 친구들 중에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없을 경우 0명으로 표기해 주십시오)

명

### E. 나의 건강 및 생활

문 13) 현재 여러분의 건강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나쁘다    ⑤ 아주 나쁘다

문 14) 여러분은 걱정거리가 있으면 누구와 주로 의논합니까 가장 많이 의논하는 사람 한 사람만 골라 주세요.

- ① 아무에게도 의논하지 않는다    ⑤ 학교선생님  
 ② 부모님    ⑥ 함께 사는 어른(할머니, 삼촌 등)  
 ③ 형제자매    ⑦ 복지관 선생님  
 ④ 친구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 15)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전학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문15-1)로** 같 귀      ② 없다 → **문16)으로** 같 귀

문 15-1) (**문15)의 1번 응답자만**) 그럼, 지난 1년 동안 모두 몇 번 전학하였습니까

--	--	--	--

문 16) 나의 키는 

--	--	--

 Cm이다

문 17) 나의 몸무게는 

--	--	--

 Kg이다

문 18) 지난 1주일 동안 먹을 것이나 돈이 없어서 밥을 굶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 19) TV시청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합니까?

--	--	--	--

 시간 

--	--

 분

문 20) 인터넷 사용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정도** 합니까?

--	--	--	--

 시간 

--	--

 분

< 유의사항 >

- 인터넷 사용시간에는 학업관련 작업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F.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문 21) 다음은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1-1)로** 같 귀      ② 없다 → **문22)로** 같 귀

< 유의사항 >

- 아르바이트는 집에서 응돈이나 기타 필요한 돈을 목적으로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상부름이나 집안일을 하여 용돈을 받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 21-1) (**문21)의 1번 응답자만**) **지난 1년간** 여러분이 해보았던 아르바이트 종류와 일한 기간 및 일한 시간에 대해 모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원: 3가지 이상일 경우 오래 한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가)	아르바이트 종류	일한 기간 (한달은 30일로 표시)			일한 시간					
					일	일주일에	일	하루에	시간	
(나)										시간
(다)										시간
(라)										시간
보기	1. 전단지 돌리기 2. 패스트푸드점 서빙/ 카운터/ 배달 3. 분식점, 중국집 서빙/ 카운터/ 배달 4. 편의점 점원 5. 주유소 주유원 6. 카페(커피숍) 서빙 7. 일반상점 판매원 8. 신문 및 우유배달 9.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호객/ 서빙/ 접객 10. PC방, 당구장, 만화방 카운터/ 서빙				11. 비디오방, 노래방 카운터/ 서빙 12. 비디오대여점 카운터 13. 건설현장 노동 14. 공장노동 15. 주차관리 16. 이벤트 행사장 도우미 17. 사무업무 보조(설문조사 포함) 18. 이삿짐 운반 또는 물건 포장 19. 아기, 노인 돌보기 20. 기타					

문 22) (모든 응답자) 다음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받고 있는 도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1년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해당되는 칸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경험여부		서비스 횟수
	있다	없다	
㉠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개인 상담	①	②	(년) _____ 회
㉡ 사회복지관,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교실 등의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b>학원제외</b> )	①	②	(월) _____ 회
㉢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①	②	(년) _____ 회
㉣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①	②	(년) _____ 회
㉤ 견학, 문화체험 및 방문, 예술 관련 감상 등의 활동	①	②	(년) _____ 회
㉥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또래집단 프로그램	①	②	(년) _____ 회
㉦ 취미/ 특기 관련 활동 (비디오/사진촬영, 가요/댄스활동, 악기연주, 만화창작, 프라모델 제작, 바둑교습 등)	①	②	(월) _____ 회
㉧ 제력단련 모험/개척 관련 활동 (축구, 야구, 농구, 태권도, 유도, 검도, 등산 등)	①	②	(월) _____ 회
㉨ 자원봉사 활동 및 환경보호관련 활동	①	②	(월) _____ 회
㉩ 교류활동 (-지난 1년간 국내 혹은 외국에서 다른 지역 혹은 나라의 청소년들과 만나서 사귀면서 다양한 체험을 공유한 경험이 있습니까? - 혹은 <b>외국에 나간 경험</b> 이 있습니까? )	①	②	(년) _____ 회

## G. 나의 진로는?

문 23)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을 가장 원하는 직업부터 순서대로 2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1순위**

**2순위**

기업에서)  
 · 운동선수(x) → 야구선수(o)  
 · 방송인(x) → 아나운서(o)

문 24)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 내가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 돈이 충분히 많다면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①	②	③	④
㉢ 부모님이 내 직업을 정해주기를 원한다	①	②	③	④
㉣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업이라도 좋다	①	②	③	④
㉤ 내가 남보다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신다	①	②	③	④
㉧ 내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해주셨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 내 장래 희망과 다르더라도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 학교 공부 중 어떤 것들은 나의 장래 희망을 이루는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A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B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C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자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D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E 지금 여러 직업들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F 나는 미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았고 관심도 없다	①	②	③	④
G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지 자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 간행물회원제 안내

###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a href="http://www.yes24.com">http://www.yes24.com</a> | ▪ 알라딘 <a href="http://www.aladdin.co.kr">http://www.aladdin.co.kr</a> |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afety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미정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미정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미정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혜련	미정
연구 2009-08	국가간강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향	원종욱	미정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미정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미정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미정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한국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정책적 함의	정경희	미정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주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미정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미정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미정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미정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미정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2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정부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미정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미정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미정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제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이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환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가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제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